

게 적위(敵僞)물자를 접수·처리하는 것에 속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단에서는 밀고를 접수한 후 우선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하고 처리국 국장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각 심의위원들의 안전상황에 대한 상세한 문의가 있었으며 안전서류들에 대해서도 전부 심사를 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손전창식의 재산은 일찍 봉인·차압당한 후에 도로 돌려받은 적이 있었다. 봉인차압은 접수의 구체행위에 속하며 도로 돌려받은 것은 또 처리의 구체사업에 속한다. 이러한 접수와 처리에 대하여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 조사단에서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 하여 이 일을 장경정 위원이 책임지고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또 밀고인과 손전창식을 각각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오망급 위원이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본 안건은 그 경위가 복잡하여 사법기관의 힘으로 다시 상세히 수사하지 않으면 그 처리의 부당성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고 또 접수 부당성의 정도도 정확히 규명해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상해고등법원감찰처에 송치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본래 사법직권을 존중하는 일종 행위에 속한다. 안전진상의 신속한 규명을 위하여 원 밀고인과 손전창식은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배합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세력을 이용하여 안전진상의 규명에 방해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손전창식의 부인은 도처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법 이외의 힘을 이용하여 법의 힘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법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불법인 것이다.

또 모 법률전문가의 관찰에 의하면 청사단에서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신중하였으며 합법적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 손전창식이 일본사람이라면 그의 재산은 곧 적의 재산으로 된다. 만약 그가 일본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재산이 적위(敵僞)세력을 이용하여 얻은 것이라면 그 역시 몰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만약 그에게 비행기를 현납하고 군수물자를 만든 적을 도운 행위가 확실히 있었다면 곧 전쟁범으로 되는 것이다.

■ 전선일보(前線日報) 1946년 9월 27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안건의 처리에 대한 청사단 책임자의 담화

기사내용

(본시 소식) 손전창식이 타인에 의해 군수물자를 생산하여 적에게 제공 및 비행기를 현납하였다고 밀고당한 안건은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있다. 손전창식의 부인도 관련 기사를 신문에 실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청사단 책임자가 발표한 담화이다. 그가 이르기를, 본 청사단은 이 안건을 시종일관하게 적위(敵僞)물자를 접수·처리하는 것에 속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단에서는 밀고를 접수한 후 우선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하고 처리국 국장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각 심의위원들의 안전상황에 대한 상세한 문의가 있었으며 안전서류들에 대해서도 전부 심사를 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손전창식의 재산은 일찍 봉인·차압당한 후에 도로 돌려받은 적이 있었다. 봉인·차압은 접수의 구체행위에 속하며 도로 돌려받은 것은 또 처리의 구체사업에 속한다. 이러한 접수와 처리에 대하여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 조사단에서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 하여 이 일을 장경정(張慶楨) 위원이 책임지고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또 밀고인과 손전창식을 각각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오망급(吳望伋) 위원이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본 안건은

그 경위가 복잡하여 사법기관의 힘으로 다시 상세히 수사하지 않으면 그 처리의 부당성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고 또 접수 부당성의 정도도 정확히 규명해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상해고등법원감찰처에 송치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본래 사법직권을 존중하는 일종 행위에 속한다. 안전진상의 신속한 규명을 위하여 원 밀고인과 손전창식은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세력을 이용하여 안전진상의 규명에 방해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손전창식의 부인은 도처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법 이외의 힘을 이용하여 법의 힘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법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불법인 것이다.

또 모 법률전문가의 관찰에 의하면 청사단에서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신중하였으며 합법적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 손전창식이 일본사람이라면 그의 재산은 곧 적의 재산으로 된다. 만약 그가 일본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재산이 적위(敵爲)세력을 이용하여 얻은 것이라면 역시 몰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만약 그에게 비행기를 헌납하고 군수물자를 만든 적을 도운 행위가 확실히 있었다면 곧 전쟁범으로 되는 것이다.

■ 신보(申報) 1946년 9월 27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 안전 처리에 관하여 청사단이 경과를 발표, 안전 경위가 복잡하여 고등법원의 세밀한 수사가 필요, 손씨의 부인이 도처에서 벌리고 있는 활동 사실상 불법으로 인정

기사내용

(본보 소식) 청사단에서는 이미 월 말에 안건을 종결짓고 남경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하였다. 2개월 이래 접수·처리된 여러 안건들의 경과가 리스트로 열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는 장경정(張慶楨) 위원이 계속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였다. 어제 손전창식안의 처리과정이 발표되었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본 청사단은 이 안건을 시종일관하게 손씨가 적위물자의 접수·처리와 상관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하여 왔다. 본 조사단에서는 밀고를 접수한 후 우선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에서 처리국 국장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심의위원들의 안전상황에 대한 상세한 문의가 있었으며 안전서류들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손전창식의 재산은 일찍 봉인·차압 후에 도로 돌려받은 적이 있었다. 봉인·차압은 접수의 구체행위에 속하며 도로 돌려받은 것은 또 처리의 구체사업에 속한다. 이러한 접수와 처리에 대하여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 조사단에서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 하여 이 일을 장경정 위원이 책임지고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또 밀고인과 손전창식을 각각 소환하여 연구조사를 하였으며 오망급 위원이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안건은 경위가 복잡하여 사법기관의 힘으로 다시 상세히 수사하지 않으면 처리의 부당성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고 또 접수·부당성의 정도도 정확히 규명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상해고등법원감찰처에 송치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본래 사법직권을 존중하는 일종 행위에 속한다. 안전진상의 신속한 규명을 위하여 원 밀고인과 손전창식은 모두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지 그 어떠한 세력을 이용하여 안전진상의 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손전창식

의 부인이 도처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법 이외의 힘을 이용하여 법의 힘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법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불법인 것이다.

또 모 법률전문가의 관찰에 의하면 청사단에서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신중하였으며 합법적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 손전창식이 일본사람이라면 그의 재산은 곧 적의 재산으로 된다. 만약 그가 일본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재산이 적위(敵僞)세력을 이용하여 얻은 것이라면 역시 몰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만약 그에게 비행기를 현납하고 군수물자를 만든 적을 도운 행위가 확실히 있었다면 곧 전쟁범으로 되는 것이다.

■ 동남일보(東南日報) 1946년 9월 27일

기사제목 : 손전안건의 처리경과 청사단에서 담화를 발표

기사내용

(본보 소식) 손전창식이 타인에 의해 군수물자를 제조하여 적을 도와 비행기를 현납하였다는 밀고 안건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손전창식의 부인도 관련 기사를 신문에 실은 적이 있다. 일부 세부 사항에서 서로 다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본 안건의 처리경과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자가 청사단의 책임자를 방문하여 알아보았다. 그가 발표한 담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청사단은 이 안건을 시종일관하게 적위(敵僞)물자를 접수 처리하는 것에 속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단에서는 밀고를 접수한 후 우선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하고 처리국 국장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각 심의위원들의 안건상황에 대한 상세한 문의가 있었으며 안건서류들에 대해서도 전부 심사를 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손전창식의 재산은 이미 봉인차압당한 후에 도로 돌려받은 적이 있었다. 봉인·차압은 접수의 구체행위에 속하며 도로 돌려받은 것은 또 처리의 구체사업에 속한다. 이러한 접수와 처리에 대하여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 조사단에서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 하여 이 일을 장경정 위원이 책임지고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또 밀고인과 손전창식을 각각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오망급 위원이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본 안건은 그 경위가 복잡하여 사법기관의 힘으로 다시 상세히 수사하지 않으면 그 처리의 부당성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고 또 접수 부당성의 정도도 정확히 규명해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상해고등법원 감찰처에 송치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본래 사법직권을 존중하는 일종의 행위에 속한다. 안건진상의 조속한 규명을 위하여 원 밀고인과 손전창식은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배합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세력을 이용하여 안건진상의 규명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손전창식의 부인은 도처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법 이외의 힘을 이용하여 법의 힘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법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불법인 것이다.” 등이다.

■ 신문보(新聞報) 1946년 9월 27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안건 법원에 교부, 안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취지, 피고의 법 이외의 활동은 하지 말아야, 청사단 책임자의 담화

기사내용

(본보 소식) 한인 손전창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제조하여 적을 도왔다고 밀고당한 안건에 대하여 그 처리경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자가 어제 특히 청사단의 책임자를 방문하여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가 발표한 담화는 아래와 같다. 본 청사단은 이 안건을 시종일관하게 손씨가 적 위물자의 접수 처리와 관계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하여 왔다. 본 조사단에서는 밀고를 접수한 후 우선 위원회의에 제출하고 회의에서 처리국 국장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심의위원들의 안건상황에 대한 상세한 문의가 있었으며 안건서류들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손전창식의 재산은 일찍 봉인·차압 후에 도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 봉인차압은 접수의 구체행위에 속하며 도로 돌려받은 것은 또 처리의 구체사업에 속한다. 이러한 접수와 처리에 대하여 부당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 조사단에서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 하여 이 일을 장경정 위원이 책임지고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또 밀고인과 손전창식을 각각 불러 연구조사를 하였으며 오망급 위원이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안건은 경위가 복잡하여 사법기관의 힘으로 다시 상세히 수사하지 않으면 처리의 부당성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으며 또 접수 부당성의 정도도 정확히 규명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상해고등법원감찰처에 송치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본래 사법직권을 존중하는 일종 행위에 속한다. 안전진상의 조속한 규명을 위하여 수사과정에 원밀고인 및 손전창식은 모두 적극적으로 배합하여야 하지 그 어떠한 세력을 이용하여 안전진상의 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손전창식의 부인은 도처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법이외의 힘을 이용하여 법의 힘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법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불법인 것이다. 모 법률전문가의 관찰에 의하면 청사단에서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신중하였으며 합법적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 손전창식이 일본사람이라면 그의 재산은 곧 적의 재산으로 된다. 만약 그가 일본사람은 아니라도 적위(敵偽)세력을 이용하여 얻은 재산이라면 그 역시 몰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만약 그에게 비행기를 현납하고 군수물자를 만드는 이적 적을 도운 행위가 있었다면 곧 전쟁범으로 되는 것이다.

■ 신보(申報) 1946년 10월 3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 군사법정에 이송, 전쟁범으로 그 죄를 다스림이 마땅함, 고검처 한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사내용

(본보 소식) 한인 손전창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한 부역행위 혐의로 강소·절강·안휘(蘇浙皖)지역의 접수사업 청사단에 검거된 이 안건은 청사단의 상세하고도 세밀한 수사를 거친 후 그 혐의가 확실하다는 인정을 받았고 범인과 관계서류 등을 모두 고등법원 검찰처에 이송되었다. 이 검찰처의 수사결과 한간죄명이 성립되지 않아 군사법정에 넘겨져 전쟁범으로 그 죄를 다스리게 되었다. 어제 오후 이 법정에서 손씨를 특히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금 여전히 상해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 정언보(正言報) 1946년 10월 3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안건 새로운 진전

기사내용

[본보 소식] 일전에 한인 손전창식이 타인으로부터 모덕리양행을 접수하여 군수공장으로 개설하고 부역행위 혐의가 있다고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고검처의 수사를 거친 후 지금 수감조치 되어 있다. 고검처에서 현재 지속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태오금호(茂泰五金號)의 주인 구안무(具安茂)가 가치가 10억 원에 달하는 손전창식의 오금물품을 은닉하고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하여 전번 달 26일에 고검처에서는 특히 고발인을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 신보(申報) 1947년 1월 14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 안건 결론이 나지 않아, 고발인 두 사람이 우선 도형을 선고받아

기사내용

[본보 소식] 한인 손전창식을 고발한 호성근(胡成根) · 서천석(徐天錫)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공소를 당하였다. 호씨는 일찍 손전창식의 기계공장의 총 반장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서씨는 그 공장에서 장부를 관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7일간의 변론을 거쳐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호성근을 유기징역 4년에 처하고 공민권을 4년간 박탈하였다. 서천석을 유기도형징역 3년에 처하고 공민권을 3년간 박탈하였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법에 따라 몰수되었다. 고발인은 이미 고소를 당하였지만 피고발인인 한인 손전창식은 아직도 결론이 없다.

■ 신문보(新聞報) 1946년 10월 22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안건이 군사법정에 교부됨, 한간죄명이 성립되지 않아, 전범의 혐의로 심사 · 처리
기사내용

[본보 소식] 고검처에서는 한인 손전창식이 적을 위하여 군수물자를 제조하였다는 고발에 대하여 세밀한 수사를 한 후 최종 한간죄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어제 군사법정에 넘겨 전범 혐의로 심사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손씨는 상해감옥의 충감(忠監)으로부터 제일수정구전범구치소(第一綏靖區戰犯拘留所)에 옮겨 수감되었다. 손씨는 중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몇 가지 간단한 단어나 구절 밖에 구사할 줄 모른다. 그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고려인이며 나이는 41살이다. 일본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이름을 손전창식으로 개명하여 버렸다. 금년 8월 31일에 수감되었다. 나는 검거된 죄명에 대하여 완전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기미수행위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주기를 바라며 중국법률의 제재를 달갑게 받으려고 생각한다.

■ 신보(申報) 1947년 1월 28일

기사제목 : 주석이 청사단을 초대, 각 위원 두 가지 문제점을 공동하게 견의, 주석은 책임부서에서 이 안건을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지시

기사내용

[중앙사 남경 30일 전(電)] 30일 오후 5시에 장주석(蔣介石-역자)이 국부손님접대실에서 적위물자 접수처리사업청사단위원들을 불러 초대하였다. 자리를 같이 한 사람들로는 청사단연합판사처의 소력자(邵力子) 비서장과 이승실(李崇實) 부비서장이었으며 그밖에도 유문도(劉文島) · 전공래(錢公來) · 소정(蘇珽) · 왕병균(王炳鈞) 등 위원 20여 명이 있었다. 우선 유문도 · 전공래 · 범여수(范予遂) · 소정 · 양숙보(陽叔保) · 하한문(何漢文) · 왕정평(王政平) 등 사람들이 부문별로 각 청사단의 조사상황들을 상세히 보고하였고 특별안건에 대하여서도 지적이 있었다. 다음 그들은 주석께 공동으로 되는 두 가지 건의를 제출하였다. 1. 각지의 법원 및 군사기관들에 훈령을 널리 반포하여 이미 송치되어 있는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2. 청사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릇 각 청사단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은 응당 그 지역의 감찰사서(監察使署)에서 계속 처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에서 각지 감찰사서에 열심히 계속하여 철저한 처리를 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랐다. 여러 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에 주석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었다. 마지막으로 주석께서는 여러 위원들을 따뜻하게 위문하시었고 또 법원 및 기타 책임기관들에 각 사안들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엄격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회의는 6시쯤에 종료되었다.

■ 신보(申報) (날짜 미상)

기사제목 : 손전창식의 죄증, 그림과 사진 9장을 법정에 제출하다.

기사내용

[본보소식] 한인 손전창식의 부역행위 안건이 일전에 고검처로부터 군사법정에 이송되어 접수되었으며 전범으로 그 죄를 묻게 되었다. 어제 원 검거인 한개원 · 주경영이 또 군사법정에 손전창식의 죄증과 관련되는 그림과 사진 9장을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배개이로 927호 전 상해정밀기계공예사의 담장주변에 설치한 전기선, 금속화폐를 용해하던 거처, 일제세력에 의지하여 중국인을 주거지에서 이사할 것을 강요한 서한, 주민들이 팁박에 의하여 당시 위(僞) 정부당국에 제출한 청원서, 손창식 사무실 내에 진열한 일본정부가 하사한 감사장 · 기관총 · 군용망원경 및 비행기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평화일보(和平日報) 1947년 1월 30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안건 오리무중, 어제도 군사법정에서는 법정을 열어 조사를 진행

기사내용

[본시(本市) 소식] 어제 오전 9시에 군사법정에서 세간을 놀라게 한 한인 손전창식의 군수물자생산 안건에 대해 조사가 있었다. 소환되어 심문을 받은 사람들로는 원 고발인 주경영 · 한개원 · 주간보 · 손창식이 설립한 상해정밀기계공예사 반장 호성근(이미 고등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의 부인 및 공장의 노동자 등 8명이다. 이 안건은 중일전쟁 승리 후, 주간보 등이 군통국(軍統局)²⁰⁾에 밀고하여 군통국이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조사에 의하여 손창식의 사무실 내에서 일제에게 군수물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20) 국민정부시기 비밀정보국, 현재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

군사기계를 수리한 장부 16권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의 1권에는 손창식이 무기를 생산하는 일본·독일·이탈리아 국적의 기사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고, 또 다른 1권에는 일본수상 도조(東條英機)가 손창식이 비행기를 헌납한 공을 인정하여 하사한 감사장 있음) 죄증이 확실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에 제3방면군과 함께 손창식을 구속·수감하고 재산도 차압하였다. 손창식이 구속된 후 그의 부인(현모양처형의 여자라고 함)이 도처로 다니면서 사람을 청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고 있다. 상해의 유명한 변호사인 강일평(江一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대신하여 상해의 언론계를 초청하여 손창식의 무죄를 변명하였다. 나중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적위산업처리국(敵偽產業處理局)에서는 차압된 손창식의 재산을 돌려주었고 모든 증거도 동시에 실종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손창식에게 돌려주었다고 함) 원고 발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고 최고당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장개석 주석은 직접 명령을 내려 적위접수공작청사단에서 엄격히 조사·처리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 안건은 재조사하게 되었고 청사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이송하였는데 고등법원은 이 안건은 전범조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또 다시 군사법정에 이송하여 심판하게 하였다. 이 안건을 담당하고 있는 군사법정검찰관은 고등법원검찰처 검찰관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하(夏)검찰관이다. 그는 거듭되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제출한 증거로 볼 때 죄행은 사실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정식으로 손창식을 기소하였다. (17일 본보에서 이 내용을 기재하였음) 법정절차에 의하면 심문조사가 종료된 후, 법정을 열어 심문을 하게 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어제 손전창식의 안건은 지금 시기에 법정을 열어 심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도하였고 하검찰관은 갑자기 군사법정검찰관의 직무를 사임하였다. 그러나 군사법정은 여전히 법정을 열어 조사를 진행하였고 고발인을 소환조사하는 일은 □검찰관이 대리하기로 하였다. 계속 되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외부인은 알 수가 없다. 이 안건은 고발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1년 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종료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판결 변경으로 곡절이 많아 사람들로 하여금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고 참으로 고발인들의 심경이 어떠한지 궁금하다. 손창식의 죄행은 이미 제3방면군, 청사단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졌고, 이것을 ‘무고’라고 변명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이다. 머지않아 이 안건은 판명이 날 것이다.

■ 평화일보(和平日報) 1947년 1월 17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안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 하(夏)검찰관이 정식으로 기소, 호성근(胡成根)과 서천석(徐天錫)은 이 한인이 유력한 조수, 고발인은 주간보·한개지(韓凱之)²¹⁾·주경영

기사내용

(본보소식) 한인 손창식은 또 손전창식이라고도 부른다. 1932년 8월 16일에 상해 패당로 929호에서 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을 제조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장기적인 침략전쟁을 발동하고 우리의 비무장인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으며, 방어시설이 없는 우리의 도시들을 대거 폭격하였다. 손전창식은 일본침략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상해에서 일제를 대신하여 각종 군용물자와 금속화폐를 구입하고 을종 군관리병기공장을 경영하면서 일본군 등(登) 1627 부대의 각종 군용기계와 군사물자를 생산하였고, 전차도 수리하였다. 또한 남경금릉병기공장의 선반과

21) 韓凱元의 오기.

철 침대를 수리하였다. 또한 일본군에 전함폭격기 애국 제1469호(일명 제1상해정밀기계호) 및 전함폭격기 애국 제1468호(일명 제2상해정밀기계호) 2대를 현납하여 우리 군대와 민중 및 도시를 폭격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적의 세력에 의지하여 영상모더리양행의 재산을 강탈하였는데 드러난 죄행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중일전쟁 승리 후, 주간보·한개원·주경영 등의 고발로 현병 제23연대·상해지방법원검찰처·송호경비사령부·소절환구접수처리적위물자공작청사단·상해고등법원검찰처 등 기관에서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상해고등법원검찰처에서는 손창식을 소환하여 수감하고 작년 가을에 군사법정에 넘겨 징계·처리하게 하였다. 이 안건은 발생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지난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안건을 집행하는데 관련된 인물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 이번에 군사법정의 하검찰관이 1개월 전에 이 안건을 맡은 후 이미 수사를 종료하였다. 현재 새롭게 공포된 전쟁범죄심판조례에 근거하여 손창식을 정식으로 기소하였다. 법정심문시점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일전에 각 신문에서 기재한 최근 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호성근과 서천석 두 사람을 이 안건의 고발인으로 지목한 것은 소문에 의한 오해이다. 호성근과 서천석은 상해정밀기계공예사의 직원으로 호성근은 반장, 서천석은 용도별주임의 직을 가진 손창식의 유력한 조수이며 그를 도와 군사무기를 생산하여 중국동포를 살해하였고 법원에 소환되어 손창식의 죄행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으며 이번에 한간죄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실제로 손창식을 고발한 사람은 주간보·한개원·주경영 세 사람이다.

■ 신보(申報) 1947년 2월 6일

기사제목 : 현금하여 비행기를 구입, 적대국의 침략전쟁 지지, 손전창식은 그 죄책을 면하기 어려워 군사법정 전범죄명으로 기소

기사내용

한인 손전창식 안건, 한인 손전창식은 기계기능공 출신이다. 상해에서 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하였는데 1944년 10월에 일본군부로부터 을종 군관리공장으로 지정되었다. 그는 적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금속화폐를 구입하여 군수물자를 제조하였으며, 지붕위에 고사포를 설치하였고, 적군에게 비행기 등을 현납하였다는 범죄혐의가 있다. 검거 후 여러 차례의 수사를 거치고 보석처리를 하였다. 기자가 알아낸 소식에 의하면 손전창식이 적과 내통한 혐의는 이미 성립된다고 한다. 군사법정의 검찰관 도광균(屠廣鈞)이 정식으로 기소하였다. 그 기소서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손전창식, 남, 42세, 한국 국적, 상해 패당로 929호에 거주. 본 군사법정은 검찰관의 수사를 거쳐 피고의 전쟁범죄혐의안건은 (35년 전정자(戰貞字) 제162호) 응당 기소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그 범죄 사실증거와 위반한 법률조목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피고 손전창식은 기계 기능공 출신이다. 그는 상해에서 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하고 선반·드릴링 머신 등 공업기계들을 제조하였는데 남, 여 노동자 77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상해시를 점령한 후부터 1944년 10월 이전까지에는 일본군부로부터 을종 군관리 공장으로 지정되어 소형 프레이즈반펌프 등을 제조하였다. 승리 후에는 강소·절강·안휘(蘇浙皖) 지역의 적위산업처리국에 몰수되어 국유자산으로 서류에 기록되었다. 일제가 투항한 후에 피고는 계속 원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공장은 폐업상태이다.

의심스러운 물품발견. 1946년 5월 28일에 송호경비사령부(淞滬警備司令部)에서 상급의 명령을 받들고 합동건물(哈同大樓)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피고의 진열소 내에서 망원경 8개와 소형 카메라 6대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설비들은 군수물자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피고를 사령부에 소환하여 수사를 하였다. 수사를 끝낸 후 사령부에서는 이 안건이 보통형사안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1946년 7월 11일에 상해시지방검찰처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는 서면으로 보증금 1천만 원을 내고 보석처리 되었다. 1945년 10월에는 시민 주간보·한개원·주경영 등 3명으로부터 피고가 적에게 비행기를 헌납하고, 금릉병기공장의 모든 기계들을 도맡아 수리하였으며, 영상모더리금행총창을 강제로 점거하고 일본군을 도와 여러 가지 금속화폐들을 구입하여 군수물자를 제조하였으며, 지붕위에는 고사포 등을 설치한 죄가 있다고 전 군통국에 검거를 당하였다. 12월 23일에는 군통국의 참모 양명방(梁銘芳)이 검거인들과 함께 피고의 서마로 1350호에 있는 창고와 패당로 929호에 있는 자택에서 발견한 상당한 수량의 물자들을 차압하였다. 1946년 5월 4일에 소절환구적위산업처리국(蘇浙皖區敵偽產業處理局)에서 차압된 물건을 돌려주었다.

고발인의 재고발. 고발인은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1946년 8월 21일에 고소장을 만들어 다시 상해고등법원검찰처에 고발하여 한간죄명으로 그를 다스릴 것을 요구하였다. 후에 이 검찰처에서 사법부의 경연자삼자(京捐字三字) 11068호 지령을 받게 되었는데 원래 일본에 속하였던 조선인을 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1946년 10월 21일에 그를 본 법정에 송치하고 법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되었다.

전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고발인 주영경 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피고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그 고발사항도 모두 사실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 공예사의 노동자 호성근도 고검처에서 피고에 불리한 증명들을 하였는데 그 범죄혐의가 아주 명확하겠다고 하겠다. 심문에 의하면 피고는 적에게 비행기를 헌납하였다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40만 원을 현금하여 적들이 비행기구입비용으로 삼았다고 자백하였다. 호성근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로 자기에 대한 원망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고발인이 열거한 기타 중인 제영방(諸榮芳)·황매장(黃梅璋)·진군추(陳君秋)·송근보(宋根甫)·계행근(季杏根) 등의 진술은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고 하였다.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일본군에게 현금하여 비행기구입비용으로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역행위로 볼 수 있어 전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전쟁범임이 명백하다. 이는 전쟁범심판조례 제6조 1항에 해당된다. 또 동일한 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소하는 바이다. 즉시 법에 근거하여 심판하기를 청구하는 바이다.

■ 대공보(大公報) 1947년 2월 6일

기사제목 : 손전창식이 적에게 군수물자를 바쳐, 어제 지방검찰처에서 범죄혐의를 열거하여 기소
기사내용

한인 손전창식 안건, 한인 손전창식은 기계기능공 출신이다. 상해에서 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하였는데 1944년 10월에 일본군부로부터 올종 군관리(乙種軍管理)공장으로 지정되었다. 그는 적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금속화폐를 구입하여 군수물자를 제조하였으며, 지붕위에 고사포를 설치하고, 적군에게 비

행기 등을 현납하였다는 범죄혐의가 있다. 검거 후 여러 차례의 수사를 거치고 보석처리를 하였다. 기자가 알아낸 소식에 의하면 손전창식이 적과 내통한 혐의는 이미 성립된다고 한다. 군사법정의 검찰관 도광균이 정식으로 기소하였다. 그 기소서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손전창식, 남, 42세, 한국 국적, 상해 패당로 929호에 거주. 본 군사법정은 검찰관의 수사를 거쳐 피고의 전쟁범죄혐의안건은 (35년 전정자(戰偵字) 제162호) 응당 기소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그 범죄 사실증거와 위반한 법률조목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피고 손전창식은 기계기능공 출신이다. 그는 상해에서 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하고 선반, 드릴링 머신 등 공업기계들을 제조하였는데 남, 여 노동자 77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상해시를 점령한 후부터 1944년 10월 이전까지 일본군부로부터 올종 군관리공장으로 지정되고 소형 프레이즈반펌프 등을 제조하였다. 항일전쟁승리 후에는 강소·절강·안휘지역의 적위산업처리국에 몰수되고 국유자산으로 서류에 기록되었다. 일제가 투항한 후에 피고는 계속 원 거주지에 있었으며 공장은 폐업상태이다.

의심스러운 물품의 발견. 1946년 5월 28일에 송호경비사령부에서 상급의 명령에 따라 합동건물(哈同大樓)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피고의 진렬소 내에서 망원경 8개와 소형 카메라 6대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설비들은 군수물자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피고를 사령부에 소환하여 수사하였다. 수사를 끝낸 후 사령부에서는 이 안건이 보통형사안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1946년 7월 11일에 상해시지방검찰처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1천만 원을 내고 보석 처리되었다. 1945년 10월에는 시민 주간보·한개원·주경영 등 3명으로부터 피고가 적에게 비행기를 현납하고 금릉병기공장의 모든 기계들을 도맡아 수리하였으며, 영상모더리금행총창을 강제로 점용하고 적을 도와 여러 가지 금속화폐들을 구입하여 적군을 위해 군수물자를 제조하였으며, 집 지붕위에는 고사포 등을 설치한 죄가 있다고 전 군통국에 검거되었다. 12월 23일에는 군통국의 참모 양명방이 검거인들과 함께 피고의 서마로 1350호에 있는 창고와 패당로 929호에 있는 자택에서 상당한 수량의 물자들을 차압하였다. 1946년 5월 4일 소절환 지역 적위산업처리국에서 호자삼자(滬字三字) 25567호 지령과 경제부의 소절환지역특파원반공처의 법자(法字) 제10906호 통지정신에 근거하여 일본인이 주문한 물품을 전부 몰수한 외에 위의 항목에 의해 이미 차압된 물자와 공장자산은 돌려주었고 모두 서류에 기록하였다. 1946년 8월 21일에 고발인이 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고소장을 만들어 다시 상해고등법원감찰처에 고발하고 그를 한간죄명으로 다스릴 것을 청구하였다. 그 후 이 검찰처에서 사법부의 경연제삼자(京捐字三字) 11068호 지령을 받아 원래 일본에 속하였던 조선인을 적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6년 10월 21일에 본 법정에 송치하고 법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되었다.

위반한 법 조목 : 고발인 주영경 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피고와 전혀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 검거사항도 다 사실에 부합된다. 이 공예사의 노동자 호성근도 고검처에서 피고에 불리한 증명들을 하였는데 가히 그 범죄혐의가 아주 분명하다고 하겠다. 심문에 의하면 피고는 적에게 비행기를 현납하였다는 세절에 대하여서는 40만 원을 바쳐 적들의 비행기 구입비용으로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호성근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로 자기에 대한 원망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고발인이 열거한 기타 증인 제영방(諸榮芳)·황매장(黃梅璋)·진군추(陳君秋)·송근보(宋根甫)·계행근(季杏根) 등의 진술은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고 하였다.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일본군에게 현금하여 비행기구입비용으로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역행위로 볼 수 있어 전쟁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전쟁범임이 분명하다. 이는 전쟁범심판조례 제6조 1항에 해당된다. 또 동일한 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소하는 바이다. 즉시 법에 따라 심판하기를 청구하는 바이다.

■ 신보(申報) 1947년 5월 18일

기사제목 : 원 고발인들이 각기 죄를 선고 받고 투옥, 손전창식의 무죄를 선고, 군사법정 정장(庭長)이 판결이유를 상세히 설명, 기소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 해도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인정
기사내용

(본보소식) 어제 오후 한인 손전창식의 전쟁범혐의안건이 제일수정구사령부군사법정(第一綏靖區司令部軍事法庭)에서 이미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손전창식은 기계기능공출신이다. 그는 상해에서 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하고 선반·프레이즈반 등 공업기계들을 생산하였다. 1944년에 일본군이 상해시를 점령한 후에 적군으로부터 을종 군관리 공장으로 지정 받고 그 명령에 따라 군용기계들을 제조하였다. 승리 후에는 적위산업처리국으로부터 자산을 몰수당한 적이 있다. 작년 8월 손전창식은 시민 주간보 등에 의하여 청사단에 적을 도와준 군수상인이라고 밀고·검거되었는데, 적에게 비행기를 헌납하고, 금릉병기공장의 모든 기계들을 도맡아 수리하였으며, 일본군부의 힘을 빌어서 영상모더리금행총창을 강제로 점용하고, 적을 도와 여러 가지 금속화폐를 구입하여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전쟁말기에는 지붕위에 고사포를 설치하여 놓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밀고를 접한 후 청사단에서는 즉시 이 안건을 고등법원에 이송시켜 수사를 하였지만 한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다시 군사법정에 넘겨 전쟁범혐의로 기소를 하게 되었다.

어제 이량(李良) 정장이 '손전창식 무죄'라는 주판결문을 선고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약 칭 : 본 안건의 기소는 전쟁범심판조례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였다. 즉 '중화민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지하였다'라는 것이다. 본 법정에서는 피고가 이 종류의 죄행을 범했는가를 수사할 때에 두 가지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1. 침략전쟁의 지지란 무엇인가? 2. 고의적으로 지지한 것인지의 여부, 이른바 침략전쟁을 지지하였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침략전쟁을 확대 혹은 연장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행위를 지지라고 보는 것이다. 기소문 중의 각종 죄행에 있어서 일부 증거는 충분하지 못하며 또 일부는 피고가 반증을 제출하여 잠시 방치하여 두고 처리하지 않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하였다. 그의 행위가 비록 침략전쟁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거나 연장하는데 있어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예하면 고사포의 설치 등 행위는 침략전쟁과 별로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영상모더리금행총창을 이용하여 적을 위해 군수물자를 만들고 또 금릉의 군수공장을 도맡아 수리하였다 등 죄행에 대해서는 피고공장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당시 그 공장은 일본인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또 군대를 파견하여 감시하고 있었다. 때문에 확실히 군수물자를 제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인지 아닌지가 아직 문제로 되고 있다. 그가 원료·동전을 구입하였다는 등 문제에 대해서 중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

였다. 그리고 피고의 장부는 일찍 제3방면군에서 수색해갔다. 만약 그 속에 이 죄목과 관계있는 기록이 있다면 제3방면군에서 본 법정에 이를 제공하여 그 증거로 삼았을 것인데 제3방면군에서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비행기를 헌납하였다는 항목에 대해서 피고는 40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승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증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국방세(國防捐)라는 명목으로 강박적으로 바치게 된 것이며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령 이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침략전쟁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형법으로 보아도 전쟁이 승리하기 이전까지 피고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더욱 이러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상술한 여러 점들을 종합·검토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손전창식은 판결문을 귀담아 듣고 나서 퇴정 할 때에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친우와 변호사 강일평(江一平)·양름지(揚凜知) 등이 모두 앞다투어 축하하였다. 본 안건은 판결 후 국방부에 그 문건을 올려 마지막으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손전창식은 예전대로 보석·처리하였다.

손전창식안건의 원 증거인 호성근·서태석 등 2명도 그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간으로 고발되어 1월 13일 전에 이미 각각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다. 호씨는 4년 징역, 서씨는 3년 징역이다.

(이하 증거자료 사진과 그 설명 생략)

소인 호성근의 상해정밀기계공예사에서의 경과와 실정

중일전쟁이 발생한 이듬해 저는 합동대루에 위치한 동해양행에서 일하였습니다. 공장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공장주 및 경리는 모두 손창식이 맡았습니다. 저는 월급 30원을 받았고 공장 내에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출품된 것은 소규모의 선반(車床)·드릴링 머신(鉆床)이었습니다. 취직하고 나서 1개월 후 공장은 규모가 확장되어 노동자가 2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손창식은 제가 예술에 일정한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를 반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도 45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공장은 공간이 부족하여 북사천로(北四川路) 807호로 옮겨가서 명칭을 상해정밀기계공예사(上海精密機械工藝社)라고 하였습니다. 공장은 1년 동안 계속 본업에 종사하다가 1년 후에 남경 금릉병기공장을 인수하고 각종 기계부품을 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손창식은 독자적으로 남경 금릉병기공장을 모델로 공장의 경영범위를 대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불러 함께 남경에 가서 공예품자료의 가격을 계산하였습니다. 수리하는 각종 부품은 일제가 스스로 상해에 운송하여 왔습니다. 손창식은 공장 노동자 50여 명을 보충하였고 그 후에 전부의 금속군용물자를 구입하는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이름도 손전창식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오금기계생산에 필요한 금·은·동·철·석·연 등을 구하기 위해 유랑민을 파견하여 전문적으로 우리나라 금속화폐를 수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대부호가 되어 전투기를 헌납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손전호(孫田號)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저는 공장에서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사직하려고 하였지만 손창식이 위세를 부려 무력으로 저지하자 하는 수 없이 계속 일을 하였으며 또한 가족도 공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942년 9월 공장을 배개이로 927호로 옮기고, 모덕리

금행장을 강점하여 자기공장으로 하였고, 북사천로로는 견본진열소로 하였으며, 공장은 대일본군관리 명의로 영업하였습니다. 전문적으로 군용물자를 생산하였으며, 공장은 9개의 부처로 나뉘었고, 일본인 노동자가 160여 명이었습니다. 생산되는 물품은 선상·동방포·분화기·총칼·보총·탄피 등이고 탱크·자동차 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다만 총칼은 공장에서 생산할 겨를이 없어 타 다른 공장에 위탁하여 생산하였습니다. 구멍을 뚫고 기름을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는 일은 모두 본 공장에서 완성하였습니다. 본 공장이 모덕리를 강점한 후, 저의 가족은 대련만로 복수방 37호에 이사와 1945년 6월까지 거주하였습니다. 미군 비행기가 홍구를 폭격하자 피난명의로 이 공장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개월의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않을 용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릅니다. 위의 실정은 허위가 없으며 이를 특히 올립니다.

자백인 호성근(胡成根)

송호경비사령부(松滬警備司令部) 선(宣) 사령관님, 삼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보고를 올립니다. 서반근(徐盤根)

저는 1929년 맥근로 716농27호에 협흥대장간(協興鐵舗)을 설립하였습니다. 호성근은 중일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입니다. 중일전쟁이 발생한 후, 1942년 1월 호성근이 이름을 모르는 일본인과 함께 와서 본인은 상해정밀기계공예사에 취직하였고 일본인을 가리키며 이 분이 상해정밀기계공예사의 주인 손전창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철문 1개, 철창 40개를 주문하고 가격을 정한 후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1944년 10월 이 일본인이 다시 찾아와서 선반·프레이즈반(銑床)·상숙철(上熟鐵) 및 기타 부품 천여 개를 주문하였는데 본 대장간은 생활난으로 하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1945년 5월 상해정밀기계공예사의 일본인 반장 향림대삼(向林大三)이라는 자가 찾아와서 철강 7개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날에 재차 찾아와서 칼무늬 모양의 낡은 전차(老電車)의 역청탄·유연탄 부스러기(煙煤屑) 뜯자리(席子) 한 쌍을 주문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일본인은 이 물건은 전리품이 아니고 본 공장 자경단(自警團)에서 가짜 목총에 설치하는 것으로 치안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총을 들이대며 일본현병부대 군법처에 넘겨 처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박에 의하여 각 노동자에게 넘겨 만들게 하였으며 월급은 손전창식이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중일전쟁의 승리를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성명하여 올립니다.

1946년 8월 21일

정보인 서반근

부주 : 1929년 맥근로 716농 27호에 설립하였던 협흥대장간(協興鐵舗)은 임대 시한이 만료되어 홍구□□□□□로 이사했다가 1946년 4월 강포로 720호로 이사하였습니다.

해방군관리회(解放軍管理會)에게

현재 귀 당국에서 조사 중인 손창식 재산에 대하여 별지에서 서술한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목록을 작성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내용 및 소재지에 대하여 틀리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안내하거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해에서 생활의 어려움과 주거문제 등으로 8월 20일 경에 귀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방해가 되지 않음으로 언제라도 귀 관리회에 갈 수 있습니다.

1949년 8월 8일

홍구 지로(支路) 21농30호

김화수(金和洙)

군사관리위원회부동산팀(軍管會房地產組)에게

손창식의 명의로 되어있는 남경로 합동대루(哈同大樓) 538~546호실의 내용에 대하여 참고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합동건물 538~546호실은 1937년부터 손창식이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고, 1944년 손창식은 형산로 929호로 이사하였습니다. 542~546호는 손창식이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538~540호실은 본인이 1938년 11월부터 1944년 9월까지 근무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양도받았습니다. 당시의 분할과정에 대하여 해명한다면 사무소를 신청하는데 비용이 막대하여 부담할 수가 없어 손창식이 양도증명서를 쓰고 부동산의 권리증은 손창식의 명의로 하여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1946년 5월 20일 갑자기 송호경비사령부(淞滬警備司令部)로부터 군대가 출동하여 강점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540, 538호 작업장은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며 손창식이 쓴 양도증명을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여하를 불문하고 이 대장은 본인이 제출한 증명 6건, 기타 의복과 집 재산 전부를 몰수하고 빈 봄이 된 본인한테 5분 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기에 본인은 외국교포의 신분으로 항의도 못하고 축출되었습니다. 그 후 본인이 정당한 사유를 구비하고 경비사령부에 사유물반환신청을 하였지만 어떠한 회답도 없습니다. 저의 건물은 장경국(蔣經國)²²⁾과 관계가 있는 예강은행(豫康銀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후 4년간 집도 없이 친구의 방 하나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합동대루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직원이나 엘리베이터 직원한테 물어보아도 되고 혹은 본인과 같이 손창식의 공장에서 일하던 77명의 중국노동자한테 물어보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증 6건은 강탈되었고 인적증거로는 위에서 거론한 노동자들이 현재 상해에 살고 있으므로 귀 당국에서 후일 조사하여 이상의 사실이 판명된다면 본인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홍강지로(虹江支路) 21농30호

김화수

22) 국민정부 주석 蔣介石의 아들.

손창식 재산목록(1947년 5월 현재)

1. 형산로(衡山路) 919호, 929호, 3층 건출물 2채와 인접한 땅.
2. 서마로(西摩路) 1350호 공장건물 3채와 인접한 땅. 공장건물 옆에는 각종 기계설비와 원료가 있다.
3. 양포로순거리(楊浦路順居里)의 전부의 부동산과 인접한 땅. 안에는 각종 기계 97개대가 있다.
4. 대련만로복수봉(大連灣路福壽坊)의 전부의 부동산과 인접한 땅
5. 혜민로회포로(惠民路匯浦路)입구에 있는 2층 건물과 작업장
6. 혜민로회포로(惠民路匯浦路)입구에 있는 공지(空地) 약 2무
7. 교□로니승에 있는 공지는 잘 알지 못함
8. 협비로(霞飛路)에 있는 공지와 326호, 372호에 있는 6층건물과 인접한 땅.
9. 당고로□□홍업부앞에 있는 2층 건물과 인접한 땅
10. 하비로려□로□□□□□□□□□□□□□□□□
11. 덕창담배공장□□□□□□□□□□□□□□
12. 경화산업□□□□□□□

이상 손창식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13. 북사천로(北四川路) 807호(상해상업저축은행이 임대하여 사용)

14. 당고로(塘古路) 581호에 있는 7채의 가옥(전자와 같음)

15. 원명원로(圓明園路) 211호 사무실(미국교회가 임대하여 사용)

16. 남경로합동대루(南京路哈同大樓)

538호부터 546호 작업장

538호와 540호 두 작업장은 손창식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소유자는 김화수(金和洙)이다. (1946년 5 월 20일 淞滬警備司令部에 의하여 강점)

이상의 건을 귀 당국에 참고로 제공하는 바입니다.

1949년 8월 8일 홍강지로 21농 30호

김화수

전범처리에 관하여 —손창식의 재산, 이정방 · 최성오 · 고남극 등 한인의 경과보고와

사후처리에 대한 몇 가지 경험과 검토의견(1949년 8월 23일)

전범(戰犯)처리에 관하여 —손창식의 재산, 이정방(李鼎邦) · 최성오(崔省吾) · 고남극(高南極) 등 한인(韓人)의 경과보고와 사후처리에 대한 몇 가지 경험과 검토의견(1949년 8월 23일)

1) 문제의 발견

전범 손창식 재산의 공문서는 길게 보면 삼야(三野) 군사인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그 후 6월에 이 공문서는 일교(日僑) · 한교(韓僑)문제가 발생하여 공안국(公安局)에 인계할

때 같이 넘겨졌다. 그 때 당시 공문서에 근거하면 재산경영 부분이 부족하였기에 추적·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 교민들이 독단적으로 각종 조직을 결성하였는데 여론을 이용하여 개편한 것도 있고 북한민주당(北韓民主黨)의 명의를 이용하여 결성된 것도 있다. 보기로 민주연합회(民主聯合會)의 결성, 교민협회(僑民協會)를 인민협회(人民協會)로 개편한 것 등이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신문을 출판하고 유명인사 황염배(黃炎培)²³⁾ 등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행동은 어렵잖게나마 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후에 구 교민협회의 세력과 ‘인민민주연합회’는 인민협회(人民協會)의 합법화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인민협회는 등기도 하지 않았고 이른바 합법이라는 것은 더욱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손창식의 나머지 재산을 접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동안은 내분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돌연히 타협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를 의심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의 몇 가지 상황을 발견하였다.

① 인민협회는 이미 결성되었고 구 교민협회에서 변화하여 온 것이다. 인민협회(人民協會)는 내부의 구 조선교민협회의 세력을 전부 몰아내고 민주연합회의 통제 속에 있다.

② 인민협회는 이미 전범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사천로(北四川路) 807호에 있는 손창식의 군용의기진열소(軍用儀器陳列所)는 인민협회의 대전공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한인 2명을 楊浦路 順去里에 있는 손창식의 기계제3공장의 주재원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한인 김춘길(金春吉)을 통하여 북사천로 사무실 뒷면에 있는 가옥을 임대하였다.

③ 손창식 재산의 상세한 장부와 공문서는 이미 인민협회에서 접수하였다.

위의 상황은 이들이 준비에 착수하여부터 접수가 완료될 때까지 이미 1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책임 추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 인민협회의 이감사위원의 명단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을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최성오(崔省吾)–조선민주연합회의 책임자, 인민협회의 이감사위원. 민주연합회의 세력이 인민협회(人民協會)내부로 침투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그가 매개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인민협회의 이사장도 그가 만들어낸 괴뢰(傀儡)이다.

② 고남극(高南極)–구교민협회 이사장, 전범 손창식재산의 위임자. 이전에 협회합법화의 지위를 쟁탈하기 위하여 민주연합회와 모순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하였다.

③ 이정방(李鼎邦)–이 재산에 대한 배후지휘자. 그는 정식으로 전(前) 한국정부주중국대표단 민석린(閔石麟)과 손창식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중국에서의 신분은 주(駐) 중국대리대사, 이 재산을 처리하는 것도 그가 중국에서 수행하는 임무 중의 하나이다. 1개월 반전에 손창식을 대신하여 회중반점(淮中飯店)에서 익명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당시 발견한 문제점은 여기에서 일단락 짓고 인민협회의 장부, 이정방이 구(舊) 교민협회의 고남극·김인경(金仁敬)·이진종(李晉宗)에게 보낸 전범재산관리운영위원회의 위임장, 부동산서명사진 등을 가

23) 중국근대 유명한 애국주의자와 민주주의 교육가이며 근대교육의 창시인과 이론가이다. 중국 강소성 사현(沙縣) 출신, 1914~1917년 상해신보 기자를 역임. 만주사변 후, 항일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1946년 중국민주전국회를 설립, 중화인민공화국성립 후, 중앙인민정부위원, 정무원부총리겸공업부부장을 역임, 1965년 사망.

지고 조직에 상황을 보고하고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2) 체포 · 차압 · 심문 · 조사 과정

문제의 발견, 상황에 대한 조사, 8월 3일 행정처 처장의 보고에 근거하여, 다음 날 지시에 따라 잇따라 부역자의 재산(逆產)을 강탈한 주요인물에 대한 체포 · 가옥 차압 · 심문 · 조사공작을 진행하였다.

당시 제일 먼저 체포된 사람은 고남극 · 최성오와 손창식의 매부 김화수(金和洙)이고 이튿날에는 이정방도 체포되었다. 수차례의 심문을 거쳐 김화수는 손창식의 친척이지만 그의 재산을 노리는 의도가 없었기에 석방하였고, 나머지 3인은 심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 ① 전범 손창식의 재산과 일부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실을 승인하였다.
 - ② 우리 인민과 당국에 은폐 · 기만한 사실을 승인하였다.
 - ③ 손창식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실을 승인하였다. 조직적(전범재산운영위원회)이며 계획적(이정방이 선후하여 발송한 각종 재산위탁 명령)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였다.
 - ④ 중국인민정부의 법령을 경시하고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승인하였다.
- 이상의 각 범인의 진술한 정황에 근거하여, 이들은 모두 회개의 태도를 보이고 손창식의 재산을 처리하는 인민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우리는 안전의 경중에 근거하여 즉 재산을 은폐하고 빼돌리려고 한 경중을 감안하고 각자의 정치지위와 태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1) 최성오

손창식 재산과의 밀접한 정도에 따라, 정치적 활약의 지위, 한 때는 고남극을 위협하여 우리에게 이재산에 대한 의도를 보고하게 한 것 등으로 보아 문제가 엄중하다. 그러나 그가 과거 국민당통치시기에 한국 교민의 책임공작을 한 적이 없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감안하여 일찍 법정을 열어 처리하였다. 그러나 부가조건이 있다

- ① 5일에 한 번씩 공안총국(公安總局)에 한국교민의 정황을 보고하되, 공안국의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간행물의 출판, 유명인사 초청강연 등을 금지하고 필요할 때에는 상급기관에 문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단체에서의 활동을 금지하고 전범의 재산은 일괄적으로 중국인민정부가 처리한다.

(2) 고남극

그는 손창식재산을 위임받은 자로서 정치면에서는 구 교민협회의 책임자이다. 그를 조사한 것은 실제로 반역자의 재산과의 관계문제가 중심이며, 이미 회개하고 있고 보증서를 쓴 외에 처리방법은 최성오와 같다.

(3) 이정방(李鼎邦)

그는 손창식 재산의 최초의 위탁인으로서, 상해에서 이 재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대리대사로 정치태도가 대단히 강경하고 또한 반동적이다. 때문에 나중에야 첨포를 담보로 보석되었다.

보증점포 : 립삼중로 339호 금문식품공사

보증사건 : 이정방은 본 안건이 종료되기 전에 정부의 허가 없이 상해를 떠날 수 없다.

소환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범인의 처리내용은 위와 같다

차압에 관하여서는 체포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손창식 부동산의 주요부분은 모두 세입자의 수요가 있고, 중공업과 관련된 공장도 차압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차압공작은 하루 만에 완성되었다. 즉 차압된 부분은 북사천로 807호에 있는 사무실과 내부에 있던 보험상자·문서상자 등이 전부였다.

차압하지 않은 부분과 차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서면 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하였다.

이 외에, 이 안건은 처음부터 한결 같이 부역자의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손창식 재산의 규모의 현황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 안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2일간의 시간을 들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범(戰犯)처리에 관하여 —손창식재산·이정방(李鼎邦)·최성오(崔省吾)·고남극(高南極) 등 한인(韓人)의 경과보고와 사후처리에 대한 몇 가지 의견

1. 문제의 발견

손창식 재산의 공문서는 삼야(三野) 군사접수위원회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후에 이 공문서는 일교·한교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안국에 넘겨졌는데 이것은 2개월 전에 처리된 사항이다. 이 외에도 한교의 각 조직 즉 민주연합회·교민협회·인민협회간의 모순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교민협회가 취소되고 민주연합회의 임원이 인민협회로 침투하고 북한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조직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상해인민정부로부터 합법화의 지위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한글판 신문을 발행하고 황염배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는 등의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행동을 보여 줬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진정한 목적은 북사천로 807호의 사무소와 한국대사관의 기자재 등 교민협회의 재산을 접수하는 것이었다.(즉 손창식의 재산) 더 나아가 분산처리의 방법으로 손창식의 양수포 제2공장의 각종 기계와 북사천로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인 단체들 간의 경제모순을 불러와 이 문제가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은 인민협회의 접수공문서와 삼야(三野) 군사접수위원회의 전범 손창식 재산의 공문서와 부합되면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관건이 되었다.

2. 체포와 심문

이 안건의 단서에 근거하여 이것은 손창식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이 안건의 배후세력은 인민협회의 최성오·위(僞) 한국대리대사 이정방(李鼎邦)·구교민협회의 이사 고남극이며 이들을 각각 체포하여 심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 ① 전범 손창식의 재산과 일부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실을 승인하였다.
- ② 우리 인민과 당국에 은폐·기만한 사실을 승인하였다.
- ③ 손창식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실을 승인하였다. 조직적(전범재산운영위원회)이며 계획적(이

정방이 선후하여 발송한 각종 재산위탁 위임서)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였다.

④ 중국인민정부의 법령을 경시하고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승인하였다.

손창식의 재산관계

손창식은 친일파로서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1. 그가 소유한 재산은 국민당후기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중국청화학교(中國清華學校)

2) 한국정부와 교민

3) 본인의 것(손창식)

현재 그의 재산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내용.

① 사천북로 807호는 김춘길이 관리하고, 앞 건물과 뒤 건물은 현재 한교협회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인민협회에서 이용 중이다. 뒤 건물 창고는 중국인이 관리하고 일부분을 김춘길이 관리하고 있다. 김춘길은 일부분을 중국인과 조선인에게 임대하였는데 내막은 잘 모른다.

② 양수포의 공장은 듣는 바에 의하면 이미 조치를 취하였는데 내막은 김화수(金和洙)가 설명할 수 있고 최성오는 잘 모른다.

③ 서마로에 손창식 본인의 공장이 있는데 중국상인이 관리하고 있다.(이것도 김화수가 매입하였음)

북사천로 807호의 사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곳을 이용하여 생산사업 – 양복점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로 협회와 인성학교(仁成學校)의 경비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본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본인의 인식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재산으로는 남경 합동대루와 건물 안에 몇 개의 작업장이 있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후에 국민당이 사용했다고 한다.

– 덕창(德昌)담배공장

– 원래 손창식이 거주하던 2채의 가옥 중 하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듣는 소문) 한다. 패당로(貝當路) 929호에 대해서는 모른다.

초록 : 제3방면군 사령부 접수팀에서 기록한 손창식의 사유재산

특별구	畝, 方厘毫	지점	년월일
6957	0679	良圃	1944년 6월 1일
6958	0245	鄉順	1944년 6월 1일
6987	2502	路件亭	1944년 6월 14일
7045	3756	齊物浦路順去里	1944년 6월 7일
6608	0693	齊物浦路去開收路	1944년 3월 15일
6607	0657	齊物浦路去開收路	1944년 3월 15일

6498	1175	齊物浦路去開收路	1944년 1월 10일
6499	2930	齊物浦路去開收路	1944년 1월 10일
449	1563	文路346號	1944년 7월 22일
4927		長仲遷篩純生	
3720		西摩路1350號 토지 및 건물부동산	
4998		慶栢堂中支那振興	
		軍管理謀得利洋行通契一件	
8820		地券(日冊1016)權柄單548	
		南京路60호	
		大連灣路토지 및 건축 安田信託	
		培開爾路토지 및 건축 恒產公司	
		齊齊哈爾路토지 및 건축 恒產公司	
		沈玉峯日暮집조 培開爾路齊物浦路	
		恒產株式會社4件	
		野材信託株式會社通契1738	
		權柄單437 1942년 2월 9일	
		貝當路929號	
		大花園양옥 2채 점유면적 7畝餘	

현병사령부 전보

사유 : 범인 손창식 등 2명에 대한 안건종결에 대하여 답변을 바람.

접수기관 : 상해지방법원검찰처

1. 본 부처에서 접수한 손창식 · 윤종필(尹鐘弼) 등의 공공위험 안건에 대하여 심문조사를 거쳐 종료되었는 바 피고 등은 일반 민간인으로 군법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원인 때문에 이를 접수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음.
 2. 이에 특히 사람을 파견하여 범인 손창식 · 윤종필 등 2명과 함께 조서를 보내니 법적으로 처리하기 바람
 3. 희망하건대 안건이 종료된 후, 검찰처에서 판결문과 함께 돌려주기 바람.
- 사령(司令) 장□(張□)

첨부문건 : 범인 손창식 · 윤종필 2명에 관한 증거물 5건

일자 : 1948년 9월 27일

자호 : (37)공승3671호

지점 : 남경

손창식 · 윤종필을 구속하여 조사심문하다.

1948년 9월 28일

1948년 9월 28일

(조홍(曹鴻) · 곽혜침(郭慧琛), 피고를 법정에 서게 하고 이름을 묻다.)

윤종필 27세, 조선인, 패당로 929호에 거주, 무직.

문 : 당신은 언제부터 모더리 공장에서 근무하였는가?

답 : 1946년 6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했다.

문 : 누가 소개해서 들어갔는가?

답 : 손창식이다.

문 : 둘이 알고 지낸지는 얼마나 되는가?

답 : 8년에 가깝다.

문 : 공장장은 누구인가?

답 : 이전에는 영국인이었는데 손창식선생은 적위(敵偽)시기에 접수한 것이다.

문 : 당신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에 들어간 것인가?

답 : 그렇다.

문 : 이번에 당신들의 공장에서 몰수한 것은 무엇인가?

답 : 그들의 말에 의하면 금속화폐를 몰수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문 : 어느 곳에서 몰수한 것인가?

답 : 알 수 없다.

문 : 몰수할 때 당신들은 같이 가지 않았는가?

답 : 아니다.

문 : 당신은 공장에서 체포된 것인가?

답 : 아니다. 나는 거처에서 체포된 것이다.

문 : 금속화폐 157상자를 몰수하였다고 하던데?

답 :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만 나는 본적이 없다.

문 : 그들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았는가?

답 : 그렇다.

문 : 모더리공장은 배개이로 927호에 있는가?

답 : 그렇다.

문 : 공장 내에서 몰수한 다른 물건은?

답 : 없다.

문 : 군용측량기가 있지 않은가?

답 : 서마로 1350호에서 몰수한 것이다.

문 : 금속화폐는 당신이 그를 대신하여 감춘 것인가?

답 : 아니다

문 : 군용측량기는 어떤 일인가?

답 : 제가 알기로는 군용측량기가 아니라 과학의기이다.

문 : 이 의기는 손창식 선생의 것인가?

답 : 손창식 선생의 것이다

문 : 혜민로 공장은 언제 서마로에 이사하였는가?

답 : 1946년 7월부터 9월 초반에 이사하였다.

문 : 손창식의 연령과 국적은?

답 : 43세, 한국인, 폐당로 929호에 거주.

문 : 정밀기계공예공장은 모덕리 공장 내에 설립한 것인가?

답 : 아니다. 북사천로 807호이다.

문 : 모덕리 공장은 언제부터 대신하여 관리하였는가?

답 : 1942년 5월 7일 흥아원령에 따라 관리한 것이다.

문 : 공장 내의 금속화폐와 총검은 어느 시기에 감춘 것인가?

답 : 모른다. 일제가 투항한 후 여러 차례의 몰수와 조사가 있었다.

문 : 이것이 적의 재산도 아니고 당신은 책임자인데 공장 내에 수집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당신이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

답 : 내가 재직했을 때에는 아무도 모른다.

문 : 서마로 공장에서 몰수한 물건은 무엇인가?

답 : 이것은 제1차세계대전시기의 독일이 사용한 군사용 망원경으로 산 Cslccol lanl형의 6미터 길이의 관측의기로서 7개, 중형관측의기 1미터 5촌의 부품상자 3개, 소형관측의기 1미터 2촌의 부품상자 2개, 전형 망원경17개, 70미리 관측의기 31개이다. 이 모든 것은 영수증이 있다(법정에서 사진을 올리다).

문 : 영수증원본이 있는가?

답 : 전부 있다.

문 : 언제 산 것인가?

답 : 1942년 6~7월 사이에 산 것이다.

문 : 당신이 이 문건을 기록해 둔 것은 현병이 몰수하기 전인가?

답 : 몰수하기 전 1946년 7월에 기록한 것이다.

문 : 금속화폐는 무슨 일인가?

답 :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문 : 물건을 몰수한 곳은 모덕리공장과 서마로 두 곳인가?

답 : 그렇다.

문 :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면 당신의 망원경을 포함한 여러 물품은 군사용이라는데?

답 : 내가 구매할 때에는 군사용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과학의기로 여겼기 때문이다.

문 : 한국주중국대사 민석린(閔石麟)을 아는가?

답 : 알고 있다.

문 : 절친한 사이인가?

답 : 나는 당원이 아니다.

문 : 작년 9월 22일 남경 신화은행(新華銀行)에서 조음선(趙蔭先) · 백일순(百一順)이 1억 원의 수표를 민씨에게 주었다던데?

답 : 이것은 민씨가 독립당(상해임시정부-역자)의 경비가 어려워 조씨에게 요구하였는데 조씨가 도와 준 것이다. 이 수표는 나의 부인이 준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장인은 독립당 정부시기 교육부장이었기 때문이다.

문 : 한번뿐 인가?

답 : 분명하지 않다.

문 : 그 후에는 관례대로 100원을 주었다. 중일전쟁 승리 후, 나의 재산이 차압당하고 후에 풀려서 나의 재산의 10%를 남개대학(南開大學) 공학학부에 기부하였는데 한국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소당한 것이다.

답 : 남경에 있을 때 현병에게 돈을 준 원인은 무엇인가?

문 :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자동차비용을 지불한 것뿐이다.

법정변론 명단을 법정에서 큰소리로 읽다

윤종필

손창식

1948년 9월 28일

서기관 곽혜침

검찰관 조홍

상해지방법원검찰처 구류장(押票回證)

수감인 성명 : 1950 윤종필, 1756 손창식

안전사유 : 공공위험

이상의 두 사람을 명령에 의하여 구금한다.

상해지방법원검찰처

1948년 9월 6일

감옥장관

사법행정부훈령

훈령(訓形) 제13910호

1948년 10월 16일 10시 접수

사유 : 중앙집행위원회 비서처에서 보내온 서한에서 한국교민 손창식이 협의로 체포된 안건에 대하여 법정을 정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

상해지방법원 수석검찰관 장육천(張毓泉)에게 명한다

중앙집행위원회 비서처에서 보내온 1948년 10월 6일 경□우의(京□虞議) 제3331호 서한을 열 것을 허락한다.

1개월 전 한국특사 조병옥(趙炳鈺)이 중국에 와서 한국대통령 이승만(李承晚) 명령을 받고 본 비서처에 한국교민 손창식이 협의로 현병사령부에 체포된 안건에 대하여 누명을 벗기고 석방해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방부 하(何) 부장(하응흡(何應欽) - 역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듣는 바에 의하면 손창식은 이미 상해지방법원에 이송되었다고 하니 법정을 정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평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명령을 발송하니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고 보고하기를 바란다.

사법행정부 부장 사관생(謝冠生)

윤종필 · 손창식에 관하여 올린 안건은 외교관계상 불기소 처리한다.

1948년 10월 16일

1948년 10월 18일

(조홍(曹鴻) · 곽혜침(郭慧琛), 피고를 법정에 서게 하고 이름을 묻다.)

문 : 손창식, 이 안건에 대하여 본 법정에서는 불기소 처리하기로 하였다. 두 분은 보석석방 된 후에도 소환을 하면 제때에 응해야 할 것이다.

답 : 예.

문 : 윤종필, 이 안건은 불기소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한중외교관계를 고려하여 두 부분은 보석 석방된 후 당신들을 소환하면 응할 수 있는가?

답 : 예.

법정에 보증서를 주고 큰소리로 읽다.

손창식 · 윤종필

1948년 10월 18일

서기관 곽혜침

검찰관 조홍

명령을 받들어

공공위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윤종필과 함께 외출하여 임삼중로(林森中路) 337~339호에 있는 금문(金文)통조림식품상점주인 김시문(金時文)과 중정중로(中正中路) 509호 낙타(駱駝)만년필공장주인 향응전(向應鎣)을 만났는데 두 명은 모두 피고가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게 담보인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두 담보인의 점포 내에 있는 물건들은 시가로 대략 5천 원에 달하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합법적입니다.

이에 올리니

검찰관 조홍께서 심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948년 10월 18일

황조중(黃兆中) 옵립니다.

상심편호(狀心編號) 형자(刑字) 5757호

	우측	이름	년령	국적	주소	직업
형사(刑事)	담보인	김시문	57	한국	임삼중로 337호~339호	금문(金文)통조림식품상점주인
		향응전	29	호북건시	중정중로 509호	낙타(駱駝)만년필공장주인
담보 형태	좌측	윤종필	27	한국	폐당로 929호	
	파담보인					

피고 윤종필이 공공위험이 된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법정의 명령에 따라 수시 소환에 응할 수 있도록 담보 서라고 하였는데 윤종필과의 친구관계로 피고의 담보를 설 것을 자원한다. 이후에 피고 윤종필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와 함께 연대책임을 질것을 약속한다.

물증 : 김시문(金時文)

상해시사회국상업등기상자(上海市社會局商業登記商字) 44267호

외국교포거류증원본 29073호

향응전(向應鎣)

상해시사회국상업등기상자(上海市社會局商業登記商字) 49687호

노만구(蘆灣區) 38보17갑36호

상해지방법원검찰처 감정

1948년 10월 18일

담보인 김시문, 향응전

명령을 받들어

공공위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손창식과 함께 외출하여 중정중로 509호 낙타만년필공장주인 향응전(向應鑑)과 영파로 40호 519실에 거주하는 홍업건축사 서경직(徐敬直)을 선후하여 만났는데 모두 피고가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게 담보인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소유한 물건과 재산은 금화로 대략 1만여 원에 달하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합법적입니다.

검찰관 조홍(曹鴻)님께서 심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948년 10월 18일

왕소규(王紹奎) 올림

상심편호(狀心編號) 형자(刑字) 5758호

	우측	이름	년령	국적	주소	직업
형사	담보인	향응전	29	호북건시	중정중로 509호	낙타만년필공장 주인
		서경직	42	광동중산	영파로 40호 5 19실	홍업건축사
담보형태	좌측 파담보인	손창식	43	한국	패당로 929호	상인

피고 손창식이 공공위험이 된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법정의 명령에 따라 수시 소환에 응할 수 있게 함을 담보로 서라고 하였는데 손창식과의 친구관계로 피고의 담보를 설 것을 자원한다. 이 후에 피고 손창식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와 함께 연대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물증 : 향응전

상해시사회국상업등기상자 49647호

노만구 38보17갑36호

서경직

건축사공무국등기갑고(建築師工務局登記甲高) 21호8구2보2갑□하

상해지방법원검찰처 감정

1948년 10월 18일

담보인 향응전

서경직

(중략)²⁴⁾

24) 아래 처분서와 내용이 동일하여 생략함.

상해지방법원검찰관불기소처분서(1948년 救字 제93호)

피고 손창식, 남, 43세,²⁵⁾ 한국인, 직업 노동자, 형산로 929호에 거주.

윤종필, 남, 27세, 한국인, 직업 무, 패당로 929호에 거주.

위의 피고들이 점거 등의 혐의안건(1948년 涉外字 제39호)은 조사를 거친 결과 불기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손창식·윤종필은 모두 한국교민이다. 1932년 손창식은 한국을 떠나 상해로 와서 혜민로 927호에 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하였다. 중일전쟁 기간 이 공업사는 일본군에 의하여 을종(乙種)무기공장으로 지정받았고 또한 흥아원화중연락부(興亞院華中連絡部)의 명령에 따라 모더리공장을 접수하고 군용물품을 구입·수리하였고 각국의 금속화폐를 수집하여 무기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하였다. 전쟁승리 후, 공장에는 포병측량기 43구, 망원경 16구, 금속화폐 57상자가 남아있었다. 손창식은 이것을 점유하기로 하고 포병측량기 등을 서마로 1350호에 감추고 금속화폐는 직원 윤종필을 시켜 혜민로 모더리공장숙소 위의 담벼 내에 숨겨두게 하였다. 이 일은 금년 5월 현병 제9단에 고발당해 모두 조사하여 압수하였으며 이 안건을 남경현병수령부에 넘겨 조사·심문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산을 점유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병 제9단이 서마로 1350호에 압수한 측량기는 본인 소유이고 군사측량기가 아니라고 하였다. 피고는 측량기를 소장한 위치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측량기는 확실히 관측기재로서 정비를 쳐야만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후근총부병공서(後勤總部兵工署) 제53공장의 전문기술원 굴우인(屈友仁)이 금년 6월 12일에 검증한 내용을 현병제9단에서 1948년 6월 25일에 현병사령부에 서한으로 보냈는데 참고하면 될 것이다. 피고 손창식이 경영하는 정밀기계공업사가 일본군에 의하여 무기공장으로 지정되어 군용품을 수리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부인하지 않았다. 피고는 일본군의 위탁을 받고 포병측량기를 구입하고 수리한 후에 일본군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전쟁이 승리하는 바람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때문에 이 측량기는 일본군의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모더리공장숙소의 담벼 내에 숨겨둔 금속화폐 57상자는 손창식이 일본군을 대신하여 구입하고 피고 윤종필에게 부탁하여 숨겨두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현병 제9단에서 조사받을 때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또한 고발인의 자백내용에 따라 압수한 57개 상자의 금속화폐는 이 사항에 대한 고발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한다. 측량기와 금속화폐는 일본군의 물자로서 국가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피고 등이 감히 자산을 횡령한 것은 불법점유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 등의 점유죄행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최고로 유기징역 이하에 해당될 수 있다. 국민정부는 1947년 6월 1일에 대사면령을 공포하였는데 이 조항에 부합되기 때문에 사면되어야 한다. 이 외에 피고 손창식은 현병 제9단에 의하여 체포되고, 피고를 남경현병사령부에 압송하여 남경읍강문에 도착하였을 때 손창식은 프랑스화폐 한 뭉치 약 5백만 원을 뇌물로 주려다가 거절당한 건이 있다. 이것은 형법 제1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혐의는 형법 611조에서 열거한 각 죄행과 같은 성격이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죄행에 속한다. 피고 또한 한국교민이고 한중외교관계를 고려하여 형법 517조에

25) 원문에는 34세로 되어있는데 오기로 보아 바로 잡음.

서 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불기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231조 제3관 제232조 제234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다.

검찰관 조홍

1948년 10월 18일

본건에 대한 증명은 원본과 다름없다. 서기관

상해지방법원검찰처 □□□□

1948년 섭외자(涉外字) 제39호 점유 등

피고 윤종필

중정중로(中正中路) 509호 낙타만년필공장 주인 향응전(向應鎔)

1948년 10월 19일

처분서 원본

윤종필 접수

1948년 10월 19일

소근당(邵根堂)

상해지방법원검찰처 □□□□

1948년 섭외자(涉外字) 제39호 점유 등

피고 손창식

중정중로 509호 낙타만년필공장 주인 향응전

1948년 10월 19일

처분서 원본

손창식 접수

1948년 10월 19일

소근당

사법행정부에서 보냄

신속히 발송할 것

1948년 10월 19일

손창식 등 자산점유 협의에 대한 처분서를 보낸다.

안건 상정

귀 부처에서 1948년 10월 14일 (37) 훈령(1)자 제13910호 훈령에 따라 중앙집행위원 비서처에서 보내온 서한에서 한국교민 손창식이 협의에 의하여 체포된 안건을 법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

라는 건에 대하여 이번에 이 명령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이 안건은 1948년 10월 18일에 심사·종료하고 불기소 처리하였으며 이 처분서를 함께 올리는 바이다.

심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사법행정부부장 사관생

손창식 등의 처분서 1건을 첨부한다.

전형(全衡) □□□

서한을 남경현병사령부에 보냄

1948년 10월 19일

손창식 등 자산점유 협의에 대한 처분서를 보내니 심의하기 바란다.

안건 허락

귀 사령부에서 1948년 9월 27일 37항승자(貢升字) 3671호 전보로 손창식·윤종필 등의 공공위험협의 안건을 이송하여 조사하고 법적처리 후 답변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답신을 보내는 바이다. 이 안건은 1948년 10월 18일에 조사 종료 되었는바, 불기소 처리하기로 하였음으로 이 안건에 관한 처분서를 보내니 심의하기 바란다.

남경현병사령부

처분서 1건을 첨부한다.

수석 □□□

변조영(潘朝英) 위원이 직접 사관생 부장님을 만나 볼 것입니다

사관생 부장님, 이번에 특히 이 서한을 변조영(潘朝英) 위원에게 부탁하여 보내 드리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섭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동생 철성(鐵城) 10월 4일

사법행정부 사관생 부장님

한 달 전 한국특사 조병옥이 중국에 와서 한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본 비서처에 한국교민 손창식이 협의로 현병사령부에 체포된 안건에 대하여 누명을 벗기고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방부장 하응흠에게 보내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손창식은 이미 상해지방법원에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특히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고 이 안건을 맡은 법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사관생 부장님.

중앙집행위원회 비서처 10월 6일

피고인 변호사 강일평

1948년 9월 30일

피고인 손창식

3년래 온갖 시달림 속에서 소송을 통하여 담보석방을 이루어 인권이 존중되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세상에 공평이 있음을 알렸다. 본인은 동맹군 승리 후, 고발인 한개원 등에 의하여 터무니없이 고발당한 후, 제3방면군경제부특파원공서, 소절환구적위산업처리국 · 행정원경비사령부 · 국민참정회청사단 · 고등법원검사처 및 국방부군사법원의 심문 · 조사를 받았으며, 3차례 이상을 구속 수감되었다. 1947년 9월 6일에 이르러서야 국방부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이 안건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금년 5월 한인 유인섭(柳仁燮) 등이 상해현병 제9단에 본인이 무기를 은닉하고 적을 도와준 혐의가 있다고 재차 고발되었다. 또한 이들은 국방부에 요청하여 보관하고 있던 과학의기 · 망원경 · 측정기 및 모더리양 행에서 일본 · 한국국적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 담벽에서 수색해낸 금속화폐 수십 상자 등을 증거로 본인을 남경현병사령부에 넘겨 수개월 동안 수감하고 심문 · 조사하였다. 조사에 의하여 망원경 등은 관련 부처에 신고 되어있고 금속화폐도 본인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졌다. 본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서마로 창고이고 더욱이 직원들이 숙소 내의 벽을 허물어 물건을 은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발인들의 고발내용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비록 지속적으로 고발하지만 본인은 천성이 강직한 성격이기에 이러한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법을 통해서만 공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안건은 오랜 시일이 지나 남경현병사령부에 이송하게 되었다.

귀 사령부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귀 사령부에서 본인이 무고하게 연루된 것을 감안하여 우선 보석석방을 하고 이 안건에 관한 문서를 열람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법치를 확대하고 누명을 벗기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군사법정 판결서 사진, 국방부 복판서(覆判書) 사진, 1936년 7월 1일 국방부 이연호(李然皓) 소장에게 망원경 등에 관하여 보낸 공문서영수증사진 및 본인의 부인 조동선(趙東善)이 국방부참모총장에게 보낸 서한 복사본 4건을 올리니 심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심편호(狀心編號) 형자(刑字) 2315호

	우방	이름	연령	국적	주소	직업
형사	소송인	손창식	43	한국	형산로 929호	

사유 : 고발인 유인섭 등이 본인이 무기를 은닉하고 적을 도와준 혐의로 무함한 건에 대하여 이 안건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하여 수도현병사령부에서 신속하게 석방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첨부문건 : 증거 1책

저의 남편 손창식은 현재 43세, 한국 전라남도 함평군 태생으로 상해 형산로 929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관립고등공업전문학교 정밀기계과 졸업생으로 1932년 여름 상해의 지인 손홍이(孫洪伊)·목우초(穆藕初)²⁶⁾ 선생의 요청으로 상해에 와서 신주공예사광화정밀기계(神洲工藝社光華精密機械)공장의 기사(技師) 및 공장장 등 직을 담당하였습니다. 1935년에 독자적으로 상해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하고 10년간의 노력과 분투를 거쳐 일정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고 영업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4년에 10월에 이르러 일제 군부는 남편의 공장을 군부가 지정한 병기공장으로 편성하고 일본인을 파견하여 공장을 점령하고 감독 관리하였습니다. 남편은 한국국민으로 당시에는 저항할 수도 없었으며 일본인의 모든 명령에 지연책을 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1933년에 한국독립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체포되어 7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시아민족전쟁 시작부터 남편은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으며 1945년 일제가 투항해서야 새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던 한개원 등이 협박이 통하지 않자 경찰국 각 부처에 고발하였습니다. 뒤이어 제3방면군 경제부특파원공서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전부의 재산을 차압한 후, 이 안건을 소절환구적위산업 처리국(蘇浙皖區敵偽產業處理局)에 이송하고 8개월간의 상세한 조사를 거친 후, 처리국에서 심사한 결과를 행정원에 보고한 결과 돌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절환구적위산업처리국(滬三字第25527號證件一) 고발인 한개원 등이 장려금을 탐내어 원한을 품고 이번에는 청사단에 고발하였는데, 고등법원에 이송하여 조사한 후, 다시 국방부전범군사법정에 넘겨 심문조사하고, 1947년 5월 17일에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국방부상해심판전범군사법정판결 1947년 戰審字第3號證件二) 이 판결은 국방부의 비준을 받아 1947년 11월 17일에 전부의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中央信託局蘇浙皖區敵偽產業清查處滬理逆字 22861號證件三).

3년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기진맥진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사업을 회복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때에 1948년 5월 한인 유인섭 등이 상해현병사령부 제9단에 저의 남편을 무기를 은닉하고 적을 도운 혐의로 고발하여, 현병 제9단에서는 5월 14일 사람을 파견하여 서마로 1350호 공장 내에서 세밀하게 조사하였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5월 16일에는 저의 남편을 수행하고 공장 3층에 실험실 내에 있는 과학의기·망원경·측량기 등을 차압하였습니다. 6월 10일에는 현병 제9단 2대대 2중대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전부 몰수하여 가지고 가서 검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고발자는 혜민로 927호 영상모덕리금행총창에 있는 직원숙소 벽 내에 금속화폐 수십 상자(보도에 의하면 매 상자의 무게는 50 방에 달한다고 함)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6월 22일 남편은 두 차례 소환된 후 남경현병사령부에 압송되어 9일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보석되지 않았고 조사에서도 망원경 및 측량기는 모두 수십 년 이전에 출시된 오래된 물품으로 군사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1946년 7월 전(前) 국방부 이청(二廳) 한국구국단주임(韓國救國團主任) 이연호(李然皓) 소장이 보고서와 함께 광학의기 목록이 담긴 책자와 영수증 등을 국방부이청에 보관하여 둔 것이 있습니다. (證件四) 저의 남편은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영상모덕리금행총창에 있는 직원숙소 담벽 내에 금속화폐를 은닉하였다 는 것은 저의 남편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였을 때 모덕리 공장은 일본군의 명령에 따

26) 목적초(穆籍初)와 동일인임.

르고 남편은 명의상의 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직원숙소는 일본과 조선국적의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누가 담벽 내에 은닉하였는지는 저의 남편으로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남편은 모더리공장을 세심하게 보호하여 전쟁승리 후, 영상모더리를 접수하던 경영인마저 감사의 서한을 보내왔고 이 서한을 군사법정에서도 판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점령시기에 저의 남편의 행위와 조치는 일본군과도 많이 다릅니다. 이른바 담벽 내에 금속화폐를 은닉하였다고 하는 것은 믿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군사법정판결서 제3항의 사유란의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금속화폐를 구입한 것은 일본인의 소행이고 저의 남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군사법정에서 법에 따라 인정한 사항인데 이러한 이유로 범죄혐의를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남편은 한국인으로 한중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한인의 권리 및 온몸으로 받은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구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한국대표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한국의 모 단체에서 남겨놓은 기구로서 대리단장은 민석린(閔石麟)입니다. 저의 남편은 독립당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하고 한국에 부동산과 기계부품을 기부하여 민석린이 대신 한국정부에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대표단에서는 전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임의로 경영관리 함으로써 민석린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고발인 유인섭(일명 柳仁以라고도 부름) · 김춘길(金春吉) · 김화수(金和洙) 등은 모두 괴뢰인물로서 이들의 배후세력은 전(前) 한국주중대표단(대표단은 한국의 일개 정당을 대표할 뿐이며 한국정부의 공식대표단이 아니며 중국정부의 정식승인을 받은 것도 아님)입니다.

이 안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안건인 듯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치 및 기타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의 남편은 한국의 정당한 상인으로서 이제는 좋은 세상을 만나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는데 일개 소인배들의 수차례의 무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받은 온갖 고통은 필록으로 써내려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외를 막론하고 앞에서 이 안건을 무죄로 판결하였고, 또한 이 안건을 현병사령부에서 조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안건의 전말을 서술하는 바이니, 이 안건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하여 수도현병사령부에서 신속하게 석방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국방부참모총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소인

연령 36세, 국적 한국, 주소 상해형산로(上海衡山路) 929호.

남경통신주소 : 남경서화문사조항인수리(南京西華門四條巷仁壽里) 34호.

유씨 자택에서 전함

1948년 6월.

이연호(李然皓) 소장(少將)님께 올립니다

상해형산로(上海衡山路) 929호 손창식

저는 어려서부터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정밀기계공예를 전공하여 특히 천문 · 물리 · 광학연구에 남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해정밀기계공예사를 설립한 이후 시간이 나는 대로 각종 의기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열심히 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5년간 수집하여 놓은 각종 과학 의기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중 일부분의 광학의기 예를 들면 굴절식 망원경 · 거리기(距離器) 등은 1941년 6월 독일 상인이 운영하는 의태양행(義泰洋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기들은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출품되어 오래된 것으로 응용성이 떨어지고, 다만 내부에 있는 부품 능형(菱形)렌즈 등은 분해하여 분광기(分光器)로 개조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계를 개조하여 학교에서 물리학 방면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중일전쟁 후기여서 이 모든 것을 당국에 등기하고 전부의 의기를 적당히 저장하여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분규가 발생하였다가 병사에게 발견되었는데 군용품으로 여기고 본인을 소환하고 수감 하였다가 10여일 후에 석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 기계도 많은데 이것이 또다시 새로운 오해와 분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에 특히 영수증과 명세표를 전부 드리니 저를 대신하여 군사기관에 넘겨 등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호(李然皓) 소장님께

손장식 올립니다.

1946년 7월 1일

국방부심판전범 군사법정통지서

국심호자(國審滬字) 제57호

접수된 1947년 전심자(戰審字) 제3호 조서에 의하면 손창식전범혐의안건은 국방부심판전범군사법정에서 무죄로 판결하고 보고서를 올려 심의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국방부(36) 여심자(呂甚字) 제16732호에 근거하여 원심에 대한 심의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본 법정에 출두할 것을 통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을 손창식에게 통보할 것.

1947년 9월 6일

부록 - 전보문 원문

본부 상해심판전범군사법정 이량(李良) 청장(庭長)은 전보문으로 보낸 법대자(法代字) 제219호의 판결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 조사에 의해 손창식이 전정범죄혐의로 기소된 안건에 대하여 군사법정에서 심사한 결과 피고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수 없으면 그 행위에 대하여 법적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무죄를 알리는 바이다. 행위의 부당한 면도 알리고 판결 문서를 돌려보내니 진정한 판결이 되기를 희망한다.

(중략)

전범 손전창식 판결서 원본

국방부상해심판전범군사법정판결 1947년 전심자(戰審字) 제3호

소송인 : 본 군사법정 검찰관

피고 : 손전창식 즉 손창식, 남, 연령 42세, 한국인, 형산로(衡山路) 929호에 거주

선임변호인 : 강일평(江一平) 변호사, 양름지(楊凜知) 변호사

위의 피고 전범안건에 대하여 본 군사법정 검찰관이 기소하였는데 본 법정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

손전창식은 무죄

이유

기소취지를 요약하면 “피고 손전창식은 일본군에 비행기를 현납, 금릉병기공장을 도급 맡아 수리, 모덕리금행총창을 점유, 각종 금속화폐를 구매, 무기를 생산하여 제공, 지붕에 고사포를 설치 등의 혐의로 주간보·한개원·주경영 등 3인에 의하여 고발당하였다. 피고는 40만 원을 현납하여 비행기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게 한 것을 승인하였지만 기타 고발 사항에 대하여서는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행기를 현납한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역행위에 해당하기에 전범(戰犯)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에 전쟁범죄자심판조례 제2조 제1관의 범죄혐의와 같은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기소하는 바이니 법에 따라 심판하기 바란다.” 등의 내용이다.

조사에 의하면 손전창식 즉 손창식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내선일체 정책에 의하여 손창식을 손전창식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개명하였다.(재지 반도인명록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름으로 전범을 기소하였기에 본 판결에서도 피고의 이름을 손전창식으로 함을 판결에 앞서 설명하는 바이다.

외국군인 혹은 비군인에 대하여 전시(戰時)에 국제조약·국제공약 혹은 국제보증 위반으로 재검조사 할 수 있지만 중화민국침략전쟁을 지지한 자에 대하여서는 중화민국전쟁범죄자심판 제2조 제1관 및 제10조에 처벌조항이 명문화 되어있다. 이 조항은 반평화죄(反和平罪)에 입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당연히 엄격하여야 한다. 그 행위가 침략전쟁에 종사 혹은 완성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침략전쟁의 확대 혹은 연장을 가능하게 한 자는 전쟁을 지지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행위로 인한 위해(危害)가 침략전쟁을 강화한 작용이 없다면 침략전쟁을 지지한다는 법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본 안건의 피고가 고발·기소당한 죄행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금릉병기공장의 기계를 도급 맡아 수리한 것이다. 피고의 해석에 의하면 “호성근(胡成根)과 같이 남경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천문대와 공장의 기계를 사려고 신창양행(愼昌洋行)에 교섭하러 간 것이지 병기공장을 수리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호성근의 공술에 의하면 처음에 “남경으로 간 것은 금릉병기공장의 무기생산기계의 가격을 매기기 위한 것”(경비사령부 1946년 7월 19일 기록을 참고할 것)이라고 하였다가 다음에는 “남경으로 간 것은 금릉병기공장을 대신하여 선반과 쇠 침대를 수리하기 위한 것”(상해고등법원검찰처 1936년 9월 23일 기록을 참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계수리 건에 관

한 호성근의 앞뒤 공술은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 모더리금행총창을 점유하였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홍아원화중연락부장관(日興亞院華中聯絡部長官) 오오타 다이치(太田泰治)는 1942년 5월 7일 모더리금행총창을 피고(上海精密機械工藝社)에게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같은 해 10월 12일에 피고에게 이 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 바, 중련경일(中連經一) 제69호와 중련경일 제1117호 지령이 이를 증명한다. 피고는 후에 공장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공장을 세심하게 보호한 연유로 감사의 편지도 받았는 바, 이 공장을 피고가 점유하지 않은 것이 확연하다.

(3) 적을 대신하여 각종 금속화폐를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한개원의 공술에 의하면 호성근이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개원은 호성근이 손창식이 설립한 동해양행(東海洋行)에서 근무할 때 이미 취직하였고, 호성근과 관계가 밀접하여 못하는 말이 없는 관계라고 하였다. 그러나 호성근의 공술에 의하면 “북사천로(北四川路)에 있을 때 손창식은 전문적으로 중국의 은·려(鋁)·련(鍊)·동 등의 금속화폐를 구입하고 용해할 때에는 같은 국적의 사람을 사용하였는데 아주 비밀에 붙여 쉽게 알아낼 수가 없다.”고 하였다. (송호경비사령부(淞滬警備司令部)의 1946년 7월 19일 기록을 참고할 것) 한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못하는 말이 없이 친하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은 모순되어 믿기가 어렵다. 또한 한개원은 “매 상자에 금속화폐 3백 파운드를 넣었는데 이것은 무코우바야시(向林大藏)가 조사한 것”이라고 공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의 부인 조동선(趙東善)은 “금속화폐는 일본국적의 직원 코우키(高木公三郎)와 무코우바야시(向林大藏)가 공장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운송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동선이 한국임시정부주중국대표단 대리단장 민석린(閔石麟)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에 보낸 전보문을 참고할 것) 내용이 부합된다. 금속화폐를 구매한 것은 일본인이 확실하고 피고와는 무관하다.

(4) 지붕에 고사포를 설치한 것이다.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후, 고사포를 설치할 적합한 지위나 수요가 인정될 때에는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설치하였다. 예를 들어 도처에 방공참호를 팠는데 중요한 도로에 있다고 하여 아무 사람이나 마구 저지할 수가 없다. 피고는 지붕에 고사포를 설치한 사안에 대하여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한 공장의 지붕이 낮아 고사포를 설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5) 적에게 군용의기를 수리하고 생산하여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하는 공장은 일본군의 관할에 속해있고 무코우바야시(向林大藏)를 파견하여 생산을 감독하게 하였다. 피고는 당시에 일본국적을 탈퇴하지 않았기에 이 공장에서 군용의기를 수리하거나 생산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의 협박으로 인해 할 수 없이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적을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당시의 공장 직원 송근보(宋根甫) · 황매장(黃梅章)²⁷⁾ · 계행근(季杏根) · 저영방(褚榮芳) · 진군추(陳君秋) 등의 증언에 따르면 “총검은 호성근이 가져와 구멍을 뚫기 위한 것이고, 탄피는 무코우바야시(向林大藏)가 가져와 절단하기 위한 것이며, 분화기는 견본은 보았지만 생산한 적이 없고, 전차 · 비행기 등 부품은 수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공장 부근에 사는 고세성(高世城)은 “나는 전차나 탱크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상의 증언은 상해고등법원검찰처 1946년 9월 23일 및 본 법

27) 황매장(黃梅璋)과 동일인임.

정의 1947년 5월 8일 기록을 참고할 것) 이러한 증언으로부터 볼 때 호성근이 주장하는 “육군용분화기는 겸상부(鉗床部)에서 생산하고, 소형전차·박격포차가 공장에 들어와 조금표(趙金標) 등에게 맡겨 수리하게 하였다.”고 하는 등등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6) 적을 대신하여 군사물자를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한개원의 공술에 의하면 “군사물자는 전화선 구리선(紫銅絲)과 식료품”이라고 하였다. 이에 “전화선 구리선을 어디에서 구입하고 판매점포를 거명할 수 있는가?”고 물으니, 답하기를 “한번은 호성근이 우리를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점포명은 기억나지 않고 제3고발인(즉 주경영)이 연필로 기록한 것이다.”고 답해서 주경영에게 물으니 “호성근은 나에게 말한 적이 없고 나도 물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한개원이 말하는 점포나 호성근을 동반해서 갔다는 것, 점포명을 주경영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 등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7) 이름을 개명, (8) 군용차량 운행증 사용, (9) 대량물자 저장, (10) 다수의 부동산 구입 등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지하였다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상세하게 추궁할 것은 피고의 비행기 현납 사항이다.

피고는 “1943년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조선국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금하여 비행기를 구입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하였다. 당시 상해에 있는 한인은 모두 강제로 현금하였고, 이것을 거역하면 군법제재를 받았는데 피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현납한 금액으로 비행기를 구입하였는지의 여부는 일제가 지배하고 있고 피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또한 군용비행기는 일제의 군사장비에 속하고 피고가 구입할 수도 없었다.”고 변명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피고가 현납한 전함 폭격기 보국 제1467호와 제1468호는 1943년 9월 20일 상해의 신보(申報)에 기재되어 있다. 일본군이 피고의 현금을 받은 후 비행기구입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합병된 지 오래고, 항일전쟁승리 이전에 피고는 여전히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현금당시에는 상해시도 일본에 점령되어 있어 피고가 “현금을 내지 않으면 점령군의 협박을 받았고 반드시 일본군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역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부터 피고가 침략에 종사 혹은 완성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이 발동한 침략전쟁은 아세아에 파급되어 8년이 걸렸고 군비에 소모한 것도 방대하여 단순하게 피고가 현납한 40만 원 대금으로 전쟁을 확대 연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현금하여 비행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기에 앞에서 서술한 ‘지지’라는 두 글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쟁범죄자 심판조례 제2조 제1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결론은 전쟁범죄자 심판조례 제1조 제1항, 수정된 형사소송법 제2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내린 것이다.

본 안건은 본 군사법정검찰관 도광균(屠廣鈞)이 법정을 대신하여 직무를 집행한다.

1947년 5월 17일

국방부상해심판전범군사법정

군법심판장 이량(李良)

군법심판관 구증택(瞿曾澤)

군법심판관 유키(陸起)

군법심판관 호영령(胡永齡)

군법심판관 임건봉(林健鵬)

본 문서증명은 원본과 다름이 없다

서기관 왕숙신(汪叔申)

〈출전 : 『上海市警察局關於朝鮮籍孫昌植材料』, 상해시당안관 소장, 1~172쪽〉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

V. 일본 협화회와 『동아신문』

1. 일본 중앙협회 개관

1) 협회회 사업개요(1937)

목차

- 제1. 도쿄부(東京府)
- 제2. 교토부(京都府)
- 제3. 오사카부(大阪府)
- 제4. 가나가와현(神奈川縣)
- 제5. 효고현(兵庫縣)
- 제6. 아이치현(愛知縣)
- 제7. 야마구치현(山口縣)
- 제8. 후쿠오카현(福岡縣)

제1. 도쿄부

1. 명칭 : 도쿄부협회
2. 소재지 : 도쿄시 고지마치구(麹町區) 마루노우치(丸ノ内) 3정목(三丁目) 도쿄부 학무부 사회과 내
3. 대표자 이름 : 회장 요코야마 스케나리(横山助成)
4. 설립일자 : 1936년 11월 2일
5. 사업 계획

(1) 조사위원회

: 본 회의 사업 자문기관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뒤에 서술하는 조사 연구와 더불어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한다. (회칙 별지) 그리고 위원으로는 도쿄부 경시청, 도쿄시의 각 관계자 및 본 사업 관련 분야의 적임자를 위촉하여 본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및 장래 방침에 관하여 조사 심의하고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의 진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사 심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 부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위원을 촉탁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책 등을 강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취학장려 분과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말한다.

(2) 조사 연구

(ㄱ) 재경(在京) 조선인의 현황 조사

: 관내 거주 조선인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주소 / 출신도별 / 세대수 및 인원 / 단신자(單身者) 연령별 조사 / 직업 / 학력 / 기타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조선인의 분포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하도록 한다.

(ㄴ) 마야 중독자 조사

: 관내에 유랑하거나 소굴을 마련한 마야 중독자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함에 경시청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ㄷ) 직업소개·직업보도 및 수산기관(授產機關) 설치 계획 조사

: 조선인 개개인의 정황에 따라 보호·교화하여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취직을 최우선 요건으로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를 조사할 때에는 실업 원인·실업 기간·현재 생계 상태 등 실업 조선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당한 직업소개·직업보도 및 수산기관 설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지구 설비 측면·방침 등에 대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강구한다.

(ㄹ) 취학 장려 및 간이 학교 설치 계획 조사

: 조선인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적절한 취학 장려 방법 및 간이 학교 설치 계획을 조사 강구한다.

간이 학교 설치 계획의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업 기간 및 교육 방침에 관한 사항
- ② 교과목 및 수업 시간에 관한 사항
- ③ 수업 담당자에 관한 사항
- ④ 설치 개수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⑤ 수업료, 그리고 수업료 징집 가능 인원 및 감면 인원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ㅁ) 인보관(隣保館) 및 아동 보호 기관 설치 계획 조사

: 본 조사 실시 요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유아 보호에 관한 사항
- ② 학령 아동의 교화 보호에 관한 사항
- ③ 성인의 교화에 관한 사항
- ④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 ⑤ 인사 상담, 경제적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근본적 조사의 결과에 입각하여 어느 지구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을 조사 연구하도록 한다.

(ㅂ) 주택 공급 방법 및 주택 건설 계획에 관한 조사

: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택을 공급할지, 주택을 건설하면 분산적으로 할 것인지 집단적으로 할 것인지, 그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조사 연구하도록 한다.

(3) 취학 장려

: 조선인의 내지화(内地化)¹⁾는 청장년에게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아동에게 먼저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올해는 아동의 취학 장려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아동을 많이 수용하는 소학교에는 아동 보호자회에 소액이지만 보조금을 주어 극빈자의 학용품 구입비 및 결식 아동의 급식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또한 신학기 시작 전에 취학 안내서와 같은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여 아동을 가능한 한 취학시킬 수 있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어떻게 학령기 아동을 취학시킬 것인지, 교육 방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쿄시 30구 및 하치오지시(八王子市) 외 3군(郡)의 각 소학교장, 구(區) · 시(市) · 정(町) · 촌(村) 학무주임, 경찰서 주임이 자주 회합을 가져 다음 사항에 대해 강구하도록 한다.

- 입학 장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취학 아동의 교육상 특히 유의하면서 설정 또는 유의해야 할 사항
- 내선(內鮮) 아동 자질의 차이 및 특징 규명
- 직업 선택에 관한 지도
- 청년 학교, 보습 학교에 관한 사항
- 기타 취학 장려에 관한 회합

(4) 생활 개선 지도

: 조선인은 일본인과 풍속 · 언어 · 습관 등이 달라 생활양식을 달리 하므로, 때때로 일본인과 협회를 이루지 못하는 사태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연도에는 경찰 관할 내에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경찰서를 골라 관할 지역마다 교풍회(矯風會)를 설치하여 생활 개선을 지도하도록 한다.

(ㄱ) 교풍회 설치 예정 지역

: 거주하는 조선인의 수 1,200명 이상인 시 안 10개 경찰서에 교풍회를 조직하고 설치한다(예정 경찰은 다음과 같다).

오기바시(扇橋) / 스나마치(砂町) / 미카와시마(三河島) / 메구로(目黒) / 아즈마(吾嬬) / 오히라(大平) / 료코쿠(兩國) / 스사키(洲崎) / 메지로(目白) / 이케부쿠로(池袋)

(ㄴ) 교정회의 조직 개요

: 회장은 경찰서장이 겸직하며, 부회장, 지도원, 지도보조원 등은 지구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ㄷ) 교정회에서 시행하는 사업 항목

- ① 정신 진작에 관한 사항.
- ② 풍속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④ 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1) 일본화.

- ⑤ 위생 시설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근) 사업 실시 방법

- ① 경축일 등에는 국기 계양을 독려하여 국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등 교풍회장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할 것.
- ② 교풍회 각 사업지마다 대대적으로 예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생활 개선의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취학 장려 기류계(寄留屆)의 촉진을 도모할 것.
- ③ 각 교풍회는 적당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일본어를 습득하게 할 방법을 강구하여 가능한 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협화를 위해 노력할 것.

청소 당번을 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을 통해 주택 주변의 도로, 하수도 근처 등의 청결을 도모할 것.
저축 장려 · 관혼상제 비용의 절약.
무료 진료 · 택아소 입소의 알선 등.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보(保)

: 재일 조선인 가운데 가장 일본인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은 마약 중독자가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절도 또는 이를 수반하는 범죄와 같은 사건이다.

경시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마약 중독자 구제를 시작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보호와 관련해서 적절한 사회 시설과 연계가 되지 않아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그런데 최근 도쿄부 경시청과의 회합을 통해 관내 사회 시설인 마약 중독 구호회의 조직 내용을 개선하게 되어 이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별도로 본 연도에는 도쿄부에서 13,000엔을 이 구호회에 보조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조선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여비를 보조하도록 한다.

(6) 앞으로의 계획

: 내년도 이후에는 조사 위원회에서의 결의 사항 및 실시 계획 조사에 입각하여 보육소 · 간이학교 · 인보관 창설, 직업 알선 · 직업 보도 및 수산 시설 설치, 주택 공급 방책, 생활 개선 지도 사업 확대, 취학 장려 철저 등에 따라 사업을 확충 · 달성하도록 한다.

6. 193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세입〉

과목	본년도 예산고	전년도 예산고	비교		비고
			증가	감소	
관(款) 재산수입	50엔	0엔	50엔	0엔	
항(項) 이자수입	50	0	50	0	
	첫 번째 이자	50	0	50	0
관 보조금	15,380	0	15,380	0	
항 보조금	15,380	0	15,380	0	
	내무성 보조금	6,380	0	6,380	0
	도쿄부 보조금	7,000	0	7,000	0
	기타 관공보조금	2,000	0	2,000	0
관 기부금	500	0	500	0	
항 기부금	500	0	500	0	
	목(目) 기부금	500	0	500	0
관 잡수입	1	0	1	0	
항 잡수입	1	0	1	0	
	목 잡수입	1	0	1	0
합계	15,931	0	15,931	0	

〈세출〉

과목	본년도 예산고	전년도 예산고	비교		비고
			증가	감소	
관(款) 도쿄부협화회비	15,931엔	0엔	15,931	0	
항(項) 사무비	1,109	0	1,109	0	
목(目) 봉급제급(俸給諸給)	529	0	529	0	봉급(봉급) 450엔 (사무원 1명 75엔 6개월분) 혜여(惠與) 19엔 여비(旅費) 60엔
목 수요비(需要費)	580	0	580	0	비품비 50엔 소모품비 50엔 도서 및 인쇄비 300엔 통신운반비 80엔 잡비 100엔
항 회의비	1,060	0	1,060	0	
목 평의원 회비	100	0	100	0	
목 이사회비	240	0	240	0	

목 □□□ 비]	720	0	720	0	
항 사업비]	13,360	0	13,360	0	
목 조사비]	1,550	0	1,550	0	관내 거주 조선인 현황 조사비 / 사업 계획에 관한 조사 1,550엔
목 취학 장려비]	2,870	0	2,870	0	아동보호자회 보조금 1,500엔 취학장려용 인쇄물비 200엔 소학교장·학무주임 및 경찰서 주임 회합비 1,170엔
목 생활 개선 지도비]	3,540	0	3,540	0	본부사무비 540엔 교풍회장 회의비 180엔 지도원 회의비 210엔 잡비 150엔 교풍회 배당금 3,000엔(한 교풍회 300엔 10군데 분)
목 보호비]	5,400	0	5,400	0	1명 27엔 200명 분 5,400엔
항 예비비]	402	0	402	0	
목 예비비]	402	0	402	0	
세출 합계]	15,931	0	15,931	0	

7. 임직원 명부

도쿄부협화회 임원 〈イロハ 순서〉

이사

〈회장〉 도쿄부 지사

横山助成

〈부 회장〉 도쿄부 학무부장

白戸半次郎

〈상무이사〉 도쿄부 학무부 사회과장

葛西嘉資

도쿄부 학무부 직업과장

糸井謹治

生田清三郎(이사 교섭 중)

도교부 학무부 학무과장

畠村嘉兵衛

경시청 위생부 의무과장

加藤寛二

도쿄시 사회국 서무과장

萬富次郎

경시청 경무부 경무과장

畠原惠吉

경시청 특별고등경찰부

內鮮課長

경시청 위생부 위생과장

岸本太郎

弓削幸太

도쿄부 총무부 서무과장

物部董郎

감사

도쿄부 주사 / 도쿄부 사회사업협회 간사 岡弘毅
도쿄부 총무부 회계과장 村田佐吉

평의원

경시청 경시총감 관방주사(官房主事)	今松治郎
도쿄부 총무부장	林信夫
경시청 경무과장	留岡幸男
도쿄부회(東京府會) 의장	岡藩 渡辺忍
경시청 위생부장	中村四郎
도쿄시 조역(助役)	中野邦一
경시청 특별고등경찰부장	上田誠一 丸山鶴吉
도쿄시 사회국장	澤逸與
도쿄 상공회의소 이사	木村増太郎 關屋貞三郎

고문

경시총감 石田馨
도쿄시장 牛塚虎太郎

8. 도쿄부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도쿄부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를 도쿄부 학무부 사회과 안에 둔다.

제3조 본회는 도쿄부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 ·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 보호 · 교화에 관한 조사 · 연구.
2. 조선인 보호 · 교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회의 자산은 내무성, 도쿄부, 기타 관공서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6조 본회의 현금은 확실한 은행 또는 우편 관서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7조 본회의 경비는 자산에서 지불한다.

제8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

제9조 본회의 예산은 매년도 평의원회 평결을 거쳐 정하고 결산은 평의원회의 인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3장 임직원

제10조 본회에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평의원 약간 명을 둔다.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및 상무이사를 각각 1명 임명한다.

그 밖의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회장은 도교부 지사 직에 있는 자.

부회장은 도교부 학무부장 직에 있는 자.

상무이사는 도교부 사회과장 직에 있는 자를 추대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게 유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무이사는 회장의 뜻을 받들어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과 부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감사는 업무 집행 및 자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 감사 평의원은 도교부 경시청 도교시의 직원이나 적절한 인물이라고 인정받은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본회 고문으로 경시총감 및 도교시장 직에 있는 자를 추대한다.

제15조 본회에 간사를 둔다. 회장이 이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간사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직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평의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것.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
3. 기부 수락에 관한 것.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것.

제17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표결을 요청해 소집을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9조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평의원회

제20조 평의원회의 직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세입 · 세출 예산을 논의하여 정할 것.
2. 결산을 인정할 것.
3. 회칙 변경에 관한 것.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것.

제21조 평의원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평의원회에도 적용된다.

제6장 보칙

제23조 본회의 사무 집행과 관련해 필요한 규칙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 교토부

1. 명칭 : 교토부협화회

2. 소재지 : 교토부청 사회과 내

3. 대표자 이름 : 교토부협화회 회장 스즈키 게이치(鈴木敬一)

4. 설립일자 : 1936년 11월 6일

5. 사업 계획

(1) 조사위원회

: 교토부 내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 그들의 생활 및 노동 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호 및 교화 시설의 조사 자료로 삼는다. (이를 위해 카드식 명부를 비치하도록 한다.)

(2) 귀국 보호

(3) 생활 개선 지도

: 생활 상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 각종 강습회를 마련한다.

(4) 교육 교화의 보급

: 취학 장려 · 일본어 · 일본 예절방식 교육 및 국민적 행사 · 풍습을 장려하기 위한 강습회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5) 우량 단체 조성

: 관할하의 조선인 단체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여 실로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될 만한 단체에 대해 사업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한다.

(6)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1936년도 교토부협회회 세입 · 세출 예산

〈세입부〉

과목	본년도 예산액	비고
제1관(款) 보조금	2,860엔	
제1목 국고보조금	2,360엔	
제2목 부비(府費)보조금	500엔	
세입 합계	2,860엔	1937년도 1,000엔 계상(計上)예정

〈세출부〉

과목	본년도 예산액	비고
제1관 사무비	310엔	
제1목 잡급(雜給)	240엔	서기봉급 150엔, 상여금 60엔, 여비 30엔
제2목 회의비	20엔	
제3목 수요비(需要費)	50엔	비품비 10엔, 소모품비 10엔, 통신운반비 10엔, 잡비 20엔
제2관 사업비	2,500엔	
제1목 조사비	300엔	
제2목 귀국보호비	1,000엔	
제3목 생활개선 지도비	700엔	
제4목 교육교화비	500엔	
제3관 보조비	50엔	
제1목 보조비	50엔	우량 단체 보조
세출 합계	2,860엔	

7. 교토부협회회 임직원 명부

〈회장〉 교토부 지사

鈴木敬一

〈부회장〉 교토부 학무부장

岩重隆治

교토시장

市村慶三

〈평의원〉 교토부 총무부장

中村恒三郎

동 경찰부장

薄田美朝

동 경제부장	鈴木登
동 토목부장	岩崎雄治
동 사회과장	田村義雄
동 특별고등경찰과장	永岡文男
동 보안과장	齋藤敏雄
동 형사과장	篠田實
동 경무과장	豊原道也
동 위생과장	藤田茂尚
동 건축공장과장	上山顯
동 학무과장	新見俊介
동 직업과장	松野貞夫
동 회계과장	玉井寛義
동 규획과장	福永與一郎
동 식산과장	水間尹夫
동 감리과장	佐伯敏男
교토부회 의장	江羅直三郎
교토현병대장	森健太郎
교토시 조역	石川芳太郎
교토시 교육부장	瀬谷薰
교토시 보건부장	飯野斐
교토시 사회과장	漆葉見龍
교토시 가미교구장(上京區長)	後藤未久
동 사쿄구장(左京區長)	大石右一
동 나카쿄구장(中京區長)	鈴木康四郎
동 히가시야마구장(東山區長)	中村長太郎
동 시모쿄구장(下京區長)	井手久馬彦
동 우쿄구장(右京區長)	中山邦朋
동 후시미구장(伏見區長)	小笠三十郎
가와바타경찰서장(川端警察署長)	武内征平
나카다치우리경찰서장(中立壳賣警察署長)	森田貞男
니시진경찰서장(西陣警察署長)	西山源治
마츠바라경찰서장(松原警察署長)	秋月清秀
호리카와경찰서장(堀川警察署長)	清水良太郎
고조경찰서장(五條警察署長)	土屋良一
시치조경찰서장(七條警察署長)	五十嵐定七

시모가모경찰서장(下鴨警察署長)	奥永不可止
야마시나경찰서장(山科警察署長)	堀池弘
우즈마사경찰서장(太秦警察署長)	森田勝太郎
무코마치경찰서장(向日町警察署長)	村上須義雄
후시미경찰서장(伏見警察署長)	小林忠太郎
우지경찰서장(宇治警察署長)	土永丹治
이데경찰서장(井手警察署長)	井木勝一
기즈경찰서장(木津警察署長)	芦谷半治
가메오카경찰서장(龜岡警察署長)	朝倉萬吉
슈잔경찰서장(周山警察署長)	小松憲一郎
소노베경찰서장(園部警察署長)	福田利教
후쿠치야마경찰서장(福知山警察署長)	白杉幸一郎
아야베경찰서장(綾部警察署長)	木下和雄
마이즈루경찰서장(舞鶴警察署長)	田中伊之助
신마이즈루경찰서장(新舞鶴警察署長)	林壽治
미야즈경찰서장(宮津警察署長)	田中久雄
미네야마경찰서장(峰山警察署長)	武内福馬
아미노경찰서장(網野警察署長)	杉木公平
구미하마경찰서장(久美浜警察署長)	平林菊治
교토부 방면위원회 간사장 /	
교토시 위생조합연합회 간사장	淺山富之助
교토부 의사회 회장	高橋豊三郎
교토시 공동조합연합회 간사장	川本元三郎
교토부 연합보호회 회장	高倉永則
교토부 정촌회(町村會) 회장	大槻藤太郎
니시혼간지(西本願寺) 대표자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대표자	
정토종(淨土宗) 지은원(知恩院) 대표자	
교토부 친화회(親和會) 대표자	
〈간 사〉 교토부 소속	黒江重治
동	福田基隆
교토부 경부	飯田外次郎
교토시 주사	森護來

8. 교토부협화회 회칙

제1조 본회는 교토부협화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교토부 청사 안에 둔다.

제3조 본회는 교토부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 · 교회에 힘쓰며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여 동포 협화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실행한다.

1. 생활 상태 조사.
2. 교육교화 보급의 철저.
3. 생활의 개선 및 향상.
4. 사회 시설에 바탕을 둔 보호 구제.
5. 협화 사업의 장려 및 조성.
6.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평의원 약간 명.

제6조 회장으로는 교토부 지사를, 부회장으로는 교토시 시장 및 교토부 학무부장을 추대한다.

제7조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제8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평의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여 예산과 그 밖의 중요 회무를 심의한다.

제10조 평의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한다.

제11조 본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제12조 본회의 경비는 국고 장려금, 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 오사카부

1. 명칭 :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화회
2. 소재지 : 오사카시 히가시구(東區) 오사카부청 내
3. 대표자 이름 : 오사카부 지사 야스이 에이지(安井英二)
4. 설립일자 : 1924년 5월 5일

5. 사업 계획

(1) 일반 방침

: 전년도 사업 실시의 성적에 비추어 방침을 더욱 확충할 것을 본지로 삼는다. 즉, 이 일반 방침은 오사카부 내선 융화 사업 조사회의 결의 방침에 입각하여 오사카 거주 조선인의 생활 개선과 향상 및 교통교화 사업에 주력하여 내선 융화의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신규 계획 사항

① 교통회의 증설 확충

: 기존의 이즈오(泉尾), 이마미야(今宮), 츠루하시(鶴橋), 나카모토(中本), 이마후쿠(今福), 나카즈(中津) 등 대교통회의 내용을 확충하고, 재외 거주자의 실정에 비추어 1922년 10월부터 아시하라(芦原), 미쿠리야(御廚), 아미지마(網島), 소네자키(曾根崎), 후쿠시마(福島), 1923년 1월부터 주소바시(十三橋), 오와다(大和田), 아사히바시(朝日橋), 이치오카(市岡), 에비스(戎) 등 10개 경찰서 관할 구(區)에 새로이 교통회를 설치하며, 또한 사카이시(堺市)는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인보관의 증설

: 거주 조선인 분포의 실정에 비추어 이마미야 경찰서 관내(니시나리구(西成區)), 나카모토 경찰서 관내(하가시나리구(東成區)) 및 이마후쿠 경찰서 관내(아사히구(旭區)) 등 세 군데에 인보관을 증설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 곳의 건축비 첫 회 조달비는 약 6,000엔을 고려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12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③ 보육소의 증설

: 인보관 증설에 따라 보육소도 세 군데에 증설하도록 한다. 한 곳의 정원은 100명으로 할 예정이다.

④ 간이학교의 증설

: 기존의 인보관인 도요사카(豊崎) 및 사카이(堺)에 간이학교를 재설(再設) 또는 부설(附設)함과 동시에, 세 군데의 새로운 인보관에 간이학교를 부설하도록 한다. 한 학교의 정원은 50명으로 한다.

⑤ 신용구매 이용 조합의 조성

: 오사카 협회 신용 구매조합의 실적에 비추어 생활 개선 및 향상을 목적으로 본년도에 700엔을 교부하여 이를 조성하도록 한다.

[재단법인 오사카협회 내 내선(內鮮) 융화 대책 10개년 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지도방침	기간	시설방침
제1기	계몽기	1935년~1937년, 3년간	시설 창설기
제2기	훈련기	1938년~1940년, 3년간	시설 충실기
제3기	조장기	1941년~1944년, 4년간	시설 개방기

2) 계획 내용

(1) 제1기 계획

① 지도 방침

: 거주 조선인은 대개 수치심을 모르고 특이한 습속에 익숙해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어, 이를 개선 및 향상, 교정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생활을 파고들어 타성을 고칠 필요가 있다.

즉, 이 시기는 이와 같은 조선인의 특이한 습속과 방탕한 생활을 타파·교정하고 수치심을 모르는 저급한 생활을 계몽하여 이를 개선 및 향상시킬 소질을 양생해야 할 시기이다.

② 시설 방침

: 위의 지도 방침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반적으로 나아가 동시에 시설망을 실시·창설할 필요가 있다. 즉,

③ 교정 사업망의 창설

ⓐ 제1 연도 : 거주 조선인 수가 10,000명 이상인 대 경찰서 관내.

이즈오(泉尾), 이마미야(今宮), 츠루하시(鶴橋), 나카모토(中本), 이마후쿠(今福), 나카즈(中津) 등 여섯 군데.

ⓑ 제2 연도 : 거주 조선인 수가 4,000명 이상~10,000명 미만의 14개 경찰서 관내.

이치오카(市岡), 아사히바시(朝日橋), 지쿠코(築港), 에비스(戎), 아시하라(芦原), 후쿠시마(福島), 아미지마(網島), 주소바시(十三橋), 오와다(大和田), 사카이(堺), 야오(八尾), 미쿠리야(御廚), 스미요시(住吉), 소네사키(曾根崎) 등 14 군데.

ⓒ 제3 연도 : 거주 조선인 수가 2,000명 이상~4,000명 미만의 10개 경찰서 관내.

다마츠쿠리(玉造), 나니와(難波), 덴마(天満), 히라노(平野), 구니지마(柴島), 오즈(大津), 기시 와다(岸和田), 스이타(吹田), 가시와라(柏原), 누카타(額田) 등 10 군데.

④ 인보관 망의 창설

ⓐ 제2 연도 : 세 군데.

ⓑ 제3 연도 : 네 군데.

기존 – 이즈오, 츠루하시, 나카즈

신설 – ④ 나카모토, 이마미야, 이마후쿠, ④ 후쿠시마, 주소바시, 미쿠리야, 이치오카

합계 – 10군데.

ⓓ 앞의 각 인보관에 보육소 및 간이학교를 부설한다.

ⓔ 니시요도가와구(西淀川區), 고노하나구(此花區), 미나토구(港區)에 산업조합의 구역을 확충한다.

(2) 제2기 계획

① 지도 방침

: 제1기에 저급한 습속 및 생활의 개선·향상의 바탕을 양성해야 할 관내 거주 조선인을 선량한 제국신민으로서의 정신을 함양하여 생활의 개선 및 향상을 꾀하고, 아울러 일본의 습속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킬 방법을 강구한다.

② 시설 방침

: 위의 지도 방침을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제1기에 실시한 시설의 내용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 교풍 사업망의 확충

ⓐ 기존의 교풍회 가운데 거주 조선인 수가 8,000명 이상인 곳에는 지도원을 증원한다.

ⓑ 거주하는 조선인 수가 1,000명 이상인 10개 경찰서 관내에 준(準)교풍회를 조직·설치한다.

다카쓰(高津), 아베노(阿倍野), 이케다(池田), 오카마치(岡町), 이바라키(茨木), 다카쓰키(高槻),
이야케(三宅), 모리구치(守口), 이치바(市場), 후쿠다(福田).

㉡ 인보관(隣保館)의 사업 내용 및 직원 충실.

㉢ 보육소 및 간이학교의 정원 증가.

㉣ 산업 조합의 신용 사업, 이용 사업의 확충

(3) 제3기 계획

① 지도 방침

: 제2기에 물심양면으로 생활의 개선 및 향상, 아울러 습속을 철저하게 일본화하는 훈련을 거친 거주 조선인에 대해 자발적, 자치적, 협력적 그리고 영속적으로 생활의 개선 및 향상을 이루어, 훌륭한 제국 신민(帝國臣民)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장·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② 시설 방침

㉠ 교풍 사업의 자치화를 촉진·조장한다.

㉡ 인보관의 공동 시설화를 지도·조장한다.

㉢ 보육소, 간이학교의 공동 경영화를 지도한다.

㉣ 간이학교의 직업 교육을 충실히 하고 직업소개소를 충실히 마련한다.

㉤ 산업 조합의 구역을 각 구(區)마다 분할독립시켜 자치적 경영과 연합을 통해 강력해 질 수 있도록 조장·지도한다.

(4) 경리 계획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회회 내선옹화대책 10개년 계획에 따른 경리 계획표(수입부문)																		
연차		보조금							자산수입		사업 수입	기부금 수입	잡수입	이월금	합계			
		국고	부비(府費)		기타		총독부											
		교풍 회비	교풍 회비	일반 경비	인보관 건축비	인보관 건축비	일반 경비	일반 경비	자금 표입	자산이 자수입								
제	1(1935년)		3,000	8,500	1,000	6,000	5,000	6,500	5,000	4,200	12,000	6,300	500	1,200	59,200			
1	2(1936년)	20,000	12,000	8,500	11,000	7,000	2,500	7,000		4,000	14,000	6,000	500	1,500	94,000			
기	3(1937년)	20,000	20,000	8,500	15,000	7,000	2,500	8,000		15,000	17,000	3,000	500	1,500	118,800			
제	4(1938년)	20,000	25,000	15,000			2,500	10,000		15,000	24,000	1,000	500	1,500	114,500			

2 기	5(1939년)	20,000	25,000	15,000			2,500	10,000		15,000	24,000	1,000	500	1,500	114,500
	6(1940년)	20,000	25,000	15,000			2,500	10,000		15,000	24,000	1,000	500	1,500	114,500
제 3 기	7(1941년)	20,000	24,000	15,000			2,500	9,000		15,000	23,000	1,000	500	1,500	111,500
	8(1942년)	20,000	23,000	15,000			2,500	9,000		15,000	22,000	1,000	500	1,000	109,000
	9(1943년)	20,000	22,000	15,000			2,500	9,000		15,000	22,000	1,000	500	1,000	108,000
	10(1944년)	20,000	22,000	15,000			2,500	9,000		15,000	22,000	1,000	500	1,000	108,000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회회 내선용화대책 10개년 계획에 따른 경리 계획표(지출부문)														
연차		경상부										임시부	합계	
		교품 회비	본부비	인보관 비]	보육 소비]	소개 소비]	학교비	구호비	주택비	상환비	예비비	인보관 건설비]		
제 1 기	1(1935년)	8,500	6,000	18,000	6,500	2,500	1,200	5,000	2,000	1,500	1,000	7,000	59,200	
	2(1936년)	29,000	6,400	22,000	8,000	2,500	1,200	7,500	2,000	1,900	500	18,000	94,000	
	3(1937년)	38,000	6,400	32,000	9,600	2,500	1,800	2,000	2,000	1,500	1,000	22,000	118,800	
제 2 기	4(1938년)	45,000	6,400	40,000	12,000	2,500	2,300	1,500	2,000	1,300	1,500		114,500	
	5(1939년)	45,000	6,400	40,000	12,000	2,500	2,300	1,500	2,000	1,300	1,500		114,500	
	6(1940년)	45,000	6,400	40,000	12,000	2,500	2,300	1,500	2,000	1,200	1,600		114,500	
제 3 기	7(1941년)	44,000	6,400	38,000	11,000	3,000	3,000	1,000	2,500	1,100	1,500		111,500	
	8(1942년)	43,000	6,400	37,000	10,000	3,500	3,500	1,000	2,500	1,100	1,000		109,000	
	9(1943년)	42,000	6,400	36,000	10,000	4,000	4,000	1,000	2,500	1,100	1,000		108,000	
	10(1944년)	42,000	6,400	36,000	10,000	4,000	4,000	1,000	2,500	1,100	1,000		108,000	

6.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회회 193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세입 부문〉

과목	본년도 예산고	전년도 예산고	비교		비고			
			증가	감소	절(節)	전액	부기(附記)	
제1관 자산수입	4,000	4,250		250			자산 106,002엔에 대한 이자이율 약 4부 전망	
1항 자산수입	4,000	4,250		250				
1.자산수입	4,000	4,250		250				
제2관 사업수입	14,250	11,870	2,380		豊崎주택 鶴橋주택 木津川주택	2,045 2,311 3,404	28호(戸)월 17엔 780 11개월 반분 27호 월 201엔, "	
1항 주택수입	8,910	7,500	1,410		堺주택	1,150	74호 월 296엔, "	
1.주택수입	8,910	7,500	1,410		豊崎보육소	1,008	20호 월 100엔, "	
2항 보육료	4,740	4,370	370		鶴橋보육소	1,692	유아 70명 1명 월 120엔, 연 1,008엔	
1.보육료	4,740	4,370	370		木津川보육소 堺보육소 今宮보육소 中本보육소 今福보육소	960 480 200 200 200	유아 130명 1명 월120엔, 100명 연 1,440엔, 30명 연 252엔 유아 80명 1명 월 100엔, 연 960엔 유아 40명 1명 월 100엔, 연 480엔 유아 50명 1명 월 100엔, 4개월분 위와 같다 위와 같다	

3항 수업료	600	0	600		豊崎간이학교 鶴橋간이학교 木津川	120 120 120	학생 35명 한 사람당 월□□ 1년 분 今宮, 中本, 今福 4개월분
1.수업료	600	0	600		堺간이학교 今宮간이학교 中本간이학교 今福간이학교	120 40 40 40	
제3관 보조금	48,000	31,400	16,600				宮内省 500엔, 内務省 600엔, 大阪府 6,500엔, 大阪府 2,000엔, 몰필환자보호비 12,000엔, 생활개선지도비 11,000엔, 생활개선시설비조선총독부 7,000엔, 堺市 800엔, 三井보은회 7,000엔, 三菱 600엔
1항 보조금	48,000	31,400	16,600				
1.보조금	48,000	31,400	16,600				
제4관 기부금수입	6,000	6,364		364			
1항 기부금 수입	6,000	6,364		364			
1.기부금 수입	6,000	6,364		364			
제5관 잡수입	500	500					
1항 잡수입	500	500					
1.잡수입	500	500					
제6관 이월금	1,500	5,125		3,625			
1항 이월금	15,00	5,125		3,625			
1.이월금	1,500	5,125		3,625			
자금이월금	0	5,000		5,000			
합계	74,250	64,509	9,741				

〈세출 부문〉

과목	본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비고		
			증가	감소	절(節)	전액	부기(附記)
제1관 봉급제급	18,500	18,500					
1항 봉급제급	18,500	18,500					
1.직원급	12,840	12,810	30				관장(館長) 3명, 1명 평균 월 100엔, 연 3,600엔
2.제용급	1,860	1,890		30			사무원 14명, 1명 평균 월 55엔, 연 6,240엔
3.여비	1,200	1,200					용인(傭人) 5명, 1명 평균 월 31엔, 연 1,860엔
4.상여	1,900	1,900					
5.잡급	700	700					
제2관 사무비	3,120	2,560	560				豊崎 50엔, 鶴橋 50엔, 木津 川50엔, 堺 30엔, 本部 50, 豊崎 250, 鶴橋 350, 木津川 250, 堺 120, 신설된 세 군데 120엔, 本部 260, 豊崎 30, 鶴橋 30, 木津川 30, 堺 20, 신설된 세 군데 30엔, 本部 30, 豊崎 25, 鶴橋 25, 木津川 25, 堺 15, 신설된 세 군데 30엔, 本部 250, 豊崎 240, 鶴橋 210, 木津川 180, 신설된 세 군데 120엔
1항 사무비	3,120	2,560	560				
1.회의비	50	50					
2.비품비	180	200					
3.소모품비	1,140	1,160	20				
4.인쇄비	400	200	200	20			
5.통신운반비	150	150					
6.전화료	1,000	600	400				
7.잡비	200	200					

제3관 사업비	32,190	29,294	1,896			豊崎 165, 鶴橋 105, 木津川 935, 堆 290, 신설된 세 군데 350, 木津 숙박소 405엔
1항 사업비	4,630	3,890	740			豊崎 210, 鶴橋 100, 木津川 230, 泉尾 30, 신설된 세 군데 30, 木津 20, 堆 10엔
1.공조공과	270	230	40			豊崎 125, 鶴橋 125, 木津川 50엔, 本部 40, 豊崎 400, 鶴橋 270, 木津川 270, 堆 70, 신설된 세 군데 120엔
2.차지료	1,480	640	840	120		豊崎 40, 鶴橋 45, 木津川 20, 堆 10, 신설 세 군데 15엔
3.보험료	630	750		50		
4.영선비	300	350				
5.수도전기료	1,170	900	270			
6.위생비	130	120	10	100		
7.회합비	100	200				
8.표창비	50	200		150		
9.잡비	500	500				
2항 인보사업비	2,000	1,800	200			豊崎 500, 鶴橋 500, 木津川 500, 堆 200, 신설 세 군데 300엔
1.인보잡비	2,000	1,800	200			
3항 직업소개비	2,450	2,450				사무원 3명, 1명 평균 월 50엔, 연 1,800엔, 상여금 200엔
1.직업소개비	2,450	2,450				豊崎 150, 鶴橋 150, 木津川 150엔
4항 보육소비	4,790	4,370	420			보모 14명, 1명 평균 월 30엔(그중 6명 4개월분), 연 3,600엔, 상여금 400엔
1.보육소비	4,790	4,370	420			豊崎 150, 鶴橋 320, 木津川 180, 堆 80, 신설 세 군데 60엔
5항 간이학교비	1,020	1,200		180		豊崎 200, 鶴橋 200, 木津川 200, 堆 두 군데 330, 신설 세 군데 90엔
1.간이학교비	1,020	1,200		180		
6항 주택비	2,000	2,084		84		豊崎 450, 鶴橋 450, 木津川 1,000, 堆 100엔
1.주택비	2,000	2,084		84		
7항 구호비	500	3,000		2,500		
1.구호비	2,000	2,000				
2.몰핀 환자 보호비						
8항 생활개선 지도비	12,800	8,500	4,300			지도원비 8,280엔
1.생활개선 지도비	12,800	8,500	4,300			사업 제비(諸費) 4,520엔
제4관 상환금	1,940	1,480	460			
1항 상환금	1,940	1,480	460			
1.상환금	1,940	1,480	460			
제5관 예비비	500	1,050	550			
1항 예비비	500	1,050	550			
1.예비비	500	1,050	550			
합계	56,350	52,884	3,366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회 1936년도 임시 부문 세출 예산서)

과목	본년도 예산고	전년도 예산고	비교		비고			
			증가	감소	절(節)	전액	부기(附記)	
제1관 인보관 건축비	18,000							
제1항 건축비	15,600							
1. 건축비	15,000						인보관(隣保館) 세 군데, 한 군데 5,000엔	
2. 설계감독비	600						한 군데 200엔	
제2항 설비비	2,400						한 군데 800엔	
1. 설비비	2,400							
합계	18,000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회 직업 보도(輔導) 부문 193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세입 부문〉

과목	본년도 예산고	전년도 예산액	비교		비고			
			증가	감소	절(節)	전액	부기(附記)	
제1관 사업수입	13,820	18,724			5,904			
1항 봉직과 사업수입	4,150	9,319			5,169			
1. 메리아스 공임	4,150	9,319			5,169			
2항 목공과 사업수입	8,670	7,365	1,305					
1. 제품매각대	8,670	7,365	1,305					
3항 이발과 사업수입	0	2,040			2,040			
합계	12,820	18,724			5,904			

〈세출 부문〉

과목	본년도 예산고	전년도 예산고	비교		비고			
			증가	감소	절(節)	전액	부기(附記)	
제1관 제급	7,590	16,298		8,708			봉직과 1명 월 50엔	
1항 제급	7,590	16,298		8,708			목공과 1명 월 60엔	
1. 급료	1,320	2,280		960			봉직과 12명 1명 1일 80전. 320	
2. 수당	6,270	14,018		7,748			일분, 3,070엔	
							목공과 5명 1명 1일 1엔 40전,	
							320일분, 2,240엔	
							10명 1명 1일 30전 320일분,	
							960엔	
제2관 수요비	5,030	1,426	3,604				목공과	
1항 수요비	4,930	1,066	3,864				봉직과 130엔	
1. 재료비	4,370	212	4,158					

2. 공진비	210	0	210	284		목공과 120엔 봉직과 50엔 목공과 50엔
3. 전등전력비	250	534				
4. 잡비	100	230		130		
5. 연료비	0	90		90		
2항 수선비	100	360		260		
1. 기계수선비	100	360		260		
제3관 적립금	200	400		200		기계상환비 적립금
1항 적립금	200	400		200		
1. 적립금	200	400		200		
예비비	0	600		600		
합계	12,820	18,724		5,904		

7. 재산 목록(1936년 3월 말일 현재)

자산		
과목	적요	금액
예금	특별 당좌예금 三和銀行	10,608엔
금전신탁	고노이케(鴻池) 신탁 주식회사 80,000엔 공동 신탁 주식회사 15,000엔	95,000엔
증권	4부 이자 공채증서 액면 400엔	394엔
토지	택지 372평 24	24,567엔
건물	1,640평	61,895엔
집기	전화 4대 외	5,000엔
합계		197,464엔

부채		
과목	적요	금액
차입금(借入金)	오사카부(大阪府)로부터 차입금	10,500엔
합계		10,500엔
자산 부채 공제 순재산 금(金) 186,964엔이다.		

8.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회회 임원 명부

이 사(회 장)	오사카부 지사	安井英二
동(부회장)	오사카부 학무부장	鈴木省吾
동(학무이사)	오사카부 사회과장	大谷繁次郎
동	오사카부 경찰부장	富田健治
동	오사카부 특고과장	杭迨軍二
동	오사카시 조역	三宅正三
동	오사카시 사회부장	志賀志那人

동	홍제회장(弘濟會長)	上山善治
동	오사카시 의사회장(醫師會長)	薄 恕 一
동		小西久兵衛
동	이왕가(李王家) 어경사(御慶事) 기념회장	柳原吉兵衛
평의원	스미토모(住友)합자회사 이사	小倉正恒
동	고노이케(鴻池)합명회사 이사	加藤晴比古
동	노무라(野村)합명회사 사장	野村徳七
동	야마구치(山口)합자회사 사장	山口吉郎兵衛
동	오사카상선(大阪商船) 사장	村田省藏
동	대일본방적회(大日本紡績會) 사장	菊地恭三
동	오바야시구미(大林組) 사장	大林義雄
동	동양방적회(東洋紡績會) 사장	阿部房次郎
동	아마가사키기선회(尼崎汽船會) 사장	尼崎伊三郎
동	선만무역(鮮滿貿易) 동업조합장	粟谷喜八
동	조선물산협회(朝鮮物產協會) 이사	松浦瑛哉
동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사회사업부	西村眞琴
동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사회사업부	濱田光雄
동	오사카직업소개소장	八濱徳三郎
동	오사카□□부식회(扶植會)	藤本松太郎
동	사카이시장(堺市長)	河盛安之助
동	오사카부 학무과장	赤間文三
동	오사카부 사회사업 주사(主事)	松田徳太郎
동		小管秀直
동		長部英三
동		賀來才二郎
동	오사카부 특고내선계장(特高內鮮係長)	陰下次郎
동	츠루하시(鶴橋) 다이이치(第一)방면 상무(常務)	岡本彌藏
동	나가라(長柄)방면 상무	長尾徳太郎
동	이즈오(泉尾)방면 상무	田中藤太郎
동	사카이(堺) 다이니(第二)방면 상무	堀畠利三郎
동	상애회(相愛會) 오사카지부 회장	芳谷武雄
동	교바시(京橋)직업소개소장	山岨一郎
감사	오사카부 사회과 속(屬)	内藤庄平
동	나카즈(中津)방면 상무위원(常務委員)	木田繁三
동	츠루하시 다이니방면 상무위원	紀本善次郎

9.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회회 기부 행위

(1924년 5월 5일 설립 허가 / 1935년 9월 11일 변경 인가)

제1장 목적

제1조 본 법인은 오사카부(大阪府)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 및 향상을 도모하여 내선(內鮮) 융화의 실적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

1. 직업을 소개하는 일.
2. 인사(人事) 상담에 응하는 일.
3. 실비 숙박 설비를 마련하는 일.
4. 순회 구료(救療)를 실행하는 일.
5. 교육 시설을 마련하는 일.
6. 위안오락의 방도를 강구하는 일.
7. 강연회·간담회를 개최하는 일.
8.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제2장 명칭 및 사업소

제3조 본 법인은 재단법인 오사카부협회라고 칭한다.

제4조 본 법인은 사무소를 당분간 오사카시(大阪市) 하가시구(東區) 오테마에초(大手前町)오사카부 청내(廳内)에 둔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 법인의 자산은 전(前) 내선협회회(內鮮協和會) 이사장에게 교부받은 기부금 33,400엔을 기본으로 한다.

설립 후 받은 보조금품, 사업 및 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입, 그 밖의 제 수입은 모두 자산으로 편입한다.

제6조 본 법인의 자산은 국채 중서 혹은 확실한 유가 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확실한 은행, 신용조합에 예입하여 관리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동산(動產)을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본 법인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8조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제9조 본 법인의 매년도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하며, 결산은 그 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임원

제10조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 : 3명 이상.

감사 : 약간 명.

평의원 : 약간 명.

제11조 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이사 가운데에서 1명을 회장, 1명을 부회장, 1명을 상무
이사로 임명하여, 이사의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會務) 전반을 총괄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무이사는 회(會)의 상무를 관장하며 회장·부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평의원은 처음에 설립자가 이를 위촉하며, 이후에 결원의 보충 및 개선(改選)의 경우에는 이사
회에서 이를 위촉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모두 재선을 금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충하며 전임자의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15조 본 법인은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이사회 및 평의원회

제16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단, 동일 사항에 관련해 소집
을 재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며 요청할 경우에는 회장은 임시 이
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소집 개폐는 회장이 관장한다.

제17조 이사회는 예산·결산,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를 통해 결정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평의원은 회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회한다.

제16조 제4항, 제18조의 규정은 평의원회에도 적용된다.

부칙

제20조 본 기부 행위는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본 법인이 해산될 경우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사카부의 사회사업에 기부하도록 한다.

제4. 가나가와현

1. 명칭 :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내선협회
2. 소재지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横濱市) 나카구(中区區) 니혼오도리(日本大通) 1번지 가나가와현 청(神奈川縣廳) 사회과(社會課) 내
3. 대표자 이름 : 가나가와현 지사(知事) 나카다이 기요시(半井清)
4. 설립일자 : 1926년 2월 25일
5. 사업 계획
: 본 회에서는 당면한 문제로 사업의 중점을 교육·교화, 생활 개선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1) 지부의 설치와 아울러 보조

: 사업의 단위로서 지부를 설치한다.

지부는 구역 내 경찰서와 연락을 취하며, 인보관을 중심으로 야학, 강연, 강습회를 거행하고, 10호(戸)内外를 단위로 생활 개선을 조직하여 풍속의 개선, 생활양식 및 생활태도의 개선을 시행해, 각자의 자각을 촉구하고, 필요한 지구에는 지도원을 주재하게 하여 위의 사업들을 지도하도록 한다.

현재 지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요코하마 시내 각 구(區), 요코스카(横須賀), 가와사키(川崎), 오다와라(小田原), 후지사와(藤澤), 가마쿠라(鎌倉), 다카쓰(高津), 송전(松田), 하야마(葉山) 등이다.

본년도 설치해야 하는 지부는 다음과 같다.

- ① 요코하마 제1구 : 고토부키(壽), 야마테(山手), 가가초(加賀町), 이세자키(伊勢佐木) 등 각 경찰서의 관할 구를 한 구획으로 하는 지구의 조선인 인구 1,999명.
- ② 요코하마 제2구 : 도베(戸部), 호도가야(保土ヶ谷), 가나가와 각 경찰서 관할 구를 한 구획으로 하는 지구의 조선인 인구 1,792명.
- ③ 가와사키시(川崎市) 조선인 인구 2,032명.
- ④ 후지사와초(藤澤町) 조선인 인구 502명.
- ⑤ 가마쿠라초(鎌倉町) 조선인 인구 254명.

(2) 인보관 건축

: 요코하마시 나카구(中区) 야마모토초(山元町) 소재 본 회 소유 네기시 회관(根岸會館)을 개축하여 인보관으로 고친다.

(3) 지도원의 설치

: 앞에서 언급한 요코하마 제1구에 지도원을 설치하여 네기시 회관 개축 후의 인보관에 상주하게 하며, 제1구 소재의 조선 출신자의 일상생활을 직접 지도하여 그들의 생활 개선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4) 중견 인물 양성 강습회

: 본 회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본 회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동시에 조선 출신자의 생활개선운동의 지도자로서 적극적 활동을 수행할 인물로 동포의 자각을 촉구할 자각 있는 우수한 중견 인물을 양성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에 있는 각 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관할 구에서 2명의 우수한 조선 청년을 추천받아 10월 10일부터 5일간 구라키군(久良岐郡) 쇼와주쿠(昭和塾)에서 강습회를 개최한다.

(5) 신문 발행

: 각 지부, 그 밖의 지방에서의 생활개선운동, 야학, 강습회 등 구체적 사업을 지도하여 지부원의 생활개선운동을 고무하고 격려하며, 지부가 없는 지방에서는 본 회 회원과 더불어 그 밖의 중견 인물을 중심으로 독자망을 조직하도록 하여 생활 개선, 교화운동의 자료로 삼음과 동시에 조선 출신자의 자각을 촉진하도록 한다.

매월 1회 발행.

(6) 본부 회원의 조직과 그 지도 연락

: 본 회가 주최하는 지도자 양성 강습회 수료자과 더불어 각 지에서 본 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를 본 회 회원으로 조직하며, 그 연락 지도원을 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의 회합을 마련하고, 그 활동 방침에 관해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강습회를 개최하여 각 지부 지도자의 의견을 양성하도록 한다.

(7) 내선(内鮮) 융화 간담회 개최

: 각 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융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반 지부원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다.

(8) 영화회 · 위안회 · 강연회 개최

: 각 지부에서 위안 ·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회 · 강연회를 개최한다.

(9) 생활 조사

: 각 지부를 단위로 그 생활을 조사하여 집계해 인쇄하도록 한다.

(10) 주택 문제

: 무단 토지 대차(貸借)를 정리하여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11) 송환자 여비 보조

(12) 내선(內鮮) 융화 단체 · 야학 · 그 밖의 곳에 장려금 부여

(13) 그 밖의 인사(人事) 상담

6. 1936년도 예산

〈세입 부문〉

과목		예산액	비고
1. 재산수입	1. 부동산 수입	400	
	2. 동산 수입	300 100	
2. 회비		100	
	1. 회비	100	
3. 관공서 기타 장려조성금		6,000	현(縣) 보조금 2,400엔. 岡崎 씨 지정 하부금(下付金) 예정액 2,000엔
	1. 관공서 기타 조성금	6,000	기타 예정 600엔, 내무성에서 1,280엔의 장려금 하부에 대해 설정 예산으로 1,000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4. 기부금	1. 기부금	100 100	
5. 사업수입	1. 사업수입	100 100	
6. 잡수입	1. 잡수입	400 400	
7. 전년도 이월금		2,500	
	1. 전년도 이월금	2,500	
세입합계		9,600	

〈세출 부문〉

과목		예산액	비고
1. 사무비	1. 봉급	2,940	
	2. 여비	1,620	
	3. 제용급(諸傭給)	400	
	4. 제수당	200	
	5. 비품비	250	
	6. 소모품비	70	
	7. 통신운반비	200	
2. 사업비	3,330		
	1. 도서인쇄비	250	
	2. 구호구료비	750	구호구료와 더불어 귀환여비보조

	3. 제회합비 4. 조사 연구비 5. 교화 위안비 6. 연락 지도비 7. 장려비 8. 지부 보조비 9. 잡비	200 300 1,000 150 250 250 180	강습회, 강연회, 영화회, 기타 생활개선 지도비 연락 지도원 수당 내선 용화단체, 야학회, 기타 장려비
3. 네기시회관(根岸會館) 이전개축비		2,500	
	1. 네기시회관 이전개축비	2,500	
4. 기본재산 적립금		200	
	1. 기본재산 적립금	200	
5. 예비비		630	
	1. 예비비	630	
세출 합계		9,600	

7.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내선협회 재산 목록

종목(種目)		액수
토지	없음	1,500엔
건물	2개	
비품	없음	
유가증권	없음	
현금(은행예금)		3,760엔
계		5,260엔

8.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내선협회 임원록

직책명	성명	직업	주소	비고
회장	半井 清	神奈川縣知事		
부회장	石井錦樹	神奈川縣 學務部長		
상무이사	入江 巖	神奈川縣 社會課長		
이사	佐藤彰三	神奈川特別高等課長		
"	瀧田達禪	神奈川縣 曹洞宗 布教師		
"	中島邦太郎	사회사업가	横濱市神奈川區篠原町東称寺.	신임
"	村尾履吉	사회사업가	横濱市神奈川區上反町26	
"	馬渕 曜	馬渕聲啞學校 교장	横濱市神奈川區三澤中町44	
평의원	佐藤彰三	神奈川縣特別高等課長	横須賀市公郷町1,346	신임
"	瀧田達禪	神奈川縣 曹洞宗 布教師		

"	中島邦太郎	사회사업가	横濱市神奈川區篠原町東称寺	
"	村尾履吉	사회사업가	横濱市神奈川區上反町26	
"	山東日偉	妙蓮寺 주지	" " 三澤中町44	
"	馬渕曜	馬渕聲啞學校 교장	" " 菊名町	
"	遠藤至道	横濱教化會長	横須賀市公郷町1,346	
"	佐々井信太郎	神奈川縣匡濟會 상무이사	横濱市神奈川區三澤東町5	
"	關 浩	川崎市 사회과장	" " 篠原町585	신임
"	伊東藏平	川崎경찰서장		"
"	榎本利作	藤澤경찰서장		"
"	樺村捨吉	鎌倉경찰서장		"
"	水島藏吉	横濱市 사회과장		"
"	久保山常雄	横須賀市 社會勸業課長		"
"	大野守衛	藤澤町町長		"
"	清川來吉	鎌倉町町長		"
"	磯邊利作	横須賀경찰서장		

9.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내선협회 기부 행위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제1조 본 회는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내선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가나가와 현청(縣廳) 사회과(社會課)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 회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사회적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

1. 내선(內鮮) 융화와 관련한 조사 연구.
2. 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항.
3. 교육 · 교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 회는 기본 재산을 둔다.

회계 연도 말에 사업비 가운데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 중으로 이월할 수 있다.

제6조 기본 재산 가운데 현금은 국채 증권, 그 밖에 확실한 유가 증권을 매입하거나 확실한 은행의 예금 또는 우편저금의 방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기본 재산의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본 회의 사업비는 다음과 각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2. 회비.
3. 기부금.
4. 보조금.
5.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6. 그 밖의 잡수입.

사업비의 관리 방법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본 회의 예산은 매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결산은 평의원회의 인정을 거쳐야 한다.

제4장 회원

제10조 본 회의 회원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눈다.

1. 특별회원 : 본 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 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독지가 가운데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통상회원(通常會員) : 본 회에 한꺼번에 금(金) 10엔 또는 매년 금 1엔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제11조 본 회의 사업 성적은 매년 1회 회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5장 임원

제12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 약간 명.
2. 평의원 : 약간 명.

제13조 이사 가운데 1명을 회장으로, 1명을 부회장으로, 1명을 상무이사로 임명한다.

회장은 가나가와현 지사직에 있는 자, 부회장은 가나가와현 학무부장의 직에 있는자를 추대한다.

상무이사는 가나가와현 사회과장의 직에 있는 자를 임명한다.

그 밖의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평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을 금지한다.

보궐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6장 직무권한

제16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반들어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유고시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본 회의 사업과 관련해 회장의 자문에 따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제7장 의결기관

제18조 본 회는 매년 2회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본 회의 예산을 의결에 부치고, 전년도의 결산 및 업무 집행의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에 회장은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단, 동일 사항에 대해 소집을 2회 했으나 출석 인원이 여전히 총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평의원회의 결의는 출석자 과반수에 따르며, 가부 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지부(支部)

제21조 본 회는 현(縣) 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에 관한 세칙(細則)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부칙(附則)

제22조 본 기부 행위의 시행세칙은 회장이 정한다.

제23조 본 기부 행위는 평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또한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을 할 수 있다.

제24조 본 회를 해산할 경우에 본 회 소속 재산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동종(同種)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사업 단체에 기부하도록 한다.

제5. 효고현

1. 명칭 : 재단법인 효고현 내선협회
2. 소재지 : 효고현 현청(神奈川縣廳) 학무부(學務部) 사회과(社會課) 내
3. 대표자 이름 : (효고현 학무부장) 오쿠다(奥田久七郎)
4. 설립일자 : 1925년 10월 29일(재단법인 설립 인가)
5. 사업 계획
: 재단법인 효고현 내선협회 1936년도 사업 계획

(1) 사무비 : 1,131엔

: 총괄적 사무비에서 전임서기 1명을 두며, 서무 그 밖의 지도 · 조사에 유감스러움이 하지 않도록 사회과 및 특별고등경찰과, 보안과 및 기타 조선인 다수 거주 지역과 관련 있는 자 가운데에서 적당한 자를 유급 혹은 무급으로 본회의 사무를 촉탁하여 사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計上)한다.

① 봉급 및 수당 : 720엔

전임서기 1명 봉급 월 35엔, 연 420엔.

촉탁 10명. 단 유급 5명 월 수당 1명분 5엔, 연 300엔.

② 여비 : 200엔. 직원 여비.

③ 혜여(惠與) : 75엔.

④ 잡비 : 136엔.

비품비 20엔.

소모품비 30엔.

도서 및 인쇄비 30엔.

통신운반비 30엔.

잡비 26엔.

(2) 사업비 : 6,607엔.

① 교육 · 교화 시설

㉠ 간이 교육 시설장려비 : 1,100엔.

: 무코군(武庫郡) 무코촌(武庫村)에 거주하는 조선인 자제의 교육 기관으로 설치할 간사이(關西) 보통학동(普通學童) 경영비로 1,100엔(경비 총액 2,200엔의 2분의 1)을 보조하도록 한다.

㉡ 취학 장려 : 400엔.

: 학령 아동 중 미취학 아동 1,564명에 달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취학 장려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빈곤 아동은 연 1,00엔의 장려금을 교부하며, 본년도에 40명분의 400엔을 마련하며 점차

장려자의 수를 증가시켜 가도록 한다.

④ 교풍(矯風) 기관의 설치와 함께 교풍 사업의 장려비 : 420엔.

: 다수의 조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경찰서장, 촌장, 지역 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풍회를 창설하게 하여, 풍속·관습의 개선 및 향상, 위생 사상의 보급, 국민적 행상 및 풍습의 장려, 주택의 공동 청소 등에 힘을 쏟도록 하며, 본년도에 아마가사키시(尼崎市), 무코촌(武庫村), 니시노미야시(西宮市), 고베시(神戸市), 히메지시(姫路市), 아카시시(明石市) 등 모두 여섯 군데에 창설하여 그 경비로 한 곳 평균 50엔의 창설 장려금을 사업비로 한 군데 당 20엔을 교부하도록 한다.

⑤ 강습회 경비 : 180엔.

: 일본어, 일본식 예절 등을 가르치고, 국민적 행사 및 풍습의 강습회를 여섯 군데에서(한 곳 평균 100명, 강습 기간 3일. 단, 야간) 개최하도록 한다. 그 경비 180엔(한 곳 평균 경비 30엔)을 계상(計上)한다.

⑥ 강연·간담회 경비 : 100엔.

: 관련 지역에 일본인 및 조선인 가운데 대표자, 그 밖의 현지 위원, 경찰서장 등의 협화(協和) 사업과 관련한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며, 또한 교육·교화와 관련한 활동사진,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간담회 10회분 100엔.

⑦ 구호비 : 1,500엔.

⑧ 구호비 : 900엔.

: 몰핀 환자 치료비, 몰핀 환자 중 중환자에 대해 치료를 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로 그 입원 치료비 30명분(1명 당 1일 3엔, 10일간) 900엔을 계상(計上)한다.

⑨ 귀선(歸鮮) 보호비 : 600엔.

⑩ 인보관(隣保館, 林田善隣館) 경영비 : 2,707엔.

⑪ 봉급·잡비, 기타 관비(館費) : 2,207엔.

⑫ 사업비 : 680엔.

ⓐ 직업보도(職業輔導)

: 생업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며, 미성 재봉 그 밖의 부업 강습을 실시하고, 생업의 개량 및 취업 알선을 실시한다.

ⓑ 매월 하야시다구(林田區)에 거주하는 조선인 및 구내(區內)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선(內鮮) 융화와 관련한 강연·간담회를 개최한다.

ⓒ 하야시다구 내의 소학교 아동 및 미취학 아동 가운데 특히 일본어가 부족한 자에게 보습지도를 실시한다.

ⓓ 조선인 가운데 특히 우수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그 밖에 협화 사업의 공로자를 기원절(紀元節)에 표창한다.

ⓔ 특히 우수한 자로, 실직, 그 밖에 본인 또는 가족의 병, 재난 등으로 인해 곤궁한 처지에 있는 자를 일시적이나마 구호한다.

ⓕ 그 밖에 여러 인사(人事) 상담, 셋집 알선, 숙박 등의 보호구제를 실시한다.

④ 조사비 : 200엔.

: 무코촌, 아마가사키, 니시노미야에 사는 조선인의 특이한 활동 상황 및 생활 상황, 각종 분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협화 사업 수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3) 예비비 : 30엔.

6. 1936년도 재단법인 효고현 내선협회 세입·세출 예산

〈세입 부문〉

과목 (과목)	본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비고
			증가	감소	
제1관(款) 재산수입	103엔	70엔	33엔		
제1항(項) 예금이자	103	70	33		
제2관(款) 보조금	7,060	2,100	4,960		
제1항(項) 효고현 보조금	1,000	1,200		200	
제2항(項) 효고현 구제협회 보조금	2,900	900	2,000		
제3항(項) 국고 보조금	3,160	0	3,160		
제3관(款) 잡수입	605	1,000		395	
제1항(項) 기부금	600	1,000		400	
제2항(項) 잡입	5	0	5		
세입총계	7,768	3,170	4,598		

비고〉 본 예산은 국고 보조금 교부액의 내정에 따라 추가·변경된다.

〈세출 부문〉

과목	본년도 예산고	전년도 예산고	비교		비고
			증가	감소	
제1관(款) 사무비	1,131	170	961		서기급 420엔 1명분, 월급 평균 35엔
제1항(項) 사무비	1,131	170	961		총탁급 300엔 5명분, 월수당 평균 5엔
제1목(目) 봉급·수당	720	60	660		
제2목 여비	200	0	200		
제3목 혜여(惠與)	75	40	35		
제4목 잡비	136	70	66		비품비 20엔, 소모품비 30엔, 도서 및 인쇄비 30엔, 통신운반비 30엔, 잡비 26엔.
제2관(款) 사업비	6,607	2,940	3,667		
제1항(項) 교육교화시설비	2,200	400	1,800		
제1목(目) 간이 교육시설 장려비	1,100	300	800		
제2목 취학장려비	400	0	400		
제3목 교통기관설치장려비	420	0	420		
제4목 강습회비	180	0	180		
제5목 강연간담회비	100	100	0		

제2항(項) 구호비	1,500	0	1,500		
제1목 구료비	900	0	900		
제2목 귀선보호비	600	0	600		
제3항(項) 선린관비(善隣館費)	2,707	2,490	217		주사급 600엔 1명분 월 50엔 서기급 360엔 1명분 월 30엔 □□급 183엔 1명분 여비 50엔, 혜여(惠與) 80엔 비품비 20엔, 소모품비 30엔, 통신운반비 20엔, 비가과(備家科) 540엔 1개월 45엔 12개월분 수도 및 점등비 84엔 1개월 7엔 12개월분 수선비 50엔, 잡비 10엔 직업보도비 300엔, 강연간담회비 120엔, 학습지도비 100엔, 공로자 및 우수자 표창 비 30엔, 구호제비 100엔, 기타 제비 30엔
제1목 봉급	960	960	0		
제2목 잡급	313	130	183		
제3목 관비(館費)					
제4목 사업비	680	600	80		
제4항(項) 조사비	200	50	150		
제1목(目) 조사비	200	50	150		
제3관(款) 예비비	30	60		30	
제1항(項) 예비비	30	60		30	
세출합계	7,768	3,170	4,598		

비고〉 본 예산은 국고 보조금 교부액의 내정에 따라 당초 예산을 변경한 것이다.

7. 재단법인 효고현 내선협회 재산 목록

- 주식회사 주고(十五) 은행 고베(神戸) 지점
보호 예금 : 8,273엔 5전.
- 주식회사 주고 은행 고베 지점
특별 당좌예금 : 3,068엔 64전.
- 의자, 테이블, 기타 집기 일체
견적액 : 200엔.

8. 재단법인 효고현 내선협회 임직원 명부

임직원	성명	비고
회장이사	奥田久七郎	효고현 학무부장
부회장이사	田口英太郎	효고현 사회과장 겸 사회교육과장
상무이사	小田直藏	효고현 사회사업 주사(主事)
사무총탁	瀬崎利雄	효고현 사회과 근무. 효고현 소속
동	大谷 润	동
동	稻繼助次	동
동	新庄 豊	효고현 사회사업 주사보(主事補)

(하략)

9. 재단법인 효고현 내선협회 기부 행위

제1조 본 회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를 도모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내선(內鮮) 융화와 관련한 사항을 연구하는 일.
2. 실비 숙박소를 설치하는 일.
3. 직업을 소개하는 일.
4. 곤궁한 자를 보호·구제하는 일.
5. 고학생을 보호·구제하는 일.
6. 내선어(內鮮語) 연구회를 개설하는 일.
7. 약학·강습회를 개최하는 일.
8. 내선 융화와 관련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일.
9. 내선 융화와 관련한 잡지를 발행하는 일.
10. 내선 융화와 관련한 공로자 및 모범 조선인을 표창하는 일.
11. 관혼상제 등에 위원을 통해 경조(慶弔)의 뜻을 표하는 일.
12. 앞의 각 항목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본 회는 효고현 내선협회라고 칭하며 사무소를 효고현청 안에 둔다.

제4조 본 회는 고베시(神戸市) 후키아이구(葺合區) 츠츠이초(筒井町) 114번 저택의(四金永達)의 기부와 관련한 금액 15,000엔을 기본 재산으로 정한다.

기본 재산으로 지정되어 각종 보조 혹은 기부 재산은 기본 재산에 편입한다.

제5조 기본 재산으로 사업 경영을 위해 소비하지 않은 재산은 확실한 은행의 예금 혹은 제 공채, 권동채권, 농공채권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앞 항의 재산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6조 본 회의 경비는 다음에 예시하는 경우에 지불한다.

1. 기금(基金) 이자.
2. 기부금.
3. 보조금.
4.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5. 그 밖의 잡수입.

제7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평의원의 인정을 거쳐야 한다.

제8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 7명.
1. 평의원 : 20명 내지 30명.

제9조 이사 가운데 1명을 회장으로, 1명을 부회장으로, 1명을 상무이사로 임명한다.

회장으로는 효고현 학무부장의 직에 있는 자, 부회장으로는 효고현 사회과장의 직에 있는 자를 위촉한다.

앞 항 이외의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거로 뽑는다. 다만, 본 회의 설립 당초에 한해 회장이 선임한다.

전 항의 이사 가운데 1명 이상은 고베시에 거주하는 조선인이어야 한다.

상무이사는 이 조 제3항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평의원은 찬조원(贊助員)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이사가 2년, 평의원이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을 금지한다.

보궐로 인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무이사는 회장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 부회장 모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본 회는 고문을 들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위탁한다. 고문은 본 회의 사업과 관련해 회장의 자문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은 매년 2월과 6월, 2회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2월 평의원회에 본 회의 예산을 의결에 부쳐야 하고, 또한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6월 평의원회에서는 전년도의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제15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은 반드시 평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6조 평의원회는 현재 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평의원회의 소집이 두 번 있었으나 출석 인원이 현재 회원의 3분의 1 이상에 미치지 않으면 현재 출석자로 결의를 정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결의는 출석자 과반수에 따르며, 가부 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대행한다.

제17조 평의원회에서 선거를 할 경우에는 1명 당 무기명 투표를 하며, 유효 투표 가운데 최다수를 획득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며, 연령이 같을 때에는 의장 추첨으로 정한다.

앞 항의 선거에서 평의원회 의결에 따른 지명 추천 혹은 연명(連名) 투표법을 이용할 경우에 앞 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8조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독지가를 찬조원(贊助員)으로 삼는다.

제19조 본 회의 찬조원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눈다.

1. 특별회원

: 본 회에 한꺼번에 금액 300엔 이상 또는 매년 50엔 이상을 기부하는 자.

1. 통상회원(通常會員)

: 본 회에 한꺼번에 금액 50엔 이상 또는 매년 10엔 이상을 기부하는 자.

제20조 본 회의 성적은 매년 1회 찬조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본 기부 행위의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세칙(細則)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본 기부 행위는 제1조, 제23조를 제외하고,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의 결의는 현재 회원의 반수 이상의 출석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자가 없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3조 본 회를 해산할 경우에 본 회 소속 재산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동종(同種)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자선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제6. 아이치현

1. 명칭 : 아이치현협화회

2. 소재지 : 아이치현 현청(縣廳) 사회과(社會課) 내

3. 대표자 이름 : 회장 시노하라(篠原英太郎)

4. 설립일자 : 1936년 10월 8일

5. 사업 계획

: 아이치현협화회 사업 계획

(1) 사업 내용

: 협화 사업과 관련해 국가와 현의 방책을 익찬(翼贊)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① 내선(內鮮) 협화과 관련한 조사·연구.
- ② 교육·교화와 관련한 사업.
- ③ 풍속·거주 등 생활 전반에 이른 교풍(矯風) 사업.
- ④ 각종 보호·구제 사업.
- ⑤ 그 밖의 협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사업 계획(제1기)

① 협화회 지부 설치

② 귀국자 보호

: 경찰, 현지 위원, 사회과 주재원, 기타와 상시 연락을 유지하여 철저함을 기한다.

- ③ 거주자에 대한 시설
- ㉠ 지도원(指導員) 창설
: 지도원은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
- ㉡ 교육과 관련한 사업
- A. 취학 장려
 - ⓐ 기숙 수속에 힘쓴다.
 - ⓑ 의무교육 관념의 보급.
 - ⓒ 보조 교육 기관의 조성.
 - B. 탁아소 · 유치원 조성
 - ㉢ 교풍(矯風) 교화 사업
 - ⓐ 생활양식의 일본화 향상.
 - ⓑ 중견 인물의 양성.
 - ⓒ 교화 강습회 개최 인쇄물 간행 배포.
 - ⓓ 계(契)의 지도 개선.
 - ㉣ 주택과 관련한 사항
 - ⓐ 주택의 임대 · 임차 문제 해결.
 - ⓑ 집세 지불 지도.
 - ㉤ 직업과 관련한 사항
 - ⓐ 고용 조건의 개선.
 - ⓑ 직업 보도(補導) 및 지도.
 - ㉥ 보호 사업
 - ⓐ 마약 중독 환자 치료 구제.
(공사(公私) 시설에 위탁, 치료를 한다.)
 - ㉦ 협화 사업 취지 보급과 관련한 사항
 - ⓐ 학교 · 청년단, 그 밖의 사회 시설과 연락을 취하는 것 외에, 강화회(講話會) 개최 팜플릿 간행 배포.

6. 아이치현협화회 1936년도 예산

〈세입 부문〉

관(款)	항(項)	목(目)	금액	비고
제1관 보조금	제1항 보조금	제1목 국고 보조금	9,060	
		제2목 현비(縣費) 보조금	9,060	
		제3목 시정촌(市町村) 보조금	3,060	
			5,000	
			1,000	

제2관 기부금	제1항 기부금	제1목 기부금	200 200 200	
제3관 잡수입	제1항 잡수입	제1목 잡수입	40 40 40	
계			9,300	

〈세출 부문〉

관(款)	항(項)	목(目)	금액	비고
제1관 사무비	제1항 사무비	제1목 서기급 제2목 여비 제3목 잡급 제4목 비품비 제5목 소모품비 제6목 잡비	1,540 1,540 360 250 720 50 60 100	월 60엔 1명 6개월 지부(支部)직원 수당 연120엔, 12지부 6개월분
제2관 회의비	제1항 회의비	제1목 이사회비 제2목 평의원회비 제3목 장립총회비	135 135 45 40 50	1회 15엔 3회분 1회 20엔 2회분
제3관 사업비	제1항 마약중독환자 치료비 제2항 생활개선비	제1목 마약중독환자위탁 치료비 제1목 지도원비	7,400 1,200 1,200 3,000 3,000	갑종(甲種)지도원 1명 월 50엔, 5명 6개월분 갑종지도원 여비 연 100엔, 5명 6개월분 갑종지도원 사무소비 월 15엔, 다섯 군데 6개월분 을종(乙種)지도원 20명 1명 수당 연 5엔 을종지도원 모임 1회 100엔 2회분
	제3항 보호비	제1목 보호비	1,700 1,700	1명 1일 50전 400명분 숙박, 급식비, 귀국보호비 1명 15엔 100명분
	제4항 교화사업비	제1목 보조교육기관조성 보조금 제2목 탁아소·유치원조성 보조금 제3목 강화회비 제4목 인쇄물강행비	500 250 250 400	교사수당 연 100엔 6개월분. 한 곳 2명 5군데분 한 곳 50엔 다섯 군데분 1회 25엔 10회분 1부 4전 10,000부대금
	제5항 잡비	제1목 잡비	100 100	

제4관 조사비	제1항 조사비	제1목 조사비	150 150 150	
제5관 예비비	제1항 예비비	제1목 예비비	75 75 75	
합계			9,300	

7. 임원 명부

〈회장〉 지사	篠原英太郎
〈부 회장〉 학무부장	永井 浩
동 경찰부장	早川 元
〈상무이사〉 사회과장	宇佐美 毅
동 특별고등과장	秋葉保廣
〈의사〉 위생과장	齋藤俊雄
동 형사과장	永山宗五郎
동 교육과장	山口 泉
동 사회교육과장	동(겸직)
동 직업과장	三澤房太郎
동 신에이경찰서장(新栄警察署長)	中村治永
동 나고야시 사회부장	松橋基彥
동 나고야시 교육부장	坂本 輝
동 나고야시 보건부장	金原庄治郎
동 현병분대장	白濱重夫
동 나고야지방재판소 검사	河村泰三
동	淺野甚七
〈감사〉 회계과장	小川彌太郎
동 나고야시 수입역(收入役)	山田久米雄
〈평의원〉 검사정	棚木悅太郎
동 총무부장	足立收
동 현병대장	梶 榮次郎
동 나고야시 시장	大岩勇夫
동 나고야시 조역(助役)	神田純一
동 나고야 상공회의소 회두(會頭)	岡谷惣助
동 나고야 상공회의소 부회두(副會頭)	青木謙太郎

동 동	豊田利三郎
동 오카자키시장(岡崎市長)	管野經三郎
동 도요하시시장(豊橋市長)	神戸小三郎
동 이치노미야시장(一宮市長)	森林右衛門
동 세토시장(瀬戸市長)	泉崎三郎
동 현회(縣會) 의장	野田正昇
동 정촌장회(町村長會) 회장	松澤清次郎
동 중부일본사회사업연맹 이사장	矢田績
동 중선회(衆善會) 이사장	伊藤次郎左衛門

8. 아이치현협화회 회칙

제1조 본 회는 아이치현협화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사무소는 아이치현 현청(縣廳) 사회과 내에 둔다.

제3조 본 회는 아이치현의 내선협화(內鮮協和)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내선협화와 관련한 조사·연구.
2. 교육교화와 관련한 사업.
3. 풍속·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교풍(矯風) 사업.
4. 각종 보호·구제 사업.
5. 그 밖의 협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직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상무이사 : 2명
- 이사 : 약간 명
- 감사 : 약간 명
- 평의원 : 약간 명
- 간사 : 약간 명
- 서기 : 약간 명

제6조 회장으로 아이치현 지사를 추대한다.

부회장으로는 학무부장 및 경찰서장을 추천한다.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사·감사·평의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간사 및 서기는 회장이 위촉하거나 임면한다.

제7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무이사는 회장의 명령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중요한 회무에 참여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사무를 검사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자문에 따라 회무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간사 및 서기는 회장의 명령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를 조직하여 예산, 그 밖의 중요한 회무를 결의하고, 결산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본 회의 경비는 사업 수입, 보조금,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본 회칙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칙(細則)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본 회칙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경을 할 수 없다.

제7. 야마구치현

1. 명칭 : 야마구치현협회

2. 소재지 : 야마구치현 현청(縣廳) 내

3. 대표자 이름 : 도츠카(戸塚九一郎)

4. 설립일자 : 1936년 10월 29일

5. 사업 계획

(1936년도 야마구치현협회 사업 계획)

: 본 회는 그 설립 취지에 비추어 야마구치현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교화·선도하여 국민 정신을 함양하게 함과 동시에, 그 정신과 물질 양 방면의 생활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해화 공존 동영(國民諧和共存同榮)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관련 행정 제 기관은 물론, 교회 단체, 사회 사업 단체 등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여 각지의 실정에 따라 원급을 잘 조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이사회

: 연 2회 개최한다.

(2) 조사·연구

: 생활 상태, 풍속, 습관 등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설에 대해 연구한다.

(3) 중견 인물 양성

: 각종 시설의 실적을 거두기 위해 중견 인물을 양성하도록 하며, 관련 있는 곳에서 강사를 의뢰하여 강습회를 개최한다. 연 1회 이틀간.

(4) 교화 강연회

: 국민 정신 함양, 그 밖의 일반 교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 여덟 군데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5) 간담회

: 교풍(矯風) 교화를 철저히 도모하기 위해 지방 지도자의 간담회 또는 마을 간담회를 개최한다.

(6) 미취학 아동 예비교육

: 취학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실시하여 취학에 도움을 주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자에게 조성(助成)을 하도록 한다.

(7) 간이 교육 시설

: 일본어를 모르는 자 혹은 무교육자에게 야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마련하는 자를 조성하도록 한다.

(8) 보덕회(報德會) 장려

: 상호 수양의 방법으로 보덕회를 설치하도록 힘쓴다.

(9) 국민적 행사 적극 장려

: 국기 계양, 신사 참배, 그 밖의 국민적 행사를 적극 실시하기 위해 지도 · 장려하도록 한다.

(10) 생활 개선 지도

: 생활양식의 일본화, 생화 내용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생활 개선 표준을 정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도록 한다.

(11) 위생 사상 보급

: 간담회 등을 개최할 때에 위생 관념을 보급하도록 하는 것 외에, 수시로 인쇄물 등을 배포, 그 밖의 방법으로 위생 관념을 철저히 보급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12) 표창

: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도록 한다.

(13) 협화 관념의 보급

: 일반인에게 협화 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신문, 잡지를 이용하여 기사를 게재하는 것 외에, 리플렛 등의 인쇄물 등을 배포하도록 한다.

(14) 귀환자 보호

6. 1936년도 야마구치현협회회 세입 · 세출 예산

〈세입 부문〉

과목	금액	설명
보조금	4,510엔	
국고 보조금	4,210	
현비(縣費) 보조금	300	
기부금	500	
기부금	500	
잡수입	20	
잡수입	20	
계	5,030	

〈세출 부문〉

과목	금액	설명
사무비	390	
수당	100	
여비	100	비품비 20엔, 소모품비 30엔, 통신운반비 50엔, 도서 및 인쇄비 40엔
수요비(需要費)	140	
잡비	50	
회의비	30	
이사회비	30	
사업비	4,580	
조사 연구비	100	증견인물 양성 강습회 1회 140엔
증견인물 양성비	140	교화 강연회 1회 30엔 8회 240엔, 마을 및 지도자 간 담회 1회 40엔 4회 160엔
교화 지도비	500	기타 교화지도 제비 100엔
교육수양 시설비	600	미취학아동 예비교육시설 200엔, 간이교육시설 150엔, 보덕회장려 1단체 15엔 10단체 150엔
생활개선비	290	국민적 행사장려 100엔
표창비	30	생활개선 240엔, 위생사상보급 50엔
협회사상 보급비	40	
귀환보호비	2,880	
예비비	30	
예비비	30	
계	5,030	

7. 야마구치현협회회 임원

〈회장〉 지사

戸塚九一郎

〈이사장〉 학무부장

平本義隆

〈상무이사〉 사회과장

杉田三朗

〈의사〉 위생과장

杉木榮

동	특고과장	長野俊雄
동	학무과장	古山文夫
동	사회교육과장	山本雅治
〈감	사〉 서무과장	山下太郎
	동 회계과장	藤井清一
〈고	문〉 총무부장	辻野三郎
	동 경제부장	奥田茂造
	동 경찰부장	菊池盛登

8. 야마구치현협회 회칙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제1조 본 회는 야마구치현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사무소를 야마구치현 현청(縣廳) 내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 회는 야마구치현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국민 정신을 함양시키고 그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 친화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생활 상태를 조사·연구하는 일.
2. 교육 교화 시설을 마련하는 일.
3. 생활을 보호·지도하는 일.
4. 귀환자를 보호하는 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 회의 자산은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제6조 본 회의 자산은 국채증권 혹은 확실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확실한 은행에 예입하여 이자를 추구하도록 한다.

제7조 본 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8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제9조 본 회의 예산은 매년도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결산은 그 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이사 : 10명 이내.

감사 : 약간 명.

제11조 회장은 야마구치현지사의 직에 있는 자가 맡는다.

제12조 이사 가운데 이사장 1명, 상무이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야마구치현 학무부장의 직에 있는 자, 상무이사는 야마구치현 사회과장의 직에 있는 자가 맡는다.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이사 가운데 관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선은 금지한다.

앞 항의 보결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이사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상무이사는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학식이 있는 경험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6조 본 회에 간사, 서기 및 촉탁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간사는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상무이사 및 간사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18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해 소집을 재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 3분의 1 이상 혹은 감사가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에 이사장은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제19조 이사회는 예산, 결산,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 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附則)

제21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細則)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본 회칙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제8. 후쿠오카현

1. 명칭 : 후쿠오카현 사회사업협회 협화부
2. 소재지 : 후쿠오카현 현청(縣廳) 내
3. 대표자 이름 : 회장 후쿠오카현 지사(知事) 하타야마(畠山四男美)
4. 설립일자 : 1936년 10월 5일
5. 사업 계획

(후쿠오카현 사회 사업 협회 협화부 사업 계획)

: 협화부의 사업을 크게 사회 사업 협회 본부 직영에 의한 사업과 조선인 알선소에 의한 사업으로 나눈다.

(1) 협회 본부 직영에 의한 사업

① 영사회(映寫會)

: 현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가장 많은 지역 10군데를 선정하여 내선(內鮮) 융화, 위생, 국민 정신 진작 등과 관련한 활동사진 영사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協議會)

: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시정촌(市町村) 및 현 내의 각 경찰서 당국 및 현지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선인 보호 · 지도과 관련된 협의회를 개최한다.

③ 강습회

: 조선인 중, 중견 인물이 될 만한 청년 40명을 모아 별기 요항(別記要項)에 따라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회 기간 중 강습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강습원 각자에게 출석 수당 2엔을 지급한다.

④ 야간 학교

Ⓐ 개설지

: 후쿠오카시(福岡市), 도바타시(戸畠市), 구루메시(久留米市), 이이즈카시(飯塚市) 등 네 군데 회장(會場)은 소학교.

Ⓑ 개설 기간

: 1개월로 하며,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개설한다.

Ⓒ 실시 방법 및 목적

: 미혼인 남녀 청년 각 40명을 각각 별도로 1개월간 개설하며, 남자에게는 주로 국민 교육을 하고 풍속, 습관 및 위생, 생활의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여자에게는 위의 교육 이외에 대략적인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둔다.

Ⓓ 교사

: 남자부는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소학교장 혹은 공민학교장에게, 여자부는 조선인에 대해 이해하는 여교원에게 위탁하여, 학교 개설 전 협화 사업 및 야간 학교의 취지를 알리고, 1개월간의

교수 개목(概目)을 제작한 뒤 실시한다.

④ 기타

: 야간 학교에서는 수시로 좌담회, 의견, 감상 발표회 등을 개최한다. 또한 앞 항 ③ 강습회를 통해 양성한 중견 인물을 투입해 야간 학교를 지원하도록 한다.

⑤ 귀국자 보호

(2) 조선인 알선소 사업

: 본 알선소는 현재 야하타시(八幡市)에 거주하는 조선인 보호 단체인 마루야마 학원(丸山學院. 현 경영자 다마(幸田)가 가까우며, 그 사업을 북선(北鮮)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마루야마 학원의 토지, 건물을 양도받아 본 시설을 조선인 교화 지도에 사용하도록 한다.

6. 1936년도 후쿠오카현 사회 사업 협회 협회부 수지 예산서

〈수입 부문〉

1. 기부금 700엔		
금액	비목(費目)	설명
700엔	기부금	
2. 보조금 6,400엔		
3,400	국고 보조금	
1,000	조선총독부 보조금	
2,000	현비(縣費) 보조금	
3. 보육료 120엔		
120	보육료	1명 월50전 40일분 6개월분
4. 이월금 490엔		
490	사회사업협회비 이월금	
5. 잡수입 5엔		
5	예금이자	
수입합계 7,715엔		

〈지출 부문〉

1. 사업비 7,615엔		
금액	비목(費目)	설명
4,940엔	조선인 알선소비	
100	영사회비	
50	협의회비	

275	강습회비	
600	야간학교비	
1,650	귀국자 보호비	
2. 예비비 100엔		
100	예비비	
지출합계 7,715엔		

비고) 귀국자 보호비는 본 예산 외에 경찰부 2,300엔이 있다.

〈조선인 알선소비〉

금액	비목(費目)	설명
1,020엔	봉급	소장 1명 월급 70엔 6개월분 420엔 서기 1명 월급 40엔 6개월분 240엔 여교사 1명 월수당 10엔 6개월분 60엔 보모 2명 1명 월급 25엔 6개월분 300엔
365	제급(諸給)	소사 1명 월급 20엔 6개월분 120엔 여비 150엔 상여비 봉급급료 1개월분 95엔
600	비품비	첫 조달비(별지와 같다) 500엔 보통 비품비 100엔
560	소모품비	지필목류(紙筆墨類) 30엔, 신탄(薪炭) 100엔, 수도료 30엔, 전등류 100엔, 교재대 100엔, 간식대 180엔, 기타 20엔
100	도서 및 인쇄비	
100	통신운반비	
100	제 회합비	
15	화재 보험료	보험 가격을 5,000엔으로 한다. 1,000분의 6
2,000	수선 및 보상비	
80	잡비	
계 4,940엔		

〈첫 조달비 내역〉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책상	5	600엔	3,000엔	
의자	10	350	3,500	
등사판(贍寫版)	1	2,000	2,000	
신발장 우산꽂이	1	3,000	3,000	
책꽂이	2	2,000	4,000	
긴 책상	15	300	4,500	4인용
긴 의자	15	200	3,000	
시계	1	1,000	1,000	

화로	대 3 소 2	1,000 500	4,000	
□대	1식	3,000	3,000	
그네	1	1,000	1,000	
오르간	1	3,000	3,000	
모래밭	1	1,000	1,000	
도판(塗板)	대 1 소 1	2,000 1,000	3,000	
교구	1식		3,000	전국 일본지도, 작법도구 등
완구			2,000	
기타 잡품			5,000	
서적상자	2	500	1,000	
계			50,000	

〈지도자 강습회비〉

금액	비목(費目)	설명
25엔	강사사례	1명 1일 5엔 5일분
50	회장비	1일 10엔 5일분
100	강습원 식비	1명 1일 50전 40명 5일분
80	수당	1명 2엔 40명분
5	인부비	1명 1일 1엔 5일분
15	잡비	강사, 자동차, 다과, 지필묵(紙筆墨) 등
계 275엔		

〈야간학교비(한 군데 분)〉

금액	비목(費目)	설명
30엔	교사 수당	1명 1개월분
20	교재비	1명분 50전 40명분
5	소사	1명 1개월분
20	잡비	
계 75엔		
합계 600		네 군데 분(한 군데에서 1개월. 남녀 별도로 개설)

〈출전 : 桶口雄一 編 「協和會事業概要」, 『協和會關係資料集 : 戰時下における在日朝鮮人統制と皇民化政策の實態史料』 1, 東京:綠蔭書房, 1995년, 13~204쪽〉

2) 중앙협회회 요람(1940)

목차

-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연혁
-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설립 취지서
-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기부행위
-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임직원
-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1940년도 사업 계획
-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1940년도 예산
- 협회 사업 기구
- 지방 협회 사업 단체 결성조(結成調)

1.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연혁

정부는 1936년도부터 협회 사업에 착수하여, 약간의 경비를 계상(計上)하여 이를 주요 부현(府縣)에 배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방침 아래 동일한 보조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도록 상세한 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관계 부현에 협회 사업 단체를 조직하게 하여 인심과 관련 있는 미세한 문제의 처리, 그 밖의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해 온 결과, 1938년 말에 31개 도부현(道府縣)에 31개 단체가 결성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들 지방 단체의 연락 조정에 나선과 동시에 정부 사업을 지원하여 보완을 해야 할 중앙 기관의 설립을 요망하기에 이르렀으며, 하라다적선회(原田積善會) 및 미즈이보은회(三井報恩會)로부터 사업 원조의 요청이 있어, 1938년 11월 9일 후생성(厚生省) 회의실에서 중앙협회회 창립 발기인회를 개최하였다. 관계자가 모여 협의를 거친 결과 이의가 없어 창립이 가결되어, 내무성(內務省) 경보국장(警保局長) 혼마(本間精), 척무성(拓務省) 관리국장(管理局長) 소에지마(副島勝),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 오노(大野綠一郎), 문부성(文部省) 전 문학무국장(專門學務局長) 야마카와(山川建), 후생성 사회국장(社會局長) 아라이(新居善太郎), 귀족원(貴族院) 의원 시모무라(下村宏), 후생차관 히로세(廣瀬久忠), 귀족원 의원 세키야(關屋貞三郎) 등이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으며, 이사장에 세키야를 추천하여, 이로써 중앙협회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1939년도부터 후생성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어 이에 본 회를 확충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1940년 6월 17일자로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성사되어 협회 사업 전반의 유기적인 진전을 목표로 하는 연락 조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설립 취지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지 동포는 1915년 말에 3,000여 명에 불과 하였으나, 23년 후인 1938년 6월 말에 약 77만 명에 이르렀으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그 언어, 풍속, 습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수많은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국민 생활의 협화에 참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1936년 이후 일본 동화(同化)를 기조로 생활의 개선, 교육 교화의 보급 철저 등 긴요한 사업 실시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부현(府縣)에서는 정부의 지시 아래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나섬과 동시에, 각각 부현을 단위로 하는 협화 사업 단체를 조직하여 사업의 보급을 철저히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제 단체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락 조정을 꾀하여 그 유기적인 활동에 기대가 매우 크다.

또한 일본 제 학교에 수학하는 많은 학생들의 현황을 감안하여, 그 지도 및 유도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 시국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와 같은 사정을 성찰하여 본 회를 창립해 지방 협화 단체의 연락 조정 및 조장(助長)에 나섬과 동시에 학생들을 지도 및 유도하여 국민 생활의 협화 촉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기부행위

제1장 명칭

제1조 본 회는 재단법인 중앙협회회라고 칭한다.

제2장 사무소

제2조 본 회의 사무소는 당분간 도쿄시(東京市) 고지마치구(麹町區) 오테마치(大手町) 1초메(丁目) 7번지 후생성(厚生省) 내에 둔다.

제3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 회는 정부의 시설과 더불어 일본에 거주하는 외지 동포의 일본 융화를 촉진하여 국민 협화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협화 사업 단체의 연락 조정.
2. 협화 사업 단체의 장려 조장.
3. 협화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4. 협회 사업 취지의 보급 철저.
5. 보호 교회와 관련한 사업.
6. 정부의 자문에 대한 답신 혹은 건의.
7. 그 밖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1. 중앙협회로부터 계승한 별지 목록의 자산.
2. 자산을 통해 발생한 열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보조금.
5. 기부금품.
6. 기타 수입.

제6조 본 회의 자산은 우편관서 혹은 확실한 은행에 예금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실한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제7조 본 회에 기본 재산을 둔 기본 재산의 적립관리 및 처분의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자산에서 지불한다.

1. 기본 재산 이외의 자산.
2. 기타 수입.

제9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제5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장 : 1명
이 사 : 약간 명
감 사 : 약간 명
평의원 : 약간 명

제11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후생(厚生) 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대한다.

이사장은 본 회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이사 가운데 3명은 후생성 사회국장, 내무성 경보국장 및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는 본 회의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본 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직에 있는 자 가운데에서 이사장을 위촉한다.
이사 가운데 약간 명을 상무이사로 임명하고 그중 1명은 후생성 사회국장의 직에 있는 이사,

그 밖에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상무이사는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본 회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직에 있는 자 가운데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무(會務)를 감사한다.

제14조 평의원은 본 회에 공적이 있는 자, 본 회의 사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이사장이 지정하는 협화 사업 단체의 대표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는 평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제15조 관직에 있으면서 임원인 자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을 금한다.

보궐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고 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한다.

제16조 본 회에 고문(顧問) 및 참여(參與)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참여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관계행정 각 부국의 관계관.

2. 협화 사업에 조예가 깊은 자.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참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을 금한다.

참여는 본 회의 사업 집행에 관해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또한 직접 의견을 진술하며, 평의원 회의 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 본 회에 참사(參事), 주사(主事), 주사보(主事補) 및 서기(書記) 약간 명을 둔다.

참사, 주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명면(命免)한다.

참사, 주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참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사에 참여 할 수 있다.

참사 가운데 5명은 내무성 경보국 보안 과장, 척무성(拓務省) 관리국 경무과장,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장,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및 후생성 사회국 생활과장의 직에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주사보, 서기는 이사장이 명면(命免)하며,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사무 내용에 따라 촉탁 및 고원(雇員)을 둘 수 있다.

촉탁, 고원은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명면(命免)한다.

제18조 본 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방 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지방에서 본 회의 업무에 관여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20조 이사회의 직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하는 일.
2. 결산을 인정하는 일.
3. 기부 행위를 변경하거나 규칙의 제정 및 개폐(改廢)를 의결하는 일.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附議)할 사항을 의결하는 일.

제21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출석 이사(위임장 포함)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일부 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7장 평의원회

제22조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23조 평의원회의 직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예산의 보고를 받는 일.
2. 결산 보고를 받는 일.
3. 사업 집행 상황의 보고를 받는 일.
4. 그 밖에 평의원회에 부의(附議)할 사항을 의결하는 일.

제24조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되며, 또는 서면(書面)으로 표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자(위임장 포함)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일부 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補則)

제26조 기부 행위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칙(細則)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7조 본 회 설립 당초의 임원은 중앙협회회 현임 임원이 해당되며 그 임기는 법인 인가일부터 기산(起算)하도록 한다.

제28조 중앙협회회가 가지는 권리·의무는 설립 인가날부터 본 회가 계승한다.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임직원

〈이사장〉 귀족원 의원

關屋貞三郎

〈고 문〉 후생대신

金光庸夫

동 내무대신	安井英二
동 척무대신	秋田清
동 조선총독	南次郎
〈이 사〉	生田清三郎
동 척무차관	北島謙次郎
동 척무성 관리국장	副島勝
동 문부성 전문학무국장	永井造
동 오사카부지사	半井清
동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大竹十郎
동 내무차관	挾間茂
동 도쿄부지사	岡田周造
동 내무성 경보국장	藤原孝夫
동 후생차관	兒玉政介
동 경시총감	安倍源基
동 귀족원 의원	有賀光豊
동 중앙사회사업협회 이사장	赤木朝治
동(상무) 후생성 사회국장	熊谷憲一
동(상무)	弓削幸太郎
동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三橋孝一郎
동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鹽原時三郎
동 귀족원 의원	下村宏
〈감 사〉 귀족원 의원	宇佐美勝夫
〈평의원〉 인구문제연구회 상무이사	井上雅二
동 권농은행(勸農銀行) 총재	石井光雄
동	윤치호(尹致昊)
동	土師盛貞
동 조선농회장(朝鮮農會長)/조선식산은행(朝鮮殖產銀行) 대표	林繁藏
동 선만척식주식회사(鮮滿拓殖株式會社) 총재	二宮治重
동 조선상공회의소 회두(會頭)	賀田直治
동 중추원 참의/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사장	한상룡(韓相龍)
동 귀족원 의원	田口彌一
동 후생성 직업부장	内藤寛一
동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 사장	野口遵

동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사장	小倉武之助
동		尾崎敬義
동		熊本利平
동	이왕가(李王家) 어경사기념회(御慶事記念會) 회장	柳原吉兵衛
동	미츠이보은회(三井報恩會) 상무이사	山口安憲
동	경상남도지사	山澤和三郎
동	귀족원 의원	丸山鶴吉
동	조선은행(朝鮮銀行) 총재	松原純一
동		松村松盛
동	중추원 참의/호남은행(湖南銀行) 대표	현준호(玄俊鎬)
동	귀족원 의원/오지제지주식회사(王子製紙株式會社) 사장	藤原銀次郎
동	고바야시광업주식회사(小林礦業株式會社) 사장	小林采男
동	귀족원 의원	赤池濃
동	오사카상공회의소(大阪商工會議所) 회두(會頭)	安宅彌吉
동		淺利三朗
동	매일신보(毎日新報) 사장	최린(崔麟)
동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 총재	佐々木駒之助
동		木村雄次
동	하라다적선회(原田積善會) 회장	久田益太郎
동	홋카이도청장관(北海道廳長官)/홋카이도협화회 회장	戸塚九一郎
동	아오모리현지사(青森縣知事)/아오모리현협화회 회장	上田誠一
동	이와테현지사(岩手縣知事)/이와테현협화회 회장	山内義文
동	미야기현지사(宮城縣知事)/미야기현협화회 회장	林信夫
동	아키타현지사(秋田縣知事)/아키타현협화회 회장	岩上夫美雄
동	야마가타현지사(山形縣知事)/야마가타현협화회 회장	山口繼喜
동	후쿠시마현지사(岩手縣知事)/후쿠시마현협화회 회장	橋本清吉
동	이바라키현지사(茨城縣知事)/이바라키현협화회 회장	吉永時次
동	도치기현지사(栃木縣知事)/도치기현협화회 회장	山縣三郎
동	군마현지사(群馬縣知事)/군마현협화회 회장	薄田美朝
동	사이타마현지사(埼玉縣知事)/사이타마현협화회 회장	土岐銀次郎
동	치바현지사(千葉縣知事)/치바현협화회 회장	立田清辰
동	도쿄부지사(東京府知事)/도쿄부협화회 회장	岡田周造
동	가나가와현지사(神奈川縣知事)/가나가와현협화회 회장	松村光磨
동	니이가타현지사(新潟縣知事)/니이가타현협화회 회장	安井誠一郎
동	도야마현지사(富山縣知事)/도야마현협화회 회장	矢野兼三

동	이시카와현지사(石川縣知事)/이시카와현협화회 회장	土居章平
동	후쿠이현지사(岩手縣知事)/후쿠이현협화회 회장	木村清司
동	야마나시현지사(山梨縣知事)/야마나시현협화회 회장	安岡正光
동	나가노현지사(長縣知事)/나가노현협화회 회장	鈴木登
동	기후현지사(岐阜縣知事)/기후현협화회 회장	宮野省三
동	시즈오카현지사(靜岡縣知事)/시즈오카현협화회 회장	小濱八彌
동	아이치현지사(愛知縣知事)/아이치현협화회 회장	兒玉九一
동	미에현지사(三重縣知事)/미에현협화회 회장	中野與吉郎
동	시가현지사(滋賀縣知事)/시가현협화회 회장	近藤襄太郎
동	교토부지사(京府都知事)/교토부협화회 회장	川西實三
동	오사카부지사(大阪府知事)/오사카부협화회 회장	半井清
동	효고현지사(兵庫縣知事)/효고현협화회 회장	坂千秋
동	나라현지사(奈良縣知事)/나라현협화회 회장	山内逸造
동	와카야마현지사(和歌山縣知事)/와카야마현협화회 회장	今松治郎
동	돗토리현지사(鳥取縣知事)/돗토리현협화회 회장	副見喬雄
동	오카야마현지사(岡山縣知事)/오카야마현협화회 회장	横溝光暉
동	히로시마현지사(廣島縣知事)/히로시마현협화회 회장	相川勝六
동	야마구치현지사(山口縣知事)/야마구치현협화회 회장	武井群嗣
동	도쿠시마현지사(德島縣知事)/도쿠시마현협화회 회장	荒木義夫
동	가가와현지사(香川縣知事)/가가와현협화회 회장	永安百治
동	에히메현지사(愛媛縣知事)/에히메현협화회 회장	中村敬之進
동	고치현지사(高知縣知事)/고치현협화회 회장	小山知一
동	후쿠오카현지사(福岡縣知事)/후쿠오카현협화회 회장	本間精
동	사가현지사(佐賀縣知事)/사가현협화회 회장	眞崎長年
동	나가사키현지사(長崎縣知事)/나가사키현협화회 회장	平敏孝
동	구마모토현지사(熊本縣知事)/구마모토현협화회 회장	雪澤千代治
동	오이타현지사(大分縣知事)/오이타현협화회 회장	□織彌三
동	미야자키현지사(宮崎縣知事)/미야자키현협화회 회장	長谷川透
동	가고시마현지사(鹿兒島縣知事)/가고시마현협화회 회장	新居善太郎
〈참 여〉	척무성 관리국 경무과 사무관	飯島稔
동	후생성 사회국 보호과장	高橋敏雄
동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장	계광순(桂光淳)
동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이사관	横山重一
동	중앙조선협회(中央朝鮮協會) 주사(主事)	陶川武二郎
동	후생성 사회국 생활과 사무관	植田俊雄

동	문부성 사회교육국 성인교육과장	小田成就
동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장	八木信雄
동	경시청 내선과장(內鮮課長)	榎本三郎
동	문부성 전문학무국 학무과장	有光次郎
동	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 장학부장	重田勘次郎
동	후생성 직업부 소개과장	引田重夫
<지방위원> 홋카이도청(北海道廳) 사회과장/홋카이도협화회 상무이사		若木作藏
동	아오모리현 사회과장/아오모리현협화회 상무이사	小松武彥
동	이와테현 사회과장/이와테현협화회 상무이사	佐伯玉雄
동	미야기현 사회과장/미야기현협화회 상무이사	加藤林藏
동	아키타현 사회과장/아키타현협화회 상무이사	堀岡吉次
동	야마가타현 사회과장/야마가타현협화회 상무이사	齋藤國丸
동	후쿠시마현 사회과장/후쿠시마현협화회 상무이사	井上理
동	아바라키현 사회과장/아바라키현협화회 상무이사	鈴木清一
동	도치기현 사회과장/도치기현협화회 상무이사	米澤道雄
동	군마현 사회과장/군마현협화회 상무이사	石川薰
동	사이타마현 사회과장/사이타마현협화회 상무이사	中村博正
동	치바현 사회과장/치바현협화회 상무이사	尾關一雄
동	도쿄부 사회과장/도쿄부협화회 상무이사	神内徳治
동	가나가와현 사회과장/가나가와현협화회 상무이사	堤金次郎
동	니이가타현 사회과장/니이가타현협화회 상무이사	鹽川久敬
동	도야마현 사회과장/도야마현협화회 상무이사	美馬郁夫
동	이시카와현 사회과장/이시카와현협화회 상무이사	木村強
동	후쿠이현 사회과장/후쿠이현협화회 상무이사	森長謙之助
동	야마나시현 사회과장/야마나시현협화회 상무이사	山口壽
동	나가노현 사회과장/나가노현협화회 상무이사	森下龍一
동	기후현 사회과장/기후현협화회 상무이사	伊藤修一
동	시즈오카현 사회과장/시즈오카현협화회 상무이사	五十嵐文雄
동	아이치현 사회과장/아이치현협화회 상무이사	古川康平
동	미에현 사회과장/미에현협화회 상무이사	諸岡克
동	시가현 사회과장/시가현협화회 상무이사	内藤誠夫
동	교토부 사회과장/교토부협화회 상무이사	植田源一
동	오사카부 사회과장/오사카부협화회 상무이사	西田傳三郎
동	효고현 사회과장/효고현협화회 상무이사	中村力松
동	나라현 사회과장/나라현협화회 상무이사	加藤三郎

동	와카야마현 사회과장/와카야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關盛吉雄
동	돗토리현 사회과장/돗토리현협회회장 상무이사	碓井貞雄
동	오카야마현 사회과장/오카야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南益次郎
동	히로시마현 사회과장/히로시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大石靜信
동	야마구치현 사회과장/야마구치현협회회장 상무이사	田代利明
동	도쿠시마현 사회과장/도쿠시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齋藤紫郎
동	가가와현 사회과장/가가와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倉井節
동	에히메현 사회과장/에히메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大島靖
동	고치현 사회과장/고치현협회회장 상무이사	目代眞一
동	후쿠오카현 사회과장/후쿠오카현협회회장 상무이사	磯淳爾
동	사가현 사회과장/사가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小林巖
동	나가사키현 사회과장/나가사키현협회회장 상무이사	福田恒雄
동	구마모토현 사회과장/구마모토현협회회장 상무이사	上田穰
동	오이타현 사회과장/오이타현협회회장 상무이사	早川唯一郎
동	미야자키현 사회과장/미야자키현협회회장 상무이사	井口秀夫
동	가고시마현 사회과장/가고시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平塚道雄
동	오키나와현(沖繩縣) 사회과장	青木誠
동	홋카이도청 특고과장/홋카이도협회회장 상무이사	大園清二
동	아오모리현 특고과장/아오모리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山田吉春
동	이와테현 특고과장/이와테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岩田常雄
동	미야기현 특고과장/미야기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岩瀬繁一
동	아키타현 특고과장/아키타현협회회장 상무이사	中川幸雄
동	아마가타현 특고과장/아마가타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原田章
동	후쿠시마현 특고과장/후쿠시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居谷隆信
동	이바라키현 특고과장/이바라키현협회회장 상무이사	藤原重正
동	도치기현 특고과장/도치기현협회회장 상무이사	江藤彦武
동	군마현 특고과장/군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早川松次郎
동	사이타마현 특고과장/사이타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長谷川勉
동	치바현 특고과장/치바현협회회장 상무이사	福田忠光
동	가나가와현 특고과장/가나가와현협회회장 상무이사	鈴木琢二
동	니이가타현 특고과장/니이가타현협회회장 상무이사	村川重太郎
동	도야마현 특고과장/도야마현협회회장 상무이사	藤田次郎
동	이시카와현 특고과장/이시카와현협회회장 상무이사	森忠彥
동	후쿠이현 특고과장/후쿠이현협회회장 상무이사	西原英次
동	야마나시현 특고과장/야마나시현협회회장 상무이사	藥袋勘兵衛

동	나가노현 특고과장/나가노현협회회 상무이사	小林憲美
동	기후현 특고과장/기후현협회회 상무이사	南坊仁三郎
동	시즈오카현 특고과장/시즈오카현협회회 상무이사	加藤清
동	아이치현 특고과장/아이치현협회회 상무이사	秋山博
동	미에현 특고과장/미에현협회회 상무이사	古賀強
동	시가현 특고과장/시가현협회회 상무이사	淺利春次
동	교토부 특고과장/교토부협회회 상무이사	中村清
동	오사카부 특고과장/오사카부협회회 상무이사	田代保雄
동	효고현 특고과장/효고현협회회 상무이사	松下一
동	나라현 특고과장/나라현협회회 상무이사	丹羽福市
동	와카야마현 특고과장/와카야마현협회회 상무이사	羽野治
동	돗토리현 특고과장/돗토리현협회회 상무이사	河野富一
동	시마네현(島根縣) 특고과장/시마네현협회회 상무이사	坂本岩太郎
동	오카야마현 특고과장/오카야마현협회회 상무이사	山口誠
동	히로시마현 특고과장/히로시마현협회회 상무이사	平城國義
동	야마구치현 특고과장/야마구치현협회회 상무이사	鹿士源太郎
동	도쿠시마현 특고과장/도쿠시마현협회회 상무이사	大石芳
동	가가와현 특고과장/가가와현협회회 상무이사	秦重德
동	에히메현 특고과장/에히메현협회회 상무이사	兒玉音吉
동	고치현 특고과장/고치현협회회 상무이사	吉田直枝
동	후쿠오카현 특고과장/후쿠오카현협회회 상무이사	久井忠雄
동	사가현 특고과장/사가현협회회 상무이사	高橋誠治
동	나가사키현 특고과장/나가사키현협회회 상무이사	川口正次郎
동	구마모토현 특고과장/구마모토현협회회 상무이사	工藤九郎
동	오이타현 특고과장/오이타현협회회 상무이사	辻本安石
동	미야자키현 특고과장/미야자키현협회회 상무이사	木下英一
동	가고시마현 특고과장/가고시마현협회회 상무이사	木村行藏
동	오키나와현 특고과장	佐々木祿郎
〈참 사〉	후생성 사회국 생활과장	武島一義
동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장	大坪保雄
동	첨무성 관리국 경무과장	中野勝次
동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장	林勝壽
동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古川兼秀
〈속 탁〉	내무 속(屬)	村田保
동	내무 속	井出勇

동 내무 속	渡邊宏
동 문부 속(屬)	久住秀之助
동 척무 속(屬)	若代辰夫
동 조선총독부속(朝鮮總督府屬)	佐々木嘉一
동 인구문제연구소 연구관(研究官)	館稔
동 후생성 촉탁(囑託)	早崎八洲
동 후생 속(屬)	鍋田光一
동 후생 속	池田常雄
동 후생 속	佐竹武美
동 후생 속	石田久太郎
동 후생성 촉탁	山本秋
〈주 사〉 후생성 촉탁	武田行雄
〈주사보〉 전임(専任)	小崎榮吉
동 전임	井上平八郎
동 전임	直井清
동 전임	阿部勝雄
동 전임	坪内庄次
〈서 기〉 전임	泉名正明
〈고(雇)〉 전임	星野勇
동 전임	本田萬吉
동 전임	田口さみ子

재단법인 중앙협화회 1940년도 사업 계획

1. 연락 협조

(1) 전국 협화 사업 대회

: 황기(皇紀) 2600년 봉축 행사로 전국 협화 사업 대회를 개최하여 건국을 기리며 팔광일우(八紘一宇)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국민 협화의 한 단계를 진전시켜가고자 한다.

(2) 전국협화회

: 지방에서의 협화 사업 주무 직원의 협화회를 개최하여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다.

(3) 지방협화회

: 지방별로 협화 사업 관계자의 협화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하고 또한 지

방 협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4) 간담회

: 중앙 관계 관청, 제 단체 등의 관계 직원의 회합을 요청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담·상의함과 동시에 그 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5) 연보(年報) 및 잡지 발행

: 연보 및 잡지를 발행하여 사업 관계자의 연락 및 연구를 돋는다.

(6) 병기헌납(兵器獻納)

: 황기 2600년을 기해 100만에 육박하는 일본 거주 조선인 동포에게 호소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육·해군에 병기를 헌납하도록 한다.

(7) 기타

2. 조사·연구 및 선전

(1) 협화 사업 및 학생 문제 연구

: 협화 사업 및 학생 문제의 근본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하여 그 구체적인 방책을 수립한다.

(2) 외지(外地) 사정 조사원 파견

: 외지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을 조사하여 사업 수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 참고 자료의 수집·간행

: 전문가를 위촉하여 협호 사업에 관한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간행한다.

(4) 사업의 선전·보급

: 황기 2600년 봉축 행사 가운데 하나로 선전 자료를 현상 모집하여 영화 및 '드라마'를 제작하고 널리 일반인에게 협화의 취지를 선전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5) 기타

3. 지도·장려

(1) 전국 강습회

: 지방 주무 직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습회를 개최한다.

(2) 지방 강습회

: 지방 중견 지도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서 강습회를 개최한다.

(3) 노동자 지도

: 모집 이주 노동자, 그 밖의 일반 노동자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4) 강사 파견

: 지방 주최 강습회에 적당한 강사를 위촉하여 파견한다.

(5) 선장(選獎)

: 황기 2600년 봉축 행사 가운데 하나로 우수한 단체 및 사업 공로자를 선장(選獎)한다.

(6) 도서 간행

: 사업과 관련한 도서를 간행하여 배포한다.

(7) 교과서 편찬

: 간이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편찬한다.

(8) 회원장(會員章) 교부 조성

: 지방 협회 사업 단체에 회원에게 회원장을 교부하여 그 신분을 증명할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9) 협회 사업 시설 보조

: 지방에서 경영하는 인보(隣保) 사업 시설의 신축,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우수 사회 사업 단체를 보조한다.

(10) 기타

: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재단법인 중앙협회회 1940년도 예산

〈세입 부문〉

제1관(款) 보조금	158,000엔
제1항(項) 보조금	158,000엔
제2관(款) 기부금	155,000엔
제1항(項) 기부금	155,000엔
제3관(款) 사업 수입	13,200엔
제1항(項) 사업 수입	13,200엔
제4관(款) 잡수입	1,830엔
제1항(項) 잡수입	1,830엔
제5관(款) 이월금	5,000엔
제1항(項) 이월금	5,000엔
합계	333,030엔

〈세출 부문〉

제1관 사무비	31,820엔
제1항 봉급 및 제급(諸給)	25,870엔
제2항 수요비(需要費)	5,950엔
제2관 사업비	297,500엔
제1항 연락비	26,900엔
제2항 조사선전비	21,000엔

제3항 지도비	48,200엔
제4항 보조비	174,000엔
제5항 사업 제비(諸費)	27,400엔
제3관 자금조성비	1,000엔
제1항 자금조성비	1,000엔

지방 협회 사업 단체 결성조(結成調)

구분 廳府縣	단체명	대표자 (회장)	사무소 소재지	설립 연월일	지회 수	적요
北海道	北海道協和會	장관(長官)	北海道廳 社會課 내	1939.9.12	47	
青森	青森縣協和會	지사(知事)	青森縣廳 사회과 내	1940.1.29	7	
岩手	岩手縣協和會	지사	岩手縣廳 사회과 내	1940.2.1	16	
宮城	宮城縣協和會	지사	宮城縣廳 사회과 내	1939.11.1	20	
秋田	秋田縣協和會	지사	秋田縣廳 사회과 내	1939.12.9	11	
山形	山形縣協和會	지사	山形縣廳 사회과 내	1940.2.2	4	
福島	福島縣協和會	지사	福島縣廳 사회과 내	1938.10.1	29	
茨城	茨城縣協和會	지사	茨城縣廳 사회과 내	1939.12.13	21	
橡木	橡木縣協和會	지사	橡木縣廳 사회과 내	1939.11.15	14	
群馬	群馬縣協和會	지사	群馬縣廳 사회과 내	1939.11.10	19	
埼玉	埼玉縣協和會	지사	埼玉縣廳 사회과 내	1939.12.5	26	
千葉	千葉縣協和會	지사	千葉縣廳 사회과 내	1939.12.12	29	
東京	東京府協和會	지사	東京府廳 사회과 내	1936.11.2	26	
神奈川	神奈川縣協和會	지사	神奈川縣廳 사회과 내	1925.2.25	38	
新潟	新潟縣協和會	지사	新潟縣廳 사회과 내	1939.11.3	21	
富山	富山縣協和會	지사	富山縣廳 사회과 내	1939.11.17	22	
石川	石川縣協和會	지사	石川縣廳 사회과 내	1939.4.12	16	
福井	福井縣協和會	지사	福井縣廳 사회과 내	1937.8.10	13	
山梨	山梨縣協和會	지사	山梨縣廳 사회과 내	1939.11.30	14	
長野	長野縣協和會	지사	長野縣廳 사회과 내	1939.12.15	26	
岐阜	岐阜縣協和會	지사	岐阜縣廳 사회과 내	1939.12.25	21	
靜岡	靜岡縣協和會	지사	靜岡縣廳 사회과 내	1939.12.1	25	
愛知	愛知縣協和會	지사	愛知縣廳 사회과 내	1936.10.8	34	
三重	三重縣協和會	지사	三重縣廳 사회과 내	1939.11.1	26	
滋賀	滋賀縣協和會	지사	滋賀縣廳 사회과 내	1939.12.1	18	
京都	京都府協和會	지사	京都府廳 사회과 내	1936.11.6	26	
大阪	大阪府協和會	지사	大阪府廳 내	1924.5.5	58	
兵庫	兵庫縣協和會	지사	兵庫縣廳 사회과 내	1925.7.1	57	

奈良	奈良縣協和會	지사	奈良縣廳 사회과 내	1938.11.25	18	
和歌山	和歌山縣協和會	지사	和歌山縣廳 사회과 내	1940.1.17	19	
鳥取	鳥取縣協和會	지사	鳥取縣廳 사회과 내	1940.2.12	12	
島根	島根縣協和會	지사	島根縣廳 사회과 내	1939.12.26	19	
岡山	岡山縣協和會	지사	岡山縣廳 사회과 내	1939.12.15	23	
廣島	廣島縣協和會	지사	廣島縣廳 사회과 내	1937.8.10	36	
山口	山口縣協和會	지사	山口縣廳 사회과 내	1939.12.1	28	
德島	德島縣協和會	지사	德島縣廳 사회과 내	1939.11.15	13	
香川	香川縣協和會	지사	香川縣廳 사회과 내	1939.12.12	8	
愛媛	愛媛縣協和會	지사	愛媛縣廳 사회과 내	1939.12.26	17	
高知	高知縣協和會	지사	高知縣廳 사회과 내	1939.11.24	15	
福岡	福岡縣協和會	지사	福岡縣廳 사회과 내	1939.9.12	30	
佐賀	佐賀縣協和會	지사	佐賀縣廳 사회과 내	1940.3.1	15	
長崎	長崎縣協和會	지사	長崎縣廳 사회과 내	1939.9.20	22	
熊本	熊本縣協和會	지사	熊本縣廳 사회과 내	1940.6.20	31	
大分	大分縣協和會	지사	大分縣廳 사회과 내	1939.11.27	19	
宮崎	宮崎縣協和會	지사	宮崎縣廳 사회과 내	1940.1.29	12	
鹿兒島	鹿兒島縣協和會	지사	鹿兒島縣廳 사회과 내	1939.12.5	22	
계					1,043	

비고)

- 일본 1도(道) 3부(府) 42현(縣)에 46개 협화회가 전부 결성되었다.
- 사할린청(廳)에 1940년 7월 17일 사할린협화회를 결성하였다.

〈출전 : 桶口雄一 編, 「中央協和會要覽」, 『協和會關係資料集 : 戰時下における在日朝鮮人統制と皇民化政策の實態史料』 1, 東京:綠蔭書房, 1995년, 205~252쪽〉

2. 협화회와 기업의 조선인 노동자 통제

1) 반도광원 모집 관계서류(1940)

스미토모(住友) 우타시나이(歌志内) 탄광(1940년)

제1보

오사카에서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26일 오후 7시 우에노(上野)에 도착하여 1박한 다음, 다음날 27일 즉 어제 후생성 생활과의 다케다 이 쿠오(武田行雄) 씨를 화재 이후 이전한 우치사와이즈(内幸町)의 총독부 도쿄 사무소로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규슈(九州) 지방 시찰답(특히 미쓰비시 다카시마(高島) 광산에 대해서)을 들은 다음, 사회과의 미우라 요시키(三浦義城) 씨로부터 소개 명함을 받고 동 씨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후 10시 반 도쿄를 출발하여 오늘 오전 9시 40분 오사카에 도착하여 곧바로 본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기와사키(川崎) 부장은 도쿄로 출장을 갔고, 와타나베(渡邊) 노동과장은 병으로 결근하였습니다. 시마타니(島谷) 씨의 소개로 이다(飯田) 총무부장을 바로 대면하여 인사한 다음, 본사 노동과 스스 키 신이치(鈴木眞一) 씨를 만나 총독부 사회과장 하야시(林)에게 소개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미타니 씨는 위임장의 건을 우타시나이가 준비한 서식 이외에 위임사항으로 '1. 복대리인 설정 건'을 추가한 것 2통을 본점에 지금 송부하도록 전화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밤 당지를 출발하여 30일 오전 혹은 오후에 경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소생의 사진은 오사카에서 준비하였지만, 히라야마(平山) 씨와 이나바(稻葉) 씨의 사진은 경성판매점을 의식하여 송부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이상)

제2보

경성에서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28일 오후 11시 반 오사카를 출발하여 29일 오전 9시 25분 시모노세키(下關)에 도착하였습니다. 곧바로 도난부정(東南部町)의 야마구치현(山口縣) 사회과 출장소를 방문하여 소장 다키(滝)를 만났습니다. 다키는 그 전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습니다. 일시를 통지하고 (1) 통역을 붙여 마중나갈 것, (2) 도시 락과 차 등을 알선할 것, (3) 만약 어쩔 수 없이 시모노세키에서 1박할 경우는 반도식 숙사를 준비할 것 등 아주 호의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항(海港)경비과에도 방문을 허락받아 해항경비과 과장 오카다(岡田) 경시(警視)를 방문하였습니다. 오카다도 사전에 일정을 통지하자, 배 안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저런 편의를 제공하고, 도주하는 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호의를 보였습니다.

의외로 두 곳 모두 단기간에 일을 마치고 오전 10시 반 연락선에 승선하여 오후 6시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잔교(棧橋)에 있는 광철(廣鐵) 부산영업소를 방문하였지만, 운이 없게도 하료(下僚)밖에 없었습니다. 단체수송의 건에 대해 문의했지만, 설령 표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더라도 1개월 전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저히 불가능하는 점을 역설했지만, 그는 그의 명함 앞으로 신청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오후 7시 40분 부산을 출발하여 오늘 오전 3시 10분 경성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전보를 미리 보냈지만, 숙소에서 마중 나오지 않아 당황하였습니다. 인력거꾼에게 부탁하여 내지인이 운영하는 2류

여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일요일이었지만 가노(鹿野)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침 그도 어제 귀경했다며 내일 판매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관도 일류는 대개 만원인 모양이지만, 내일 판매점에서 어디든지 찾아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지금 걱정은 수송 신청입니다만, 총독부 사회과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사의 동향도 들을 예정으로 경성역으로 역장이나 조역(助役)을 방문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

1940년 7월 2일

제3보

총독부에서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여관에서 보고서를 쓰겠습니다만, 동봉한 신분증명을 곧바로 작성하여 청원하려고 합니다. 스다(須田) 씨와 다키가와(滝川) 경찰서장의 도장을 각각 받아 항공편으로 판매점에 지금 송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년 월 일

홋카이도(北海道) 소라치군(空知郡)

스미토모광업주식회사 우타시나이(歌志内) 광업부

부장

다키가와(滝川) 경찰서장

지방 경시 귀하

조선인노무자 모집종사원 신분증명서

본적

현주소

직업 회사원(노무계)

씨명 연령(생)

위는 당 부(部) 조선인노무자의 모집원으로서 종사하면서, 다음 각 항을 조사하고자 하니 증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적	
현주소	홋카이도
직업	회사원
씨명 연령	생
경력	본인은 (경력) 년 월에 스미토모 우타시나이 광업부 노무계로서 근무하면서 오늘에 이름
성행(性行)	본인 성품은 온순하고 소행이 선량함
사상	본인은 사상 온건하고 경찰로부터 주의가 필요한 인물이 아님
전과의 유무	없음
모집종사자로서의 적부	적당하다고 인정함

조사자 순사 ○인

년 월 일
홋카이도 다키가와 경찰서장 印

1940년 7월 2일

제4보

천진루(天眞樓) 여관에서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어제 오전 가노(鹿野) 씨와 한강 수전(水電)에서 면담하고, 혼자서 오후 총독부에 출두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혼자서 총독부에 출두하고, 오후에는 가노 씨와 다다구마(忠隈) 탄광의 미야시타 마사미치(宮下昌通)²⁾ 씨와 함께 사회과장과 면담하였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경상남북도 2개도가 허락하지 않았고, 7월에 들어와 전라 2개도도 허락할 것이라는 도무라(戸村) 씨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마 경상 2개도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 더욱이 매월 할당 예정을 6월은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6월 27일 이후 신청서 접수를 정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쓰이(三井) 스나가와(砂川)도 28, 29일에 와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정지는 약 10일간 정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남에 가족을 정리하기 위해 가려 합니다. 미야시타 씨와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는 잘못해서 총독부를 비우면 6월 8일 경성에 온 후루카와(古川) 광업 가미야마다(上山田)가 분명히 해결될 때까지 뒷전으로 미루어질 염려가 농후하고, 접수정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가노 씨와 오늘 과장에게 측면 공격한 바, ‘그렇게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원본오기인 듯함. 원본에 ‘宮川’ → ‘宮下’의 오기로 판단됨.

4. 그래서 경상남북 2개도 가운데 경북이 적당하여(경험자의 이야기로는) 분명히 경북을 희망해 두었습니다만, 아마도 경북의 1개군이 허가될 것 같습니다.

5. 경북이 지정되면 도에서 3일간 정도 각 과(사회과, 보안과 등)에서 업자(저)를 불러 각종 신청서에 대해 질문한 다음, 신청서를 총독부에 전송(이에 하루가 소요)하고, 또 총독부에서 사회과 4일간, 보안과 3일간 합계 일주간 정도 도에서와 똑같은 것을 한 다음, 다시 도로 보내고 도에서 군을 지정하는데 3일간정도 소요됩니다. 일이 잘 풀리더라도 약 15일간은 제가 신청서를 따라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6. 규슈(九州)와 같이 광업회에서 정리하여 처음부터 경북을 할당받아 촉탁이 1명 총독부에 오더라도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담양, 함평 2군의 군청과 경찰서를 방문하고 부산의 수상서(水上署)에 가족을 부르러 갈(밤기차를 타고 그 다음날 오후에 돌아오니 꼬박 1일간 없습니다) 정도로 신청서의 허가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7. 신청서 서식은 풍베츠(奔別)는 경북이기 때문에 경북이라고 정정해야 합니다. 전무로부터 총독부 또는 경북으로 가는 자(저)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구마(忠隈)와 다른 회사도 모두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정정할 곳도 몇 군데 있어 오사카 본점에 위임장 작성 송부를 오늘 항공편으로 의뢰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정정해야 할 곳은 노무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가령 16세인 자를 모집하여 데리고 갈 경우에도, 서장이 이 자는 호적이 잘못되어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18세라고 증명해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세라도 18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족 모으기

1. 인솔자를 면사무소 직원이라도 도움 받겠다는 뜻을 가노(鹿野) 씨에게 말했지만, 면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가능하면 경찰관이나 적어도 군청 직원이 아니라면 신용이 없다고 합니다. 부산 수상경찰서에서도 잘못되어 경찰관의 인솔에 대해 가노 씨가 사회과장과 경무국장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과장에게는 오늘 이야기하여 “본래라면 허용되지 않지만, 사회과의 의향을 물어 묵인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곧바로 가노 국장을 만나려 했지만 부재로 인해 내일이라도 다시 가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전남에 갔을 때는 경무국장의 허가도 얻었기 때문에, 고려해달라는 가노 씨의 전남 도경찰부장 앞으로의 편지를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2. 미쓰이, 야마노(山野)광업소의 다다구마(忠隈)의 경험으로는 막상 출발단계가 되어도 모두 집합하지 않고, 1명이라도 명부와 인원이 맞지 않을 때는 승선하지 못하여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다다구마와 같은 경우는 15가족으로 약 20일이 걸린 모양입니다.

배려의 의뢰

1. 이상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 모으기에 관해서 관청과 교섭할 수 있는 자와 실제로 가족을 모으는 일에 전념하는 자 2명을 빨리 파견해 주십시오.
2. 저녁에 총독부에서 항공편으로 보낸 신분증명이 없으면 가장 곤란하기 때문에 정본과 사본 12~13

통을 빨리 송부해 주십시오.

3. 가노 씨가 총독부에서 말하여 그곳에 도착하도록 약속했습니다만, 주재소 순사가 무책임한 관보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경찰로부터 반도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통지를 보낸 만큼, 순서에 따라 어느 것이라도 그 실물을 보내주십시오.

(이상)

추신

1. 제가 경성에 온 다음 계속 비가 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지만, 이런 비로 인해 사람 모으기가 더욱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빨리 특파 직원의 건은 결정한대로 전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제5보~제14보까지는 생략)

(제2) 조선출장 다케오카(武岡)와의 통신 및 동정 일람표

월일	번호	적요
7월 14일		가족을 모으기 위해 평산에 빨리 가라(다케오카의 전보)
7월 16일		평산에서 20일 밤 함평 도착 예정(다케오카가 이나바 앞으로)
7월 17일		1번 열차로 평산 태군의 우타시나이를 출발하여 함평에 감(20일 밤 10시경 함평 도착 예정)
7월 12일	No. 10	모집 광원은 50명, 50명의 2회 수송 예정 모집종사자 3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솔자를 기다려 인도함(阿部市三郎, 岩見線) (인솔 가족은 이나바, 경찰관 2명으로 인솔함) 응모자 인솔은 100명을 함께 할 경우에는 다케오카, 히라야마(平山), 인솔증명비 지참 1명, 계 3명으로 7월 5일~7일 10시경 출발 만약 50명씩 2번의 경우는, 제1차 이나바, 히라야마, 오장(伍長) 1명 제2차 이나바, 히라야마, 오장(伍長) 1명 인솔 가족은 별도로 1명 파견할 것
7월 13일	No. 11	7월 13일 사회과장으로부터 신청이 나와 가지고 왔음 이나바는 가족 수송 예정, 24일 학교(鶴橋) 출발, 27일 오후 3시 3분 우타시나이 도착 예정
7월 14일	No. 12	기선은 요망사항 없음(정기는 승객 취급하지 않음) 가족수송연락 가능, 광원은 100명, 관부연락도 좋음 이나바는 가족을 모으고, 히라야마는 모집 이외에 1~2명을 더 모집
7월 16일	No. 13	담양 경찰의 순열(巡閱)이 있어 가족 모우기가 늦어짐, 7월 28일~29일경 출발 예정, 인솔자는 가사하라(笠原) 경부와 기무라(木村) 순사부장으로 결정함(조선어 가능) 여비는 규정에 따름(선불을 승낙함), 단복 8,50원(흔방), 모자 0.65원, 게이틀 1원

7월 17일	No. 14	가족 인솔은 다케오카, 이나바, 히라야마 가운데 1명, 2명은 시모노세끼까지 가서 돌아와 모집에 종사함 가족 수송에는 사증 때문에 시간이 필요, 여수에서 숙박할 때는 경찰이 도와줌, 가족 화물은 어른 1인당 30킬로 정함 가족 수송 예정, 7월 31일 여수 출발, 8월 4일 오전 2시 53분 우타시나이 도착
7월 19일	No. 15	◎7월 28일 모집허가 예정 7월분 할당이 지났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다카하시(高橋) 씨는 돌아감 금후는 그 달의 할당으로 획득(판매점의 손으로)하고 나서 원산에서 출발할 필요 있음 8월, 9월은 전라, 충청이 허가될 예정 경북, 기부금문제, 경북개척노무자협회에 1명당 2원 기부를 종용할 뜻이 있음 (대구에서 사회과와 지방과 2명의 초연비(招宴費)는 다다구마(忠隈)가 지불하기로 함)
7월 24일		다다 고이치(多田吾市), 정진태(鄭鎮泰) 출발(가족 인솔을 위해) 인솔증명서 지침(다케오카, 이나바, 히라야마, 다다, 정진태, 아베)

1940년도(4월~1941년 3월) 반도인 이입 희망원수 조사

1940년 2월 1일 조사

스미토모 우타시나이 광업부

	아계우타시나이 광(上歌志內礦)	우타시나이광 (歌志內礦)	신우타시나이광 (新歌志內礦)	나이에광 (奈井江礦)	아카비라광 (奈平礦) ³⁾	계
1940년 4월						
5월						
6월						
7월	30	30	40			100
8월	30	50			(30)	80
9월				100	70	170
10월				(50)	20	
11월						
12월						
1941년 1월		50				50
2월						
3월	60	130	40	150		
	60	130	40	100	70	400

3) 원문에는 '奈'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

1940년 7월 19일

제15보

경성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 어제와 오늘로 사회과가 끝났습니다. 내일 내무국장의 도장을 받아 경무국에 돌리고, 경무국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걸립니다. 경북에 회송하면 28일 토요일에는 허가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허가증이 나오면 곧바로 모집에 착수하도록 이나바와 히라야마를 전남으로부터 대구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가족수송에 따라갈 사람의 파견을 내일 상황을 보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2)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대구에 있는 사이에 풍베츠(奔別)의 다카하시(高僑) 씨가 경성에 왔습니다. 7월분 할당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훗카이도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 실로 유감입니다. 저는 6월 말에 들어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조선판업소나 판매점 사람을 총독부에 출두시켜 할당을 받은 다음, 훗카이도를 출발하고 싶다고 사회과 도바 조쿠(外派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좋다고 말했습니다만, 혹시 그가 “편한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할 것에 대비하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총독부가 끝나고 경북에 돌릴 때는 대리인에게 부탁할까 전보로 대답할지 정하겠습니다.

퐁베츠는 가노 씨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출장하여 없기 때문에 알게 된 모양입니다만, 미츠미시(三菱) 호로나이(幌内) 채탄은 오늘이라도 도가 할당해주면 모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8월, 9월에 들어가면 전라남도, 충청도도 허가하는 것 같습니다만(이는 제가 전남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업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할린청(樺太廳)에서 이전부터 경성에 와있던 사쿠라이(櫻井) 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월 초에 이번 달 할당이 마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 다다구마(忠隈)의 미야시타(宮下) 씨나 미츠이의 야마노(山野), 기타 업자로부터도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경북은 신청서를 수리할 때, 경북개척노무자협회에 필히 노동자 1명당 2원씩 기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기부 수령증을 보이고 허가증을 받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스미토모와 같은 큰 회사는 한 번에 모두 모아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제 분만 망각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갔을 때 말을 듣는다면, 역시 상사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겠으니 고려해 주십시오.

대구에서 사회과와 지방과 각 1명을 초대했을 때의 비용은 다다구마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업자가 복도에서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배는 복잡합니다. 지금과 같은 번잡한 방법은 당연히 업자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후생성의 허가를 받고도 1월 중 극히 한정된 시기밖에 도의 할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후생성 기획원과 총독부의 문제로까지 발전하여 분명 무언가 해결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규슈의 광업회에서는 각 광산의 모집대리인이 얼마나 한심한 나날을 총독부와 도청에서 보내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선이 조선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매일 접촉하는 부서의 방침도 아닙니다만, 큰 힘을 동원하여 재고를 촉구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신청서를 한 자 한 구도 정정(訂正)당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타시나이를 출발했을 때부터 염려하고 걱정된 것은 다만 심신이 모두 우량한 광원을 과연 모집할 수 있을 지입니다.

7월 25일

제14보, 제15보 읽었습니다.

1. 신청서에 관한 건

7월 9일과 10일 석탄광업연합회에서 전국의 탄광노무담당자협의회가 개최되었다(소생 출석). 각 사로부터 신청서의 복잡함과 수속의 지연에 관한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후생성은 조선 당국과 협의하여 선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복잡하고 조선이 소극적인 원인의 하나는 1938년 7월 8일의 내무성 통첩인 '반도인 도항 저지' 통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당국은 기분이 상한 모양이다. 이의 철폐를 발령하겠다고 후생성 당국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선내의 복선이민정책이다. 전기 협의회에서 당국자의 예상으로는 아마도 내년도(1941년 4월 이후)는 반도인 이입은 곤란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반향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년도 동원계획은 기정방침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정세를 감안할 때, 업자로서 가급적 우수 노무자(반도인)를 빨리 이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 부(部)의 금후 이입에 관한 건

이번 모집은 100명이지만, 아계우타(上歌)와 우타고(歌礪)에서 30명과 50명 합계 80명을 8월중에, 또 나이에(奈井江) 100명, 아카비라(赤平) 70명을 9월중에 각각 이입할 예정으로 이미 후생성 앞으로 수속 중입니다.

제15보의 (2)와 같은 정황을 들으면, 우리 부의 금후 이입계획을 별지와 같이 스미토모 경성판매점에 계도 의뢰하고, 사회과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받아두기 바랍니다.

(1) 가족인솔에 관한 건

가족수송에 각지에서 사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밖에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도중에 더위로 인해 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아이의 수송과정에서 병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니 무리한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도중 어딘가에 하차하여 숙박할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에 익숙하지 않을 당초에는 사증을 기회로 당국의 알선을 통해 가능한 한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오사카 출발 열차를 타고 산에 도착할 시간을 가능하면 낮으로 해주십시오.

가. 여행 중 가족의 도시락에 상당히 고생할 것입니다.

- 나. 급한 환자를 대비하여 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만일을 예상하여 사전에 오사카본점(광업회사 총무과)에 연락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모집지에서의 기부금의 건

경북에서 이미 모집을 경험한 탄광에서는 기부금을 종용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번 도쿄의 협의회에서 들었습니다. 기부금 수령증이 없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당사는 경북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각사의 실제 사례를 청취하고 선처할 생각이다. 만약 요구가 있을 때는 사전에 타합해주기 바랍니다. (저번 전남에서는 같은 요구가 있었을 때, 구츠자와(沓澤) 군은 이를 원활히 해결하여 결국 100원(?) 정도의 사례금으로 끝냈다고 기억합니다)

본년분 이입 예정

	아게우타(上歌)	우타고(歌鑛)	신우타(新歌)	나이에(奈井江)	아카비라(赤平)
7월	30명	30명	40명		
8월	30명	50명			
9월				100명	70명
—					
—					
1941년 1월		50명			
—					
—					
계	60명	130명	40명	100명	70명

합계 400명

가경(歌經) 제 호	결제 년 월 일	기재 1940년 8월 13일	기안자
			서무계장
		총무과장 혼조(本庄)	
부장(部長) 고노(向野) 부장(副長) 쇼다(正田)			경리계장
		경리과장 쇼다	
			노무계장

반도광원모집에 관한 기부금의 건

본건은 다음과 같이 결재한다.

기(記)

조선에서는 반도인공출에 있는 모집지의 도에서 출가자의 훈련보호를 위해 협회에 설치한 모집인의

동협회에서 입회 및 기부금의 종용 있던 바.

위는 사정이 어쩔 수 없다면 차선으로 금회의 모집 100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부할 것

1. 경상북도개척노무협회에의 기부금

금 200원

공출1인당 2원의 비율로 인원 100명분

탄(炭) 제1332호를 승인을 바란다.

2. 경상남도 내선협회에의 기부금

금 50원

부산수상서 경유 공출인원 1인당 50전, 100명분

경상남도 내선협회는 도내의 공출에 대해서는 앞항의 경북과 똑같이 공출인원 1인당 2원이지만, 조선 내 타도 출신 공출인으로 부산을 경유한 자는 50전(혹은 1월이라지만 아직 모름)의 기부금을 종용 받음

탄(炭) 제133호

1940년 8월 11일

업무부장 아다치 데츠오(足立哲夫)

우타시나이 광업부장 고노 노리오(向野義夫) 귀하

경상북도개척노무자협회 기부의 건

어제 구두로 타합한 표기의 건은 별지 사본대로 본점에 문의한 바, 귀 부 명의로 금 200원을 기부하기로 승인했기에 통지합니다.

탄(炭) 제1298호

1940년 8월 8일

홋카이도 탄업소장 고노 노리오(向野義夫)

전무취체역 미무라 기이치(三村起一) 귀하

경상북도개척노무자협회 기부의 건

지난번 우타시나이 광업부에서 반도인 모집을 위해 노무 담당자를 조선에 보낸 바, 모집구역은 경상 북도 고령군으로 할당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동 지방에는 경상북도개척노무자협회라는 단체가 있어 경상북도 거주자의 도외(道外) 개척이주의 조성보호 및 그 가족의 보호지도 등을 도모하고 있다. 자

금으로서는 종래 모집사업주에 대해 응분의 기부를 받고 있다. 이번 우타시나이 광업부에 대해서도 200 원(응모자1인당 2원씩, 할당인원 100명분)을 각출해달라는 간청이 있었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도 있어 (작년 탄광기선도 응모자 1인당 2원의 비율로 기부함) 금후 모집 관계상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진다. 광업부 명의로 기부할 수 있도록 지급 승인하여 확전을 보내주기 바란다.

(제3) 모집출장 다케오카(武岡)와의 통신 및 동정 일람표

월일	번호	적요
7월 24일	No. 16	가족여비 초과분은 송금해둘 것 연고(緣故)모집(가족수송 시 불가, 모집 시도 불가), 당국에서는 지정 이외의 군부(郡部) 연고 있더라도 불가라고 말함 아키타현(秋田縣) 동북진홍 니시마츠구미(西松組)의 소나다(園田) 씨의 이야기 (모집지에 연고를 데리고 와 주재순사를 매수하여 신분조사를 쓰기 위해 군경찰과 부산의 수상서까지 매수할 필요가 있다. 자유도항 소재지는 내지인 대서인을 특파하여 수속하였다. 담양과 함평의 20~30명은 허가증을 받을 것 같다.) 모집수속 촉진의 건(경찰과 교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7월 30일	전보	담양 19가족, 함평 32가족, 계 51가족 30일 여수도착, 31일 승선, 8월 4일 우타시나이 도착 예정
8월 1일	No. 17	신청서 7월 31일자로 총독부로부터 여수사회과에 옴, 개척노무협회로부터 1인당 2원 기부를 종용받음 부산 수상서에서도 수수료 1인당 50전이 필요한 것 같음 여수에서 자유도항을 이야기하다가 도경찰부에서 허가하면 된다고 말함
8월 2일	No. 18	경북은 현재 4,000명의 공출 할당, 잘 모여지지 않은 모양 통역, 반장은 붙이고 싶지 않음, 오장(伍長) 2명 출발 문제로 파견바람 인쇄비가 약간 듬 개척노무협회 회비수납규정 제3조의 3, 모집에 따라 경북 출신 노무자를 상적(常的)으로 고용하는 도외(道外) 회원은 노무자 1인당 연액 50전씩 제4조, 모집할 때 1인당 선외(鮮外) 취로의 경우 1인당 2원, 모집할 때마다 모집알 선비, 훈련비로 수납할 것 8월 8일 기부의 건, 오늘 밤 승인(다다구마……500원 기부하였다)
8월 4일	No. 19	모집지 문경군을 지정하였지만, 경찰의 의견을 듣고 고령군으로 결정함 고령군에 전화로 확인한 바, 괜찮다고 말함 10개면이 있고, 1개면 당 10명씩, 8월 14일경 집합, 8월 15일 훈련, 8월 16일~17일 출발 예정
8월 5일	No. 20	신청서는 일부 부족으로 허가가 지연됨 8월 6일 전보, 고령군으로 결정됨

1940년 7월 24일

제16보

경성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6일자 대구로 보낸 문서 기쁘게 읽었습니다.

(1) 가족의 여비 부담은 잘 알았습니다. 어른 3인 이상, 한 가족으로 가는 것은 아주 드물지만, 우타시 나이의 광원이 가족에게 특별여비로 송금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도착한 다음 광원 임금에서 전부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2) 연고모집에 대해서 저도 가능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7월 2일 총독부 사회과에서 가노 씨, 다다구마의 미야시타 씨와 3명이 면담했을 때도 가노 씨가 질문한 바, 가족을 부를 경우 함께 넣는 것도 어렵고, 모집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언가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규슈 방면의 사람에게도 여러모로 물었습니다. 최근 몇 번인가 모집하러 온 사람도 적당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에 가서 좌담회에 출석(12일자 제10보)하여 특고(特高) 주임의 주의사항으로서 가장 심하게 주의 받은 것은 연고모집이었습니다. 가령 동일 도내에서도 지정된 군 이외로부터 모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시마츠구미(西松組)의 아키타현(秋田縣)에 있는 동북진흥 사업장의 소노다(園田) 씨로부터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집과 함께 데려온 사례도 있지만, 수속은 별도로 모집장소까지 데리고 와서 체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따를 경우는 면의 주재소 순사에게 허위 신분조사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해야 하는 것이 먼저 1단계입니다. 이후 군의 경찰서부터 부산 수상서(水上署)까지 매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한 어디에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히 데리고 가야 합니다. 현재 출원 중인 인원까지는 허가하지 않는 자유도항의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소재지의 내지인 대서인을 특별히 계약해 두고, 그곳에서 2~3명 수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서 특고로부터 다키가와(滝川)에 조회가 가기 때문에, 다키가와에서 문제없다는 회답을 보내면 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자유도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는 것은 면의 주재소도 어디도 관계없습니다. 특고만 잘 끌어들이면 됩니다.

담양, 함평 모두 2번씩 갔는데 경찰들은 회사의 술을 얹어 마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그들과 마시려 합니다. 시간이 나지 않았지만, 가족수송의 전후에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개군에서 20명이나 30명은 허가증을 받는데 좋기 때문에 담양과 함평 2개군 이외에 이번에 데리고 갈 곳으로부터도 연고모집하면 상당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경부선이 불통이었기 때문에 토요일(20일)에 가서 월요일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개통을 기다려 일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전남에 갈 때, 사회과 도바 조쿠(外波屬)에게 편지를 보낸 덕분인

지 서류는 보안과로 회부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과도 최근은 복도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만, 보안과는 월 초부터 출입구에 '노동자 모집 관계자는 명함을 두고 복도에서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붙어있습니다. 사토(佐藤)라는 자가 업자를 담당합니다만 결근중이어서 주임인 나카타(中田)에게 명함을 주고 기다렸는데,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저와 다른 사람에게도 사토 씨는 결근이고 자기는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여관에 전화할 때까지는 여기에 오더라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다시 출두했는데, 모두에게 서류는 심사했지만 도에 회송하기까지 4~5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소노다 씨(니시마츠구미에서 상당한 인물, 스미토모 시코쿠(四國) 수력의 일도 했음, 모집은 네 번째)는 모든 업자가 사회과와 보안과에 불만이 고조되었을 때, 초연히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카타 씨의 심사가 끝나고 4~5일 걸린다는 말을 들은 다음, 그는 저를 구석에 데리고 가 하는 말이 복도에서 기다리는 것은 업자가 많아 실내에 들어가면 사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자기가 나와서 주소가 들어간 명함을 건넨 것은 뒤에서 운동을 기다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니시마츠구미는 전부 그런 방식으로 조종하는 모양입니다.

토건 관련자들이 그 방면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경북의 고등과 주임을 비롯해 모두를 완전히 손아귀에 쥐고 있는 듯합니다. 아주 한심한 소노다 씨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관리에게 질렸습니다.

다다구마도 달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말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토목 관련자들의 흥내도 낼 수 없지만, 만약 그러한 수법이 오히려 간단하다면 풍베즈(奔別)와 함께 고노마이(鴻之舞)도 넣어 훗카이도의 스미토모 계열 합동으로 총독부 및 주요 도에 운동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7월 31일

7월 24일자 제16보 잘 읽었습니다.

1. 가족여비 초과분은 지불한 다음,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잘 알았습니다.
2. 연고모집 및 모집수속 촉진의 건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部)가 이를 실행할지의 여부는 이미 제반 소속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스미토모로서 혹은 훗카이도의 스미토모로서 각 관계회사가 함께 할 기회라도 있다면 각별히 논의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단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응급조치로서 먼저 실행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유도항의 방법은 법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유도항의 방법으로 연고자를 부르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하지만 자유도항도 누누이 조선 내, 일본내지의 시기별 정황에 따라 일시국부적 혹은 전반에 걸쳐 잠정적으로 중지된 듯하니, 이를 위해서는 말하는 것처럼 특수수단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지난밤(30일 오후 9시 20분) 여수에 가족이 도착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각각 준비 완료입니다.
4. 다다 고이치(多田吾市), 정진태(鄭鎮泰) 2명이 대구에 귀하의 부재중에 도착하여 약간 당황했겠지

만, 지금은 연락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운데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상)

7월 31일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여수에서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 가사하라(笠原)와 기무라(木村) 양 씨의 여비 건

처음에 가노(鹿野) 씨가 조선경찰관여비규정을 조사하기로 되었습니다만, 가노 씨 지병인 지나친 음주증독 상태로 인해 결국 만나지 못하고, 다른 방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령 경찰관이라도 회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모르는 것이 혼입된 규정으로 제가 대구에서 내일이라도 다시 조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 모를 때에는 회사 직원이 계산해주십시오. 이전에 경찰 측의 규정에 따르겠다거나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본인 등 두 사람도 백지로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전례도 없기 때문에 적당히 부탁드립니다.

50원을 미리 지불하겠습니다. 차표는 단체로 구입했습니다.

또한 순사부장 이상은 내지 2등이 4할 할인인 모양입니다.

2. 오늘밤 대구를 향해 출발합니다. 3일까지는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나바 씨를 시모노세키까지 돌려 보내겠습니다.

문제는 시모노세키와 오사카인데, 오사카의 지시대로 본점에 전보로 연락하여 보호 받겠습니다.

1940년 8월 1일

제17보

대구에서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대구에 26일이나 27일경에 돌아오겠다고 다나카 여관에 밀하면서 24일 이후에 도착한 전보 서장을 모두 모아 경성으로 회송하지 않은 점, 26일부터 경성의 여관을 총독부 보안과 직원들이 놀러온다고 해서 숙소를 평전관(平田館)으로 변경하고 판매점에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렸습니다만, 서무회계의 이마바야시(今林) 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29일 제가 다다(多田)에게 전화하기 직전에 과장님께 전보를 보내 소동을 일으킨 점 등 이런저런 나쁜 일이 겹쳤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더욱이 경부선이 복구되어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 29일 대구의 다다 씨와 경성에서부터 만나 대전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때마침 급행이 1시간 늦어져 전남행 호남선을 타지 못하여

이나바, 히라야마 씨에게도 심려를 끼쳤습니다만, 다행히도 예정표대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여수까지 사이에 가족 2명이 행방불명이 되는 등 웃지 못 할 희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만 4시에 출범하고, 저는 6시 밤기차로 대구를 향해 출발하여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1. 신청서 31일자로 경북 사회과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서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3일에는 허가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가는 8월 3일경 예정) (주(朱))

내일 2일 히라야마 씨가 담양에서 뒷정리를 마치고 돌아왔고, 이나바 씨는 4일 아침 오사카에서 대구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와 히라야마 씨만 먼저 현지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2. 가족의 수송은 현지 1박, 여수 1박, 도중 도시락, 시모노세끼에서 우타시나이까지 10차례 정도의 여비 등을 가산하면 막대한 액수에 달합니다. 다음에 원가를 계산하기까지 여러 번 이런 방법으로 불러올지 여부는 미정으로 하지 않으면, 광원 가족들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기 때문에, 산코(三礪)의 친화숙소(親和寮) 담당자가 ‘또 그런 방법으로 불렀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이 점에 대해 특별히 고려바랍니다.

3. 개척노무협회는 최근 하나라고 도망치게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일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모집하여 돌아간 사람만 기부한다고 말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전보로 부탁하겠습니다만, 회칙과 기타 서류 동봉합니다. (1인당 2원으로 100명분 200원입니다) (주(朱))

4. 이는 다다구마(忠隈)에게서 들은바 있습니다만, 부산 수상서(水上署)에서도 역시 무슨 협회라는 이름으로 1인당 50전을 징수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적절한 지시를 받고 싶기 때문에 회명 등이 판명되면 곧바로 통지하겠습니다. (부산도 저번 1인당 50전의 수수료를 징수) (주(朱))

5. 경성에서 보안과 나카타 씨를 니시마츠구미와 함께 ‘백수(白水)’로 초대했습니다. 21일 이후 사회과로 보낸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소가 들어간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택으로 고액의 우표를 보내려고 생각한 바, 마침 니시마츠구미에 놀러온다는 것을 알고 저도 여관을 바꾸어 함께 갔습니다. 여수에서의 숙소문제, 도시락 등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년처럼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마음먹고 기무라(木村)부장, 여수 미나미자와(南澤) 부장, 담양의 박(朴) 순사 3명에게 술을 샀습니다. 전자는 30원, 여수는 50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수에서 자유도항에 대해 잘 이야기했습니다만, 최후의 결론은 경찰부에서만 허용한다면, 각 경찰서에서는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1938년 7월 8일의 통첩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지과장님이 가사하라와 기무라 양 씨에게 물어봐주십시오. 저 또한 이와 관련해 전남의 도리야마(鳥山) 부장과 이나바(稻葉) 고등과장, 담양과 함평의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6. 군의 할당결정 이후, 군수, 서장 및 군의 담당자 2~3명에게 각각 5~6원 정도의 선물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요리집 초대 등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깨끗한 것 같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저처럼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모집을 완료하면 노무자를 출발시킨 다음 보통 그대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저도 함께 돌아가려고 합니다만, 자유도항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지 생각 중입니다. 그 때의 정세에도 관계가 있으니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8월 6일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귀하

1. 8월 1일자 제17보 및 경북개척노무협회 회칙을 오늘 보았다. (실은 3일 이후 우타시나이 광산에 있었음)
2. 가족 및 인솔자(경찰이 아주 잘 돌봐주었다) 모두 무사히 예정의 일시에 도착하여 곧바로 각각 집에 들어갔다. 광원 본인들의 기쁨이 아주 크다. 각자 준비 정리하여 일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가사하라, 기무라 양 씨는 산코(三礪)를 견학하고 사정을 보아 풍베츠(奔別)도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다.
3. 가족의 인솔은 상당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했지만, 도중 숙박 등에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면 단체 수송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도항하라고 말하고 싶다.
4. 신청서는 소문처럼 매우 복잡하다. 이나바 씨가 오사카에서 돌아와 피로하겠지만, 공동으로 서류를 분명히 하고 싶다.
5. 경북개척노무협회는 이야기를 듣자니 1인당 2원이라고 말하는데 100명이면 200원의 기부이다.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히 하겠지만, 수속이 끝나지 않으면 곤란하다.
6. 부산 수상서(水上署)의 도항자 1인당 50전의 수수료는 저번 이입 시에 이야기 들었다. 이는 금액도 소액이니 본점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다. 그 때 타합하기 바란다.
7. 자유도항은 현지의 실정을 조사하라. 다행히도 가사하라 씨도 있기 때문에 도청의 의향을 문의하기 바란다.
8. 할당 이후의 인사는 어쩔 수 없이 현지에서 편리하게 하라.

우타시나이 반도광원 문제

- 우타시나이 광산의 친화숙소에서 2일(공휴일)의 석식 시, 갑자기 일당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휴업을 논의하였다.
- 다음 3일부터 지금(6일)까지 휴업을 계속하고 있다.
- 주괴자(主魁者)는 오장(伍長) 배상기(裴相己), 김유식(金有植)으로 아주 계획적인 사건이다. 표면적으로 온건하여 불온한 행동은 없지만, 반도인 모두가 단단히 결속하여 일하지 않는다.
- 여러 가지 회유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정을 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행히도 지금 훗카이도 도의원의 선거 이전(선거는 10일)이어서 경찰의 일손이 부족하다. 즉시 단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 실지로 곤란하다.)
- 이미 오늘로 4일째 동맹파업이다. 그들 중에는 피로하여 내분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장이 리더이기 때문에 표면은 강하고 온건하게 행동하고 있다.
- 가사하라 씨와 기무라 씨도 사태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 아무튼 리더를 제거하고 평온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까지 곤란하다.

〈요구사항〉

- 일당 임금을 3원 이상 지불하라.
- 임금의 차별대우를 철폐하라.

〈설득의 주지〉

- 임금의 증수를 희망한다면, 청부를 맡겨야 한다.
- 임금인상은 9월 18일 중지령으로 불가능하다.
- 내지인과 반도인의 차별은 없다.
- 경험과 기능에 따라 계급이 있는 것은 당연한 구별이자 지극히 공평하다.

참고(반도인 우타시나이분)

1일당 평균임금	1일당 최고임금	7월 월수입(임시수당 근로보국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음)
4월 3.11원	4.27원	50원 이하 27명 총원 비율 13%
5월 3.14원	4.45원	50원 이상 24명 총원 비율 11%
6월 3.15원	4.28원	60원 이상 25명 총원 비율 12%
7월 3.40원	4.65원	70원 이상 42명 총원 비율 20%
		80원 이상 40명 총원 비율 20%
		90원 이상 35명 총원 비율 17%
		100원 이상 12명 총원 비율 5.5%
		110원 이상 3명 총원 비율 11.8
		120원 이상 2명 총원 비율 1%

1940년 8월 □일

제18보

오사카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 개척노무협회 기부금을 치쿠토요(築豊) 석탄광업회는 함께 일괄하여 기부하는 것 이외에, 최근에는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규슈 미츠비시의 가즈타(勝田), 히카이도의 유베츠(雄別), 신호로(新幌), 데시오닛소(天鹽日曹)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다다구마(忠隈)의 미야시타 마사미치(宮下昌通) 씨에게 전보로 “개척노무자협회 기부금은 어떤 이유로 거절하였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조회한 바, “확실히 기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유를 어떻게 하여’라고 말한 것입니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집비에서 내도록 결정하였다. 이상 회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쿠토요에서는 일괄해서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장의 무심함이란 한순간에 달라지기 때문에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칙을 보냈습니다만, 또 발췌해서 보내겠습니다. 할당된 군에서 하루 훈련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회장(지사) 이하의 연회비(宴會費)로만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훈련비용은 기부금에서 지출되는 모양입니다.

2. 경북은 현재 4천 명 정도 할당되었습니다만, 노동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사회과에서 군으로 할당하여도 군수로부터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후루카와(古河)의 시즈오카현(靜岡縣) 반다군(盤田郡)의 금광산 관계자가 오늘 말한 바에 의하면, 후루카와의 석탄산에서는 영덕군에 200명을 할당받았지만, 5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이 출장에서 돌아오기까지 할당하지 않고, 사회과장이 돌아온 다음 군의 정황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3. 그래서 결국 조금 할당이 늦더라도 좋은 군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군 지정의 결정권은 고등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히라야마 씨가 대구에 도착했다는 전보가 왔기 때문에 고등과에 있는 히라야마의 옛 친구에게 그 사실을 선전했습니다. – 이전부터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 가능하면 주임인 구니무네(國宗) 경부와 또 한 명 정도를 끌어들여 군의 할당을 유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북의 자유도항–연고모집–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4. 부산까지는 괜찮지만, 시모노세끼부터 도중에 도주가 많기 때문에 기차를 기다리지 않도록 연락해 두었습니다. 지시대로 통역도 반장과 같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정이 되면 반장=오장(伍長) 2명을 출발 사이라도 좋으니 파견해주었으면 합니다.

5. 인쇄비가 약간 들었습니다만, 경찰에 기부하는 형태로 첨부한 신현(身許)조사복명용지도 인쇄하였습니다. 경찰이 용지가 없다는 등 말이 많았습니다.

또 연락하겠습니다. (이상)

경상북도개척노무협회회비 수납규정 발췌

제2조

찬조회원은 본회의 경비 또는 기금으로 일시에 2천 원 이상 각출금을 낸 자 그 외 특히 본회의 사업을 원조하는 자를 취하여 회장에 의해 지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모집에 의해 경상북도 출신자를 상시 고용한 경상북도 외에 소재한 회원으로부터 그 노무자 1인에게 연 50전씩을 매년 1회에 수납한다.

제4조

경상북도 내 거주자를 노무자로서 도외작업에 종사케 하고자 모집하는 회원에게는 그 노무자 1인에 대해 조선외 취로에 있어서는 2엔(円) 조선내 취로에는 1엔씩 모집의 경우 모집 알선 및 훈련비등으로 수납함.

경상북도개척노무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경상북도개척노무협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경상북도 거주자의 도외(道外)개척이주의 조성보호 및 도의 내외에 걸친 노무자의 지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 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개척사상의 보급
2. 개척민의 조사 및 알선
3. 개척민의 교양훈련
4. 개척민의 보호지도
5. 개척지의 조사
6. 노무수급의 조사
7. 노무자의 교양훈련
8. 노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지도
9. 노무자의 수송원조
10. 노무처의 조사
11. 내선만(內鮮滿)협화사업에의 협력
12. 전 각 호 이외 제2조가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도청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을 나누어 찬조회원 및 유지회원 2종으로 한다.

1. 찬조회원은 특별 객금(釀金) 기타 방법을 통해 본회 사업을 원조하는 자로 한다.
2. 유지회원은 본회 사업 수행을 위해 매년 연회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3장 임직원

제6조 본회에 다음 임직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참여	약간 명
평의원	약간 명
이사	약간 명(이 중 2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주사	약간 명
서기	약간 명

제7조 회장으로는 경상북도 지사를 추천하고, 부회장은 경상북도 내무부장 및 경찰부장의 직에 있는 자로 이를 충당한다.

제8조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리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 시는 그 직무를 대장(代掌)한다.

제9조 참여는 경상북도 산업부장의 직에 있는 자로 이를 충당하고, 이밖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0조 평의원은 부윤, 군수, 도사(島司), 경찰서장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1조 이사는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2조 참여는 본회의 기무(機務)에 참여하고, 평의원은 본회의 중요사항을 상의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관직에 의한 임원인 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주사 및 서기는 회장이 이를 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5조 주사 및 서기는 상무이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회계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16조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둔다.

고문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7조 본회는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촉탁은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18조 본회는 각 부군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장을 둔다.

지부장은 평의원인 부윤 군수 및 도사로 이를 충당한다.

제19조 지부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지부의 사무를 총리한다.

제4장 회의

제20조 본회에 총회 및 평의원회를 둔다.

제21조 총회는 회원으로 조직하고 회무의 보고를 받아 회장으로부터 부의(附議)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22조 평의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의 처분
2. 예산 및 결산
3.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평의원회를 조직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평의원회에서 이를 편입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 및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이다.

제26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에 제시한 수입으로 이를 지변(支辨)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자산에서 나온 수입
5. 기타수입

제27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28조 본회의 출납은 다음 해 5월 31일로 폐쇄한다.

부칙

제29조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출석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1940년 8월 4일

제19보

대구 다나카(田中) 여관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 지난 3일(토요일) 경북 사회과 사사키 조쿠(佐々木屬)가 돌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당신네는 문경군이다. 문경에 가서 무연탄과 관계없는 자부터 모으도록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일 밤 히라야마가 대구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고등과 구니무네(國宗) 경부에게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을 할당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어느 군이 좋을지 잘 부탁한다”고 말했을 때, ‘고령군’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라야마 씨와 협의하여 먼저 고등과 관계자에게 히라야마와의 친분을 살려 “실은 사회과에서는 이렇테 말한다”고 말하자, 그곳은 탄광이 있어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구니무네를 비롯해 마에다(前田) 경부보, 미야하라(宮原) 부장 모두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과에 가서 고등과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말하자, 사사키는 “내가 가서 군과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사회과가 말하는 것을 들을지, 경찰 측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 고민하다가, 경찰이 말하는 것을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군할당결정협의회—사회과와 고등과—때에 문경을 반대하고 고령군으로 해달라고 구니무네 씨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고령에 전화하여 일부 모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괜찮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허가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확실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고령군으로 결정될 듯합니다.

2. 5일인가 6일에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군에 가서—고령은 대구로부터 버스로 1시간 반, 광주와 담양과 같은 거리—10개면에서 1면당 10명 정도 모집하고, 14일경에 집합하여 15일 훈련, 16일 오후나 17일 오전에 부산에서 승선할 예정입니다.

3. 2일자로 다다구마(忠隈)로부터의 편지가 오늘 아침 도착했습니다. 개척협회에 일금 500원을 오늘 송금했다고 합니다. 허가증을 받을 때 지불할 수 있도록 오늘 전보로 부탁드립니다.

4. 취업안내의 인쇄등사기를 빌려 인쇄합니다만, 용지명부의 용지와 함께 대구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

추신

내일 오후라도 허가증이 나오면 군에 곧바로 전보해두겠습니다. 이나바 씨만 내일 중이라도 군에 가고, 저는 부산 수상서(水上署)와 광철(廣鐵) 영업소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아침 군에 갈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한번은 부산 수상서에 가야합니다.

1. 가사하라, 기무라 양 씨는 산코(三礪)를 견학한 다음, 어제 8일 아침 출발하였다. 여비는 자네가 50원씩 사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가사하라에게는 230원 70전, 기무라에게는 204원 70전을 각각 지급했더니 매우 기뻐하였다.

2. 우타고(歌曠)의 반도인 동맹파업은 6일 밤 원만히 해결(무조건 항복)되어 7일 새벽부터 평상대로 일하고 있다.

가사하라와 기무라의 끈질긴 설득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러 가는 자가 나와 결국 붕괴되었다. (다만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우타고의 이번 문제도 그 내용에 담양과 함평의 세력 다툼이 있는 것 같다. 함평출신 오장이 담양 출신 오장(선량분자)의 배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반장이나 통역은 이번 모집수송에는 응모자로부터 뽑지 않겠다.

4. 우타고 사건이 오봉(お盆)⁴⁾ 이전에 정리되면 이번 이입은 예정대로 우타고에 30명을 배정하겠지만,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오봉 직후에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30명은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전보로 타합하겠다.

추신

경북 개척노무협회에의 기부금 200원은 승인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납입하기 바란다.

(제20보 생략)

4) 음력 7월 15일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조상의 영혼을 달래는 행사.

1940년 8월 6일

제21보

대구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 어제 밤 사회과로부터 내일 허가증이 나온다는 전화가 와서 오늘 아침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2. 협회에의 기부에 대해 “다다구마(忠隈)도 규정대로 지불하지 않았느냐. 지금 승인을 거쳐 준비 중이니 오늘 중으로 전달하겠다. 기부하지 않으면 군에 소개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3. 군수, 서장에게 타전하여 잘 부탁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4. 히리야마는 12시, 이나바는 1시에 각각 버스로 출발했습니다. 경성에서 온 4개의 나무상자에 들어 있는 단복과 기타 다른 것을 12개 보따리로 만들어 무리하게 버스로 보냈습니다.
5. 동봉한 표와 같이 모집 예정을 경찰서와 군청의 승인을 받고 내일 야행으로 부산에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제2안인 부산에 1박한 다음 수송하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안인 우타시나이까지 5일 걸리는 방법입니다. 광철(廣鐵)과 수상서(水上署)에 이들 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6. 경찰이 사상전람회에 나가서 1명도 없어 결국 거기까지 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기부의 추이를 확인하고 3시에 고령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1940년 8월 7일

제22보

고령 기쿠야(菊屋) 여관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 협회 기부의 건

- 어제 대답을 기다린 바, 도청의 퇴청 시각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원래 허가증 발급 이전에 전부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사회과에서 오늘 중으로는 필히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번 일도 있기 때문에 2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장의 무심함과는 달리, 지사가 회장이고 각 사 모두 지불하고 있음으로 쓸데없는 비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답을 듣기 전에 지불한 점을 양해해주십시오.

또 부산은 ‘경상남도 내선(內鮮)협회’라는 것이 도(道) 밖으로의 이출은 노무자 1인당 경북과 동일하게 2원, 통과이출–부산에서의 승선–은 인수에 따라 1인당 50전이나 1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편지로 승인을 부탁했으니 대답바랍니다. 8월 6일 기부 승인 취지를 전보로 보내더라도 늦을 것 같습니다.

2. 모집 상황

어제 전보를 기다려야했기 때문에 대구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첫차로 오전 9시 반에 당지에 도착하여 경찰서 및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에도 군청에도 히라야마의 지인이 많았습니다.

경찰 측은 17일 당지 출발 예정을 승낙했습니다만, 군청 과장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그 보다 노무계 관계자들은 더 여유를 달라며 확실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 이 때문에 저는 오늘밤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내일 과장을 면담하여 이미 정한 17일 출발예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 이를 연기할지를 결정한 다음 부산에 가겠습니다.

고령군은 8개면이 있습니다만, 모집은 고령, 다산(茶山), 개진(開津), 우곡(牛谷) 4개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이미 400명이 저에게 신청해서 인간은 충분합니다. 경북의 군 가운데 여기는 내지의 동북 아키타(秋田)와 같은 곳으로 천혜의 혜택을 받지 못해 자주 타지로 일하러 나가는 곳입니다. 또 대구에서 버스로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교통의 편의가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는 합천행(경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물자는 대구로부터 9리를 자전거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트럭도 없습니다. 마치 내지의 동북지방의 모집과도 같아 물론 비교의 문제입니다만 암광(岩礦)의 모집이라고 말하면 그런 것이냐고 따라나섭니다. 서장, 고등과 주임, 군수 모두는 아주 흔쾌히 노무자 모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다음번 모집에 대해서

현재 총독부로부터 경북을 할당받은 자들이 도청에 많이 와있습니다. 가령 7월 중에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도 부현(府縣)으로부터 총독부에 서류를 보내는데 2~3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2~3일에 서류가 도착한 것은 대리인이 7월 말부터 총독부에 오더라도 할당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8월 예정의 80명분은 가능한 한 빨리 도청으로부터 총독부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할당은 판매점의 이마무라(今村) 씨가 교섭할 것이라고 총독부와 이마무라 씨 본인에게 말해두었습니다.

80명분도 제가 담당합니다. 이번 수송이 빨리 되면 데리고 가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면 우타시나이에서 1~2박의 여유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만, 각 회사, 총독부, 도청 관계자와 얼굴을 잘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1~2할의 덕을 보는 듯합니다.

8월 말에는 전남에서도 할당을 하는지의 여부를 이마바야시(今林) 씨에게 물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남에서 할당을 받고 도(道)로부터 담양과 함평을 받아 연고모집을 했으면 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담당하겠다고 후생성의 신청서 사본 1통과 허가증 사본이 있다며 경성의 점(店)에서 신청서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정을 알려주십시오.

내일 부산의 교섭 결과를 속보하겠습니다. (이상)

8월 12일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제22보 잘 보았습니다.

경북개척노무협회에의 200원 기부는 지난 6일 승인했다고 대구 및 고령에 각각 타전하였습니다. 7일자 제22보에서는 위의 전보를 받지 않은 모양인데 이후 수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내선협회에의 기부금도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저번 구초자와(杏澤) 씨의 경우는 여수 승선의 관계로 부산은 단지 경유라고 말한 바, 달리 기부는 없었습니다. 조속히 품의(稟議)할 것이니 승인되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다음번 모집신청은 7월 7일 홋카이도 도청에 제출하고 후생성에 수속중인 인간은 80명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본년 중에는 예정인원 3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1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모집을 둘러싼 사정도 있어 시급히 홋카이도에 가보겠습니다.

빨리 허가를 받으면 수고스럽겠지만 자네의 예정대로 후생성에 신청서 사본 및 허가서 사본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집 중의 분을 수송하는 일이 당면한 급무이기 때문에, 만약 위 사본의 송부가 늦어지면 이번 수송이 끝나고 다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모집지로서 전남을 획득할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총독부가 다음번부터 어느 도를 모집에 지정할지 사전에 의향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다. 건강이 염려되는데 어떤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선에 간 다음 많이 여위었다는데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나바와 히라야마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1940년 8월 9일

제23보

부산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 어제 군의 내무과장과 면접한 바, (1) 고령군은 처음에는 도의 할당이 없었기 때문에(제 보고대로 문경군이었기 때문에), 면에서는 당사의 모집에 관해 완전히 백지상태에 있다는 것=7일까지, (2) 여유를 두고 날을 정하면 틀림없이 100명을 모을 수 있지만, 너무 서두른다면 보증할 수 없다는 것.

위의 두 가지를 이유로 17일까지 일단 도에서 명부 작성을 준비하니 21일경 출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신청서를 돌리는 수속에 필요한 시간의 배가 걸려 충분히 전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의 예정보다 약 1개월이나 늦어지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라며 19일이나 20일은 괜찮은지 절충해 보았습니다만, 도청에서 사전에 통지한 모집에서도 이렇게 서두를 예정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21일 출발을 주장해서 결국 21일에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21일 출발을 결정하고 부산에 어제 도착해 철도를 교섭하러 갑습니다. 보내드린 제2안은 급행을 타기 때문에 불가, 제1안의 부산 오전 승선은 탄광기선이 7월 29일에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매일 70명씩 수송 신청이 있기 때문에, 선박은 되지만 호쿠리쿠선(北陸線)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도쿄를 돌아갈 예정을 세웠습니다. 이 예정에서 가장 문제인 것은 도쿄역과 우에노(上野)역 사이의 수송인데, 도쿄역 홈에서 정렬시켜 15명에서 20명씩 성선(省線)⁵⁾으로 우에노까지 데리고 가면, 오사카에서 역 밖으로 나가 도망갈 염려를 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족수송으로 본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은 도쿄지점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첨부한 예정도 사실은 80명을 신청해두고 광철(廣鐵) 부산출장소에서 수송 당일 100명의 표를 발행받습니다.

3. 부산 오후편이라면 가령 부산에 오후 3시반경에 들어오더라도 그날 중으로 곧바로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대구를 오전 9시 14분에 대구 출발 열차에 태워 부산에 오후 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에서 버스와 트럭으로 오전 7시경에 출발해야 합니다만, 경찰의 중계를 통해 운송해보겠습니다.

4. 도쿄로 돌아갈 경우, 성선(省線)의 사정을 잘 모르는 자에게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수송에 따라가지 않을 때는 누군가를 도쿄까지 파견해주십시오.

5. 작업용 신발(足袋)은 암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손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운동화라도 신겨야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짚신을 신겨도 좋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찾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광원수송예정표

21일	대구 발	오전 9시 14분, 11시 20분
	부산 착	오후 0시 55분, 3시 25분
	부산 발	오후 11시 30분
22일	시모노세끼 착	오전 7시 5분
	시모노세끼 발	오전 9시 33분 104열차 오사카행
	히로시마 착	오후 2시 40분
	히로시마 발	오후 2시 55분 42열차 도쿄행

5) 구(舊) 철도성이 관리하고 있던 철도 또는 전차의 노선의 통칭.

23일	도쿄 착	오후 2시 25분
	우에노 발	오후 6시 45분 115열차 아오모리(青森)행
24일	아오모리 착	오후 0시 41분
	아오모리 발	오후 2시 10분, 6시
24일	하코다테(函館) 착	오후 7시 10분, 10시 30분
	하코다테 발	오후 11시 15분 405열차 구시로(釧路)행
25일	스나가와(砂川) 착	오전 10시 2분
	스나가와 발	오전 11시 10분 33열차
	우타시나이 착	오전 11시 53분

8월 13일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제23보 읽었고, 22일 전보도 지금 받았습니다.

우타고(歌礪)는 이후 순조롭게 일하고 있어 표면상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4일간이나 동맹파업이 이루어졌고, 경찰 측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오봉(お盆)이 끝날 무렵에 경찰이 손을 쓸 계획이다. 마침 이번 모집출발이 21경으로 연기되어 25일경에 도착 예정임으로 도착 전에 본건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정이 좋지 않으면 우타고 30명을 아게우타(上歌)로 돌리도록 상사의 양해를 얻어두었습니다. 오늘 아게우타에 60명을 예정하도록 타전하였습니다. (우타고가 일단락되어 예정대로 우타고 30명이 될 경우는 다시 타전하겠습니다.) 아게우타는 이상 없이 순조롭습니다.

다음번 모집은 후생성의 수속이 7월 초인데 아직 허가가 없는 도청에 독촉할 예정이니 잠시 기다리세요.

표시와 같이 총독부가 9월분을 마감하면 서둘러야합니다. 그럴 예정으로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부산의 통행세를 말하는데, 내선협회에의 기부금은 승인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작업용 신발 대용으로 운동화를 말했는데, 그것이라도 좋다면 꼭 구해오기 바랍니다.

수송이 도쿄를 경유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호쿠리쿠센(北陸線)을 경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쿄 요코하마는 종래 타사에서도 경험했는데, 도주로 인해 아주 고생한 곳입니다. 2일 정도 늦어도 호쿠리쿠센을 경유하여 출발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1940년 8월 10일

제24보

고령 기쿠야(菊屋) 여관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6일자 우타고에서 보내신 상황을 대구에서 보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미루어 짐작합니다.

아케우타의 기숙사의 일도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시간을 내서 친화속소(親和寮)에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돌아갈 때까지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어제 밤 여기까지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만, 풍베츠(奔別)의 다카하시(高橋) 씨가 부산 핫토리(服部) 여관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묻고, 또 저도 알고 있는 바를 말하려 했습니다. 몇 번 전화했지만 없어서 오늘 아침 제가 머물고 있는 하나야(花屋) 호텔로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일찍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청 사회과에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출두하지 않아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완장을 주문하러 갔을 때, 고노마이(鴻之舞)의 가와카미 가메타로(河上龜太郎) 씨가 온 것을 알고 부지화(不知火)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담화회(談話會)가 480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시즈카리(靜狩)와 고노마이는 각각 100명으로 일본광업의 다이킨(大金)과 함께 모집종사자가 6~7명 정도 있었습니다. 치쿠토요(築豊) 석탄광업회는 촉탁이 본부에 와도 서류가 매우 진척이 없지만 담화회는 빨리 간 모양입니다. 과연 인부를 모을 수 있을지 여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 군에 따라서는 아주 이상한 곳이 있는데, 선산군과 같은 경우는 100명을 언제까지 준비하겠으니 얼마든지 청부하라고 말한다 합니다.

제가 오늘 비로 인해 고령군에만 출두했습니다만, 이나바와 히라야마 두 명이 방문한 곳에서는 4면 모두 모집을 잘 이해하여 문제없이 100명의 우수한 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내일이나 적어도 모레까지는 3개면에 갔다 오겠습니다.

경찰과 제가 의견 일치하여 가능한 한 국어를 모르는 소박한 자를 골라 경찰에서 신분조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소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 대한 할당인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면 10명

다산면 30명

우곡면 20명

개진면 20명

3. 부산에서 쉬어갈 반도여관도 정했습니다만, 길가에서 이와테현(岩手縣) 마쓰오(松尾) 광산의 인부를 보니 작업용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찾아보았습니다만, 운동화조차도 없습니다. 잘

찾아달라는 말에 익숙해 있지만,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4. 예정을 보고드릴 때마다 변경되어 면목이 없습니다만, 21일에 출발하여 25일 우타시나이에 도착할 예정은 절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총독부에서 도의 할당을 받아 허가증을 받기까지 꼭 한 달이 걸렸습니다만, 할당 시부터 서류의 왕복 사이에 전남에 갔기 때문에 4~5일은 손해를 보았습니다만, 모두 함께 허가증을 받았으니 안심하십시오.

아게우타의 친화속소가 걱정이 되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울 때 수속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다음번 모집을 누군가에게 인계하여 요령의 ABC를 처음부터 배우는 것보다 경험을 살려 2주간에서 20일간 사이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우타고 문제에 대한 편지를 보고 생각했습니다만, 만약 고령의 광원이 괜찮다면 80명이라도 고령에서 모집하는 것이 전남의 연고모집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25일에 광산에 도착하기 때문에 성적의 좋고 나쁨을 5일이나 10일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6. 아무튼 80명을 계속하여 모집한다면, 이번 달 안으로 훗카이도 도청으로부터 총독부에 서류를 회송해야 하는데, 최근 들은 바로는 –이와키(磐城) 탄광의 고다이(御代) 씨 –부현 후생성을 총독부에서 하는 것처럼 서류를 회송하면 1주간 정도로 끝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7. 고노마이(鴻之舞)는 경북에 할당이 됨과 동시에 협회에 기부하였는데, 가와카미(河上) 씨의 이야기로는 고노마이는 부산의 수상서에서 경남내선협회에 다른 도(道)에서 데려가는 도중에 1원씩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50전으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21일 1원씩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수속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940년 8월 12일

제25보

고령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1. 각 면의 상황

고령면, 이 면만 전형을 하루 늦추어 17일에 전형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면에서 인원부족이 생길 경우는 이 면에서 보충하겠다고 면장 및 서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산면, 이 면도 30명에 충분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16일 회사 측의 전형 이전에 희망자를 면 및 주

재소에서 한 번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곡면과 개진면 이 두 면이 과연 적격자를 20명씩 고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재소 및 면사무소 모두 달구지(馬力)를 이용해 선전 권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정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정원을 넘을 정도로 모일 수 있도록 면 및 주재소에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두 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경찰서 고등주임은 주재소에 전화로 “이번 모집은 다음에 분명 기뻐할 모집이고, 경찰 관계 인사도 왔기 때문에 구장에게 위탁하지 말고 자신이 권유하라”고 독려해주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사회과 노무계 주임이 내일부터 군에서 면으로 출장을 나가 만약 예정인원을 모으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 다른 면으로 할당하겠다고 질책하는 등 경찰서와 군청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또 각 면장도 나아가 면의 인간을 내지로 보내려 합니다만, 여기에 하나의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 양반의 저지운동입니다. 지주인 그들은 부락민이 내지에 가면 임금이 오르고 자기 자신도 일해야 한다는 것을 염려해 악선전하는 모양입니다. 이에 경찰서, 군청, 면사무소, 주재소에서는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으로 구장인자 등에게는 구장에게 맡기지 않고, 순사 및 면직원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모집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커다란 문제입니다.

3. 부산수상서에서의 경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21일 당지로 출발했을 때, 경찰관을 1명 부산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교섭하였습니다. 아마 일을 만들어 함께 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판매점의 이마바야시(今林)에게 편지로 제가 7월 29일 경성을 출발한 다음, 총독부의 동정을 조사해주기를 부탁한 바,

(1) 9월 할당은 8월중에 후생성의 허가가 있을 것이고, 업자가 총독부에 출원한다 해서 필히 도를 할당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9월 할당 예정 인원이 초과될 때(몇 명인지는 모르지만)는 언제라도 월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마감한다.

(2) 9월의 할당에 전남이 들어갈지의 여부는 미정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한 예정대로(우타고의 이번 사건으로 예정이 변경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입의 경우, 후생성의 허가를 하루라도 빨리 받고, 9월 할당에 맞출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전보를 보냈습니다. 신청은 판매점의 이마바야시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5. 다음번 이입 예정을 변경하든가 혹은 변경하지 않더라도 저를 대신해 누군가가 담당할 경우는 별도겠지만, 제가 예정대로 모집을 담당하면 시간이 촉박하니,

(1) 광원과 함께 가서 25일 우타시나이에 도착, 27일 우타시나이를 출발하여 30일 경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던가. 조금 여유를 두어

(2) 도쿄까지 수송에 따라가 24일 도쿄에서 돌아오든가.

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인든 좋습니다만, (2)의 방법에 따를 경우는 23일 오후 2시에 광원이 도쿄역에 도착할 때까지 1명의 직원을 파견해주십시오. 이 경우 직원-조수를 포함-

이라고 혹은 실습생이나 오장(伍長) 등 누구라도 좋겠습니다. (이상)

추신

판매점의 편지로는 도히(土肥)의 가네야마(金山)가 할당을 받지 못할 것을 모르고 오늘 경성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8월 17일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귀하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1. 우타고(歌礪)는 이후 순조롭다. 빨리 문제의 주모자를 잡아 송환할 예정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근일 중 이를 실행할 것이니 이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게우타(上歌)와 신우타(新歌)는 평온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다. 떨어져 있으니 걱정되겠지만, 이상의 정황으로 염려는 없다.

2. 다음번 모집은 후생성에의 편지가 아직 훗카이도 도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 달 말 정도가 될 것 같다. 자네로부터 총독부 할당 관계 통보를 받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번 모집 종료 이후 곧바로 남아 다음번 수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상이 서지 않음으로 먼저 일단 돌아올 예정으로 있기 바란다.

3. 더운데 각 면을 순회하면서 모집에 노력하는데 수고가 많다. 누구라도 몸이 상하면 곤란하니 모두들 조심하기 바란다.

4. 면의 간사가 비교적 열심인 것 모두 자네들의 노력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이상)

〈표 5〉 반도 광원 모집 출장자 다케오카(武岡) 통신

월일	번호	적요
8월 14일	No. 26	차회 80명의 모집은, 1. 판매점에 사전에 신청서를 송부해 둔다. 2. 후생성의 인가가 나오면 판매점에 통보하여 신청을 수속한다. 총독부는 할당참조를 위해 당초 신청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모집종사자 신원증명서 정본 및 부본 8통 노무규칙, 부조료(扶助料)표 8통 내용을 명기하여 판매점 앞으로 발송할 것. 전무의 위임장을 본점에 말해두겠다. 종사자는 모집이 곤란함으로 선전을 할 수 있도록 오장을 시킬 것. 1안. 이나바와 오장 2명

		2안. 이나바, 히라야마, 오장 1명 도쿄 경유 건에 대해 도쿄 지소의 원조 의뢰를 총무과에 제출하였다. 도쿄 경유의 경우, 다케오카(武岡)는 도쿄에서 돌아가니 우타시나이에서 2명 이 나와주기를 바란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도어를 아는 자가 좋겠다.
8월 15일	No. 27	단복, 게이틀 전투모자 준비, 7월 16일 완료, 작업용 신발 76쪽 외에 부족분은 운동화로 한다. 완장 준비가 끝났다.
8월 21일	전보	8월 21일 95명 지금 이곳을 출발 다케오카(8월 20일 호쿠리쿠 경유 선약 있음, 오사카에서 기다리면 도주의 염려가 많음. 나도 우타시나이까지 가니 도쿄에 나오는 자는 1명으로 충분)

1940년 8월 14일

제26보

고령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광별(礪別) 인원 할당 변경 및 운동화 구입 승인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우타고는 무조건 항복이라니 듣기 좋습니다.

1. 모집은 100명을 모으는데 정말 어렵습니다만,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모으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수송을 늦춘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어제 버스로 운동화 구입 등의 일로 대구에 갔습니다. 사회과에도 들러 인사하고 21일 수송예정을 말했는데, '극비'로 되어있는 일람표(제가 보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를 보여주어 놀랐습니다.

2. 다음번 80명분의 예정

(1) 사전에 판매점에 신청서(이번과 같습니다만, 산코(三磧)의 명칭 등을 삭제합니다)를 송부해두고, 후생성의 허가가 나왔다는 전화가 저에게 오면, 곧바로 판매점에 전화나 전보로 할당을 받도록 교섭하겠습니다. 허가가 이 보고서보다 훨씬 뒤에 나온다면 판매점에 직접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총독부에서는 할당에 참고하고자 처음 신청서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 제출하기 때문에 다음번 모집종사원을 정하고, ① 신원증명 정본과 부본 8통, ② 고용노역규칙 및 장해부조료표 8통을 봉투 걸면에 내용을 명기하여 판매점에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의 위임장은 직접 본점에 말해주시던지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3) 종사원은 현지에 적응된 자가 가장 좋습니다만, 어느 도나 군에 할당을 받더라도 사람이 부족하여 모집이 곤란합니다. 오장(伍長)과 같은 자를 종사원으로서 활용하여 각 부락에서 선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나바 씨와 오장 2명, 혹은 히라야마와 이나바 양 씨와 오장 1명과 같은 구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4) 총독부에서 전남을 9월 할당분에 넣을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은 정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을 희망할지 후생성 허가의 전보가 오면 조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도쿄역과 우에노역 사이의 수송에 대해 도쿄 지점에 도와달라고 본점 총무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복잡합니다만 오사카에서 기다리면서 불량선인에게 빼앗길 염려를 하는 것보다 편하니 괜찮습니다.

4. 제가 도쿄에서 돌아올 경우 결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쿄까지 관계자를 1명 파견하도록 의뢰했습니다만, 오늘 저희 3명이 모여 협의한 결과, 2명으로 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가운데 1명은 반도어⁶⁾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좋겠습니다. 이 경우, 증희만(曾喜万)과 김창수(金昌秀) 가운데 한 사람만의 파견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940년 8월 15일

제27보

고령에서

시나노(信濃) 과장 귀하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8일자 '다음번 모집수속 8월 말(또는 수속 8월 말?) 예정'이라는 정보를 읽었습니다.

1. 단복 이외에 '케이틀'과 전투모자는 6월 16일자 제13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준비하여 고령에 가지고 왔습니다.

작업용 신발은 다다구마(忠隈)의 미야시타(宮下)와 미츠이의 야마노(山野), 오와(大和) 씨 등도 전혀 없다고 말해서 포기했습니다. 대구에서 사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운동화(단화) 150개를 찾았습니다만, 2원씩이나 하여 견본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히라야마와 이나바 두 명과도 상의한 결과, 승낙을 얻어 오늘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우연히 작업용 신발 76족을 구할 수 있어 운동화 대신 작업용 신발을 구입하였습니다. 1족당 2원 70전인데, 조선의 공정가격은 1원 85전입니다. 신고 있지 않는 자부터 먼저 신기고, 부족하면 운동화를 지급하겠습니다. 배급한 자는 명부에 마크해 두겠습니다. 작업용 신발은 다른 군의 순사부장을 했던 자가 찾았는데, 2원으로 단화 운동화를 구입하는 것보다 이득이라 생각하여 곧 바로 구입했습니다. 완장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2. 가족수송에 대한 원조를 부탁하는 예장(禮狀)을 보내야 합니다만, 판매점 지배인 히라사 슈조(平佐周三) 씨에게도 발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노(鹿野) 씨에게는 전남의 도리야마(鳥山) 경찰부장에의 소개장을 받은 다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저도 물론 예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 반도어는 조선어를 지칭함.

3. 다음번 80명분에 대해 후생성에는 도쿄지점, 홋카이도 도청에는 우타시나이의 직원을 파견하여
독촉하시어 꼭 이번 달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청으로부터는 항공편으로 총독부에 서류
를 회송하도록 의뢰하여 주십시오.

월 말까지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아래, 24일 저는 도쿄에서 돌아와 27일 늦어도 28일까지는 경성
에 도착 예정으로 본점에서 위임장을 받아오겠습니다.

어제 제26보에서 부탁하지 못했습니다만, 홋카이도 도청에의 신청서 사본 1통을 경성 판매점으로 보
내주십시오.

4. 오장(伍長) 김창수(金昌秀), 중희만(曾喜萬) 가운데 한 사람만 보내면, 나머지 한 사람이 약간 그렇
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다음번은 너다. 교대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
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실습생과 다다(多田) 씨를 보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경(歌經) 제2329호

1940년 8월 18일

경성판매점 지배인 히라사 슈조(平佐周三) 귀하

우타시나이 광업부장 고노 노리오(向野義夫)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는지요.

저번 당 광업부 노무계원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가 반도 광원 모집을 위해 경성에 갔습니다. 판
매점의 업무도 바쁘실텐데 여러모로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덕분에 모집에 관한 여러 수속
도 잘 진행되어, 지금 순조롭게 모집에 착수 중입니다. 많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집
인원의 정비에 대해서는 모집비의 지불 및 여러 용품의 구입 외에도 많은 신세를 지어 몸 둘 바 모르겠
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경(歌經) 제2330호

1940년 8월 18일

가노 히로시(鹿野宏) 귀하

우타시나이 광업부장 고노 노리오(向野義夫)

안녕하십니까.

저번 당 광업부 노무계원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가 모집을 위해 경성에 출장을 갔습니다. 바쁘
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덕분에 모집 수속도 잘 진행되어, 지금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열심히 모집에 착수 중입니다. 근일 중에 모두 모아 수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번에 이입 반도 광원의 가족 수송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에 대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전라남도 경찰부의 가사하라(笠原) 경부 및 기무라(木村) 순사부장을 만나는데 알선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씨는 수송 중에 완전히 가족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철저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수의 부녀자와 아이들도 있고 폭서 중의 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사히 예정된 일정대로 안착하였습니다. 가족들도 안정되고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경(歌經) 제 호

년 월 일

가노 히로시(鹿野宏) 귀하

우타시나이 광업부장 고노 노리오(向野義夫)

안녕하십니까.

저번 당 광업부 노무계원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가 모집을 위해 경성에 출장을 갔습니다. 바쁘 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덕분에 모집 수속도 잘 진행되어, 지금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열심히 모집에 착수 중입니다. 근일 중에 모두 모아 수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번에 이입 반도 광원의 가족 수송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에 대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전라남도 경찰부의 가사하라(笠原) 경부 및 기무라(木村) 순사부장을 만나는데 알선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씨는 수송 중에 완전히 가족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철저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수의 부녀자와 아이들도 있고 폭서 중의 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사히 예정된 일정대로 안착하였습니다. 가족들도 안정되고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경(歌經) 제 호

년 월 일

경성판매점 지배인 히라사 슈조(平佐周三) 귀하

우타시나이 광업부장 고노 노리오(向野義夫)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는지요.

저번 당 광업부 노무계원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가 반도 광원 모집을 위해 경성에 갔습니다. 판 매점의 업무도 바쁘실텐데 여러모로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덕분에 모집에 관한 여러 수속도 잘 진행되어, 지금 순조롭게 모집에 착수 중입니다. 많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집 인원의 정비에 대해서는 모집비의 지불 및 여러 용품의 구입 외에도 많은 신세를 지어 몸 둘 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이입 반도인 출발 및 도착 예정

21일 대구 발	오전 9시 14분, 10시 20분
부산 착	오후 0시 55분, 3시 25분
부산 발	오후 11시 30분
22일 시모노세끼 착	오전 7시 5분
시모노세끼 발	오전 9시 33분 104열차 오사카행
히로시마 착	오후 2시 40분
히로시마 발	오후 2시 55분 42열차 도쿄행
23일 도쿄 착	오후 2시 25분
우에노 발	오후 6시 45분 115열차 아오모리(青森)행
24일 아오모리 착	오후 0시 41분
아오모리 발	오후 2시 10분, 6시
24일 하코다테(函館) 착	오후 7시 10분, 10시 30분
하코다테 발	오후 11시 15분 405열차 구시로(釧路)행
25일 스나가와(砂川) 착	오전 10시 2분
스나가와 발	오전 11시 10분 33열차
우타시나이 착	오전 11시 53분

〈출전 : 小沢有作 編 「半島礦員募集關係書類(住友歌志内炭礦, 1940年)」,
『近代民衆の記録 10』在日朝鮮人, 東京:新人物往来社, 1978년, 428~456쪽〉

2) 노무자 훈육 구체안(1943)

석탄통제회 삿뽀로(札幌) 지부(1943년)

유바리(夕張) 광업소

1. 이입노동자 훈련요강

보통훈련기간

보통훈련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반일(4시간)은 주로 쟁내작업에 적응할 수 있는 체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스콥 사용법, 탄차를 미는 방법, 쟁목의 운반 등을 다음 방법에 따라 습득시킨다. 훈련에는 주임 1명, 계원 2명, 내지지도원 노무자 3명, 반도지도원 3명(통역)을 전임으로 한다.

제1일

1. 전등취급방법, 입갱심득(入坑心得, 반도어 팜플릿)
2. 중량 10관의 쟁목을 끌고 200미터 3회 왕복
3. 중량 10관의 쟁목을 어깨에 메고 200미터 3회 왕복
4. 스콥으로 돌덩어리를 수평으로 던지는 요령을 습득시키고(던지는 거리는 2~3미터), 반일 간 4차 내지 5차의 돌덩어리를 취급한다.

제2일

전일과 같은 작업으로 돌덩어리 양은 8~12차

제3일

같음

제4일

같음

제5일

1. 돌덩어리가 만재된 탄차를 2명이 200미터를 운반하고 이를 3회 내지 4회 왕복한다.
2. 돌덩어리를 스콥으로 좌우 앞으로 각 10분간 호령에 따라 3회 내지 4회 왕복하고, 돌덩어리 양은 8차 내지 12차를 취급한다.

제6일

같음

제7일

같음

제8일

같음

제9일

1. 돌덩어리가 만재된 탄차를 2명이 200미터를 운반하고 이를 3회 내지 4회 왕복한다.
2. 끈을 1.25미터(탄차의 높이)의 높이로 매고 돌려던지기와 수평던지기를 □□□□ 3회 반복한다.

제10일

같음

제11일

같음

제12일

같음

제13일

1. 피크 착암기의 사용방법 습득

2. 끈을 벨트 폭으로 매는 운반방법을 알리고, 좌우 앞으로 스콥을 사용하는 요령으로 안팎으로 던져 쌓는 방법 훈련

제14일

같음

제15일

같음

이상 15일간의 훈련 중, 노무자의 체격, 체력, 두뇌, 기술의 정도 등에 따라 갑, 을, 병으로 구분하여

□장, 주임에게 통지하고 현장으로 옮긴다.

갑은 곧바로 선산(先山)⁷⁾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자.

을은 운반, 채탄, 굴진 등 후산(後山)⁸⁾으로 채용하고, 장래 우수한 자를 선산으로 양성할 수 있는 자.

병은 잡부로서 채용 당시 앞으로 선산이 될 수 없는 자.

비고>

1. 제18일에는 검열과 더불어 숙소로 돌아갈 때, 신사참배를 실시하고 다음 날부터 드디어 일할 수 있도록 소원할 것

2. 중소상공업 광업자 훈련요강

지도직장 규모 및 작업 : 유바리 제2광 4구 견갱채탄 준비갱도(갱구 입구에서 걸어서 약 5분) 1.0×10 가배(加背)⁹⁾ 본갱도 및 첨(添)갱도의 탄 굴진 및 탄차 밀기

7) 광산의 제1선에 서서 채굴을 담당하는 숙련된 작업원.

8) 광산에서 채굴작업을 하는 광원을 도와 석탄이나 광석을 운반하는 작업원.

9) 광산용어 갱도나 터널의 단면적을 표시하는 말. 예를 들어 4×6가배는 폭4척, 높이 6척의 갱도의 단면을 말함.

1. 훈련기

훈련기간을 착산(着山) 이후 1개월로 하고, 이를 3기로 나누어 제1기를 7일간, 제2기를 8일간, 제3기를 15일간으로 한다. 각 기간의 훈련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요 학과는 예법, 시국에 관한 사항, 기타 적당한 과목 가운데 시간을 이용하여 반복 실시한다. 강평도 마찬가지이다.

제1기 : 제1일부터 7일까지(7일간)

제1일

1. 착산식(소장, 부소장, 기술장, 서무과장 출석), 2시간
2. 학과(생활상의 주의 기타 지도), 1시간

제2일

1. 조례(국기계양, 국가봉창, 궁성요배, 기념(祈念)), 오전 7시 30분~8시
2. 적성 성능조사, 오전 8시 10분~9시 30분
3. 학과(입소심득, 영화, 약진탄도(躍進炭都) 감상), 오전 9시 45분~11시 30분
4. 신체검사, 오후 1시~3시

제3일

1. 조례(이전과 동일), 오전 7시 30분~8시
2. 입사수속(계서약차 용구준비), 오전 8시 10분~9시 30분, 오후 1시~3시
3. 학과취업부조(고용취업규칙부조규칙), 오전 9시 45분~11시 30분

제4일

1. 조례, 오전 6시 30분~7시
2. 학과노무법규(노무조정령, 임금통제령, 임금의 산정방법 및 지불), 오전 7시 10분~9시
3. 교련, 규율훈련, 오전 9시 10분~11시 30분
4. 예법(생활에 관한 기본예법), 오후 0시 30분~3시 반

주) 가족이 있는 자는 오후부터 집에 들어가는 준비 때문에 4일째 이후 3일간에 완료하도록 지도할 것.

제5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 30분~7시
2. 학과 탄산(炭山)생활-경무, 오전 7시 10분~9시
3. 교련 규율훈련, 오전 9시 10분~11시 30분
4. 실습 쉬운 간외작업(스콥 조법(操法) 실시-수평 투법), 오후 0시 30분~3시 30분

제6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 30분~7시
2. 학과 노무보험위생(응급치료), 오전 7시 10분~9시
3. 교련 규율훈련, 오전 9시 10분~11시 30분
4. 실습 쉬운 갱외작업, 오후 0시 30분~3시 30분

제7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 30분~7시
2. 학과(유바리 광업소의 연혁과 사업), 오전 7시 10분~9시
3. 실습 쉬운 갱외작업(스콥 조작 실시 및 재료운반), 오전 9시 10분~11시 30분
4. 시설견학(갱외), 오후 0시 30분~3시 30분

제2기 : 제8일부터 제15일(8일간)

제8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산업보국운동의 조직운영 및 정신), 오전 6시 40분~9시
3. 학과(황국민) 광산훈(礦山訓), 오전 9시 10분~11시 30분
4. 행군, 오후 0시 30분~4시

제9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지질과 석탄), 오전 6시 40분~9시
3. 학과 갱내 재해예방 발생조치, 오전 9시 10분~11시 30분
4. 실습 스콥 조작법(수평던지기) 및 재료운반, 오후 0시 30분~4시

제10일

공휴

제11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 작업심득 및 보안규정, 발파지주충전운반, 전등취급 및 입갱심득, 오전 6시 40분~11시 30분
3. 실습 전등차장 갱내견학, 오후 0시 30분~4시

제12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 작업기본(작업용어, 용구복장), 오전 6시 40분~11시 30분

3. 실습 스콥 조작법 및 재료운반, 오후 0시 30분~4시

제13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 석탄의 중요성과 용도, 오전 6시 40분~11시 30분
3. 실습(전일과 동일), 오전 9시 10분~오후 4시

제14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 기계전기의 상식, 오전 6시 40분~9시
3. 실습 스콥 투법(탄차쌓기 및 재료운반), 오전 9시 10분~오후 4시

제15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 채탄학(채탄선탄방법), 오전 6시 40분~9시
3. 실습 전일과 동일, 오전 9시 10분~오후 4시

제3기 : 제16일부터 제30일(15일간)

제16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 운반법, 오전 6시 40분~9시
3. 실습 스콥 투법, 탄차쌓기 및 재료운반, 오전 9시 10분~오후 4시

제17일

전일과 동일

제18일

전일과 동일

제19일

전일과 동일

제20일

공휴일

제21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 지주법, 오전 6시 40분~9시
3. 실습 톱(鉄鋸)의 취급방법, 3~7촌의 간목 자르기, 기둥(樑) 깎는 방법, 채탄 채우기 방법(치수 재는 법, 세우는 법, 문설주 묶는 법), 오전 9시 10분~오후 4시

제22일

전일과 동일

제23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학과, 오전 6시 40분~9시
3. 실습 (1) 피크 착암기의 사용방법 습득, (2) 끈을 벨트 폭으로 매는 운반방법을 알리고, 좌우 앞으로 스憔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팎으로 던져 쌓는 방법 훈련, 오전 9시 10분~오후 4시

제24일

전일과 동일

제25일

전일과 동일

제26일

전일과 동일

제27일

전일과 동일

제28일

전일과 동일

제29일

1. 조례 체조, 오전 6시~6시 30분
2. 교련, 오전 6시 40분~8시
3. 검열, 오전 8시~11시 30분
4. 신사참배, 오후 0시 30분~2시

5. 간담회, 2시 10분~3시

제30일

공휴일

3. 주입학교(織込學校)의 훈육

주입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훈육하고 있다.

입생 전 약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 (1) 간내 보안에 관한 사항
 - (2) 간내 기술에 관한 사항
 - (3) 기타 간내 작업에 관한 일반사항
- 등에 관해 훈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

4월중의 중요한 훈육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피크 사용법 및 주유법(注油法)에 대해서
 - (2) 지주법(支柱法)에 대해서
 - (3) 벨트 이설에 대해서
 - (4) 산압(山圧)에 대해서
 - (5) 보안시설에 대해서
- 통기시설의 취급법(차단호(遮斷戶), 풍해, 난렴(暖簾), 국부선풍기), 암분(岩紛)지대 및 철수(撤水) 지대의 의의, 사갱(斜坑)에서의 일주(逸走)방지장치 및 재해방지
- (6) 화약 및 발파에 대해서
 - (7) 간내규정의 준수에 대해서
 - (8) 충전(充填)에 대해서
 - (9) 운전 중의 기계 및 와이어로프에 대한 주의
 - (10) 입생 시의 수검(搜檢)에 대해서
 - (11) 각 채굴현장에서의 작업착수 전의 주의
 - (12) 간내 폭발 방지 및 계절과 재해에 대해서

4. 선산(先山)의 양성방법

광업소에서 훈련된 신규채용자의 성능을 갑을병으로 구분한 것에 기초하여 장래성이 있는 자를 뽑는다. 비교적 현장상태가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톱과 □□ 등은 대여하고, □□ 수를 약간 주어 선산

으로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들에게는 기술이 우수한 선산과 관리자를 붙여 상시 지도한다.
혹은 일정기간(1개월) 이후 양성선산은 본선산으로서 보통 현장에 투입하고 도구는 반액을 보조하여
불하한다.
굴진현장 및 기타 선산양성의 인선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채굴현장에서 선산을 붙여 훈련을
쌓고 작업 중 실지에서 지도한다.

호로나이(幌內) 광업소

제1장 총칙

훈련요강

(1) 지도상의 주의사항

1. 반도 노무자 훈련의 취지는 노무관계자는 물론 기술자 일반노동자 등에게도 이를 주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지도자는 엄연한 위중(威重)과 확고한 신념을 지님과 동시에 온정 진절 열성으로 훈련생을 지도하고 신복(信服)시켜야 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명령은 엄정함을 요하고 일단 명령하면 절대복종하게 한다.
4.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주도하면서 구체적 계획(훈련항목지도안)을 수립하고, 첫걸음부터 확실히 철저하게 하여 엄격히 실천시킬 필요가 있다.
5. 훈련항목지도안에 매월 사열의 날을 명시하고 각 훈련에 대해 본부장의 사열을 받는다.
6. 지도원은 훈련생의 교육 및 지능의 정도, 심성경향과 가사정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여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지도 명령 전달은 반복철저를 도모하여 필히 복창과 더불어 정확을 기해야 한다.
8. 통역을 사용할 경우는 통역의 적부철저의 정도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상의하달, 하정상통하여 저어(齟齬)가 없도록 해야 한다.
9. 내지인 노무자를 계발하여 형제의 애정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주도록 한다.
 - 가. 반도 및 반도인에 대한 인식
 - 나. 내지인은 반도의 지도자로서의 자각과 태도를 지닐 것
 - 다. 내지인 자체의 품성도야의 확립
 - 라. 주부의 연성
 - 마, 기타 내지인 훈육상 필요한 사항

10. 내지인 노무자로 하여금 반도인 노무자의 생활작업, 기타 전반에 걸친 지도자임을 자각시켜 자숙자제 겸허하게 경건한 마음의 함양 육성에 노력할 것.
11. 통역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할 것.

(2) 분의(紛議)에 관한 사항

1. 대원의 생활상 기타 각종 문제에 관해 분의를 빚었을 때는 신속히 상장(上長) 및 경찰관에게 보고하고 임기(臨機)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받는다.
2. 분의는 경미할 경우에도 그 처리에 관해서는 엄정공평하게 처치하고, 특히 반도인이기 때문에 관가(寬假)하거나 고압적이지 않고 충분히 이해 화협(和協)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한다.

(3) 내선융화에 관한 사항

1. 내선융화를 위한 연성회, 강습회, 강연회, 위안회, 오락회 기타 각종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의(時宜)를 적절히 하고, 양자 합체로서 혹은 한편을 보고 배우는 것으로 한다.
2. 항상 노무, 현장경찰, 협화회와 연락을 도모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연구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내선융화에 관한 지도운영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내선융화에 있어 특히 근로보국대, 정신대 등 내지인 단기노무자 및 신채용 내지인노무자와 반도인 노무자의 융화에 주의해야 한다.
반도인이 선산이 되고, 내지인이 후산이 되었을 때는 특히 주의하여 내선융화에 있어 저어(齟齬)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1. 외출외박여행

- 1) 대원의 외출, 외박, 여행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단,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라 허가할 수도 있다.
 - 가. 외출은 특별훈련기간(6개월) 중은 견학 및 훈련을 위해 지도직원의 인솔 아래 이루어지는 것에 한해 허가한다.
특별훈련 경과 후는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자 및 소행이 불량하지 않아 지도직원이 허가한 자로서 외출증명서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승인한다.
 - 나. 외박은 대장의 신청에 의거하여 이를 허가한다.
 - 다. 여행은 지도직원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견학여행에 한하여 허가한다. 기타 여행에 관해서는 대장의 신청에 의거하여 이를 허가한다.
- 2) 대원외출, 외박여행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월일시간 행선용건 및 소지금 등을 신청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이를 허가할 경우는 단속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연락을 밀접히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2장 기초훈련

입산 제1일

- (1) 착산 : 착산 시는 하차, 정렬, 점호 후 본부장 또는 대리자, 수례대(受禮隊)를 정돈하여 숙사로 향한다.
- (2) 숙소 도착 : 숙소에 도착하면 지도직원(노무담당)의 지휘 하에 점심을 먹는다.
- (3) 숙소 할당 : 점심 후 할당할 때 가능하면 수송 시의 조별로 방을 할당하고, 소지품의 정리를 지도한다.
- (4) 훈시 소개 : 방 할당 종료 후, 경찰관 및 인도 직원이 훈시한다. 이 때 숙소장(寮長, 대장), 지도원, 통역을 소개한다.
- (5) 사증 및 신원조사, 경찰관 및 지도직원 숙소장(지도원 통역은 보조)은 대원명부, 호적초본에 따라 엄중한 사증 및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주의사항

- 1) 위명자(僞名者)의 발견
 - 2) 가족의 유무 및 가정의 상황(특히 부모의 유무, 가족의 거처, 처자의 유무)
 - 3) 교육정도
 - 4) 국어의 해독여부 및 그 정도
 - 5) 낙연의 유무
 - 6) 음주의 정도
 - 7) 전직(前職)
 - 8) 내지 존재의 친척 지인의 주소
 - 9) 공출지 식량사정
 - 10) 내지도항의 유무
 - 8)은 도주방지를 위해 특별히 유념하여 조사할 것
-
- (6) 입욕 및 휴양 : 숙소장, 지도원, 통역 혹은 부대장, 반장의 인솔 아래 입욕할 것. 휴양은 할당된 방이나 오락실에서 지낸다.
 - (7) 석식 : 오후 5시 식사 전에 인사말 태도 등을 교시하고, 식사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한다. 식사 전후에는 '잘 먹겠습니다'와 '잘 먹었습니다'를 말하게 한다. 식후는 필히 식기의 정리 및 식탁을 정리시킨다. 이후에도 숙소장 이하 전원은 모두 계속하여 실행해야 한다.
 - (8) 휴양 : 숙소장은 대체적인 숙소생활에 대해 훈화한다. 특히 식사, 방화위생규율에 대해 훈화한다.
 - (9) 안착통지 : 양친이나 기타 고향의 근친자에게 안착했다고 통지한다. 가능하면 경찰, 군청, 면사무소에도 알린다. 내용은 필히 겸열하고, 별도로 준비한 통신부에 발신처를 기입한다.
이후에도 발수신 모두 통신부에 기입해둔다.
 - (10) 점호 : 오후 8시에 엄중한 일석점호를 실시한다. 이후 매일 실시하는 점호의 집행은 숙소장 및

지도원이 실시한다.

점호의 요령은 대개 다음과 같이 각 실내 혹은 방 앞 복도에 각 반별로 정렬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인원을 보고한다.

“제○반 총원 ○명, 부재자 ○명, 현재 ○명, 부재자 내역은 임업 ○명, 2번방 ○명, ○○명, 끝” 점호 시에 훈화 및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11) 취침 : 오후 9시

(12) 기타 : 신구숙소원은 식당 또는 방 외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서로 인사한다.

제2일

(1) 기상 : 4시 기상, 세면, 청소, 점호를 집행한다.

주의사항

1. 침상 정돈은 실지에 따라 다다미와 수납장의 정돈을 지도할 것.
2. 방청소는 충분히 시킬 것.

(2) 조식조례 : 조식 전, 식당 혹은 적당한 장소에서 조례를 실시한다.

〈순서〉

1. 국민의례
2. 신전예배
3. 황국신민의 서사낭독
4. 속소장에 대한 경례 : ‘안녕하십니까’를 말하게 할 것
5. 지시 : 전일과 마찬가지로 식사의 방식을 교시하고, 특히 씹는 것에 유의시킬 것. 이후 매일 60행사를 실시할 것.

(3) 휴양 : 장에서 6시 반까지 휴양

(4) 채용준비 : 오전 6시 반부터 채용수속에 관해 조사 기입할 것.

(5) 입산 및 입대식 : 오전 9시 반까지 신사에 정렬, 입산식을 거행할 것.

〈순서〉

1. 국민의례
2. 본부장 훈시(산업전사의 각오, 신사 앞에서의 선서의 의의) 및 경신승조(敬神崇祖)의 고양
3. 선서
4. 신사에 대한 배례

(6) 점심 : 정오 전일과 동일

(7) 신체검사 : 오후 1시부터 탄광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

(8) 물품대부 : 신체검사 후 채부(採否)를 결정하고, 물품을 대부한다. (착산 인원의 다소에 따라 후일로 돌려도 된다.)

(9) 석식 : 전일과 동일

(10) 입욕 : 오후 6시, 숙소장(대장), 지도원, 통역 혹은 반장 등이 반별로 인솔하여 입욕의 실시를 지도한다.

(11) 훈화 : 오후6시, 숙소장, 지도원이 숙소생활의 실제, 특히 의료절부(衣料切符), 식량사정, 화방위 생사항에 대해 철저히 주지시킨다.

이후 매일 실시할 것.

(12) 점호 : 오후 8시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후 매일 실시한다.

(13) 취침 :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후 매일 실시한다.

입산 3일 후 기초훈련은 다음 표와 같다.

기초훈련실시계획표				
	일	시	훈련과목	훈련의 요령
기초 훈련	3	오전 오후	규율훈련	지도직원의 훈시, 부동자세, 우(좌)향후, 거수경례, 실내의 경례, 최경례 행진간 경례(단독), 정돈요령
	4	오전 오후	규율훈련	정돈요령, 부동자세, 우(좌)향후, 거수경례, 실내경례, 최경례 행진간 경례, 속보행진(단독) 반
	5	오전 오후	규율훈련	부동자세, (우)향 종대 및 횃대의 정돈요령
	6	오전 오후	규율훈련	전일까지의 복습
	7	오전 오후	황민훈련 작업훈련	국어교육대체, 국어습득 정도, 석탄의 생산과정에 대해서, 석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 간외 견학
	7	오후	황민훈련	교련, 체조, 유희, 경례, 신사참배(애도비 경례)
	8	오전 오후	작업훈련 황민훈련	광부의 직별 및 직부(職夫)의 임무, 입갱의 심득, 국어교육, 교련, 체조, 유희, 경례, 신사참배(애도비 경례)
	9	오전 오후	작업훈련 황민훈련	재해방지작업용명칭(국어교육), 전일과 같음
	10	오전 오후	작업훈련 사열 및 좌담회	직장위생, 작업기준체조작, 취업규정 및 임금, 규율훈련사열(본부장), 좌담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훈련이 변경될 때는 5분 내지 10분간 휴식시간을 둘 것. 명령의 준수를 주의할 것 입갱심득은 입갱할 때마다 반복하여 훈육할 것 규율훈련은 기민한 동작을 함양할 것. 훈련기간 중일지라도 점심은 필히 가지고 갈 것 신체의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훈련개시 전에 기본체조를 실시할 것 공휴일은 훈련기간 중을 포함해 필히 미화작업을 실시할 것. 해당 훈련의 과목은 그 전후일로 합병 실시할 것

제3장 기술훈련

신채용 반도 노무자의 기술훈련을 다음과 같이 두 기간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훈련기간
2. 선산양성기간

1. 훈련기간

훈련기간은 20일로 하고, 다음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제1일부터 제4일째까지의 실시사항

- ① 전등취급방법, 쟁내상식
- ② 스콥 수평던지기(거리 2미터 내지 3미터)
취급 돌덩어리 차수 10차(1일마다 1차 증가)
우수앞, 좌수앞의 호령에 따라 10분간 번갈아 할 것
- ③ 중량 10관의 쟁목을 끌고 100미터 운반(제1일, 제2일째)
중량 10관의 쟁목을 어깨에 메고 200미터 운반(제3일, 제4일째)
- ④ 체조

(2) 제5일째부터 제8일째까지의 실시사항

- ① 쟁내상식
- ② 스콥 수평던지기(던지는 거리는 (1)의 제2항과 동일)
- ③ 중량 10관의 쟁목을 어깨에 메고 100미터 운반(제5일, 제6일째)
동 200미터 운반(제7일, 제8일째)
- ④ 돌덩어리가 만재된 탄차를 2명이 손으로 200미터(직선) 밀기(1일마다 거리 100미터 연장)
- ⑤ 체조

(3) 제9일째부터 제12일째까지의 실시사항

- ① 보안교육
- ② 스콥 돌려던지기. 끈을 탄차의 높이(1.25미터)로 맨다. 취급 돌덩어리 차수 5차(1일마다 1차 증가).
오른손 앞으로, 왼손 앞으로 구령에 따라 10분간 교대한다.
- ③ 중량 10관의 쟁목을 어깨에 메고 100미터 운반(제9일, 제10일째)
동 200미터 운반(제11일, 제12일째)
- ④ 돌덩어리가 만재된 탄차를 2명이 손으로 600미터(직선, 곡선) 밀기
- ⑤ 체조

(4) 제13일째부터 제16일째까지의 실시사항

- ① 쟁내상식
- ② 스콥 돌려던지기(방법요령은 (3)의 제2항과 동일). 취급 돌덩어리 차수 10차(1일마다 2차 증가)

- ③ 길이 10척, 둘레 8촌의 갱목을 2명이 어깨에 메고 운반
 거리 100미터(제13일, 제14일째)
 거리 200미터(제15일, 제16일째)
- ④ 돌덩어리가 만재된 탄차를 2명이 손으로 800미터(직선, 곡선) 밀기(탈선복구법도 함께)
- ⑤ 체조

(5) 제17일째부터 제20일째까지의 실시사항

- ① 보안교육, 간내상식
- ② 스콥 돌려던지기(방법요령은 (3)의 제2항과 동일)
 취급 돌덩어리 차수 18차(제17일, 제18일째)
 동 20차(제19일, 제20일째)
- ③ 피크 및 착암기 사용법
- ④ 궤조(軌條) 부설법
- ⑤ 체조

이상 20일간의 훈련 중, 노무자의 체격, 체력, 두뇌, 기술의 정도 등에 따라 갑, 을, 병으로 구분하여 광장(礪長) 주임에게 통지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실지지도를 실시한다.

갑은 실지지도 위에 선산(先山)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자. 을은 운반, 채탄, 굴진 등 후산(後山)으로 실지지도 후의 성적에 따라 우수한 자는 선산으로 양성할 수 있는 자. 병은 잡부로서 실지지도 이후의 성적에 따라 우수한자는 운반수선, 채탄, 굴진 등의 후산이 될 수 있는 자.

기술훈련일과표

훈련 일수	스콥 수평던지기	스콥 돌려던지기	갱목운반	탄차운반	피크 및 착암기 사용법	궤조부설법	학과	체조
1	10차		끌기 100미터				40분	40분
2	11차		끌기 100미터				40분	40분
3	12차		끌기 200미터				40분	40분
4	13차		끌기 200미터				40분	40분
5	14차		허리 올리기 100미터	직선 200미터			40분	40분
6	15차		허리 올리기 100미터	직선 300미터			40분	40분
7	18차		허리 올리기 200미터	직선 400미터			40분	40분
8	20차		허리 올리기 200미터	직선 500미터			40분	40분

9		5차	어깨들기 100미터	직선곡선 600미터			40분	40분
10		6차	어깨들기 100미터	직선곡선 600미터			40분	40분
11		7차	어깨들기 200미터	직선곡선 600미터			40분	40분
12		8차	어깨들기 200미터	직선곡선 600미터			40분	40분
13		10차	흔자들기 100미터	직선곡선탈 선 800미터			40분	40분
14		12차	흔자들기 100미터	직선곡선탈 선 800미터			40분	40분
15		14차	흔자들기 200미터	직선곡선탈 선 800미터			40분	40분
16		16차	흔자들기 200미터	직선곡선탈 선 800미터			40분	40분
17		18차			취급 및 사용법	부설 일식	40분	40분
18		18차			취급 및 사용법	부설 일식	40분	40분
19		20차			취급 및 사용법	부설 일식	40분	40분
20		20차			취급 및 사용법	부설 일식	40분	40분

2. 선산양성기간

훈련기간이 종료된 반도노무자는 학(鶴)과 톱을 구입시켜 성적에 따라 다음 작업을 습득시킨다.

1. 갑에 대해서는 채탄 또는 돌을 캐는 곳에서 우수한 지도원을 따라 3개월 내지 5개월간 피크 및 착암기의 사용법 기타 선산으로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킨다. 이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선산으로서 취업시키고, 뒤처진 자는 계속하여 지도한다.
2. 을에 대해서는 3개월 내지 5개월간 선산을 따라 후산으로서의 작업을 습득시킨다. 이 동안 성적이 우수한 자로 선산으로서의 소질이 있는 자는 갑과 동일하게 선산으로서의 기술을 습득시킨다.
3. 병에 대해서는 보안부, 잡부 등으로 취업시킨다. 3개월 내지 5개월간 작업을 습득시켜 우수한 자는 채탄, 수선, 굴진 등의 후산으로서 취업시킨다.

제4장 생활훈련

(1) 위생지도

- ① 숙소의 토족을 금지하고 청결을 지킬 것
- ② 실내청결, 정돈을 철저히 할 것
- ③ 청소당번제를 도입하여 실내외, 화장실, 복도 등을 청소시키고, 때때로 반 또는 조별로 청소정돈 경쟁을 실시할 것
- ④ 화장실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 실행시키고, 화장실 이외의 분변(糞便)을 엄금할 것
- ⑤ 항상 손을 씻고, 손수건을 소지시킬 것
- ⑥ 칫솔을 사용할 것
- ⑦ 이불을 매일 정돈하고 일광소독을 장려할 것
- ⑧ 입욕방법, 입욕작법(作法)을 철저히 할 것
- ⑨ 옷을 손세탁을 실시할 것
- ⑩ 두발과 손톱을 깨끗이 할 것
- ⑪ 화충의 구제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 ⑫ 간단한 위생 강화(講話)를 때때로 실시할 것(실례를 들어서)
- ⑬ 이(虱) 구제를 적극 장려할 것
- ⑭ 격월로 체중을 측정하여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에 노력할 것

(2) 식사지도

- ① 현시국하의 식량사정을 철저히 이해시켜 식사에 관해서는 절대로 불평을 말하지 않도록 반복 지도할 것(특히 정량 미(米)대용식에 대해 이해시킬 것)
- ②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철저히 시켜 식사 전후에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합장명목)를 복창할 것
- ③ 식당 출입에는 신전(神前) 예배를 실시할 것
- ④ 식사 중 정숙을 유지하여 잡담 등을 금지하고 잘 씹는 습관을 기를 것
- ⑤ 취사실에는 함부로 출입하지 말 것
- ⑥ 식당 및 식탁은 항상 청결을 유지시키고, 식사 종료 후는 식기를 일정한 곳에 정돈할 것

(3) 일상예의지도

- ① 웃사람에게는 항상 예의를 올바로 하고, 동료 간에도 서로 인사할 것
- ② 용의, 태도 복장 자세 등을 단정히 할 것
- ③ 거수경례를 정확히 실행할 것
- ④ 수시로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지도할 것

(4) 기상, 취침지도

- ① 점호(아침, 저녁) 및 조례는 엄숙히 실시하고, 특히 일석점호에서는 훈화 및 주의사항을 전달할 것
- ② 기상, 취침은 일정한 암호에 따라 규율 올바로 실행할 것
- ③ 기상 시는 곧바로 침구를 정돈하고, 실내청소를 실시한 다음 세면할 것
- ④ 취침 전후는 신체를 청결히 하고, 곧바로 취침하여 충분히 숙면을 취할 것
- ⑤ 낮잠이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

(5) 단체생활 및 규율훈련지도

- ① 숙소 또는 반, 기타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필히 국민의례를 실시하고 규율 있게 동작할 것
- ② 숙소장 중심주의를 강조할 것
- ③ 복장관념을 철저히 할 것
- ④ 지도 명령 전달 등은 정확히 반복하여 그 철저에 노력할 것
- ⑤ 애정으로 이끌어 도와주고, 화협일치의 정신 양성에 노력할 것
- ⑥ 통제 있는 단체생활 유지를 위해 매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고, 상의하달과 하정상담의 기관이 될 것
- ⑦ 이기주의적 사상을 교정할 것
- ⑧ 시간엄수 관념을 철저히 할 것
- ⑨ 동작의 민첩, 판단의 정확을 도모할 것
- ⑩ 수시 교련을 실시하여 규율통제를 도모할 것

(6) 저축, 송금, 용돈지도

- ① 저축보국의 관념육성에 노력할 것
- ② 저금은 매월 정액 신청제로 실시할 것
- ③ 송금은 숙소장 책임으로 취급할 것
- ④ 저축에 관해 수시로 정신훈화를 실시할 것

(7) 방공, 방화, 재해방지지도

- ① 방공사상의 보급 특히 공습에 대한 관념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의 마음자세를 준비할 것
- ② 부락 기타에서의 방공, 방화훈련을 견학시킴과 동시에 수시로 훈련을 실시할 것
- ③ 화기취급에 관해서는 엄중히 취제하고, 필요하다면 화기당번제를 실시하여 순회시킬 것
- ④ 연초, 재떨이, 스토브 취급, 실내 빨래 취급, 재버리는 장소 등에 대해 철저히 할 것
- ⑤ 각 실마다 화기취급 책임자 2명을 정하고, 이름을 입구에 명기할 것
- ⑥ 강연, 강화 등을 수시로 개최할 것
- ⑦ 기타 재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구급처치를 교시하고 철저히 훈련할 것

(8) 외출지도

- ① 원근을 불문하고 외출할 때는 필히 숙소장에게 신고할 것
숙소에 돌아올 때도 같음
- ② 외출은 필히 현관으로부터 출입할 것(창문을 통한 출입금지)
- ③ 외출 시에는 복장, 태도, 보행시간 염수 등에 주의할 것
- ④ 외출한 곳에서 함부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할 것

(9) 여가지도

- ① 도박을 박멸시킬 것
- ② 휴일, 휴양시간 등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내지생활화, 내지풍속화에 노력할 것
- ③ 위안, 오락 등은 건전한 것을 선정할 것
- ④ 취미, 기호 등도 내지화를 목표로 실시할 것

제5장 작업훈련

(1) 규율지도

- ① 직장조직의 인식을 철저히 하여 윗사람 선배에 대한 복종의 함양에 노력할 것
- ② 경례를 철저히 할 것
- ③ 간내용어를 철저히 이해할 것
- ④ 수시로 어디에서나 개별적으로 엄정 지도할 것

(2) 보안지도

- ① 직장규율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
- ② 입갱심득을 철저히 할 것
- ③ 출생 시에는 자기 수검(搜檢) 및 숙소 관계자의 수검을 철저히 하고, 직장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
- ④ 재해의 실화와 체험을 훈화하고, 이의 방지방법을 주지시키고 이를 훈련할 것
- ⑤ 직장위생에 관해 훈련지도할 것
- ⑥ 사고 및 재해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를 발견했을 경우의 연락법, 처치법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3) 작업지식, 기술, 능률향상지도

- ① 생산과정에 대해 이해할 것
- ② 직장에 대한 흥미와 애착의 마음을 환기시킬 것
- ③ 지도자는 서두르거나 한 번 실패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마음으로 지도할 것
- ④ 사심이나 고의로 임금을 차별하지 말 것

- ⑤ 기계 기구를 잘 취급할 것
- ⑥ 제1기 훈련(□□□□□□) 종료 직후에 □□□을 구입 정비시킬 것, 학(鶴), 톱 등(단 스콥 등은 전기 훈련 기간 중)
- ⑦ 현장 단위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융화를 도모할 것
- ⑧ 윗사람에게 시기를 봐서 때때로 격려훈시를 줄 것
- ⑨ 우수자에게 특별대우를 하더라도 문제없지만, 정도의 문제로서 항상 희망과 꿈을 지니도록 신경을 쓸 것

제6장 황민훈련

- ① 기초훈련에 준거하여 황민으로서의 육성교화에 노력할 것
- ② 개개 교육을 도모하여 지도자는 각자에게 뿌리 깊이 들어가 교화시키겠다는 열의로 임할 것
- ③ 국어의 지도는 대개 다음과 같이 할 것

기(記)

(1) 교과서

- ① 중앙협화회출판 협화국어독본
- ② 보조교과서 국정교과서 1, 2, 3, 4

(2) 교육기간

- 1년 : 히라가나 및 쉬운 한자, 읽기 및 쓰기
- 2년 : 히라가나 및 상용한자, 읽기 및 쓰기

(3) 1일의 지도시간

낮(야번인 자) :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밤(주변(昼番)인 자 :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개월의 지도일수는 5일을 넘도록 한다(훈련항목지도안에 명기)

(4) 장려방법

3월, 6월, 9월의 각 말일에 기말시험, 12월 말에는 학년말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장 및 상품을 수여한다.

(5) 교과서는 전부 무료 지급

(6) 진도

1년			2년		
1월	1. 말	1~4페이지	1월	19. 생활 카르타(カルタ)	36~37페이지
2월	2. 문장 3. 문장	5~6페이지	2월	이로하노래(イロハ歌)	38페이지
3월	4. 문장 5. 문장	7~8페이지	3월	천황폐하	39페이지

4월	6. 문장 7. 문장	9~10페이지	4월	해행카바(海行カバ)	40페이지
5월	8. 문장	11~12페이지	5월	21. 엽서	
6월	9. 문장	13~14페이지	6월	22. 조선에서	43~46페이지
7월	10. 인사 11. 길에서	14~16페이지	7월	23. 진심	47~49페이지
8월	12. 물건사기 13. 방문	17~20페이지	8월	24. 애마행진가	49~52페이지
9월	14. 국어훈련	21~23페이지	9월	25. 신사참배	53~55페이지
10월	15. 국기	23~26페이지	10월	26. 일본	56~58페이지
11월	16. 돋기 17. 부인회	28~31페이지	11월	애국행진곡	59~61페이지
12월	18. 흥아봉공일	32~36페이지	12월	총복습	

제7장 체련

1. 체련에서는 민첩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규율 있는 생활에 익숙하도록 할 것
2. 각종 체련에 힘써 국민의식의 양양을 도모할 것
3. 청장년층은 연1회 체력상 검정을 실시할 것

미츠비시(三菱) 비우타(美唄) 광업소

당 광업소에서는 노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

1. 신규노무자

(1) 신규노무자에 대해서는 간외에서 입소 당일부터 6일간 전임지도원의 지도 아래 간내작업에 준하는 기본훈련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의 체력, 기술(반도인은 언어) 등을 조사하고, 제3기 훈련을 종료한다. 제1기 훈련(6일간)은 간 밖에서 실시한다.

제1기 훈련(6일간)

훈련과목	훈련항목		
	오전(실과)	오후(학과)	
제1일	입간식	입간심득, 간내견학	간내상식, 전기안전 전등 취급법
제2일	취로예비훈련	스콥, 학(鶴) 및 톱 사용법	간내용어, 도착부터 작업장까지의 심득
제3일	취로예비훈련	스콥, 학(鶴) 및 톱 사용법	작업중 및 퇴근의 심득, 재해방지, 능률증진
제4일	취로예비훈련	석탄, 쌓기, 탄차운반	간내의 부상과 낙반에 의한 부상과 그 방지법

제5일	취로예비훈련	갱목풍관, 토라푸, 중량물운반	와사(瓦斯)와 탄진(炭塵), 갱내안전폭발예방법
제6일	취로예비훈련	갱목풍관, 토라푸, 중량물운반	석탄의 중요성, 종이연극(人八和)

(2) 제1기 훈련 종료 7일째부터 갱내에서 적당한 훈련현장을 선정하여 제1기 훈련기간 중에 체력, 기술 등의 수득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지도계원 감독 아래 대체로 신규노무자 5명에 대해 1명의 숙련된 지도 선산(先山)을 붙여 기술상, 보안상의 지도훈련을 한 다음, 제2기 및 제3기 훈련을 종료한다.

제2기 훈련(10일간) 갱내에서 실시한다.

번호	훈련과목	지도요항
1	충전재(充填材) 채취방법과 충전방법	2인 1조, 원석(垣石) 쌓는 방법과 놓는 방법
2	체인컨베어 이설준비 체인컨베어 이설방법	4인 1조, 체인정리, 토라푸 조작의 반복
3	에어해머 분해 결합 주유 에어드릴 분해 결합 주유	점검요항, 작업 전후의 점검 주유, 수리의 관습 권장
4	에어해머 사용방법 에어드릴 사용방법	사용 전후의 점검, 주유, 수선 권장

제3기 훈련(10일간) 갱도에서 실시한다.

5	와ку이리(柞入), 주타(柱打)작업	기본동작
6	풍관(風管)연장, 궤도부설	누풍(漏風), 탈선 요점의 습득
7	철관연장, 수선작업	누수, 누풍방지, 연장, 수선 후의 점검

(3) 훈련기간을 개략적으로 1개월로 하고, 기간 중의 직종은 굴진부(掘進夫), 충전부(充填夫), 통기부(通氣夫), 궤도공(軌道工), 수선공(修繕工) 등으로 나눈다. 각종 직종에 적당한 훈련현장을 선정하여 지도계원 및 숙련된 선산의 지도 아래 보안상, 기술상의 훈육을 실시한다. 기간 중 적당히 편성을 바꾸어 모든 직종을 습득시키고, 그 체득상황을 검토하여 약간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습득이 충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중에 상세히 체력과 기술을 조사하여 우수한 자부터 1, 2, 3급으로 나누어, 1급은 채탄부 견습, 2급은 굴진부과 충전부 견습, 3급은 통기공, 궤도공, 수선공 등의 견습으로 각각 훈육한다.

즉 1급자에게는 채탄부의 작업 및 보안기술, 2급자에게는 굴진부 충전부의 작업 및 보안기술, 3급자에게는 통기부 궤도공 수선공의 작업 및 보안기술의 지도훈련을 각각 실시한다.

단 지도훈련기간 후의 성적에 따라 2급자는 1급으로, 3급자라 할지라도 2급 혹은 1급으로 편입하는 명부를 작성하여 급별로 적당한 표식을 사용한다.

2. 고참노무자

고참노무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1년을 경과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갱내에서 직종별로 적당

한 훈련현장을 선정하여 지도계원 및 숙련된 선산의 지도 아래 대략 1개월동안 각자의 직별에 따라 보안상, 기술상의 훈육을 실시한다. 기간 중에 상세히 체력과 기술을 조사하여 우수한 자를 각 직종별 선산 견습으로 편성한다.

또한 훈련항목 등은 신규노무자 훈련을 더욱 강화 철저히 하고, 일의 양이나 공률(工率) 등은 보통 양보다 많은 양을 부과한다.

반도노무자 도망방지 대책 –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업소(1942년)

제1 채광과(採礦課)의 중요사항

현재 협화숙소에서 도망한 자를 제외하고 도망자의 도망상황을 보면, 출근하더라도 현장에 가지 않는 자, 감찰(鑑札)을 내서 현장에 오지 않는 자, 출근표의 미제출자, 조회 또는 퇴근 시 그대로 도망하는 자, 조기출근을 가장해 도망하는 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채광과에 다음 점을 요망한다.

(1) 출근표의 징수

현재 5호광은 갱외 경비초소에 출근표를 징수하고 있는데, 출근을 가장하여 갱외 경비초소부터 갱구 까지 사이에 혹은 갱내를 통하여 다른 갱구로 도망하는 자가 많다. 이에 원산갱(元山坑)처럼 갱내 경비초소에서 출근표를 징수하면 도망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기출근의 정리

조기출근을 가장하여 도망하는 자가 많다. 조기출근을 정리하면 도망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갱내 경비초소에 전속연락자의 배치

현재 갱내 특히 현장과의 연락은 여러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거의 점심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도망의 조기발견이 곤란하다. 원활하고 신속한 연락을 위해서는 갱내 경비초소에 전속연락원을 배치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할 것.

가. 매일 각 출근시각에 출근표를 조사하여 미제출자, 잔업자, 순번자를 각 협화숙소에 연락할 것
나. 기타 제반 사항에 걸쳐 수시로 연락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

(4) 노무자의 인계

갱내 노무자는 출근시간에 각 협화숙소에서 인솔하여 갱구에서 채탄계(採炭係)에 인계하고, 퇴근시간에도 갱구에서 채탄계로부터 인계를 받아 인솔하여 숙소로 돌아가면 도망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조기출근, 임업, 순번이라 칭하며 도시락을 2회분 휴대하고 나가 그대로 도망하는 자가 많다. 출근표에 현장계가 증명하도록 되어있지만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확실한 실시를 요망한다.

제2 노무과의 대책

노무과의 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각 협화숙소의 경계근무의 정비와 수사방책이 있다.

1. 각 협화숙소의 경계근무정비

(1) 현재의 근무상황

제1, 제4 협화숙소는 내지인 경비 2명, 반도인 사무보조 2명을 각 1명씩 2교대제이다.

제2, 제5 협화숙소는 내지인 경비로 제2는 3명, 제5는 2명으로 2교대제이다.

(2) 정비방책

각 협화숙소에서 도망가는 시각은 전부 심야이기 때문에 야간경계근무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

그 방책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안

각 협화숙소에 내지인 경비 3명, 반도인 사무보조 2명을 배치하고, 야간근무를 내지인 경비 2명, 반도인 사무보조 각 1명의 3명으로 근무한다.

나. 제2안

제1안에 따라 내지인 경비 3명이 불가능하다면 2명으로 하고, 반도인 사무보조를 3명으로 하여 야간근무 내지인 1명, 반도인 2명의 3명 근무로 한다.

다. 요원(곧 완성될 제6 협화숙소는 제외)

	내지인 경비		반도인 사무보조	
	현재	요원	현재	요원
제1안	12	12	4	8 불(不) 4
제2안	12	과(過) 4	4	불 8

반도 노무자 중에서 사무보조로 직명을 변경하고, 인선은 노무계가 하고 채단과는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 수사방책

(1) 수사경계원의 정시배치

도망자는 숙소에서 또는 간내에서 혹은 간외에서 도망하고 있다. 간내 각 숙소의 경계를 강화해도 여전히 도망가는 실정이고, 특히 급료일 이후 10일 정도의 사이에 많다. 다음과 같이 커다란 망을 치고

잡아들이기 위한 배치가 필요하다.

가. 기간 : 매월 급료일 이후 10일간

나. 배치인원 : 1개소 2명씩 8명

다. 배치장소 : 4개소

(2) 협력의뢰장의 발신

당 광업소에 인접한 정촌(町村)의 각종 단체, 관공서, 유력자에게 도망 반도인의 발견 포족(捕足)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고, 반도인의 화산(火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험성을 느끼도록 하는 문안을 작성하여 경계의뢰장으로 발송해야 한다.

(3) 일반에 대해서도 1명 불잡는데 대해 몇(5) 원의 현상금을 걸고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각 협화숙소 배치표

숙소별	준(準)	조수				취(炊)	경비		계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제1요원		1	1	1		1	2	2	8
제2요원		2			1	1	3		7
제4요원	1	1		1			2	2	7
제5요원	1(출장중)			2	1	1	4		9
제6요원		1		1			1		3
계		2	5	1	5	2	3	12	34

비고〉 이 밖에 혼다 다케시(本田武)가 5월 18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1942년(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까지의 도망자 조사

방법별	현장별		
숙소로부터 도망	(7) 19	5호 갱	(14) 54
외출한 곳에서 도망	5	5호 선광장(選礦場)	1
조기출근을 가장하여 숙소에서 도망	12	5호 단야장(鍛冶場)	1
사무소에 감찰을 내고 도망	16	8호 갱	2
현장에서 그대로 도망	(8) 15	원산 갱	(1) 20
현장에서 퇴근 도중 도망	12	원산 갱 경석(輕石)	1
계	(15) 79	계	(15) 79

비고〉 팔호 안은 체포된 자.

수사실례

1. 5월 3일 가장 먼저 출근한 6명의 동정이 이상하여 취업 사무소를 조사한 바, 전부 감찰을 내고 있었다. 갱내에 연락해보니 출근표 미제출자는 3명이었다. 이에 현장에 연락하여 출근표 미제출자 3명은 미취업이라는 것을 알고 수사에 1조(2명)를 다치테(立手) 방면으로 출발시켰고, 시마야마(柴山) 경비를 현장(갱내)에 파견하여 직접 근무현장을 조사한 결과, 위의 3명은 일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2. 종래 갱내와의 연락, 특히 현장과의 연락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없다. 기회

를 놓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 3~4시간이 걸린다. 가장 먼저 출근한 자는 점심때가 아니면 연락 불능의 상태이다.

도망방지대책

1. 출근의 유무 연락

매월 출근시 출근표 미제출자를 취업 사무소에 현장계가 연락하여 취업 사무소와 숙소에 연락할 것

2. 감찰 미계자(未揭者)의 연락

취업 사무소에서 감찰 미계자를 숙소에 연락할 것

3. 조기출근, 임업 연락

현장계에서 출근표에 조기출근 임업을 증명하기로 되어있지만, 때때로 단순히 구두로 본인에게 시달 할 뿐, 숙소에는 연락이 없다. 지장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실행을 요망한다.

4. 순번 교대의 연락

1번에서 2번 또는 2번에서 3본 혹은 3번에서 1번으로 순번이 교대될 경우, 노무자(해당자)를 도시락을 가지러 숙소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런 경우 숙소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그 진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증명서를 휴대하여 보낼 것을 요망한다.

5. 조퇴의 연락(주로 원산)

조퇴에 대해 현장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숙소에 돌아오는 것은 정시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종래 도망자는 조퇴자가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조퇴자를 숙소에 연락하기를 요망한다.

6. 출근표의 □□

5호는 갱외 경비초소에서 출근표를 거두고 있다. 갱내 경비초소에서 이를 거둘 수 있다면 전임자를 두어 출근의 유무를 일정 시간에 숙소에 연락하기를 요망한다. 연락방법에 대해서는 원산갱에게도 동일하게 요망한다.

7. 5호 취업 사무소의 이전

취업현장을 5호 갱구로의 이전을 요망한다. 현재는 갱구와 사무소와의 간격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도망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사무소는 감찰계 및 갱외 경비초소에서 출근표를 내고 있는바, 이후의 경과는 알 수 없다.

8. 조기출근을 정리할 것

조기출근을 가능하면 폐지하여 임업을 시키고, 출근 시에는 숙소에서 인솔하여 갱내로 인계하는 것으로 한다.

협화숙소 경비근무의 정비

1. 협화숙소 경비근무

(1) 현재 제1, 제4는 내지인 경비 2명, 반도인 사무보조 2명, 계 4명 근무로 2교대 근무이다. 제5는

내지인 경비 4명, 제2는 내지인 경비 3명으로 각 2교대 근무다.

(2) 이를 각 협화숙소 모두 내지인 경비 2명, 반도인 사무보조 3명으로 배치하여 2교대로 하고, 두 번째 근무를 내지인 경비 1명, 반도인 사무보조 2명, 계 3명으로 한다. 주로 야간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 야간에 숙소로부터 도망간 자들이 많다.

2. 오락시설

수사방책

1. 요충지에 매월 급료일부터 10일간 정도 소원(所員)을 배치하여 도망자를 체포한다.
2. 당 광업소에 인접한 정촌(町村)의 각종 단체, 관공서, 유력자에게 경계의뢰장을 발신한다.
3. 1명 체포에 몇 원의 현상금을 거는 방법으로 의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1942년 5월 5일

마카자와 가가리(中澤係) 귀하

하치모리 하츠타로(八森初太郎)

도망방지에 관한 의견 구신(具申)의 건

반도노무원의 도망방지에 대해서는 매년 사례도 있고, 특히 금년은 눈도 빨리 녹아 도망자가 속출하는 상태이다. 최근 날씨도 계속 좋아 더 한층 도망이 우려되니 도망방지대책에 부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도망상태를 보면, 주로 현장과 숙소에서 도망하고 있다. 도망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숙소에서는 근무자가 불면불휴의 근무를 계속하면서 도망방지의 경계를 엄중히 펼치고 있지만, 도망자가 완전히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더욱 경계를 엄중히 펼치겠지만, 현재의 근무자만으로는 인력부족이다. 하루아침에 사고가 발생되어 이에 대처한다 해도 기계나 기구처럼 간단하게 민첩한 활동을 전개하기가 어렵다. 또한 건강을 해칠 우려도 크다. 이에 도망방지에 관한 의견을 말하니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다.

기(記)

현장관계

1. 숙소 근무자로부터 소재 불명자 조사연락에 대해서
 - 가. 곧바로 명확한 대답을 바란다.
 - 나. 가능하면 경비초소에 연락을 받는 전임 담당자를 임명할 것
 - 다. 연락을 하여도 접수체의 부재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대답을 들을 사례가 있고, 연락의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2. 갹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 가. 굿찬(俱知安) 내갱에서는 돌출된 갹구가 여기저기 있어 종래의 사례를 보더라도 조기출근, 잔업을 하고 그대로 뒤쪽으로 나가 도망가는 사례가 많다.
- 나. 조업 중 갹 밖으로 나와 산책이나 배급소 방면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3. 조퇴자의 연락에 대해서

복통이나 기타 몸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조퇴하여 도시락을 소지한 채 행선이 불명하거나, 장기간 소재가 판명되지 않으면 그 때마다 연락하기 바란다.

반도노무원 도망방지에 관한 건

제2 협회숙소

야마자키 도쿠타로(山崎徳太郎)

1. 감찰을 잊고 입갱한 자의 출근 여부에 대해서

감찰을 잊고 사무소에 제출하지 않고 입갱한 경우, 갹내 경비에게 연락하여도 출근증은 각 현장계에서 취급하는 관계상, 중식 시간(오전 11시)이 아니면 판명할 수 없다. 출근상황을 경비가 알고 있기를 희망한다.

2. 조퇴자의 건에 대해서

최근 도망자 중에는 조퇴를 계속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자가 있다. 사무소를 통과하는 자는 연락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조퇴하여 출갱(전석(轉石) 및 제2광구로부터)하는 자가 있음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3. 임금에 대해서

갱내의 수굴부(手堀夫), 갹 밖의 전석(轉石) 노무자 및 선광장에서 일하는 자의 수입은 차암운반부나 기타에 비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되는 자가 있다. 최근 도망자 가운데 이 범에 불만을 품고 도망하는 자가 있다. 수입 면에서 너무 차별이 없도록 현장계에서 고려하기를 바란다.

4. 경계 및 수배에 대해서

도망의 시기에 들어와 숙소 근무자 전원이 경계하여도 인력부족이다. 사무보조 및 경비는 모두 불면 불휴 상태에서 경계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추적에 출두하여 더욱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경계도 느슨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도망하는 자도 있다. 숙소 근무자는 물론 반도계 직원은 모두 피로하여 도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 가능하면 반도계 이외에서도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5. (기재사항 없음)

도망 방지에 관한 사항

제5 협회숙소

1. 출근표를 갱내 경비초소에서 접수할 것
2. 출근표에 의해 입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는 갱외 사무소에 보고하고, 사무소는 각 숙소에 연락할 것
3. 현장 담당자는 인원을 조사하여 결근의 유무를 갱내 감시초소 또는 사무소에 연락하고 각 숙소에 통보할 것
4. 임업, 순번 교대 등의 경우도 연락할 것
5. 각 숙소로부터 귀가시간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아 문의가 있을 경우는 한시라도 빨리 조사하여 보고할 것
6. 조기출근 증명은 전화 또는 구두로 하더라도 출근표에 증명 조장을 날인할 것
7. 순번 교대 등으로 도시락이 필요해 숙소로 돌아갈 경우는 연락 또는 증명이 필요하다. 입생 시각이 되어도 입생하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숙소에 통보할 것(8항은 없음)
8. 인솔한 경우에는 갱외 사무소 앞에서 각 현장의 관리인이 인원을 수령할 것
9. 갱외 사무소에서 갱구간의 초소등도 필요여부를 생각할 것.
10. 1) 숙소의 경계방법은 현재의 인원으로 더 이상 어렵다. 증원을 통해 야간근무자를 3명으로 하여 도망방지 및 경계에 힘쓸 것
2) 도망기간은 요소요소에 출장원을 배치하여 체포에 힘쓸 것
3) 인솔 등에 있어서 당 숙소는 현장도 5호갱
5호 제련소, 원산제련소에서 증원이 없을 경우는 도저히 인솔이 곤란하다.

이입반도인 연행 심득 – 소라치(空知) 광업소 노무과(1943년)

1. 가는 길

- (1) 여행일정은 단거리 단시일이 되도록 안을 만들 것.
- (2) 세이칸(青函) 연락선에 한해 승선 곤란으로 다른 급이 아니면 승선 불가능한 경우는 2등급 실비를 지급한다.
- (3) 시모노세끼 산바시역(棟橋驛)에서는 확실히 승선하기 때문에 야마구치현(山口縣) 사회과 출장원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2시간 정도 이전부터 개찰구에 있을 것
- (4) 부산에 상륙하면 곧바로 부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노무과 앞으로 타전하고, 부산부 영정(榮町) 1정 목 23번지 부산주재사무소에 수송상의 연락을 취할 것. 1박의 경우도 같음.
- (5)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에 도착했다는 것 및 현지상황을 간단히 타전할 것.

(6) 현지 도착 이전에 준비할 것.

흉부에 붙일 백포 1반(反), 가위, 바늘, 실, 붓, 먹(운송 인원에 따라 적당히 구입할 것)

2. 현지 및 재선(在鮮) 중의 심득

(1) 재선 중 운송자의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타사는 물론 다른 광업소 파견자와 비교하여 열악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

운송책임자는 항상 회사 및 노무대표자라는 것을 유의하고, 회사의 체면을 더럽히는 행동이 없도록 주의할 것.

운송보조원은 운송책임자의 명령을 준수하고, 항상 연락을 밀접히 하여 운송에서 유감이 없도록 할 것.

(2) 현지에서 보조원과 연락을 밀접히 하고 의족 받은 사항은 확실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

(3) 출동인원 중 체격이 열악하여 노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보도원(補導員)과 연락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것. 가능하면 간단한 사지의 운동, 눈 검사를 실시할 것.

(4) 현지에서는 펼히 사진이 첨부된 호적초본을 수령할 것. 종래 가끔씩 사진이 없는 초본을 받았는데, 사진은 사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수령할 것.

(5) 현지 출발에 앞서 준비한 백포에 명부와 번호 및 이름을 써서 각자에게 실과 바늘을 부어 오른쪽 가슴에 꿰맬 것.

(6) 출발에 앞서 훈련할 것은 다음과 같다.

차렷, 번호, 경례, 횡대로 조를 짜는 방법, 행진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훈련할 것.

(7) 현지 출발 시는 확실한 출동인원을 노무과장에게 타전할 것.

(8) 면제품, 연초 등은 세관의 엄중한 취조가 있음으로 정량 이외는 절대로 소지하지 않을 것. 만약 현지에서 연초 다량구입 등의 경우는 사전에 각자에게 분배해 둘 것.

(9) 수송에 필요한 물품은 미리 구입해 둘 것(양동이, 물잔, 국자, 약품)

3. 오는 길

(1) 승차의 경우는 펼히 번호순으로 좌석에 앉을 것.

(2) 출발에 앞서 시모노세끼역 구내나 야마구치현 사회과 출장소에 사전에 의뢰의 전보를 보낼 것.

(3) 시모노세끼역 승차는 야마구치현 사회과 출장소원에게 의뢰하고, 역원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좌석 획득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하선의 경우는 최후에 인원을 점호하고, 번호순으로 하선시킬 것.

그 중에는 하선 사이에 화장실 등에 모습을 감추거나 변장하여 하선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특히 시모노세끼에서는 도주자에 유의할 것.

(4) 여수와 시모노세끼 사이에서는 승선과 동시에 해항경비과원에게 전보료를 납부할 것.

최근 여수와 부산간, 부산과 시모노세끼간, 세이칸 연락선간에서 연락상 발송하는 전보료가 제각각으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다음 범위에서 결정할 것.

여수와 부산간 5원, 부산과 시모노세끼간 5원, 세이칸 연락선간 3원.

단 특수한 경우는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유를 갖추어 설명할 것.

이상 가운데 선내의 좌석획득을 위해 보이에게 대한 것은 3원 정도로 할 것.

(5) 종래 때때로 동아여행사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전 노선의 여정에 큰 차질을 빚은 경우가 있다. 출발 시에 필히 보도원과 연락하여 모든 여정의 출발과 도착시간 및 식사하는 역을 기입한 것을 받아들 것. 식사권도 같음.

(6) 운송 중에는 다음 훈련을 실시할 것.

아침은 전원기립, 황거요배, 국가제창, 황군장병에 대한 감사의 목도, 식전 식후의 감사(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때때로 생년월일, 본적, 연령을 반복하여 질문할 것.

(7) 차를 환승할 경우는 필히 차내 청소를 실시할 것.

장기간 대합실 기타를 사용할 때도 동일.

(8) 도중 도주자가 있을 경우는 지역 경찰은 물론, 곧바로 부근 역과 연락할 것.

특히 야마구치현 경찰부의 고등과, 부산주재소, 광업소 앞으로 타전할 것.

(9) 현재까지의 실적에 따르면, 도주하는 역의 이름은 대개 다음과 같다(단 최근의 것).

시모노세끼, 오사카, 도쿄, 아오모리, 교토

(10) 다음 곳에서 도착 혹은 출발을 타전할 것.

시모노세끼-(인원 및 발차시간) 광업소 부산주재소

도쿄-교토-오사카 부근에서 본점 노무부에 응원의뢰 타전

도쿄 도착의 경우는 아오모리시(青森市) 가지초(鍛冶町) 아오모리 출장소

하코다테-광업소 부산주재소

(11) 광업소에 도착했을 때는 인솔인원을 인도하고 사무장, 노무과장에게 상세히 현물운송의 경위를 보고할 것.

(12) 운송증명서는 사무소에 돌아온 다음 곧바로 반환할 것.

(13) 운송책임자는 소요경비 정산서 및 출장일정을 신속히 제출할 것.

1. 부산 : 사증을 위한 명부 2통 제출 및 호적초본에 사진 첨부한 것

경찰서 옆길 길 위를 향하여 정렬시켜 사증관에게 주목 경례한 다음, 탈모시킨 상태에서 출신지, 성명, 연령 등을 명료히 회답시킬 것.

시모노세끼, 부산, 아오모리에서 승선 시는 명부 각 2통을 수상서에 제출할 것.

전신은 특급사고가 아니면 낮에 할 것.

본점 휴일의 경우는 도쿄시 시바구(芝區) 백금삼광정(白金三光町) 293 이케다 아이오(池田秋穂) 앞으로 타전할 것.

최근 각지에서 유인하여 빼가는 실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운송 중 엄중히 감시할 것.

도쿄 경유의 경우는 특히 본점과의 연락을 밀접히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것.

승객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주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100명 정도의 승하차는 상당히

곤란함에 따라 도주자가 나올 때는 수사가 아주 어렵다.

선인 노무자 내지 수송 중에 내지 숙박, 휴게소의 식사요금과 기타 요금 및 휴게요금은 다음과 같다.

1. 시모노세끼

시모노세끼시 다케자키초(竹崎町, 역에서 약 300미터) 아마구치현 사회과 청년회관(구 불교회관) 시모노세끼시 알선 무료

2. 오사카

오사카역 서측(고베 쪽) 가운데 2층, 청소비로 1인당 1전

3. 나고야

나고야역 중앙선 간사이선 대합실 광장, 청소비로 1인당 1전

4. 도쿄

시타야구(下谷區) 야타니초(八谷町) 7 석탄, 광산, 철강, 토목통제회 휴게소

대표 : 아마구치 에이지로(山口榮次郎)

휴게요금 : 5시간 이내 1인당 45전, 5시간 이상 1인당 75전

식사요금 : 1인당 1식 50전

5. 아오모리

역 앞 아키타야(秋田屋) 여관(아키타야를 주로 하지만 인원에 따라 나눌 수도 있음. 이 경우도 숙소는 역 앞)

숙박료 : 1인 1박 3식(1식은 도시락) 3원, 1박 2식 2.5원, 1박 1식(석식 또는 조식) 2원

식사료 : 1인 5시간 대합 1식 1.8원, 잠깐 휴식 1식 1.3원

6. 하코다테

역 앞 구구홋카이도(九九北海道) 여관(하코다테 2928)

식사료 : 역 도시락 충당 0.4원(대합료 받을 때는 좌석료 불필요)

7. 부산

역 앞의 오구라초(大倉町) 3정목. 여관의 문자를 생략. 숫자는 수용인원수.

춘여(春汝, 60), 김천(金泉, 100), 승령(昇寧, 60), 경산(慶山, 100), 동아(東亞, 100), 금성(錦城, 100), 강원(江原, 50), 동양(東洋, 50), 상수(相須, 80), 금원(金原, 60)

숙박료 : 1박 2식(아침, 저녁) 1.20원, 1박 1식(아침) 1.20원, 1박 3식 1.80원

식사료 : 아침, 점심, 저녁 모두 60전

8. 여수

여수역에서 600~1500미터 사이의 여관. 여관의 문자를 생략. 숫자는 수용인원수.

태양(太陽), 본정2정목(150), 완산(完山), 동문정(100), 흥아(興亞), 소화통2정목(100), 금강(金鋼), 본정2

정목(100), 제남(濟南), 본정2정목(100)

숙박료 : 1박 2식(저녁, 아침) 1.30원, 1박 1식(아침) 1.30원, 1박 3식 1.90원

식사료 : 아침, 점심, 저녁 모두 60전

이상은 모두 차대와 봉사료(心付, 여수는 좌석료 10전)을 포함함.

노무자(チロ) 인솔요항(引率要項) – 호쿠탄(北炭) 부산출장소(1944년)

부산부 대교통 1정목 5 호쿠탄 부산출장소

노무 금원(給源)의 고갈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공출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산업전사의 소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 설령 전형을 엄격히 하여도 완전한 수송은 무척 어렵다. 매번 인솔에 나타난 도중의 결원수를 보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인솔자의 노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만전한 대책 아래 수송 임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기(記)

(1) 인솔자는 응모자 출발 1주일 전에 부산주재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야마모토(山元)를 출발할 것.

① 야마모토를 출발할 때에는 부산사무소 앞으로 타전할 것.

②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곧바로 사무소에 나와 인솔자 도착명부에 서명할 것.

단, 소원의 사무소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근무시간 외에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는 고다(向田) 주사보 집으로 연락할 것) – 소화통 3정목 69 청풍장(淸風莊) 1호 –

(2) 인솔자는 주재원의 지시를 받아 곧바로 공출지를 향해 출발할 것. 또한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다른 지방을 경유하여 도착 월일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또한 위로출장과 같은 기분으로 인솔사무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3) 부산사무소에서의 타합사항

① 인솔비 수령

단, 간식비로서 1인 1일 50전, 5일분, 계 2원 50전 및 기타 잡비(구급처치비, 전보료, 기타)로 1인당 50전

② 수송결정서를 등사할 것

단, 모집지가 두 군데에 걸쳐있을 때는 각각 2통.

③ 숙박식사증명서(기재양식 첨부) 및 착산(着山) 보고용지를 수령할 것.

④ 여수 경유 인솔자는 여수경찰서에 인솔선임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각자의 본적, 현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부산사무소에 제출할 것.

⑤ 광업소에서 지참한 완장은 부산사무소에 맡기고 새로운 완장을 수령할 것. 또한 완장은 착산 후

정리하여 반납표를 첨부해 다음번 인솔자에게 지참시킬 것.

(4) 공출지에 도착하면 보도원(補導員)의 지시에 따라 노무자의 공출훈련에 협력함과 동시에 노무자의 환경 등을 알기 위해 면(面)을 돌아볼 것.

(5) 인솔자는 인솔책임자의 통제에 복종하면서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보도원 등에 대해 접대상의 일로 불평을 말하지 말 것.

(6) 인솔책임자는 사전에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인솔자에게 주지시켜 수송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7) 노무자는 보도원이 전형한다는 명분을 곁으로 내세워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둘 것. 인솔자도 의사의 건강검진 시에 펼히 입회하여 착산 후 불채용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

(8) 응모자 착산 후 의료품이나 기타 물품은 모두 배급제이므로 부자유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각자 소지의 일상복 및 소지품을 가능한 한 많이 지참하도록 할 것.

(9) 기타 유의사항

① 노무자를 인계할 경우는 곧바로 훈련을 개시하여 결전 하에서의 산업보국정신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수송 도중의 주의사항을 전달할 것. 또한 우리 회사의 좋은 대우시설을 내세워 안심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훈화하고, 단체정신을 파악할 것.

② 현지에서는 다음 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조사할 것.

가. 호적초본 1통

나. 경찰로부터 부산수상서 또는 여수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도항증명서 2통

다. 대원 명부 25통

라. 군으로부터의 대원인계서 1통

③ 종두(種痘)는 현지 또는 출범항구에서 실시하여 시모노세끼 검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또 장발은 사증을 받을 때 사증 관계자로부터 주의를 받으면 현지 또는 출범항구에서 자를 것.

④ 명부기재순과 완장번호를 동일하게 정렬하여 사증에 편리하도록 할 것.

⑤ 명부의 연령과 본인의 실제 연령을 조회할 것. (예를 들어 명부 및 호적초본에는 15세이지만, 실제연령은 25세나 30세일 경우가 있다면 특별히 주의할 것)

⑥ 인솔 도중 및 숙박 시는 유인이나 도주 등이 누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차 입구에 진을 쳐서 완벽히 감시할 것. 특히 야간에 주의하고 서로 접호시킬 것.

⑦ 승차객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열차라는 것을 알릴 방법으로 깃발(군대에서 쓰는 것)을 열차입구 안쪽에 걸어둘 수 있음.

또한 차선 내의 청결에 주의를 주어 항상 좌석을 깨끗하게 할 것. (또한 노무자가 다수일 때는 돛자리나 신문지를 구입하여 객차의 통로에 이를 깔아 같은 객차에 수용할 수도 있음)

⑧ 수송 도중 환승하는 역에 장기간 있을 경우는 도주방지를 위해 1호에 걸어두는 방법을 반복하여 노무자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것.

⑨ 간식은 현지에서 조달할 것. (미리 조달된 간식을 현지 출발 시에 가져가지 않아 추태를 부리는

일이 있음으로 주의할 것) 또한 운송 중의 음식료품 부족을 불평하지 않도록 일반에게 주의를 줄 것.

⑩ 도중 도주 또는 사고가 생길 경우는 차장에게 의뢰하여 도주관할 경찰서에 통지하고, 본점, 광업소, 부산 등에 전신 보고할 것.

⑪ 인솔 중 병자가 생겨 하차가 필요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⑫ 단체권을 분실하여 수송에 다대한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는 충분히 유의할 것. 또한 인솔자의 승차권은 단체에 포함하여 착산 후 야마모토에서 정산할 것.

⑬ 출발역에서 승차하지 않거나 혹은 도중에 도주자가 생겨 단체권에 결원이 생길 경우는 이를 단체권에 기입하여 도착역에서 환불받아 광업소에 납부할 것.

⑭ 사증을 받을 때는 민첩한 동작으로 훈련의 성과를 올리고(차렷, 경례, 본적, 씨명, 생년월일, 부모, 형제의 씨명 등), 가짜로 오인 받아 사증관에게 주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⑮ 사증 종료 후 관계자로부터 시모노세끼 해항경비과 및 야마모토 경찰서장 앞으로의 증명서를 수령하여, 전자는 연락선 안에서 시모노세끼 수상서 파견원에게, 후자는 야마모토 경찰서에 제출할 것.

⑯ 사증을 끝내고 출발인원이 확정되었을 때는 다음 기관에 타전할 것. (발송인은 훗카이도 탄광 기선으로 할 것)

가. 시모노세끼 수상서장

나. 시모노세끼 역내 야마구치현 사회과 출장소

다. 시모노세끼 역내 동아교통공사

라. 아오모리시 우라마치(浦町) 하시모토(橋本) 56 가와베 도요하루(川邊豊治)

위의 전문 예 (유바리로 향하는 노무자 ○○명 ○월 ○일 ○시에 귀지(貴地) 착, ○시 출발예정 잘 부탁합니다. 훗카이도 탄광기선.)

단, 부산사무소에서는 본점 광업소와 시모노세끼 역장 앞으로 타전한다.

⑰ 승선 시에는 대원명부의 여백에 인솔자의 본적 주소 및 연령 등을 명기한 것 2통에 단체권 및 도항증명서(부산수상서 또는 여수경찰서가 발행한 것)를 첨부하여 책임자가 손에 들고 선두에 서서 승선할 것.

⑱ 조선지폐는 미리 준비하여 부산 또는 여수 잔교(棧橋), 연락선 안에서 환전할 것.

⑲ 섬유품 및 통제품 등은 시국 비상으로 엄격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 구입하여 가져가지 말 것.

⑳ 노무자 수송에는 음주 등으로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관계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수송에 지장이 생긴 사례가 있음으로 절대 음주를 금지할 것.

㉑ 수송 도중 연락선이나 기차에서 봉사료(心付)가 필요한 경우는 종래의 관례에 따라 적당히 사의(謝意)를 표할 것.

㉒ 열차수송 중 도시락 배급 역에서 판매자에게 소재를 알리기 위해 회사 이름이 들어간 깃발을 지참하여 창밖에 제시할 것. 또한 만약 도시락 배급이 없을 경우에는 동아교통공사에 엄중히 주의를 주고, 즉시 부산으로 통지할 것.

㉓ 완장을 편으로 달면 떨어질 우려가 있음으로 실로 꿰맬 것.

- ㉔ 인솔 중 반장을 충분히 활약시킨다는 의미에서 노무자 간식대에서 적당히 수당을 지급할 것.
 ㉕ 착산 후는 인원을 부산사무소 앞으로 타전할 것. 단, 2개 군에 걸쳐 인솔한 경우는 각 군별로 인원을 타전할 것.
 ㉖ 다음번 인솔자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인솔상황의 개략을 서면으로 부산사무소 앞으로 보고할 것.

(이상)

○ 운송인의 부산과 여수에서의 타전처 및 문례

1. 시모노세끼시 '수상서장' 앞

폐사 ○○로 향하는 '치로' ○○명 오늘 아침 출발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호쿠탄 치로 인솔자.

2. 시모노세끼시 시모노세끼역 내 '교통공사' 앞

폐사 ○○로 향하는 '치로' ○○명 오늘 아침 출발했습니다. 단체수송 잘 부탁합니다. 호쿠탄 치로 인솔자.

3. 아오모리시 우라마치(浦町) 하시모토(橋本) 56 가와베 도요하루(川邊豊治)

○○로 향하는 '치로' ○○명 ○○일 ○○○열차로 귀지(貴地) 착. ○○편으로 출발 예정. 잘 부탁합니다.

4. 시모노세끼시 시모노세끼역 내 '야마구치현 사회과 출장소' 앞

폐사 ○○로 향하는 '치로' ○○명 오늘 아침 출발했습니다. 단체수송 잘 부탁합니다. 호쿠탄 치로 인솔자.

조선모집출장보고 – 호쿠탄(北炭) 호로나이(幌内) 광업소(1945년)

1945년 3월 24일

호로나이 광업소 노무과 정원(整員)주임 기타야마 소토지로(北山外次郎)

이번 제4/4분기 이입 반도인 노무자 도 할당 촉진을 위해 1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조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의 행동개요 및 소견사항의 대요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기(記)

1. 행동개요

1월 30일~2월 3일

1월 27일 부산에 도착하여 당시에 3일간 체제하면서 최근 조선의 일반사정 및 모집 기타 사무관계 사항에 걸쳐 예비지식을 얻었다. 1월 30일 전남도청에 가서 동원과장(白鵬濟)과 동 주임(尾崎加躬)을

만나 2일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도의 송출 저하의 원인을 탐색하고, 송출의 저조에 대해 도간부의 맹성과 분기를 요망하였다.

본도의 제3/4분기의 당사분 송출성적은 40%정도에 불과했다. 타사분도 20% 내지는 30%정도에 머무른바, 다소 부진한 원인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송출 당사자인 도청 간부에 확고한 전국(戰局) 관념의 파악이 없고, 송출에 대한 결의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하급청에 대한 송출명령도 궁색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군청, 경찰 관계의 협력부족

양자 간의 연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③ 도민의 교활성

본도는 예전부터 노무자 혹은 상인이 많은 지방으로 소위 상인근성이 왕성한 지방색을 지닌 곳이다. 교활한 이기주의적인 지역으로 마치 오사카지방 주민과 같다. 국책에 목숨을 바치려는 정신이 결여된 것은 농민층에서도 대체로 그렇다.

④ 징용기피자에 대한 취체 불철저

'징용은 피할 수 있다'는 관념이 일반에 만연되어 동요혼란의 상태에 있다. 징용된 것에 대한 동요보다 오히려 징용을 기피한 것을 목격한 것에서 생기는 동요이다.

⑤ 본도 주재의 통제회 주재원의 능력부족과 본도 전반의 사태가 곤란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통제회 주재원의 활동 정도는 지극히 불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비슷하게 조선에 건너와 전남에 체재하고 있는 훗카이도 지부 모리카와(森川) 씨도 인정하는 바로, 미우라(三浦) 소장 또한 본도 주재원의 경질을 고려하고 있다.

⑥ 본도 출신자에 비교적 탄광 재해의 피해자가 많다.

수학적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사 보도원(補導員) 및 통제회 주재원 등이 주장하고 있다.

2월 5~9일

고다(向田) 주재원과 함께 통제회 경성출장소 및 총독부에 출두하여 제4/4분기 도 할당 미할당분에 대한 할당 측진에 관해 진정하였다.

2월 수송분에 대해서는 군(軍)관계 신청서류와 맞지 않은 관계로 탄광 관계를 우선했지만, 3월분은 군 관계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다. 미할당분 8,700명 가운데 2,500명(규슈 1,300명, 훗카이도 1,300명, 탄광기선내 650명, 호로나이 200명)을 3월분 할당으로 양해하였다.

2월 12~13일

3월 호로나이로 향할 경북 200명의 송출이 내정됨에 따라 우수한 군(郡)을 획득하기 위해 경북도청에 가서 마스미(眞澄) 동원과장 및 츠크미(堤) 주임을 면담하였다. 최근 탄광에의 송출 90% 이상의 송출성적을 확보하고 있는 영천, 의성, 고령의 3군 가운데 2군을 희망하여 영천과 의성에 할당받기로 양해를 얻었다.

2월 14~25일

2월 25일 송출 예정인 전남 250명(제4/4분기 제1차 할당분)의 송출을 위해 전남 각 군(보성, 해남, 강진, 함평, 영광의 5군)을 돌면서 관청 및 경찰의 송출노력 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하였다. 각 군 집합률 90% 정도이지만, 승선까지 낙오하는 자도 있어 250명 할당에 대해 168명(67%)이 승선하여 출발하였다.

본 송출과 더불어 본도에서 송출된 것으로는 미이케(三池) 탄광에 할당된 600명인데, 그 실적 또한 40% 정도에 머물렀다.

2월 27~3월 2일

고다 주재원과 다시 경성에 가서 관계당국과 제4/4분기 이후의 미할당분에 대한 할당 촉진을 진정하였다.

미할당분은 육군, 해군, 군수성, 운수성, 통신성 관계 합계 6,180명이고, 이 가운데 탄광관계는 2,500명으로 내정되었다. 훗카이도 800명, 도키와(常盤) 300명, 나머지 1,400명은 규슈에 배정되었다. 훗카이도는 헤이와(平和) 100명, 호로나이 150명, 소라치 100명, 아카히라(赤平) 100명, 다이유바리(大夕張) 100명, 가야누마(茅沼) 50명은 각각 결정되었지만, 나머지는 미정이다. 이에 당사 제일주의를 간청하여, 유바리 150명, 신호로(新幌) 50명을 요망했지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몇 일 걸릴 예정이어서 부산으로 돌아갔다.

3월 3~6일

3월 16일 호로나이로 향하는 200명이 결정된 경북 영천, 의성 양군을 시찰하면서 100% 송출을 간청하였다. 양 군의 송출에 대한 열의는 전남 방면에 비해 훨씬 좋았고, 일반 민중에 대한 지도도 훌륭했다.

2. 소견사항

(1) 징용실시 이후의 송출성적

징용에 의한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 실시 이후, 송출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은 징용제에 의한 송출은 절대로 강권발동의 후유증이 있으리라고 예상한 업자가 일시적으로 모집노력을 중지하자, 송출자인 관청 또한 관알선시대의 타성에 젖어 본 제도에 들어와서 송출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송출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업자는 업자송출에 관해서 관청에 아무런 독촉도 하지 않았고, 관청 또한 시끄러운 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징용령이 발포되면 이에 응할지의 여부는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임의로 위반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뿐이라는 사고방식이었다. 관청은 송출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수속상의 착오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태도, 즉 모집의 형식화에 빠지고 말았다.

징용 실시 이후 각 도는 모두 송출이 부진했지만, 다만 경남북은 성적이 비교적 좋았다. 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 지방에서는 도청 방면의 지도는 물론, 일반 민중도 타 지방에 비해

전국(戰局)에 대한 이해가 깊다. 동국(東國)의 무사적인 기골이 빼어난 곳이기도 하여 이미 일반 민중은 징용이 다가올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내지인은 모두 전쟁터에 나갈 운명이라면, 생산은 우리 반도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은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송출성적이 가장 나쁜 전남(전북□에 이어서) 지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징용실시 이후 일종의 혼란 상태에 빠진 듯하다. 업자의 지적과 당국 자신의 자성을 통해 점차 송출에 대해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여 송출기구를 정비강화하고 있다. 이번 2월분의 송출에서는 징용 기피자를 일제검속하고, 구류에 처하거나 검사국에 송치하는 등의 처리를 취했다. 이번 송출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유치장에서 곧바로 수송열차에 태운 자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징용은 도망가는 것이 득이다’는 관념의 일소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징용 기피자 1명을 제포하는데 일금 5원씩을 경찰부장 명의로 서장이 순사에게 상금을 증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멀지 않아 성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후 조선 내의 전반적인 성적은 송출기술의 향상과 전국(戰局)의 압력에 의해 필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4, 5, 6월은 농번기로 현실적인 결과는 약간 줄어드는 것도 있다), 통제회 미우라 소장과 부산출장소의 견해는 앞으로는 50~60% 정도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도인의 송출성적이 금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 기(期)마다 각 광업소의 할당 인원수 부족으로 인해 충족불능의 적자가 상당수에 이른다. 현재 반도가 노동력 급원으로서 갖는 가치는 대체적으로 저멸(低減)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인(華人)¹⁰⁾의 사용에 대해 오히려 시험적 태도를 보이면서 모든 결점의 극복을 통해 화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2) 보도원 및 운송전임자의 활동상황

징용제도 실시 이후 보도원은 유골의 송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운송책임자의 조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송출을 위해서 전혀 파견되지 않았고, 부산사무소는 한 번도 도 방면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이들은 1전의 돈도 들이지 않았으며 모집 노력을 마치 중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처치는 통제회 경성출장소의 의향에 의거한 것으로, 탄광 관계는 유독 당사만이 아니라 각 사 모두 그 지시에 순종하였다.

지난번(3월 1일) 총독부에서 하가사(日笠) 지도과장과 면담했을 때, 과장은 탄광의 징용제 실시 이후 도군 방면에 얼굴을 보이는 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탄광 사정의 선전이 뒤떨어진 형세이고, 당사와 같은 큰 탄광도 작은 사업자도 송출자 측에게는 아무런 구별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스스로 힘을 기울여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어느 정도의 선전을 위해 도군에 나가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종용하였다. 이튿날 나는 이를 미우라 소장에게 이야기했지만, 미우라는 어디까지나 도군으로의 파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추었다. 통제회로서는 과거의 모집에서 보인 ‘복마전’에 빠지지 않을지를 염려하는 것 같았고, 우리는 쌍방설에 진리가 있다고 믿어 각각의 주장의 장점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다.

부산출장소는 이번 각 도에 당사의 주재원제(가칭)를 설치할 의향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10) 중국인을 자칭함.

제도는 보도원 1명씩을 각 도에 전속으로 배치하고, 각자 맡은 도에서 유골송환 등에 관해서 도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특히 송출에 대한 정신적 개척을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각자 맡은 도 및 담임자는 다음과 같다.

경남=요시우라(吉浦), 경북=츠바키야(椿屋), 전남=마치다(町田), 전북=오이시(大石), 충남북=히로마와(廣川).

현재 각 광업소에서 1명씩 보도원과 운송책임자의 파견을 얻어 앞에서 말한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본궤도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부산출장소의 기구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각 광업소의 협력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출장소가 시험적으로 실시한 주재원제는 통제회 방면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우라 소장은 어느 정도 이를 양해하고 있지만, 통제회 각 도 주재원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내가 순회한 곳에서는 이들 통제회 주재원으로부터 누누이 설명을 요구받았지만, 나는 부산출장소의 주재원은 통제회 주재원에게 대항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그들의 지도 애원을 필요로 하는 당사의 주재원은 사내의 업무화장에 따라 도 또는 통제회에 대한 전속연락원의 의미로 양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송출에는 보도원이 관여하지 않지만, 종래의 의미에서의 활동은 식사, 숙박, 교통 등이 극도로 펍박한 조선에서는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하고 그 필요성도 없다. 하지만 송출 성적이 부진한 도군 등에 대해 수시로 자극하는 일은 긴요하다. 또 주재원제도가 만약 항구적 제도로서 채택된다면, 앞으로 본 제도에 따라 도군과 항상 긴밀한 정신적 접촉을 유지하고, 관청 방면에 대해서도 산업 인적 태도에서 이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또 현재 모집에서는 업자 활동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모집전의 실체는 모집지반획득전(募集地盤獲得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도 당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양호한 지반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모집 그 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3)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반도의 평가

반도의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는 앞에서 대체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즉 1944년도에 전국적으로 보면 매 기(期)마다 업자의 신청 수에 대해 45% 정도밖에 할당되지 않는다. (업자가 제출하는 신청 수는 실제수요보다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결국 몇십 퍼센트의 송출로 낙착된다면, 공급원은 이미 이 정도로 펍박되었다는 것이다. 반도가 탄광에 대한 절대지배적 공급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조선의 관리에 물어보면 아직 공급원이 고갈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가 많다. 반도의 내지 송출이 연간 40만 명 정도이지만, 이는 반도 2600만의 인구에 대해 1.5%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론의 근거이다. 하지만 현재 반도주민의 80%가 농민이다. 이 중에서 농업요원을 확보하고, 또 신흥 조선자체의 산업 방면을 충족시킬 필요도 있다. 또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업 등이 존재하는 것도 반도관리의 능력으로 보아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석탄통제회 경성출장소장 미우라 씨의 관찰에 따르면, 1945년도 반도의 내지 송출 수는 대체로 40만

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탄광에 송출된 자는 1944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941년도 이후 탄광으로의 송출 수는 다음과 같다.

1941년 5만

1942년 7만

1943년 9만

1944년 18만

총독부 히가사(日笠) 지도과장이 밝힌 의향은 “1944년도에는 전년도보다도 10만 명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탄광의 실제 증산에는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말 유감이다. 탄광은 쓸데없이 인원만을 증가시키고 있고, 모두 인원의 증가를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풍조에 일선을 긋는다는 의미에서 1945년도는 탄광으로의 송출은 오히려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소멸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1945년도 내지로 향하는 노동력이 견제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은 내지 기업의 대륙이주이다. 이미 북선 방면의 □공 사업은 비약적 발전 확장의 과정에 있다. (일반 방첩상의 이유로 선전을 피하는 것과 같다) 반도에서의 노동력 송출 순위가 내지 우선의 원칙에서 선내 우선의 원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 즉 조선을 만주 북지와 함께 차기 대공세는 이전(移轉)의 대병 참기지로 만들려는 국책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4) 할당결정사정

현재 도(道)할당에 대해 총독부는 석탄통제회 관계에 대해 석탄통제회 관계 할당 수를 일괄하여 배분하고, 석탄통제회는 할당의 범위 안에서 각 출장소별로 이를 결정하고 있다. 경성출장소가 도할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통제회 본부가 지시하는 지구(규슈, 혼카이도, 도키와)별 우선순위와 각 지부별로 신청하는 탄광의 우선순위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여기에서 각 지부의 신청 순위가 절대지배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면, 광업소로서는 매 기마다 혼카이도 지부에 우선순위의 양해를 얻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카이도 규슈 도키와의 각 지구에 대한 할당은 각 지구사업의 규모 및 반도인의 사용수 등에 비례한다. 혼카이도는 규슈의 3분의 1 정도 되지만, 실제 할당은 규슈 지구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고, 할당 이외의 것도 모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는 주로 경성출장소에 혼카이도 지부 출신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혼카이도 지부로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5) 징용제 실시 이후의 조선의 동향

작년 9월 이후 탄광 기타 중공업 방면의 대량송출에 즈음하여 징용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일반의 사상동향이 극히 혐악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과장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은 비교적 유식층(소학교 졸업 이상으로 평화산업 혹은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이 상당수 징용되고 있고, 징용이 다소 충격을 준 것은 이들에 대해서이다. 그들 중에는 상급학교를 나와 100원 내지 150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은행원 회사원도 있지만, 징용을 회피하기 위해 40원 내지 50원 정도의 면직원 또는 식량 영단산업조합 등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일반 농민과 일고(日雇) 등은 종래부터 송출의 대상이 되었고, 관알선에서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송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충격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는 “궁핍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지에 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있다.

이처럼 징용으로 인해 반도의 분위기가 혐악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징용의 강화는 반도에 부과된 필연적인 운명이다. 당국의 민중 지도의 중점도 바로 이 점에 있다. 현재 도시와 촌락 모두는 대대적으로 징용을 고무하는 각종 선전방책이 펼쳐져 포스터, 강연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일반의 화제 또한 징용에 관한 것이 많다. 당국은 징용의 양양을 도모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 원호문제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총독부 근로부(광공국)에 지도과를 설치하여 원호와 겸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도의 사회과는 원호과로 이름을 바꾸어 원호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내가 귀임 후 물은 바에 따르면, 광산의 할당허가에서는 조선의 관청의 공기가 혐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원인은 결코 감정적이 아니라, 조선 당국의 새로운 동향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광산의 할당허가 문제는 이러한 풍조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 당국의 지도방침은 광산의 할당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상해치사사건과 같이 중대한 것으로부터 종래에는 없었던 일시 귀선자의 취급, 병자귀국, 유골의 송환, 병자 위로금의 정도 등에까지 간섭 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월 이후에도 오노우라(大ノ浦), 가츠타(勝田), 하코시바(箱柴), 훗카이도 미쓰이의 스나가와(砂川), 풍베츠(奔別) 등은 관리부적절의 이유로 아직 할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타당성 여부는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업자로서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6) 물자 및 일반생활 정황

시국의 압력은 반도의 물자조건의 저하를 내지 이상으로 가속도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다. 각종 물자의 암거래 정도도 내지보다 노골적이고 대담하다. 현재 반도에서 암거래는 공공연한 형태로 이루어져 오히려 특수가격이라는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디에 가더라도 암시장이란 것이 있어, 적지 않은 생활물자가 거래되고 있다. (반도의 암시장 물가는 이전 부산출장소에서 일람표를 만들어 회람했을 것이다.)

임금 또한 암거래 임금으로 잡역이더라도 하루에 7~8원 정도 받는 자가 있다. 하루에 3~4원은 보통으로 노무자로서 징용될 경우, 탄광 임금에 매력을 느낄 수 없다.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현재 정부(定夫)와 고원(雇員)급의 조선출장 여비는 하루에 20원이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한 달 생활비로도 충분하지 않고 지출 초과가 되어 업무에 곤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조선에 파견되어 있는 적지 않은 보도원과 운송책임자는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출전 : 小沢有作 編 「勞務者訓育具體案(石炭統制會札幌支部, 1943年)」,
『近代民衆の記録 10 在日朝鮮人』, 東京:新人物往来社, 1978년, 492~528쪽〉

3) 보도원 필휴(1943)

북탄부산출장소(北炭釜山出張所)

1. 보도원의 마음가짐

- 1) 국가 노무배치의 보도적 담당자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갖고 열정과 의기(意氣)로 공출을 담당함과 동시에 늘 품위를 지킬 것.
- 2) 장기간 가정을 떠나는 일이 늘 있어도 임무를 하는 데에는 사적인 일을 잊고 전지(戰地)에 있는 장병이라는 기세로 활동할 것.
- 3) 주재(駐在)기간 중……(판독불가)……점(店) 소속 부산출장소의 직원이라는 관념으로 그 지휘명령에 따라 집무할 것.

2. 출장에 임하는 준비

- 1) 공출군에 대한 예비지식의 획득에 힘쓸 것.
- 2) 아래 사항을 휴행(攜行)할 것.
신분증명서,……(판독불가)……서, 사진, 포스터, 취업안내, 그밀엽서, 킹, 탄광(炭光)신문, 정산용지, 연주표(聯周表), 조선지도,……(판독불가)……신지(信紙), 일보(日報)용지, 봉통(封筒, 본점용, 출장소용), 수배용엽소, 탄보지(炭報紙), 연필, 핀,……(판독불가)……지하……(판독불가)……주머니, 게트르(종아리에 두르는 복장 종류), 숙사(宿舍)통지용 엽서,……(판독불가)……증명서, 명찰, 운송인 이정증명서용지.

3. 현지도착 후의 수배

- 1) 도청에 들러 보도원증(報道員證)의 교부를 받아 도(道)소재지의 통제회(統制會) 주재원과 연락을 할 것.
- 2) 군(郡) 도착후는 아래와 같이 연락할 것.
 - (1) 부산사무소에 숙사를 타전(……(판독불가)……전보)하며 동시에 엽서로 속보(速報)할 것.
 - (2) 도영무주임, 경성통제회 및 도주재원 여행사에 숙사를 통보할 것.(엽서)
참고(경성부 광화문동 동아일보빌딩 석탄통제회 경성사무소)

4. 현지의 활동에 관해

- 1) 관계관청의 의도를 힘써 잘 따르며, 면주재소를 순회하여 힘써 완전 공출을 기할 것.
- 2) 공출에 임해서는 상황의 호조 여부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5분후까지 열심히 할 것.
- 3) 공출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자나 깨나 공작을 할 것.
- 4) 인사장 발송

군청 경찰에서 관하 관계직원의 씨명을 듣고 바로 인사장을 보낼 것.

5) 최근의 모집상황 청취

군경찰에서 최근의 모집상황을 듣고 지시를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여관의 주인 혹은 고용인들으로부터 청취를 하여 참고할 수 있다.

6) 주재소 혹은 읍면을 방문한 후에는 바로 관계자에게 예장(禮狀)을 보낼 것.

7) 군청 · 경찰서와의 연락을 긴밀히 할 것. (면주재소를 순회할 때에는 군청 및 경찰서……(판독불가)……)

(1) 수송일을 여행사 혹은 통제회에 조회할 것.

(2) 역에 출발일을 확인하고 편의에 따르도록 교섭함과 동시에 수송용 트럭 등의 수배(手配)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교섭을 해 둘 것.

9) 경비의 견적을 하고 예산서를 부산사무소에 송부할 것.

10) 모집성적의 예상을 하고 부산사무소에 속보할 것.

11) 모집이 곤란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곳에 연락을 취하고 선처를 구할 것.

(1) 부산사무소

(2) 도청노무관

(3) 통제회 도주재원

(4) 군청 · 경찰서

(군청직원의 출장 독려를 구하고 다시 경찰서의 경비(警備) 전화의 활용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

12) 수송(항구 출발) 1주일 전에 공출 독려에 관해 관계 방면에 의뢰를 보내고 부산사무소에 타전할 것.
전안(電案)……(판독불가)……

13) 운송인이 도착하면 모집상황을 숙지시키고 공출에 유감이 없도록 조력하게 할 것.

14) 도주 방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인과 함께 만전을 기하라 것.

15) 사증(查證)을 받아 신체검사, 전형(銓衡), 종두(種痘) 등을 할 때는 운송인을 입회시켜 유감이 없도록 할 것.

16) 인계서는 가급적 역 출발인원에 의하도록 할 것.

17) 운송인 및 노무자를 출발시킬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정비할 것.

(1) 운송인 이정(里程) 증명서

(2) 대원명부 30부

(3) 인계서 2통(1부는 산원(山元), 1부는 부산용)

(4) 호적초본

(5) 종두증명서

(현재 종두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산 혹은 여수출장원에 타전하여 수배를 의뢰할 것)

(6) 여행결정서 및 단체권

(운송인도 당분간……(판독불가)……체(體)에 포함할 것)

(7) 경찰서의 도항증명서

- 18) 근로자를 출발시킬 때는 군수 혹은 경찰서장의 훈시를 청할 것. 관계관청의 관원이 따라가기 위해 부산 또는 여수에 출장할 때는 그 취지를 부산 또는 여수에 타전하여 연락할 것.

5. 공출 종료 후의 대처

- 1) 출발인원을 곧바로 아래에 보고할 것.
 - (1) 부산사무소(전신)
여수 근방일 때는 여수출장원에게도 별도로 전보할 것.
(여수출장원 주소 = 여수경찰서 앞에 엽(葉)여관 북탄(北炭)출장원)
 - (2) 도청
 - (3) 도통제회 주재원
(*2),(3)에 대해서는 엽서)
 - (4) 군청경찰 등에 인사
 - (5) 도청 노무과에 출장보고
(이) 때에 보도원증을 다시 돌려줄 것)
- 2) 부산사무소의 지시가 없는 한 인사 후에 바로 귀임할 것, 사무소에 출두 상황보고를 종료한 뒤에 공출성적표를 제출할 것.
- 3) 정산서는 귀임 3일 이내에 제출할 것.
- 4) 관계 방면에 예장을 발송할 것.

6. 부산대기중인 복무 및 행동에 관해

- 1) 신속히 현지의 잔무를 처리하고 또한 차기 활동의 준비를 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질 것.
- 2) 적당한 운동, 오락 등에 의해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에 힘쓸 것.
- 3) 매일 정각 사무소에 출두하여 명령 지시를 수령해야 하며 소요되는 보고, 연락 등은 이 때에 할 것. 불가피하게 출두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로 하는 것도 무방.
- 4) 숙소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사무소 또는 숙소 주인에게 행선지를 통지해 두어야 한다.
(이상)

〈출전 : 朴慶植 編 「報道員必攜(北炭釜山出張所, 1943年)」, 『朝鮮問題資料叢書第一卷 戰時強制連行勞務管理政策(1)』, 東京:三一書房, 1981년, 315~317쪽〉

4) 게이한신(京阪神) 협회회원의 부여신궁 어조영 근로봉사(사설)

내지에는 현재 200만의 조선출신자가 도래하여 산업전사로서 장차 기타 주요한 역할을 맡아 내지의 형제와 함께 봉공을 드리고, 황민으로서의 갑격에 차 있다. 정전(征戰) 완수를 위해 열심이며 한 분에게 충의를 맹세하고 있는 것은 내지의 형제들에 뒤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특히 각 협회회의 지도하에……(판독불가)……연성(鍊成)으로 돌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실로 엄청난 점이 있다. 이 2백만 중 대략 반수가 재주하고 있는 게이한신(京阪神)의 중심인 오사카부(大阪府)협회에서는 교토(京都), 고베(神戸)에 주창하여 부여에 창립되는 관폐대사 부여신궁 어조영공사에 근로봉사단을 파견하게 되어 협화의……(판독불가)……청장년(青壯年) 중에서 선발하여 10월 하순에 현지로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감사하고 갑격을 참을 수 없다.

부여신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황실의 고귀한 어전이며 가장 조선과의 관계가 깊은 신을 모시고 받드는 곳이며 조영공사는 전선의 2천 5백만……(판독불가)……의 근로봉사에 의해 준공을 보게 되어 현재 전선 각지의 사람들이 들어와 교대로 봉공을 올리고 있다. 내지에 도래하여 국恩(國恩)의 홍대무변(鴻大無邊)함과 우리 국체의 세계 무비(無比)하고 너무나 존엄함을 아는, 이를 청장년자로 하여금……(판독불가)……공사에서 봉사하도록 한 것은 실로 의의가 깊으며……(판독불가)……협화사업의 중추를 취급하고 있는 오사카의 협회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원하건대 이 오사카협회의 시행을 본받아 각 협회도 속속 근로봉사대의 파견을 했으면 한다. 이 근로봉사대는 며칠간의 자유……(판독불가)……을 인정하고 아침에 황민연성의 설정 시찰이나 향토방문을 시킨다고 들었다. 이 세세한 점에 더욱 기뻐하는 바이다. 내선일체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는 협회의 사업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크게 찬의를 표하는 바이다.

〈출전 : 「京阪神協和會員の扶餘神宮御造營勤労奉仕」, 『東亞新聞』, 1942년 10월 20일〉

5) 아이치현(愛知縣) 협회회원 보도원의 소리를 듣는다(기사)

1

나고야시(名古屋市) 中川區 蟠野町 보도원 忠岡圭一

신속히……(판독불가)……에서 성의를 갖고 있는 보도원인 우리는 성지(聖旨)를 봉체하고 내지 재주 우리 동포를 빨리 내지생활에 융화시키고 언어 및 풍속 고래습관을 바꾸기 위해 더욱 진충보국의념을 배양하여 국민적 자각을 더욱 달성하고 내지에서 혈맹 동포이며 친화체의 신천이 제일선의 보도 목적이며 내지 동포에 대해 반도 동포의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 이해를 촉진하며, 또한 쌍방의 접근, 신뢰를 심화시키고 상애(相愛)의 정의(情誼)를 촉진하고 하루라도 빨리 제국 신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시국하의 정신이므로, 우리 보도원은 신조를 갖고 일초일분의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보도방침을

연구하여 내지 동포와 함께 단결로써 국가에 대한 보조를 맞춰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래 학문의 부족 때문에 지도를 담당하는 것은 실제로 곤란하고 어떤 것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슬프고 죄송스럽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빨리 의무교육 및 의무병제도를 받아서 천황폐하의 적자(赤子)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온 힘을 바쳐 황도(皇道)를 배워 정말로 협화사업의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

도요하시시(豊橋市) 花田町 宇築地 32 보도원 長野一三

대동아건설도 드디어 제2단계에 들어가 우리 황국신민으로서 유사 아래의 일대 결의를 갖고 봉공의 성의를 바치고 진력을 바쳐 목적의 완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반도출신자는 병역 기타 관계로 모든 것을 내지인 동포에게 봉공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중대 시국에 즈음하여 시국의 인식이 결여되고 혹시 봉공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황민으로서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때에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은 극히 중대하고 스스로 솔선하여 신도(臣道) 실천의 길을 걷고 내지인에 뒤지지 않는 것을 물론, 반도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일을 그르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일본이 동아의 맹주로서 결연히 대동아건설의 중대 의무를 이해 체득하도록 하고 이 성전에서 사력을 다해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부침을 함께 하는 정신과 노력이야말로 내선일체의 세례가 있어서 반도인에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현재의 대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사변 아래 우리 반도인이 우월하고 행복함을 남몰래 느꼈습니다. 특히 근래 북구 및 발칸 내지 근동지방에서 소국의 모습을 보고 더욱 이러한 느낌을 깊이 가졌는데 우리의 현재 및 장래야 말로 실로 혜택 받은 것이고, 지금의 노력 여하는 한층 광명과 장래에……(판독불가)……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반도인의 운명이고 동아의 번영이야말로 우리의 내일의 행복입니다.

이 때문에 종래의 내선융화운동이라는 미온적인 운동은 이미 끝이 났고 현시에서는 내선일체, 즉 어떻게 해서든 신속히 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완수시킨다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여 임전……(판독불가)……에 아무런 유감없이 완벽하도록 기대합니다.

반도인 자신으로서도 사변 아래 국가의식의 양양 등 마음가짐이 큰 변화가 있는데 아직 국민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내지인에 비교하여 뒤떨어지는 감이 있으므로 이 점에 특히 유의해서 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통제문제에서도 특히 쌀 배급에 관해 반도인 다수는 근로자이고 작금의 합(合)/작(勲)이라는 절미 배급으로는 상당한 부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늘 우리가 사력을 다해 이 동아공영권을 확립하면 우리 자손은 장래 영구히 세계의 맹주인 대일본인으로 행복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 자손을 위해 스스로 성전의 목숨 건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친절히 설명하여 지도하고 국가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치노미야시(一宮市) 天道町 1정목 43번지 보도원 釣川勝司

협화사업에 관한 감상

이제 황국은 바로 미중유의 위기에 직면하여 1억민의 시련의 때가 도래했다. 지금内外 1억 동포는 대군 아래 일치협력 익찬의 정성을 다하고 난관을 극복하여 세계의 맹주로서 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세계에 황도를 선양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때이다. 현재는 안으로 고도국방과 국내 체제의 준비강화는……(판독불가)……의 요청이며 국내체제의 주요한 일환은 외지동포 가운데 2천 5백만 반도 동포의 황민화에 있다고 확신한다. 일한합병 30여 년, 메이지대제의 고마운 일시동인의 성지를 봉대하고 본토에서는 총독부에 진정한 지도와 내지에서는 작년 중앙협화회의 설립을 보고 전국적으로 협화사업은 날로 진전하여, 점차 반도동포의 자각과 목적은 사변 아래 불타오르는 애국심이 되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당국의 지도에 깊이 감사 감격하고 있으며 협화사업 수행의 완벽은 무지한 우리 동포에게 대한 따뜻한 지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포용력과 교육의 철저함이라고 믿는다. 황도정신의 고취도 내지화도 시국 인식에 의한 애국심의 양양도 문화 및 생활향상도 따뜻한 내지동포의 포용과 소학교육부터의 철저한 순일본식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보조교육의 철저는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내지 재주 100만 동포는 이제 황민으로서 대군의 손에 안겨져 편안히 감사를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에서는 풀 수 없는 초조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내지 동포의 잠재적 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우리 동포는 황민의 본의를 여하히 하면 철저히 할 것인지를 진정한 열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진심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내지 동포의 따뜻한 행동을 희망한다. 초비상시의 중대 위기에 서서 황민의 국내체제의 정비를 절규하는 오늘날, 협화사업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세계의 의혹적 관념의 뒤편에서 그 성과는 착착 진전하여 우리는 이 중대한 민족의 통합 융화가 황국 일본의 대이상 실현을 확신하고 보도원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업 수행에 전진한다는 굳은 결의를 갖는다.

오오하마(大濱)지부 보도원 金城乘福

협화사업에 관한 감상

우리 반도동포의 품격 향상과 내선일체 현현을 위해 협화회가 결성되어 역원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날로 그 향상을 보고 있고, 우리는 보도원으로서 감격할 뿐입니다. 또한 오오하마(大濱)지부의 설치 이래 3년의 성장을 지나 오랫동안 절대적인 지도를 얻어 년 1회의 역직원총회 및 강습을 개최하여 유익한 공연, 훈사(訓辭), 교련 등을 받고 완전히 우리의 상상 이상의 효과를 올리고 1,000여 회원이 일치하여 감사와 기쁨에 겨운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라는 세계의 일등국으로 최근 수년 아래 세계정세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동아 평화를 위해 4개년에 걸쳐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이제 전세계 동란의 와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왕의 전쟁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즉 유사 아래의 중대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인 1억의 신민은 일치협력, 소위 1억1심이 되어 이 대 시국을 극복하고 대동아공영권 확립에 매진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통감합니다. 우리는 일본 신민으로서 행복과……(판독불가)……을 느낌과 동시에 눈을 떠서 회원이 모두 황은의 만분지 일이라도 보은 해야 하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자유도 곤란도 절대로 극복, 돌파하여 1억이 전심으로 제국신 민의 의무와 협화회의 보도원으로서 깊이 느낌과 동시에 헌신 노력과 멸사봉공의 성의를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국협화회원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황민화하여 일본정신을 배우도록 합시다. 고도국방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이 사업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있습니다. 한층 분투하여 빨리 내선일 체의 완성에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

보도원 長谷川辰夫

협화사업에 관한 감상

나는 1922년경부터 상애회의 일원으로 내선융화에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너무 효과가 없고 결국 자연에 맡기듯이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느꼈다.

쇼와(昭和)시대가 되어 협화회가 생기고 각 지부에서 혹은 내지 혹은……(판독불가)……혹은 예의작 법 등의 강습회를 열고 유익한 강화를 하는 등 내조일체의 실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내지인 반도인 양쪽이 진실로 서로 이해하고 일심동체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로지 당국의 눈물겨운 노력을 눈앞에서 본다면 다시 내선일체의 길에 일로매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내가 10년 전 마음에서 희망한 것이고……(판독불가)……마음이 공명되었다. 진정한 내선일체는 세계의 곳곳에 황도를 선양하려는 일본의 이상의 일대 초석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바이다.

6

아이치현협화회 木會川吉부 보도원 山田義雄

협화사업에 관한 감상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생각하든 보도원으로서의 이상과 신념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각 역직(役職)으로서의 영예에 만족하여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것만 겨우 하는 것은 보도원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선일체의 열쇠는 우리 반도인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협화사업의 완수 여부는 반도인의 마음가짐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도인의 심리와 성질, 생활상황과 풍습, 상태에 대해 보도원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황민화의 도상에서 유의미한 것에 관해 알았던 때는 마침 지도원으로 의사를 말하고 판단과 지도를 기다리는 식으로 계급적으로 사업 진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원 한 사람 한사람이 일 반회원에 주는 사업모형……(판독불가)……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모범을 보이며 지역적으로 자각시켜 성의를 갖고 여유 있게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회원이 두터운 황은(皇恩)을 빼저리 게 느끼고 일본인으로서의 출생을 받은 기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대군(大君)을 위해 해서라면 언제라도 몸을 바친다는 강고한 신념을 강하게 갖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7

아이지현협화회 御油지부 보도원 豊田學求

협화사업에 관한 감상

협화회가 생긴 당시는 회원을 집합하는 데 아주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내 지도 밑에 있는 회원을 명령적으로 머리부터 누르지 않고, 늘 나보다 인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마음부터 누그러뜨리고 인정을 갖고 지도했다. 회원으로부터는 집합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조선인으로 우월감을 갖고 접하거나 바보 취급을 당하든가 그런 얘기가 어디에 가도 자꾸 듣지만, 말하기보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여 크게 분투했다. 이렇게 하여 황도정신과 예의작법을 배워 내지인과 같이 교제해 나가면 이 같은 얘기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부의 간사와 상임간사 등의 지원을 받아 반도인을 내지화하도록 지도하는 보도원 스스로가 내지화에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지부장 및 간사 분의 지시를 받아 회원에게 대해 협화사업을 하여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일부부터 회원은 모두 기뻐합니다. 정말 무력한 내 힘이 이렇게……(판독불가)……하는가를 생각하면 앞으로 한층 황도의 길을 배워 지도에……(판독불가)……으로서 활동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8

아이치현협화회 □母지부 中西清隆

이와 같은 전시하의 보도원으로서 3년간이나 지났으나 협화사업에 대해 이거다라고 할만한 역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정말 부끄러운 바입니다.……(판독불가)……이후 더욱 시국의 중대성을 통감하고 또 한 황국신민이라는 광영을 감사하며 필설로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디오, 신문 뉴스를 보거나 듣거나 하면 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은 혹서와 혹한도 감내하며 성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황국신민으로서 가려해도 갈 수 없는 것을 통감해 마지않습니다.

현재 내지에서는 식량 부족이라 해도 하루 세 번의 식사를 먹을 수 있지만, 일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은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일본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지 재주 반도인은 특히 계급이 낮기 때문에 내가 보아도 차별하는 내지인이 상당히 보입니다. 반도 동포의 황국신민화에 관해서는 내지인이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내지인이 한 사람의 반도인에게 국어와 일본정신을 가르치고 형제처럼 부부처럼 자매처럼……(판독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협화사업의 목적인 지도를 간원하며 미력이나마 성심성의껏……(판독불가)……하고 내선일체를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도록 진력할 각오입니다.

9

아이치현협회회 半田지부 安岳英夫

나는 비재(非才)의 몸으로 1937년 6월 창립된 아이치현협회회 한다(半田)지부의 보도원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명령 받고 미력하나마 밤낮으로 협화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실로 우리 협회원은 내지 분들과는 언어, 풍속이 다르고 또한 일반적으로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내지 분들로부터는 경원시되기 쉽다.……(판독불가)……과 동시에 멈추지 않았던 덕분에 협회회가 결성되어 당국의 열렬한 지도로 날로 모든 방면에서 내지에……(판독불가)……한 것은 우리들이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의 실정을 보면 시국이 과거에 비해 아주 진보했으나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심지어 협회회의 명예를 해치는 무리들이 가끔 있는 것은 우리 보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태평양의 파고가 높고 우리나라는 사상 미증유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1억 국민은 이제야 말로 진정한 한마음이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에 이르러 협화사업도 드디어 본격적 활동을 요청받고 있다. 우리 보도원의 사명의 중대함을 한층 통감하며 부족한 점을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당국의 지도에 기초하여 우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물심양면으로부터 보도육성을 해야 한다고 통감한다.

즉 경건하게……(판독불가)……일체(一體)의 실을 거두고 지성을 다해 봉공을 하여 일시동인의 성지에 부응하고자 굳은 각오가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출전 : 「愛知縣協和會員補導員の聲を聽く(1~8)」, 『東亞新聞』, 1941년 9월 30일, 10월 1~10일(총9회)〉

3. 동아신문사 사장 임용길의 글

1) 『용사에게 바치는 학동의 문집』 서문

‘하늘에 대신하여 불의를 친다…… 이기지 않고는 살아 돌아가지 않는다……’ 하고 아직 혀도 잘 돌지 않는 어린 소년소녀들이 열을 지어 비 오는 아침에도 바람 부는 저녁에도 무운장구의 깃발을 들고

매일 참배하는 것을 본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소책자,『용사에게 바치는 학동의 문집』을 편집해 볼 생각이 났습니다. 신문잡지 기타 모든 기관을 통해 이번 사변의 진상을 보고 듣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날 아이들의 천진무구한 행위에는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실로 일본의 강함, 용감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성전은 동양 아니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제국이 치르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등 부자유 없이 나날을 보낼 수 있고 매일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폐하의 위광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한 황군 장사(將士)의 절대적인 희생 덕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충심으로부터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친애하는 반도 출신 학동 제군이 이 사변을 충분이 바르게 인식하고 황군에 대해 만강의 경의를 표하며 충분히 감사하는 것을 세간에 널리 알려 우리 반도 동포도 더욱 적성을 다하고 황국을 위해 서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마음에 다짐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동양평화를 위해 이슬이 된 고귀한 영령에 대해 감사감격의 뜻을 표하기 위해 지나사변 1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 글의 공모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표되자 각 학교당국 및 기타 지방의 유지분들이 절대적인 지원을 해 주어 단시일 내에 내 예상 이상의 호성적을 보아 천통이 넘는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별하여 80여 편으로 하고 그것을 본사 고문 기쿠치(菊地) 선생에게 부탁하여 36편을 골라 이 소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특히 내선사업에 가장 이해가 깊은 고위고관 분들에게 청하여 제자(題字)와 서문을 받아 이 문집이 한층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집이 내선협화사업을 위해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의 영광이 없겠습니다. 여러 모로 이 문집을 편집하는데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고 아무쪼록 이 문집을 황국의 가호를 위해 희생된 황군장사의 영령에 바칩니다.

1938년 11월 길일
나고야 동아신문사 편집실에서 임용길 근서

〈출전 : 任龍吉, 「序文」, 『勇士にささぐる学童の文集』, 東亞新聞社, 1938년, 3~4쪽〉

2) 『적성(赤誠)의 대륙』에 붙여

동아의 천지에 여명이 찾아 왔다. 모든 것이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여 온 것은 무엇보다 지금부터 13년 전의 만주사변 이후의 것이다. 이 만주사변이야말로 과거 오랜 세월동안 극심한 폭악을 휘두르던 영미 즉 반(反)추축측의 나라의 죄악을 천하에 폭로하는 큰 폭탄이었다. 그 후 지나사변이 되고 나아가 대동아전쟁으로 전전하여 우리 일본의 위력은 점점 양양되고 동아 10억의 사람도 오랜 미몽에서 깨어나 대일본을 핵심으로 쇼와유신의 대업을 협찬하게 되었다.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기본은 우선 대륙의 안정이어야 한다. 만주의 건국을 보고 중화민국의 간생을 보고 비로소 대동아의 신질서도 그 단서가 열린 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이 대륙의 건설에 빨리 많은 희생을 치었다. 대륙으로 나아가 여름은 찌는 듯한 폭서와 싸우고 겨울은 지독한 혹한을 감내하며 대륙의 건설을 위해 미영의 앞잡이가 되어 반항을 하는 장개석 일파 진영의 퇴치에 여념이 없

던 황군 장병의 노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성대(聖代)에 생을 맞이하여 황민으로서의 감격에 가슴이 벅차다. 이 애국의 열정은 나로 하여금 1회, 2회, 3회, 4회로 대륙 쪽으로 황군위문의 여행을 계속하게 한다. 제1회 제2회의 위문여행기를 ‘대동아건설의 태동’으로 제목을 붙여 소책자를 인쇄했다. 그리고 많은 내선관계 및 협화사업관계 분들로부터 제자 또는 서문을 받았다.

이번에 다시 제3회 제4회의 위문기를 이 『적성의 대륙』에 수록하기로 했다. 제4회의 위문은 이미 대동아성전이 발발하고 대륙에 있어서 적성의 미영 무리의 충퇴각 후였다. 언제까지나 미영은 세계의 강한 자라고 맹신한 지나 일부 사람들도 대동아성전 발발후의 실정을 보기에 이르러 새삼 일본의 위대함을 알고 일본의 정의를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왕정군으로 복귀하고 우리 군문에 항복해 오는 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륙에 있어서 조선 출신 사람들이 현지의 내지인과 일심동체가 되어 황국신민으로서 황군에 협력하고 대군으로의 귀일을 염원하여 진충보국의 적성에 불타는 것은 물론 민주의 친구들, 지나인 등도 일본 편으로 함께 모두 대동아건설에 정신하고 있다. 이날 말, 화의 사람들의 혼신적 노력은 대륙에서 보는 것은 진정 마음 든든한 것이고 대륙을 활보하여 비로소 일본인으로서의 광영을 속속들이 음미한 것이다. 이 소책자를 『적성의 대륙』으로 못 박은 것도 즉 대륙이 모두 일어나 대군에게로 충성을 서약하는 실정을 알기 때문이다. 명치유신 아래의 성업이 오늘 결실하여 아세아는 대일본을 중심으로 총궐기하여 미영의 격침에 몸 바치고 있는 것이다. 금년 중에는 미얀마, 필리핀도 독립한다고 들었다. 인도도 가까운 장래에 완전 독립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세아는 맹주 일본의 힘으로 각각의 자주독립이 이루어지고 인간으로서의 본래의 천부 자유를 획득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동아의 건설도 이 기초는 역시 대륙의 개생이다. 대륙 없이 동아는 없다. 나는 앞으로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대륙을 여러 차례 돌며 대륙 사람들의 활약을 총후의 동포에게 보고하고 우리의 국내의 결전태세를 대륙에서 봉공중인 형제에 전하는 성스러운 역할을 다할 것을 이에 맹세해 마지않는다.

1943년 7월 7일 지나사변 6주년을 맞아 임용길

〈출전 : 任龍吉, 「大陸の赤誠」に寄す, 『赤誠の大陸』, 東亞新聞社, 1943년, 5~7쪽〉

3) 재지(在支)반도인은 모두 훌륭한 황민

중지의 반도 동포를 방문하기 위해 실로 분주했습니다. 각 방면에 걸쳐 각 계급의 사람들과 접했으므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았고 또한 배웠습니다. 중지 방면으로 건너 간 사람들은 대체로 활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지방에 익숙해진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소위 대륙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도 중지에 가서 1주일 이상 있으면 자연히 침착해지고 매일 1건이나 3건의 용건을 끝내고 편안히 지냅니다. 내지에서는 하루에 1건이나 2건의 일을 하고는 그 하루는 놀았다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중지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체로 오전 중에 일을 끝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침 10시 넘어서 일어나 12시경이 되면 중식을 들어야 하고 결국 사람을 만나려면 오후 2시부터가 됩니다. 오후 2시부터라면 8시까지 보아도 5, 6시간밖에 없습

니다. 8시가 넘으면 밤이니까 이 또한 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에 두 명이나 세 명을 만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스스로 ‘만만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동안 중지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동포 여러분을 만난 감상을 정리해서 좀 써보고 싶습니다. 이 사변까지는 중지 특히 상해를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조선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경제적으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 또 당국으로서도 정치적 불평분자의 단속에만 전념하니까 생활을 지도해 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변이 되자 전적으로 재주조선인은 선량한 황국신민이 되고 성전의 목적을 이해하고 황군에게 협력하게 되었으므로 하등 사상적으로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고 당국도 이제부터 산업 방면으로의 지도를 하게 되어 오늘날에는 일류 사업가가 속출하고 무역업, 운수업 기타 백화점 등 상당히 큰 것도 생겨서 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는 조선인 자신은 물론 국가로서도 아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를 방문해도 모두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중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대다수는 범폐소유자입니다. 그것은 지나인이나 서양인 등을 상대로 상업을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범폐가 최근 장정권의 몰락과 함께 뚝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범폐 10원에 일본 돈이 4원 20전 정도입니다. 즉 반액 이하입니다. 오늘까지 10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4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 때문에 중지에서 반도인의 경제는 최근 1개월간 크게 변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은 물가가 올라 일본물가도 대체로 3배나 됩니다. 자산 가치는 2분의 1로 떨어지고 물건 가격은 3배가 되었으므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만약 사변 전이었다면 모두 거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다행히 모두 상당한 금을 저축했기 때문이 이 정도의 변동에는 생활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 동포도 범폐는 버리고 일본의 엔 단위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곤란한 시대가 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누구와 만나도 이구동성으로 내지에서 반도 동포의 생활상태가 어떻고 내지의 총후의 상황이 어떤지 묻습니다. 나는 나대로 협화사업의 현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우리 신문에 대한 지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실로 기쁜 일입니다. 몸은 내지 외지 하는 식으로 갈려 있어도 황민으로서의 끈은 동일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5월 7일 밤에 씀)

〈출전 : 任龍吉, 「在支半島民は総て立派な皇民」, 『赤誠の大陸』, 東亞新聞社, 1943년, 28~30쪽〉

4) 봉축의 글

조국(肇國)의 성지(聖地) 야마토(大和)의 가시하라(櫻原)에서 신무(神武)천황이 즉위하여 건국 일본의 여명이 차츰 밝아지고 이제 유원항구한 2천6백 년, 우리나라를 조국 아래 위로 만세일계의 성천자(聖天子)를 받들고 마치 태양과 같은 광대무변의 인애(仁愛)로 창생을 화육해 수시고 만민 역시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황운을 부익하여 일군만민 충효의 세계에 유례 없는 국체의 정화를 발휘하여 유사 아래 기다한 시련을 넘어 국운은 용창일로이며 국위는 널리 팔굉(八絃)을 광피(光彼)하고 이제 요운(妖雲)이

어지업고 흑풍이 부어오는 국제 마당에 팔굉일우(八絃一宇)의 대이상하에 단호히 흥아성업 완성을 위해 힘있는 거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오로지 광고(曠古)의 성전하에 광휘 있는 기원 2천7백년을 맞이하여 절실히 성수(聖壽)의 만세를 기도하며 유구한 조국의 대이상에 비추어 더욱 국민정신을 양양하고 견인지구 국가총력의 충실발휘에 힘쓰며 내선일체의 실을 견고히 하여 신동아건설의 성업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삼가 맹세하며 봉축사로 하고자 합니다.

1940년 2월 13일
동아신문사 사장 임용길

〈출전 : 任龍吉, 「奉祝之辭」, 『東亞新聞』, 1940년 2월 13일〉

5) 황군의 무운(武運)이 장구하길 바람

삼도약진(三度躍進)의 문을 나서며,
본지가 내지재주 반도동포 100만의 여망을 받들어 일간 단행을 한 것이 작년 1940년 8월 8일이었다.
말하자면 이번 사변의 최고조의 시대로 국내체제가 시시각각 강화되고 자유주의적 경제기구로부터 통제경제의 전환기이기도 했다.

그런 비교적 곤란한 조건 속에서 주간에서 일간으로 범규적 비약이 일어나 소형주간지가 대형일간지로 사용지(使用紙)통제가 한창인 가운데 인가 획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업계의 식사를 놀라게 했을 것이다.

‘천단(千檀)은 잎사귀 두 잎보다 향기롭다’는 속담처럼 이미 약진의 오늘이 있음을 탄생과 함께 신은 굳게 약속해 주었다고 깊은 느낀다.

성상(星霜)이 이제 1년, 9월 하순 우리는 드디어 전통 20년의 역사를 언론계에 자랑하는 일간 나고야일보를 병탄, 일체의 업무를 병합하고 이에 신활자와 함께 15단 인쇄를 단행하여 본래의 사명을 다한다.

‘일시동일’의 성지를 받들어 국가의 최대국책의 하나였던 소화사변에 익찬하고 안으로 진정한 일체를 향해 견실한 거보를 내딛으며 세계대세의 동방 기구이고자 한다.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에 대해 과감한 정의의 논진을 펼치고 그 일익을 담당한다.

이 본지가 진행하는 목적을 양해하시고 제현으로부터 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간청하며 제3차의 지약에 대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1941년 10월 1일 사장 임용길

〈출전 : 任龍吉, 「祈皇軍武運長久」, 『東亞新聞』, 1940년 10월 2일〉

6) 야마자키(山崎) 선생에게 반도사정을 듣는 모임

고베권업회관에서 성대 종료

10월 1일부터 본지는 15단 인쇄를 단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여 10월 1일 밤은 전사원이 거의 철야했다. 10월 2일 아침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베로 향한 것이 오전 10시였다. 관급(關急)으로 타고 가서 피로가 느껴졌지만 출면서 오사카……(판독불가)……에 도착하여 □□으로 갈아타고 삼궁(三宮)에 2시 반경에 도착했다. 신속히 고베……(판독불가)……영업소로 가니……(판독불가)……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곧장 회장인……(판독불가)……공원의 권업회관에 가서 이케우에(池上) 편집자를 데리고, 4시 13분에 도착한 야마자키 선생을 마중했다. 선생은 변함없이 건강하고 야마자키 비서와 함께 하차했다. 삼궁에서 곧바로 회관에 갔다. 고베는……(판독불가)……항뿐이고 자동차를 잡을 수 있다. 권업회관에는 귀빈실에서 환대해 주었다. 4시 반부터 내빈은 촉촉 도착했다. 오늘의 내빈 중에는 고베 해군 감독장, 해군소장……(판독불가)……각하 등 30여 명, 현 쪽에서도……(판독불가)……내선(內鮮)계장의 모습도 보였고 색채를 이루어 반도출신동지도 20명 정도 왔고 고베에서 동아신문 최초의 개최인만큼 다방면의 사람들의 얼굴이 모여 마음이 든든했다. 5시 반에 개회, 오늘은 동아신문의 이야기도 듣는 것이 모두의 희망이었으므로 나는 약 20분간 야마자키선생의 소개와 본사의 사명에 관해 아주 간략하게 말을 했다. 식사를 하고 야마자키선생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야마자키 선생은 오늘은 특히 옛 친구인 오쿠무라(奥村) 육군소장과 만나 특히 기뻐했고 이야기도 2시간에 걸쳐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조선문제를 거의 얘기해 주었다.

특히 오늘 밤은 고베이므로 동아신문에 관해 선생이 인사말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칭찬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비로소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 선생의 말씀은 약 2시간 몇십 분이었지만 그 시간동안 몰두해서 들었다. 50이 넘은 사람이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선생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했나는 보여줌과 동시에 오늘날 내지의 군, 무(武), 관(官)의 유지가 얼마나 조선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고베에서 본지의……(판독불가)…… 특히 또한 협화사업의 발전도 이 야마자키선생의 말씀을 듣는 회를 개최한 것에 의해 더욱 고조될 것을 확신하게 되어 기뻤다. 모음을 종료하고 숙소인 후지호텔로 돌아간 것은 9시 반이었다.

10월 2일 밤 6시
후지호텔에서 임용길

〈출전 : 任龍吉, 「山崎先生の半島事情聴く會」, 『東亞新聞』, 1941년 10월 5일〉

4. 『동아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

1) 반도지원병 최초의 전사(사설)

성전 2주년의 기념일을 앞두고 6월 22일 북지전선에서 용전분투중이던 우리 친애하는 반도 출신 육군지원병 조선 충북 옥천군 서면(西面) 하동리(下東里) 출신 이천천(李千天) 씨의 영식 이인석(李仁錫) 군은 명예로운 일등병의 몸으로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며 명예로운 전사를 했다. 작년 반도에서 지원 병제도가 시행되고 제1회의 지원병으로 입영 올봄 명예로운 출정을 한 제국 군인이다. 이군 1개의 죽음은 2천 3백만 반도동포의 얼굴을 잘 세워주었다. 이로써 우리 반도인도 국가에 충성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진실로 신동아건설로 한 역원이 된 것이다. 이군도 출정한 이상 신명을 임금에 바쳤고 생활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가족도 자식을 폐하에게 바친 이상 감히 재회를 바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으로서는 아버지이고 형제로서 꼭 유감인 것은 분명하나 폐하에게 바친 훌륭한 몸이다. 생각이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오늘 이군이 반도 출신 군인 최초의 명예의 전사자로서 동경야스쿠니신사에 많은 영령과 함께 합사되었다고 생각하면 이군 일가의 명예일 뿐 아니라 실로 2천 3백만 반도동포의 광영이다. 이에 깊이 이군의 영령에 대해 삼가 감사의 의를 표시함과 동시에 반도 대중의 이름에서 이군 영령을 애도하는 바이다.

〈출전 : 「半島志願兵最初の戰死」, 『東亞新聞』, 1939년 7월 15일〉

2) 권태용, 무사시노(武藏野)의 고려촌과 내선일체(기사)

척무성 촉탁 권태용(權泰用)

물론 이는 미나미(南) 총독의 조선통치정신의 근간이지만 내선간의 역사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과 같이 철저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일한합방 당시에 메이지천황의 조칙 및 그 후의 다이쇼천황의 조칙에 기인하는 것이고 원래 내선일체는 단지 형식적이지 않고 옛날부터 내선 역사가 결부되어 있는 내선생명공동체라는 점에서 보면 실로 신무조국의 대이상에 기초한 자연적 평화에 기초를 두는 팔평일우의 발현이며, 동조동근의 특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반도가 일본의 대륙진출상 경제상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또한 2천 3백만의 반도 신민이 금후 일본의 국가발전상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가는 지금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다. 일본이 현재 총력을 기울여 신동아건설 즉 동양인의 동양을 재건설하고 나아가 팔평일우 조국(肇國) 이래의 대이상으로 향해 세계적 비약으로 매진하는 현재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비상한 때에 우리 국민의 사명의 일부로서 서로 내선일체에 가장 현실적 유효하고 긴요한 지리적, 역사적 사실의 자료를 풍부히 조사하

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옛날로 올라가 서로 선조의 심혈을 통한 윤리관을 내선 양 민족에게 충분히 체득하게 하는 것이 정신적 내선일체의 완성을 얻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견지에서 전 내지를 통해 유일한 동아신문의 언론기관은 우리 내지재주 백만 동포의 생명기관이라고도 믿는다. 따라서 이 귀중한 우리의 동아신문사는 종래 다른 것과 같이 유명무실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 신문은 그 명칭과 같이 모든 계급을 통한 공평긴요한 사회의 지도기관이다. 이 의미에서 나는 광휘 있는 황기(皇紀) 2천 6백년의 성춘(聖春)을 맞아 우선 내선일체 즉 반도신민을 황화(皇化)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하고 내선간의 역사적 관계를 조금씩 조사하고 그 일부로서 수도 동경과 가장 가까운 무장고려촌(武藏高麗村)의 유래에 관해 파편적이나마 조사하기로 하자.

원래 무장국의 고려군(지금의 사이타마(埼玉)현 入間郡) 및 신라군, 가이(甲斐)의 거마군(車摩) 군, 셋츠(攝津)의 백제군과 같은 전 내지의 여러 조선반도 고대국명을 갖고 군읍의 이름, 산천 이름, 하라노(原野)의 이름을 이루는 것은 극히 많으며 이들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과 장래에 내선일체를 완성시키는 데 내선 양 민족으로 하여금 상호 조상의 혈통을 통한 윤리관에 대한 일종의 사모 갑회의 념을 불러일으키는 유일무이한 좋은 자료이며, 또한 가장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고려군의 유래는 어떠한가. 멀리 □□ 2년부터 1천 2백년을 경과하여 1896년에 이르러 지금의 사이타마현 입간군에 병합되어 지금은 그 군명으로서의 고려는 소멸되었으나 고려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 및 산천명이 현존하는 곳은 많이 존재한다.

즉 현재도 가와코시(川越), 반능(飯能) 방면에는 고려촌이 있고 고려본향이 있고 고려천촌이 있고 고려왕의 묘가 있고 고려신사가 있고, 고려산성천원(山聖天院)이 있어 모두 옛날 고려군의 사적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고려신사는 최근에 출세명신(出世明神)으로 이름 높고 내외 제명사의 참배가 아주 증가하고 있다. 한두 개 예를 들면 고(故) 조중옹 자작이 1887년경 내지에 망명했을 때 처음 이 고려신사를 참배하고 1893년 조선에 가서 바로 한국정부의 농상공부대신으로 출세했고, 하마구치 유코(濱口雄幸),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등 양씨가 참배하고 총리대신,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백작과 고(故) 마쓰다 겐지(松田源治) 씨가 참배하고 척무대신이 되었고 미즈노 렌타로(水野鈷太郎) 씨가 내무대신,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씨가 문부대신이 되는 등 다수의 내외 명사가 훌륭하게 출세했으므로 이제 세인은 출세명신이라고 한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참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출세했기 때문이다.

〈출전 : 權泰用, 「武藏野の高麗村と内鮮一體(2)」, 『東亞新聞』, 1940년 1월 6일〉

3) 반도인과 씨 창립에 대한 열의(사설)

2천 3백만 반도 동포가 열망하고 있는 내선일체는 다방면에서부터 현실화되어 지원병 또는 교육제도에 차차 그 효과를 올리고 있는데 더욱이 지난 기원절의 가절을 맞이하여 실시된 씨 창설에 관해 이제 전 반도에서 내가 먼저 하고 수속을 지원하고 각 면, 읍, 부의 호적계는 밤을 낮으로 삼아 씨 창설 접수

에 다망한 상태이다. 전차 안에서도 바에서도 일찌감치 세 명이 모이면 씨 창설에 관한 얘기로 꽂을 피우고 있다. 김은 가네야마(金山)로 한다든가 이(李)는 기노시타(木下), 박은 무엇으로 할까 하는 등 뭔가 영구히 사용해도 느낌이 좋은 씨를 얻고자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어느 성씨 등은 전 반도에 격을 내어 김씨 성이 똑같이 같은 씨를 사용하고자 하기도 하고 유사 아래 일찍이 없는 다채로운 뉴스를 전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역사는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고인은 잘 표현했다.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대사업은 2천 3백만 반도동포로 하여금 팔굉일우의 일본 제국 조국(肇國)의 정신을 깨달은 것이다.

이 반도에서 씨의 창립이라는 획기적 대사업은 천의(天意)가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천의에서 나온 것이며 인업(人業)이 아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씨로 하며 재래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대단한 일이다. 구구한 습관을 바꿈에도 이론이 백출하는 세상에서 일족의 성을 변경한다는 것은 크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음을 먹고 착착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천의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씨 창설이 가능하고 호적이 내지로 자유롭게 옮겨지게 되면 내선일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선이라는 문자는 불필요해지고 오늘날의 큐슈, 혼슈 혹은 시코쿠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로소 내선 양 민족은 완전히 일체가 되고 대일본의 제국은 신동아건설의 성업이 성취되고 황국 조국(肇國)의 대이상인 팔굉일우는 완성되는 것이다. 내지 재주의 반도동포도 하루라도 빨리 반도 내의 동포에게지지 않도록 씨 창설 수속을 완료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일단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일시의 흥분으로 기분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씨를 생각하여 후일에 후회가 있다든지 식자로부터 웃음을 사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철두철미 후세의 자손을 위해 도움이 되는 씨의 창설을 생각했으면 한다.

〈출전 : 「半島人と氏創立への熱」, 『東亞新聞』, 1940년 2월 24일〉

4) 고권삼, 왕도철학과 황도철학(1~5)

1.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건설운동이 동방 도의문화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동방전통문화의 기초가 되는 것은 즉 동양철학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동양철학이 인류문화의 진보 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은 서양인들도 인정하는 바이며 ‘빛은 동방에 있다’는 것도 이를 표현한 말이다. 서양철학이 지적 방면에서 꽂을 피우고 근대물질문명의 기초를 만든 반면 동양철학은 의적(意的) 방면에서 □□를 보여 정신문화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특질 있는 동아문명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 병행함으로써 진실로 인류 행복을 위한 문화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동양철학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 그 하나는 황도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왕도철학이다. 전자는 일본철학

이고 후자는 지나철학이다. 이 양자의 상위점에 관해 『대동아민족의 길』의 저자 가메이 간이치로(龜井 貴一郎) 씨는 ‘가장 기초적인 점에서 양자에는 명확한 상위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황도가 만세일계 대양무궁(大讓無窮) 보편적 진리의 현현인 천황에게 귀일하는 실천철학인 데 반해 왕도는 선양방벌(禪讓放伐)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철학체계라는 점, 즉 그 상위점이고 이 점이야말로 분명히 일지(日支)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로 중시해야 한다. 일본이 만세일계의 천황 아래서 생성발전의 한길을 걸은 것도 지나가 왕후장상 등의 왕도사상 때문에 역성혁명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오늘에 이른 것도 궁극적으로 양자 철학의 상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로 황도와 왕도를 구별하는 것은 양자의 상위점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성격의 본격적 상위점은 무엇인가. 나는 일본 민족이 그 견학(堅確)한 민족의지력(民族意志力)으로 생성발전, 만유화육의 역사철학으로 황도를 완성한 사실과 왕도사상이라는 것이 지나민족의 민족의지력의 종합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 점에 양자의 차이를 찾는다. 즉 이를 환연하면 황도는 무상 절대의 지도자를 모시는 실천철학이고 일군만민의 전체주의이지만 왕도는 일원화되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자연철학’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는 상위점의 본질을 발견한 것으로 경복(敬服)할 가치가 있다. 일본의 군인이 죽음에 임하여 천황폐하만세를 외치고 환희 가운데 숨을 거두는 것은 그 생명을 천황폐하에게 귀일시켜 자기의 생명으로 천황폐하를 통해 영원히 사는 도덕적 신앙에서 나온다.

2.

어느 외국인이 ‘중국인은 마치 훌날리는 모래 같은 존재이다. 그 요인은 일반인민에게 종교주의와 가족주의가 있을 뿐 국가주의 또는 국족(國族)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가족을 종족으로 대하는 단결력이 아주 강대하다. 때로 가족 및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 일신을 희생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희생적 정신이 결여되어 중국인의 단결력은 종족에 서 있고 국족에까지 확대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일본의 황도철학이 민족의지력을 종합 통일시킨 데 반해 지나의 왕도철학은 이렇게 민족의지력의 종합통일을 저해한 점에 양자의 큰 상위점이 있다. 지나는 왕도철학으로 정체를 초래하고 그에 대신한 것이 손문(孫文)의 삼민주의이다. 손문은 이 삼민주의로 지나의 민족의지력을 통일하려 했다. 대계도(戴季陶) 씨가 말하듯이 ‘삼민주의는 실제의 필요에 따라 창작된 것’인데 사실 삼민주의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연한 계통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임계?(林桂?) 씨도 손문이 삶의 목표를 정치혁명에 바치고 있던 결과 사상, 주장을 구체적으로 계통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손문이 저술자로 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철학적 기초를 부여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사회학적, 국가학적인 주석을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손문의 모든 연설, 모든 문장을 통해 늘 일관한 사상, 주의주장을 찾아내는 것이 귀납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중심사상, 즉 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보는 바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모든 평등의 요소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평등, 박애주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에 있다고 한다. 민족주의에 중점을 두는 손문 저술가들은 ‘아 중국은 개국 이래 중국인

으로 중국을 통치했다. 이족(異族)이 패권을 잡기도 했으나 우리 조종(朝宗)은 늘 이를 구축하고 광복하여 되갚아주었다. 모든 한인(漢人)을 이끌고 군사를 일으켜 호로(胡虜)를 없앴다'고 동맹……(판독불가)……군정부의 선언을 늘 인용한다.

삼민주의의 해석에 관해 손문도 민족주의를 제일로 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도 손문의 민주……(판독불가)……의 주장은 민족주의로 발족하는 것이다. 손문이 혁명을 결의한 것은 지나전쟁이 일어난 1885년이라고 하는데 지나군이 불국에 철저히 타격을 주고 이를 양산(涼山)에서 □내로 퇴각시키는 전황이었으나 강화조약에서 지나정부가 불국의 안남보호권을 승인하고 불국으로 하여금 동경을 자기 세력으로 포함시키려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지나정부의 부패를 국민의 불일치와 열국(列國)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하여 여기서 손문 등은 혁명의……(판독불가)……일어선 것이다.

3.

손문은 '중국을 가르치는 길은 첫째로 민족의 단결을 꾀하는 것이다. 민족의 단결은 민족……(판독불가)……으로 이는 국족주의라고도 칭한다'고 민족주의를 강조했다.

'중국민족의 인구는……(판독불가)……4억 명 정도이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몽고족 수백만,……(판독불가)……인 백여만, 회교 투르크인 백 수십 만 등이고 외래 민족의 총수는 1천만 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다수에 관해 4억의 중국인이라면 거의 한인이고 혈통이 같고 문자가 같고 종교를 같이 하며 습관을 같이 하는 완전한 한 민족이다'는 견해로 손문은 1민족 1국가의 민족국가를 주장하고 4억만 명의 견고한 결합이라고 했다. 손문은 왕도철학의 결함을 삼민주의의 민족주의로 보충하려했다. 그러나 삼민주의는 오늘의 지나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동안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단 지나민족이 해방된 경우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진정한 민족정신, 혹은 진정한 민족 생명은 황도정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다.

손문이 그 삼민주의로 왕도의 결점을 보완하려 한 그 노력이 컸음은 인정해야 하지만 나는 왕도철학으로부터 전진, 그것으로 황도철학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조선은 1910년 8월 19일 일본과 병합했다.

조선인 병합되기까지는 지나 왕도철학의 정치사상의 그림자를 받아서 민족의지력이 귀일하는 바가 없이 어느 시대에도 그 통일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이조시대에 이르러 심했다. 이조의 태조 이성계가 고려조를 무너뜨리고 왕위에 오른 때에 이미 민심이 귀일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상당히 어지러웠던 것이다. 그것이 이조 중엽이 되어 제10대 왕, 연산군이 즉위하고 15대 왕, 폭군 광해군의 추방사건 등으로 다시 조선민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심각했다. 또한 이조의 중엽 선조왕 시대부터 정당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동인, 서인, 혹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으로 상호 대립하여 상쟁만 하고 국사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국민정신이 끝없이 퇴폐했다.

1910년 일한병합은 했지만 최근까지 진정으로 정신적 결합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조선의 민중이 일본의 황도철학의 진리를 알 수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지의 식자들도 이를 알려고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데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4.

그러나 만주사변 후 특히 금차(今次)의 지나사변 발발 이후 내지의 식자 및 군관(軍官) 방면의 노력으로 이제 조선민중도 황도철학의 진리를 파악하고 황도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애국……(판독불가)……운동이 전개되었다.

경성일보 사장 미타라이 다츠오(御手洗辰雄) 씨의 저서 『시국과 조선』 중에 이제 명실공히 일본제국의 일부로서 그……(판독불가)……을 함께 하는 시기에 이르렀으나 이번……(판독불가)……은 조선동포에게……(판독불가)……적 각성과 신념을 강화하는 최상의 자극제가 되고 사변을 하나의 전기로 삼아 조선의 애국은 아연히 비등했다. 총독부 당국의 지도와 맞아떨어져 여기서 고금 미증유의 열광적 애국의 대선풍시대가 도래했다. 만주사변 당시까지의 조선민중은 아직 충분히 황화(皇化)를 입지 못하고 있었다. 상당한 유력자라 해도 아직 남몰래 부정적인 기분을 펼치지 못하고……(판독불가)……민족적……(판독불가)……물론 불충분함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사변에 의해 동아의……(판독불가)…… 일약 특히 조선민중들은 정신적으로도 실로 대변화가 일어났다.

재만조선동포는 원래부터 국경지방의 주민은 끊임없는 지나족의 폭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만주국의 출현에 의해 이들의 폭압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일본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와 광영을 향유하게 되었다. 동시에 일대 발전 비약의 기운에 혜택을 받은 십수세기에 걸친 질식적인 피압박생활로부터 세계의 대국민으로서 동아의 천지에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큰 자신과 함께 일본국민이라는……(판독불가)……마음에서……(판독불가)……충심으로부터……(판독불가)……시작했다. 이 자각 위에서……(판독불가)……함과 동시에 조선민중은 돌연한 변영과 발전을 낳고 황화는 13도 산하에 편조(遍照)해 갔다.

이때에 이르러 지나사변이 발발했다. 이미 일본 황민이라는 자각과 자신을 감득하고 있던 이천만 민중은 이에 일제히 그 애국심이 점화되었다. 특히 사변 돌발 직후 재선황군부대가 맨 앞에서 행동을 개시하자 민중의 애국열은 동부……(판독불가)……큰 불이 되어 타올라 전 동포가 모두 내지에서도 거국 일치의 대운동을 일으켰다. 우선 내선일체의 통치 이상을 실현한 것이다.

그들은 총후에서 국민적 의무를 앞장서서 응하는 것은 물론 지원병을 청원하고 그 중에는 혈서를 써서 제일선의 종군을 나가는 열혈아도 나타났고 바로 애국심 격발시대라고 할 만한 상태가 되었다. 일청 전쟁, 일로전쟁 당시의 일본 내지의 열광을 방불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조선의 작금의 군국풍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조선인의 사상적 변천과 애국운동의 큰 길을 만들어낸 것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5.

실로 조선동포의 애국운동은 역사 아래의 열광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배일(排日)의 거두로 지목되던 윤치호 씨를 비롯하여 신흥우, 최린, 이광수, 장덕수씨 등 여

러 명사가 임전보국단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애국운동에 솔선하여 나서는 것은 또한 특별할만한 것이다.

이들은 반도 동포의 애국심이 이제 완전히 성숙한 증좌이다.

그것은 그들이 황도철학의 진리를 파악하고 거기서 신념을 얻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호 이광수 씨는……“아시아를 영국 기타의 식민지의 지옥에서 해방하여 일우(一宇)의 황도 문화……(관독불가)……행복과 번영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것은 사실이다. 영국은 늘 세계에서 가장 부국이었던 인도를 2세기 동안 통치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도 모두 영국의 인도통치와 완전히 동일한 책략으로 그들 식민지의 토지를 우유 이상으로 쥐어짜기 위해 그 소의 존립만 허용할 뿐 주민의 문화 번영은 염두에 없었다. 이것이 과거 프랑스의 대죄이다. 공영권은 영국, 프랑스의 정책과는 정반대이다. 각 민족으로 하여금 각각 그 장에서 공존공영해 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탐욕이 지배하고 있던 지구상에 황도낙토를 건설하려는 신성한 사업이다. 이러한 대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반도 동포로서 무상의 광영이 아닐 수 없다. 이번의 대사변에 크게 공헌하는 바가 없다면 실로 유감스러운 것은 물론 부끄러울 것은 물론, 오늘의 반도 동포는 당연히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성의를 맹세하고 이 난국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이들이 모두 이번 애국운동의 동기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선에서 반도 동포의 애국운동은 형식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황도철학에 기초를 둔 진지하고 영렬한 운동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내선의 1억 국민은 이 황도철학에 기초한 황도낙토를 동아시아에, 아시아에, 지구상에 건설하고자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황도철학사상의 반도동포도 비약적으로 전진하여 황도철학 사상에 실제로 돌아 올 수 있었다. 나아가 다른 동아제민족도 아시아 제민족도 황도철학에 새로운 검토를 요망해 온 것이 아닐까. (끝)

〈출전 : 高權三, 「王道哲學と皇道哲學(1~5)」, 『東亞新聞』, 1941년 10월~9일〉

5) 내지 재주의 반도청년에게 복음(사설)

조선 내에서 지원병에 응하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조되어 올해에는 모집인원의 40배의 대수에 달했고 이에 황국신민으로서의 열의가 명료하게 보이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지에 재주하는 반도출신 청년도 지원병이 되고 싶다는 희망이 늘어나 그 수는 전 청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선발지가 조선 내에 한정되었던 관계상 지망자는 전부 일시 귀선할 수밖에 없었고 모처럼 많은 희생을 내고 일시 귀선을 해도 지원병 채용 수는 제한되었기 때문에 극히 일부 소수밖에 희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과거의 상태였다. 이것을 걱정해 온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각 주요도시의 협회회원 대표는 지원병 선발을 실시하는 곳을 내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올해 봄 이후에 조선총독부에 실현방법을 진정함과 동시에 내각, 육군성에도 10만 명으로부터 받은 연서(連署)를 가지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비장한 청년층의 외침에 응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주무성과도 협

의한 결과, 드디어 내지 재주 응모자를 위해 내년도부터 오사카에서도 선발을 한다고 결정하고 그 공포를 보았던 것이다.

이는 내지 재주의 반도 청년에 대한 일대복음이고 아주 기쁜 일이다. 그동안 침식을 잊고 이 운동에 매진했던 협화회 대표 제씨의 공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잘 양해를 해 준 조선총독부 관계당국에게도 감사하는 바이다. 오늘 내지에는 150만에 가까운 반도출신자가 재주하고 그 청년수도 15, 6만이라는 다수를 헤아리는 상황이다.

이 청년층은 금후 협화회를 중심으로 청년부원으로서 훌륭히 교육을 받아 한사람으로서 병사로서 부끄러운 사람은 없는 상태이다.

이 15, 16만의 수는 매년 증가일로이며 결국 그 수는 놀랄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드디어 오사카에서 제1회의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희망자 수는 상당할 것이며 그 질에서도 보다 좋은 사람이 다수일 것을 단언하고 싶다. 우리 반도출신자는 반도에 재주하느냐 아니냐와 관계 없이 청년들을 모두 병사로 하고 싶다는 것이 오늘의 기대이다.

그러나 시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이지만 하루 빨리 반도 청년에게도 징병제가 시행되도록, 이 기회에 특히 관계당국에 바라고자 한다.

〈출전 : 「内地在住の半島青年に福音」, 『東亞新聞』, 1941년 10월 8일〉

6) 세계재건과 만주사변, 조선출신자 협력의 공(사설)

이제 신흥 만주국은 건국 1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그 국력의 발전상은 실로……(판독불가)……에 이르러 일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하며 일만 일억일심(一億一心)의……(판독불가)……위에 현 양되어 4천 5백만의 5족협화의 꽃은 화려하게 피었다. 이러한……(판독불가)……보게 된 것은 11년 전 9월 18일 유조호(柳條湖)의 일발(一發)은 세계신질서 건설의 낭화(狼火)였다.

당시는 미국, 영국 같은 부류의 나라들이 세계를 자기 것인 양 횡행하면서 구질서 유지를 위해 여념이 없었으나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이에 대항하여 결연히 일어나 그 제1보를 내디딘 것이 이 11년 전의 만주사변이며 우리 대일본제국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명예의 고립을 지키며 9개국조약 군축조약 등에 대해 반격의 길을 취해 왔다. 용감한 일본의 전진은 구주의 독일, 이태리의 용기와 확신을 부여하고 독일과 이태리도 구주신질서 건설에 돌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세력은 날로 땅에 떨어지고 드디어 구주에서도 세계 제2의 전쟁이 발발하고 만주사변은 세계신질서 건설로 가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그 이후 보여준 용기와 함께 공영세계로의 열정은 독일, 이태리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주사변은 지나사변이 되어 지나사변은 세계 제2차 구주전과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대동아공영권 건설 및 세계신질서는 대도(大道)로 결합되기에 이르렀다. 만주사변 아래 조선출신의 사람들이 광영 있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이 성업에 정신(挺身)하는 영예를 갖고 신명을 걸고 싸워 온 것은 세

계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가 봇을 드는 소이이다. 우리 조선 출신 사람들도 앞으로 더욱 자중자애……(판독불가)……하고 조국 일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신세계 재건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만주사변 기념일을 맞이하여 바라는 바이다.

〈출전 : 「世界再建と滿洲事變 朝鮮出身者 協力の功」, 『東亞新聞』, 1942년 9월 19일〉

7) 내지 재주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는 급무(기사)

협화회와의 간담

경상남도에서는 조선사정시찰단원 제1반 일행을 맞이하여 17일 오전 11시부터 철도호텔에서 좌담회를 열고 벽두(劈頭)에 이케(池) 내무부장의 인사에 대해 구마타니(熊谷) 북해도 사회주사의 감사의 말을 하고 이후 간담을 하고나서 0시 반에 산회했는데 다시 도청에서 이케 내무부장, 오야마(大山) 주사, 야스야마(楊山) 속(屬), 야마다(山田) 수상서장(水上署長), 아사카와(浅川) 속 등이 출석한 동석상에서 이케 내무부장의 환영사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조선동포 가운데 이주하는 자는 점차 증가일로에 있고 최근에는 그 수가 50만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산업전사로서 노동계급에 속하고 그 교양을 높이고 황국신민화의 철저를 기하는 것이 당면한 급무이다. 즉 징병제도의 실시와 함께 국어의 보급, 시국 인식의 철저 등 가속적으로 황국신민화를 기하는 조선내의 시책과 보조를 하나로 하고 오히려, 내지 재주의 조선인의 시책이야말로 급무인데, 내지 부현 협화회의 궁극의 목적이 내지 재주 조선 동포의 황국신민화에 있는 만큼 현재의 문제로 일반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때에 조선 사회……(판독불가)……에서는 내지의 현 협화사업 담임직원을 초빙하여 조선 시찰반을 조직시켜 조선사정을 자세히 시찰하게 하고 상호 교류로 내지 재주자의 지도에 힘쓰도록 했다. 내지재주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는 교양의 정도가 낮은 만큼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일부 담임자만의 노력으로 만전을 기할 수는 없지만 조선인 스스로도 반성하고 수양 공부에 힘써 황국신민화의 진정한 성과를 얻어야 한다.

조선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특히 ‘지나사변¹¹⁾’발발 이래 민중의 자각이 현저히 진전되고 대륙과 이어진 병참기지로서 애국의 지극한 감정은 각 계층을 통해 열렬해졌고 국방현금 혹은 군용자재의 현납 등이 엄청난 양에 달한다. 내지 청년과 마찬가지로 제일선에 참가를 희망하고 특별지원병이 되기를 열망하는 자 또는 전사로서 정신(挺身) 보국을 다하려는 사람이 격증하고 있다. 올해 1월 조선에 국민징용령이 처음 이루어져 해군으로 제1회의 징용을 본바, 징용 희망자가 예상 외로 많고 혈서지원을 비롯하여 많은 미담 가화(佳話)가 나왔다. 이는 내선일체의 구현이며 대단히 마음 든든한 일이다. 조선에는 1939년 가을 이후 노무동원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내지에 다수의 노무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동아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도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집단이주 노무자는 총후의 산업전사로서 더욱

11) 중일전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또한 이동 방지의 보호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게 내무부장은 징병제 실시라는 횡기적인 사실에 발맞추어 조선의 시책이 종합, 집중되어가는 데, 내지 재주의 조선인에 대한 시책이 등한해지는 것은 유감이다. 그들은 산업전사로서 대동아 전 하의 커다란 일의를 담당하고 있으나……(판독불가)……해야 한다.

내지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조선사정시찰단원을 대표하여 북해도 사회사업주사 구마타니 쥬로우(熊谷壽郎) 씨는 말한다.

황국신민화의 철저에 관해서는 협회회원으로서 조선 내의 시책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있지만 내지인의 무이해와 조선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유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내지 재주 조선인도 또한……(판독불가)……이라는 관념으로 회사, 공장의 수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 있다. 모처럼 일을 잘 하고 있는 때에 향리에서 오는 통신에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되는 사정을 듣기 때문에 갑자기 능률이 저하되기도 하고 귀향하는 사람까지 나오기도 한다. 응소병사를 격려하는 것처럼 가족은 일절 마음을 써서 봉공을 잘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최근 각 탄광이 다 노동능률이 현저히 향상되고 저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기쁘기 그지없다. 미즈비시(三菱)탄광의 예인데 1개월 100원의 저금을 하고 2년간 2천 5백 엔을 모아 귀향한 사람도 있었다. 장래는 국어 장려 등 일반복리시설을 속히 실시해야 한다.

〈출전 : 「内地在住朝鮮人 皇國臣民化は急務」, 『東亞新聞』, 1942년 10월 21일〉

8) 혈서로 해군 지원, 반도청년 금광청호(金光清浩) 군(기사)

(시모노세키지사 발) 황국 해군의 혁혁한 전과, 일찍이 본사 동사(東司) 군이 시모노세키에서의 시의회 입후보 연설에서 '진주만을 깊숙이 잠입하여 미국함대를 나뭇잎처럼 부수고 호국의 신이 되었다. 저 특별공격대의 9명의 군신 가운데에는 우리 반도청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의 감격이 어떠할까.' 하고 득의의 열변을 하였다. 청중의 한 사람으로 시모노세키시의 금광청호군이 있었다. 군은 평소 진충보국의 냄에 불타서 고향인 전라북도 이리읍의 초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17세 때 도만을 지원하여, 만주 군에 입대하고 상등병이 되었고 제대한 후에 시모노세키 시내 신정(新町) 4정목 야마모토(山本) 생화(生花)상점에 근무하는 질박하고 모범적인 청년으로 인근의 신망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대동아전 발발과 함께 무적 해군의 대전과에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일념으로 해군 군인에 지원하고자 20일 시모노세키 시에서 병사를 모집에 '진충보국'이라는 늄름한 혈서가 쓰인……(판독불가)……에 '나도 황국의……(판독불가)……천하(天下)에 생을 받은 황국 청년입니다. 반드시 해군에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여 당국을 감격시켰다. 그러나 역시 반도 청년에게는 해군 군인 지원이 되지 않아 눈물을 머금은 금광군은 말하기를 '내 친구 대부분이 육군특별지원병이 되어 뭔가 나만 명하니 지낼 뿐만 아니라 연전연승 황국 해군의 대전과에 참가만 할 수 있다면 하고 해군을 지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에게도 해군 지원 병제의 실현을 희망합니다. 시청 후생과의 시모노세키협회청년단장, 요코타(横田明忠) 군은 말하기를

혈서의 해군지원을 신청한 금광군과 같은 사람이 우리 시모노세키에서 나온 것은 우리 협화청년의 자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모노세키 500의 협화청년단원은 금광군의 마음을 마음으로 새겨 1억 진충보국의 봉공을 맹세해야만 합니다.

〈출전 : 「血書で海軍志願 半島青年金光清浩君」, 『東亞新聞』, 1942년 11월 25일〉

9) 오로지 감격의 극치! 조선징병제 간담회, 오사카부협화회 주최(평론)

□□의 아침,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군관민이 일체가 되어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대동아성전 하에 조선의 젊은이도 제일선으로 응소를 바친다는 것은 실로 감사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병사가 되는 것은 심신이 모두 건전하고 가장 우량한 신민이라는 증거이다. 1억의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군(大君)으로 귀일할 것을 염원하지 않는 자는 전혀 없지만 그 중에 병사가 되어 봉공이 가능한 사람은 실로 선발된 과보자(果報者)이다. 많은 사람 중에서 특히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신, 신체, 품행에서 진정 대중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뿐이라는 점으로 볼 때 그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허용된 조선의 젊은이가 감격이 극에 달하고, 2천 5백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 징병제 시행 준비에 나서, 군관의 지휘 하에 열심인 것이다. 이 가을에 조선총독은 조선육군특별지원병의 검사를 위해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소에 군인을 파견하고 내지 재주의 조선인 지원자의 검사를 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작년부터 그 실시를 보고 올해는 2회째이다. 내지 재주조선 출신의 약 반수가 있는 관서 중심지 오사카에서 이 특별행사가 벌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오사카협화회가 또한 이 정신을 잘 체화하고 우선 전국협화회의 선두에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활약을 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1월 26일 밤 신오사카호텔에서 조선에서 온 지원병검사관 일행 및 군 요로(要路)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루어진 오사카협화회의 간담회는 실로 의미가 깊은 행사이며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 모임에 출석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굳건해졌다. 그 석상에서 조선군참모인 ??(?) 소좌의 상세한 보고 및 일반에 대한 희망은 실로 우리의 폐부를 치르고도 남는 바가 있었고 황국신민으로서 조선출신자로서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다. 황민으로서의 허락을 받은 지 불과 30수년인데 그 동안 전혀 황은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던 조선출신자에게 이렇게도 광대무궁한 은전을 시하한 대군의 일시동인의 성덕을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송구하고 감격할 뿐이다. 우리는 이 징병제가 지선지미한 성과를 거둘 것을 맹서하고, 우리 조선출신자들은 한명의 불복종자도 나오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바이다. 이 징병제 실시야말로 우리가 훌륭한 황국신민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이러한 큰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조선 사람들이 진실로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의 광영을 느끼고 봉공이 가능할 때이다. 우리도 광영 있는 몸이 되지 않았는가. 내지의 형제와 함께 한 몸이 되어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은 우리가 일한합병 당시부터 염원하고 황민으로의 연성에 정신(挺身)했던 것이다. 이 커다란 염원이 30수년이라는 단시일간에 허용되게 된 것은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이 황은에 대한 보답은 단지 대군에 귀일할 것을 맹세하고 직역봉공, 신도 실천을 하는 데 있을 뿐이다. 징병제 간담회에 출석하고 더더욱 협화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실천의 중대성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전 : 「只々感激の極み!朝鮮徵兵制懇談会所感 大阪府協和會主催」, 『東亞新聞』, 1943년 1월 29일〉

10) 협화사업에 활을 당기는 자!(기사)

조선 2천 5백만 동포는 이제 황민의 일원으로서 총을 잡고 전지(戰地)로, 해머를 휘두르며 총후(銃後)의 산업진영에 서서 각각 대동아전쟁 목적 완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호국의 영령이 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사람도 있고 오늘과 같은 혹한에도 총을 들고 전지에서 무훈을 세우는 용사들도 있다. 물론 이들의 위공(偉功)으로……(판독불가)……훈장을 배수한 영예의 사람도 있다. 전지는 전지로서 조선 출신 용사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 총후에는 총후로서 지원병의 혈서지원에 국방 현금에 혹은 전상병 위문에 유가족 원호에 많은 미담이 들려오는 것은 연일의 신문보도가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에 조선의 동포들에 의한……(판독불가)……의 위력은 조선 내지를 막론하고 내지인에게도 뒤지지 않는 바가 있다. 이는 즉 작년에 주창된 조선출신자의 황민화운동의 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방가(邦家)를 위해 경하해 마지않는다. 그런데 조선 2천 5백만 동포는 황민화 철저를 목표로 정부의……(판독불가)……을 체득하고 상하 모두 아름답게 발을 맞추어 전진하는 이 □□에 옆에서 방해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외로 적출하여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히 정부의 방침에 방해도 하지 않고 옆의 도 갖지 않고 교묘히 파문에 떠도는 자가 있다면 또한 징계해야 한다. 말하자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마지 못하는 태도로 임하는 계급이 일부에 잔존하고 있다.

요컨대 있어도 없어도 좋은 계급인데 전시하에서는 이런 태도가 한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독충의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 전시하에서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힘을 다하지 않고 소위 무위도식하는 것은 그들의 소질은 기생충적 존재이고 그의 언동은 독충(毒蟲)적 존재이다. 특히 조선출신자로서 현하 협화 운동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자가 있다면 협화운동이라는 성업(聖業)에 활을 쏘는 자와 마찬가지다.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를 이제 먹는가 먹히는가의 시점에 1억 동포의 우려를 자아내는 자가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감히 일부가……(판독불가)……보이고 그 반성의 날이 가까이 올 것을 기원하며 글을 쓴다.

〈출전 : 「協和事業に弓引く者!」, 『東亞新聞』, 1943년 2월 24일〉

11) 동아신문의 열의(기사)

도쿠다(徳田) 기후시(岐阜市) 병사과장(兵事課長) 열변, 기후지국 주최 유가족 위안의 밤 성회(盛會)

매일 밤 각지에서 폭풍과 같은 절찬리에 강연이 이루어지는 본사의 ‘협화사업익찬 황군감사 유가족 위안의 밤’은 9일 오후 7시부터 기후(岐阜)시공회당에서 본사 기후지국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호화롭고 광대한 공회당도 정각이 되자 이미 다 채워지는 성황이었다.

정각에 본사 모리타(森田) 편집장의 사회 하에 개회가 선포되고 국민의례 뒤에 임(용길) 본사 사장이 등단하여 주최 측의 인사와 함께 협화사업의 진수를 설명하고 많은 감명을 관중에게 주었고 기후시 시청의 도쿠다(徳田) 병사(兵事)과장의 협찬 인사가 있고 연예로 들어가 10시계 성황리에 산회했다. 당일은 내빈으로 기후경찰 오우메(大梅) 내선계, 기후 현병분대 가치 후미오(可知二三夫) 씨, 기후시회의원 이상운(李相雲) 씨 기타 조선명사 다수가 출석하여 본사 측으로부터 임용길 사장, 모리타 편집장, 마쓰하라(松原) 기후지국장이 이날 밤의 성황을 보여주었다. 10일에는 교토시 □□□회관에서 똑같이 개최한다.

〈출전 : 「東亞新聞の熱意」, 『東亞新聞』, 1943년 8월 11일〉

찾아보기

【ㄱ】

가경은(賈景恩) 472
가광청(賈廣清) 476
가기인(賈起仁) 475
가나마츠 소우메이(金松壯明) 481
가네모리 아키오(金森昭雄) 488
가네모토 모토타로우(金本元太郎) 702
가네시로 승복(金城乘福) 990
가노 히로시(鹿野宏) 941
가련필(賈連必) 472
가마타자와 이치로(鎌田澤一郎) 257
가메이 간이치로(亀井貴一郎) 1002
가수병(賈樹屏) 75
가와다 류타(川田隆太) 690
가와카미 가메타로(河上龜太郎) 935
가은태(賈恩泰) 477
가작운(賈作云) 472
가치 후미오(可知二三夫) 1011
가태래(賈太來) 472
가태생(賈泰生) 476
가태창(賈太昌) 472
간도공산당(間島共產黨) 377
간호조선인민회연합회 209
강건원(姜鍵元) 690
강국진(姜國振) 506, 554
강기태(姜琪泰) 434
강대순(姜大順) 544
강도명석(江嶋命石) 756
강동열(姜東烈) 432, 435

강례환(姜禮桓) 729
강로향(姜鷺鄉) 726
강만순(姜萬順) 501
강무석(姜武錫) 492, 554
강문동(康文東) 102
강문봉(姜文奉) 439, 445
강범주(姜範周) 513
강복영(姜福榮) 182
강석석(姜錫碩) 438
강세권(姜世權) 495
강수범(姜洙范) 500
강오범(姜五范) 498
강운종(姜運奉) 721
강웅준(姜雄俊) 720
강일평(江一平) 796, 799
강임순(姜任淳) 444
강재균(姜在均) 507
강재덕(姜在德) 495
강재순(姜在淳) 438
강재호(姜在浩) 428, 430, 434, 480, 551
강전열(姜典烈) 515
강증만(姜曾萬) 474, 476
강증방(姜曾方) 525
강찬국(姜贊國) 532
강창선(姜昌善) 438, 456
강태민(姜泰敏) 438, 445, 456
강태섭(姜太燮) 501
강태섭(姜泰燮) 553
강해원(姜海元) 552

- 강홍석(姜弘錫) 544
 강홍렬(姜興烈) 553
 개전군(耿殿君) 181
 경상북도개척노무자협회 917
 경성방직주식회사 260
 경악정(景乐亭) 183
 계광순(桂光淳) 899
 계길근(季吉根) 766
 계립청년단 749, 756
 계병로(桂炳轄) 430, 437
 계사초(稽查哨) 785
 계인수(桂仁洙) 434
 계춘관(季春官) 61
 계행근(季杏根) 809, 835
 고가 시게토시(古賀重利) 703
 고권삼 1001
 고남극(高南極) 815
 고노 노리오(向野義夫) 917, 941
 고노에(近衛) 246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1000
 고도휘삼(高島輝三) 749
 고명(高明) 106, 76
 고모리야 기이치(小森谷義一) 482, 555
 고봉(高峰) 547
 고봉린(郜鳳麟) 76
 고봉림(考鳳林) 50, 176
 고세성(高世城) 835
 고승옥(高昇郁) 518
 고원훈(高元勳) 731, 734
 고일함(高一涵) 795
 고준산(高俊山) 462
 고타카 도시아키(古高敏昭) 113
 고학수(高學洙) 536
 곡련발(曲連發) 467
 공진항(孔鎮恒) 729, 731
 공탁(孔濯) 722
 공현영(孔宪榮) 176
 곽빈(郭彬) 719
 곽이라(郭爾羅) 57
 곽태순(郭泰順) 509
 곽현순(郭鉉淳) 534
 곽혜침(郭慧琛) 821
 곽후기(郭后旗) 183
 관준정(關俊亭) 102
 광리(光利) 162
 광해군 1003
 교적관(交的寬) 62
 구동욱(具東旭) 430, 436, 487, 552
 구마타니 쥬로우(熊谷壽郎) 1008
 구안무(具安茂) 798
 구중덕(具德德) 537
 국개발(鞠開發) 102
 국민부(國民府) 377
 굴우인(屈友仁) 827
 권광용(權光用) 720
 권상학(權相鶴) 718
 권송극(權宋極) 552
 권재권(權在權) 522
 권준옥(權俊玉) 456
 권태산(權泰山) 391
 권태용(權泰用) 999
 근포(根甫) 793
 금광청호(金光清浩) 1008
 금릉대학(金陵大學) 762
 금천동순(金川東淳) 708
 기노우치 다다오(木內忠雄) 204
 기룡운(奇龍雲) 518
 기치중(祁致中) 178
 吉興 418
 김갑수(金甲洙) 456

- 김강(金剛) 63
 김경구(金京九) 506
 김경락(金京洛) 514
 김경률(金京律) 491, 552
 김경상(金京相) 537
 김경재(金璟載) 290, 690, 716, 727, 751
 김경협(金京峽) 523
 김계룡(金桂龍) 518
 김공문(金公文) 456
 김관일(金官日) 534
 김광(金光) 58, 59
 김광서 451
 김광식(金光植) 439
 김광옥(金光玉) 456
 김교형(金矯衡) 279
 김국용(金國鏞) 553
 김국진(金國鎮) 719
 김권수(金權洙) 719
 김권호(金權浩) 469, 500
 김귀남(金貴南) 535
 김규동(金圭銅) 516
 김금준(金今俊) 503, 552
 김기룡(金紀龍) 506
 김기선(金基善) 464, 465, 466
 김기숙(金奇淑) 721
 김기원(金基元) 524
 김기준(金基濬) 439, 445
 김기진(金基鎮) 719
 김기철(金基哲) 505
 김길룡(金吉龍) 469
 김길순(金吉淳) 553
 김길현(金吉鉉) 718
 김남룡(金南龍) 473, 533
 김남수(金南洙, 金南秀) 506, 553
 김남익(金南益) 488, 552
 김노식(金老植) 445
 김대덕(金大德) 539
 김대식(金大植) 430, 484, 551
 김대우(金大羽) 281
 김덕룡(金德龍) 547
 김도근(金道根) 266, 291
 김동규(金東奎) 490
 김동근(金東瑾) 463, 469, 470, 500
 김동근(金東根) 546
 김동만(金東晚) 690
 김동빈(金東斌) 456
 김동순(金東順) 494
 김동식(金東植) 520
 김동익(金東益) 518
 김동일(金東一) 526
 김동철(金東喆) 266
 김동하(金東河) 438, 444, 455
 김동학(金東鶴) 519
 김동호(金東浩) 462, 463, 466, 493, 505, 552, 553
 김동호(金東昊) 279, 729
 김동훈(金東勳) 445
 김두익(金斗益) 184
 김려(金麗) 469
 김려선(金麗善) 535
 김로담(金魯談) 535
 김록송(金錄松) 546
 김룡남(金龍南) 535
 김룡순(金龍順) 504, 537
 김룡주(金龍周) 520, 553
 김룡현(金龍憲) 486
 김룡호(金龍浩) 465, 527
 김룡호(金龍虎) 551, 552
 김룡환(金龍煥) 499
 김리규(金利奎) 489, 552
 김만규(金滿珪) 511

- 김만금(金萬錦) 506
 김만석(金萬錫) 510
 김만옥(金萬玉) 431, 503
 김만용(金萬用) 492, 552
 김만학(金萬學) 539
 김명송(金明松) 540
 김명한(金明漢) 498
 김명호(金明鎬) 463
 김명호(金明浩) 526
 김묵(金默) 430, 438, 444
 김문극(金文極) 553
 김문선(金文善) 540
 김민규(金敏奎) 438, 444
 김방철(金芳哲) 511
 김백록(金百錄) 502, 554
 김백률(金百律) 516
 김백일(金白一) 428, 429, 430, 434, 438, 459
 김범렬(金範烈) 539
 김범석(金範錫) 510
 김병갑(金秉甲) 306, 729
 김병구(金秉球) 498
 김병남(金炳南) 548
 김병록(金秉祿) 720
 김병수(金炳洙) 720
 김병식(金炳植) 509
 김병우(金炳旭) 538
 김병우(金秉郁) 553
 김병인(金秉仁) 719
 김병진(金炳振) 535
 김병찬(金炳燦) 516
 김병찬(金永燦) 719
 김병호(金炳浩) 504, 510
 김봉남(金鳳男) 510
 김봉남(金奉南) 553
 김봉섭(金峯燮) 204
 김봉암(金鳳岩) 510
 김봉진(金鳳鎮) 498
 김봉찬(金鳳贊) 719
 김봉춘(金鳳春) 539
 김봉학(金鳳學) 538
 김봉형(金鳳炯) 720
 김부관 69
 김사득(金思得) 456
 김산천(金山川) 511, 554
 김삼룡(金三龍) 519
 김삼열(金三悅) 270, 720
 김상근(金尙根) 535
 김상복(金相福) 437
 김상선(金相善) 510
 김상영(金湘榮) 474, 526
 김상태(金相泰) 295
 김생(金生) 296
 김석권(金錫權) 439, 445
 김석범(金錫範) 413, 430, 434, 438, 455, 483, 551
 김석진(金錫鎮) 496
 김선용(金仙龍) 204
 김선희(金善熙) 437
 김성규(金成奎) 526
 김성규(金星奎) 526
 김성룡(金成龍) 523, 537
 김성만(金成萬) 525
 김성태(金成泰) 455
 김성학(金聲鶴) 274
 김성학(金成學) 526
 김성환(金星煥) 493
 김세현(金世鉉) 439, 445
 김송학(金松鶴) 510
 김수로왕(金首露王) 356
 김수열(金秀烈) 491, 552
 김수영(金壽永) 494

- 김수웅(金秀雄) 439
 김수진(金守鎮) 456
 김수혁(金壽赫) 546
 김순구(金荀九) 509, 554
 김순혁(金淳赫) 548
 김승하(金承河) 719
 김시문(金時文) 825
 김신도(金信道) 434
 김안도(金安燾) 436
 김연수(金季洙) 304, 730, 731, 734
 김영배(金永培) 720
 김영삼(金永三) 297
 김영석(金永錫) 466, 491, 552
 김영선(金永先) 524
 김영수(金泳秀) 438
 김영수(金永壽) 496
 김영수(金榮秀) 720
 김영식(金永植) 540
 김영익(金榮翼) 491, 551
 김영조(金永祚) 720
 김영주(金永周) 553
 김영택(金英澤) 194
 김영택(金永澤) 438, 444
 김영택(金永擇) 438, 456
 김옥경(金玉慶) 749
 김용계(金榮桂) 162
 김용국(金龍國) 434, 438
 김용기(金龍紀) 430, 434, 436, 438
 김용술(李容述) 439
 김용우(金容郁) 720
 김용주(金龍周) 430
 김용진(金容鎮) 718
 김용호(金龍虎) 430, 436
 김우룡(金雨龍) 538
 김우식(金禹植) 462, 464, 468, 474, 526
 김원기(金元起) 438, 445
 김원길(金元吉) 539
 김원섭(金元燮) 538
 김원영(金元榮) 546
 김원태(金原泰) 729
 김윤근(金潤根) 439, 445
 김윤선(金允善) 445
 김은수(金銀銖) 439
 김응두(金應斗) 275, 279, 728, 731, 734
 김응조(金應祚) 434
 김응호(金應鎬) 524
 김이열(金以悅) 720
 김이현(金利鉉) 517
 김인경(金仁敬) 816
 김인극(金仁極) 509
 김인배(金仁培) 718
 김인용(金仁鎔) 539
 김인준(金仁俊) 718
 김일규(金逸奎) 509, 554
 김일노(金一怒) 206
 김일룡(金日龍) 521
 김일성(金日成) 58, 178, 180, 192, 460
 김일송(金日松) 506, 552
 김일환(金一煥) 434, 436, 438, 557
 김임성(金壬成, 金任成) 515, 553
 김자균(金子均) 718
 김장섭(金章燮) 497
 김장성(金長星) 718
 김재풍(金在豐) 438, 445
 김재학(金載鶴) 519
 김정렬(金貞烈) 438
 김정염(金正炎) 553
 김정하(金鼎河) 515, 552
 김정학(金正學) 535
 김정호(金正皓) 434, 437

- 김정환(金口桓) 270
 김조안(金朝安) 473
 김종수(金鍾洙) 431, 552
 김종윤(金宗允) 690
 김종철(金鍾哲) 516
 김종택(金鍾澤) 524
 김종훈(金動勳) 439
 김주룡(金周龍) 462, 520
 김주익(金柱益) 507
 김중삼(金仲三) 279
 김중천(金仲天) 540
 김중형(金重衡) 534
 김중환(金仲煥) 439
 김진규(金珍奎, 金振奎) 517, 552
 김진성(金振聲) 464, 469, 474, 534
 김차경(金次經) 439
 김찬규(金燦奎) 459, 471, 480, 551
 김찬태(金贊泰) 719
 김창규(金昌圭) 438
 김창길(金昌吉) 719
 김창남(金昌南) 718
 김창덕(金昌德) 266, 690
 김창락(金昌洛) 510
 김창룡(金昌龍) 508, 513, 552
 김창배(金昌培) 546
 김창범(金昌範) 510
 김창석(金昌錫) 534
 김창수(金昌秀) 940
 김창인(金昌仁) 501
 김철로(金哲魯) 510
 김철룡(金哲龍) 524
 김철묵(金鐵默) 527
 김철주(金哲周) 546
 김청송(金青松) 493
 김춘길(金春吉) 773, 816, 832
 김춘복(金春福) 465
 김충구(金忠九) 431
 김충권(金忠權) 549
 김충남(金忠男) 430, 436
 김충선(金充善) 439
 김치반(학)(金致班, 金致鶴, 金致哲) 462, 487, 551, 552
 김태근(金泰根) 538
 김태덕(金泰德) 306
 김태복(金泰福) 470, 519, 549
 김태봉(金泰鳳) 539
 김태산(金泰山) 526, 540
 김태성(金泰星) 439
 김태옥(金泰玉) 494, 552
 김태욱(金泰旭) 493
 김태욱(金泰煜) 690
 김태종(金泰鍾) 439, 445
 김태호(金泰昊) 292, 396, 729
 김택룡(金澤龍) 524
 김필선(金弼善) 721
 김필호(金弼虎) 455
 김하동(金河東) 204
 김하룡(金河龍) 509
 김하종(金河鐘) 750
 김하행(金河亨) 720
 김학권(金學權) 508
 김학률(金學律) 516
 김학림(金鶴林) 439, 445
 김학봉(金學鳳) 546
 김학송(金學松) 540
 김학수(金學洙) 503, 554
 김학원(金學元) 306, 719
 김학준(金學俊) 539
 김한규(金漢奎) 720
 김한조(金漢祚) 721

- 김해룡(金海龍) 509
 김현삼(金憲三) 471, 487
 김현수(金鉉洙) 514
 김현식(金賢植) 497
 김형룡(金亨龍) 272, 507
 김호근(金淏根) 521
 김호양(金鎬梁) 438
 김호철(金鎬哲) 540
 김홍준(金洪俊) 430, 434, 438, 462, 480, 551
 김홍한(金洪漢) 721
 김화남(金化南) 521
 김화병 777
 김화성(金化成) 553
 김화수(金和洙) 773, 795, 814, 817, 832
 김홍찬(金興燦) 721
 김희천(金熙千) 510
 김희철(金熙哲) 539
 남승범(南升范) 490, 553
 남용학(南龍鶴) 522
 남운친(南雲親) 444
 남윤길(南潤吉) 518
 남윤혁(南潤赫) 547
 남일록(南日錄) 502, 554
 노구교(蘆溝橋)사건 682
 노노무라 가즈오(野野村一雄) 680
 노문한사건 307, 432
 노몽룡(盧夢龍) 545
 노무흥국회(勞務興國會) 653
 노자키 모사쿠(野崎茂作) 81, 103
 노조에 쇼토쿠(野副昌德) 65, 71, 92
 노창권(盧昌權) 545
 노태순(盧泰順) 438
 농무계연합회(農務稷聯合會) 219
 니시고리(錦織足喜代) 223
 니시세 히데오(西瀨秀夫) 163

【ㄴ】

- 나가노 이치조(長野一三) 989
 나가시마 다마지로우(長島玉次郎) 66, 70
 나만봉(羅萬峯) 487
 나창혁(羅昌赫) 543
 나카니시 세류(中西清隆) 992
 나카다이 기요시(半井清) 865
 나카오 요시아키(中尾義彰) 553
 나타영(羅卓英) 795
 남궁복순(南宮福順) 719
 남궁묘(南宮堯) 756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415
 남명수(南明洙) 503, 554
 남박(南博) 497
 남상민(南相敏) 720
 남성만(南成萬) 493
 남순희(南淳熙) 530

【ㄷ】

- 다나카(田中副藏) 74
 다나카 요우지(田中要次) 66, 70, 74
 다다 고이치(多田吾市) 913, 920
 다마오카 이와오(玉岡嚴) 66
 다마치 큐우지로우(田井久二郎) 74
 다무라(田村興志文) 74
 다카지마(高島東郁) 488
 다카하시 사토시(高橋敏) 689
 다케시타 구니오(竹下國雄) 690
 다케오카 도시오(武岡達良) 907, 941
 다케우치 히로시(竹内寛) 91
 다키야마 세이지로(瀧山靖次郎) 188
 당진동(唐振東) 109
 대계도(戴季陶) 1002
 대미하호일(大美賀好一) 73

大美賀好一 67

대순자(大順字), 62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678, 682

대홍무(戴洪武) 180

대홍빈(戴洪宾) 180, 183

도광균(屠廣鈞) 808

도기사(都箕使) 720

도바 조쿠(外波屬) 919

도요타(豊田學求) 992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357

도원진(陶遠進) 75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776, 781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

264, 265

동명전(佟明全) 102

동문서원(同文書院) 762

동변도부흥위원회(東邊道復興委員會) 49

동변도특별치안유지회(東邊道特別治安維持會)

49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 50

동아권농공사 390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 218

동자단(童子團) 643

등운(鄧雲) 123

【ㅁ】

마국동(馬國棟) 76, 106

마덕린(馮德麟) 415

마덕산(馬德山) 179

마덕전(馬德全) 185

마동악(馬東嶽) 428, 430, 437, 479

마동춘(馬東春) 542

마등철(馬登哲) 465, 474, 530

마사 요시타로우(牧芳太郎) 81, 103

마시코 타다오(益子理雄) 113

마점산(馬占山) 417

마준일(馬駿逸) 720

마즉해(馬即海) 468

마츠다 겐지(松田源治) 1000

마츠모토 미츠사다(松本滿貞) 66

마카자와 가가리(中澤係) 969

마태권(馬泰權) 542

마태준(馬泰俊) 522

만선연구사(滿鮮研究社) 392, 393

만선척식공사(滿鮮拓植公司) 229, 232

만선척식주식회사(滿鮮拓植株式會社) 218, 229, 252

만순(万順) 178

만주공무(空務)협회 635

만주국도덕총회 635

만주국박제(博濟)자선총회 635

만주국방부인회 635

만주국불교총회 635

만주국적십자사 635

만주국회교민족협회 635

만주군인후원회 635

만주기독교연합회 635

만주도서주식회사(滿洲圖書株式會社) 137

만주전국이선권계연주총회(滿洲全國理善勸戒卷

煙總會) 635

【ㄹ】

란천림(蘭天林) 176

란충국(柰忠國) 102

뢰진(雷震) 790

류시천(劉時天) 437

류여광(柳如光) 274

류진동(劉振東) 176

류홍유(劉洪有) 186

만주제국무도회 635
만주제국체육연맹 635
만주중공업주식회사 681
만주청년연맹 645
만철소비조합(滿鐵消費組合) 225
맹광균(孟廣鈞) 101, 102
맹보지(孟寶志) 466
맹생(孟生) 466
맹수란(孟秀蘭) 466
모리 유타카(森豊) 72, 80
모리구치 이치타로(森口市太郎) 690
모리타 태이이치(森田貞一) 690
모산(牟山) 472
모삼(毛森) 777
모소수(毛紹遂) 795
목오초(穆藕初) 831
목직초(穆籍初) 772
목촌해운(木村海潤) 270
무라이 야노스케(村井矢之助) 67, 72, 81, 93
무라카미 신이치(村上信一) 94
무카이보 세이이치로(向坊盛一郎) 223
무코우바야시(向林大藏) 835
문관오(文貫吾) 720
문룡만(文龍萬) 463, 497, 553
문리정(文履禎) 430, 434, 438
문명기(文明琦) 304
문봉조(文鳳朝) 210
문용채(文容彩) 434
문치룡(文治龍) 720
문태화(文泰和) 719
문희영(文熙瑛) 455
미나미 지로(南次郎) 247, 836, 999
미노구치 니사부로(蓑口仁三郎) 480, 553
미무라 기이치(三村起一) 917
미시마 마사요시(三島正義) 483

미야모토 오토지로우(宮本音次郎) 105
미야시타 마사미치(宮下昌通) 910, 924
미야케(三宅光治) 708
미야케 히데야(三宅秀也) 69, 70
미우라 요시키(三浦義城) 908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1000
미츠이보은회(三井報恩會) 892
미타라이 다츠오(御手洗辰雄) 1004
민병찬(閔秉燦) 509, 554
민석린(閔石麟) 773, 816, 823, 832, 835

【ㅂ】

박경주(朴京周) 210
박광석(朴光錫, 朴光石) 461, 514
박금철(朴今哲) 541
박기병(朴基丙) 456
박기철(朴基哲) 536
박기하(朴基和) 499
박기홍(朴基弘) 536
박기환(朴基煥) 528
박남구(朴南九) 456
박남성(朴南星) 517
박남세(朴南世) 514, 552
박덕범(朴德範) 68, 81
박도진(朴道振) 512
박도진(朴都振) 514, 553
박동규(朴東奎) 528
박동균(朴東均) 437
박동주(朴東柱) 520
박동준(朴東俊) 436, 499
박동춘(朴東春) 484, 552
박득범(朴得範) 103, 126, 58, 59, 63
박룡범(朴龍範) 512, 552
박룡손(朴龍孫) 520
박림항(朴林恒) 438, 444

- 박만전(朴萬興) 521
 박명갑(朴明甲) 528
 박문세(朴文世) 517
 박민선(朴敏善) 489, 552
 박민종(朴敏宗) 467
 박병록(朴丙錄, 朴炳祿, 朴炳錄, 朴炳綠) 462, 467, 519, 553
 박봉조(朴奉祚) 428, 430, 434
 박봉조(朴鳳朝) 481
 박봉조(朴鳳祚) 482
 박봉학(朴鳳鶴) 465, 466, 521
 박봉환(朴鳳煥) 538
 박삼렬(朴三烈) 522
 박삼룡(朴三龍) 523
 박상출(朴相出) 512
 박석윤(朴錫胤) 239, 265, 271, 274, 279, 282, 285, 689, 722
 박성길(朴成吉) 63
 박성도(朴成道) 432, 436
 박성수(朴星洙) 521
 박송원(朴松園) 491, 551
 박순렬(朴淳烈) 490
 박승벽(朴承壁) 206
 박승호(朴承浩) 528
 박승환(朴承煥) 434
 박승후(朴承后, 朴承厚) 474, 476
 박승훈(朴勝薰) 431
 박안식(朴安植) 519, 553
 박안중(朴安仲) 501
 박양춘(朴陽春) 528
 박용해(朴容海) 266
 박원석(朴元錫) 438, 456
 박원진(朴源鎮) 719
 박장식(朴章植) 552
 박정희(朴正熙) 438, 444, 452, 557
- 박주석(朴周錫) 506, 552
 박준병(朴準秉) 279, 289, 690, 729
 박준호(朴俊鎬) 435
 박진수(朴鎮洙) 528
 박진태(朴泰晉) 690
 박찬열(朴贊烈) 499
 박찬옥(朴燦玉) 499
 박창암(朴蒼岩) 430
 박철룡(朴哲龍) 542
 박춘권(朴春權) 431, 492, 552
 박춘만(朴春滿) 504
 박춘범(朴春範) 431, 494, 552
 박춘식(朴春植) 430, 436, 463, 464, 485, 551, 552
 박태식(朴泰植) 720
 박태원(朴泰元) 430
 박팔양(朴八陽) 718
 박풍조(朴風祚) 551
 박하수(朴河洙) 517
 박학남(朴學男) 542
 박호길(朴好吉) 184, 185
 박홍섭(朴興燮) 536
 반석조선거류민회(磐石朝鮮居留民會) 219
 방관득(方官得) 430, 551
 방국현(方國賢) 530
 방대룡(方大龍) 542
 방득관(方得官) 485
 방명규(方明奎) 553
 방성주(方成周) 530
 방영웅(方英雄) 549
 방오복(方五福) 756
 방원철(方圓哲) 438, 444
 방응선(方應善) 534
 방전호(方全浩) 538
 방진성(方振聲) 69, 103, 180
 방태섭(方泰涉) 731

- 방태옥(方泰玉) 552
 방태옥(方泰旭, 方太旭) 430, 436, 486
 방학수(方學洙) 499
 배린덕(裴麟德) 505
 배창화(裴昌化) 720
 배학철(裴學哲) 542
 백금풍(白金風) 552
 백대승(白大昇) 391
 백선엽(白善燁) 430, 435, 438
 백일순(百一順) 823
 백창원(白昌元) 533
 번공전(潘公展) 772
 범여수(范予遂) 806
 범정파(范爭波) 781, 788
 변응세(邊應世) 548
 보정군관학교(保定軍官學校) 419
 봉린(鳳麟) 106
 봉천강무당(奉天講武堂) 419
 봉환림(逢煥林) 102
 부명지(付明志) 463
 부선선(富璿善) 75
 부의(溥儀) 415
 북부邦雄 66, 71, 87
 북탄부산출장소(北炭釜山出張所) 985
 북한민주당(北韓民主黨) 816
- 【ㅅ】**
- 사독자(四禿子) 61
 사문동(謝文東) 176, 177, 179, 181
 사사키 고로(佐佐木五郎) 479, 556
 사사키 조쿠(佐々木屬) 928
 사옥상(史玉尚) 476
 사이토 히로시(齊藤浩) 391, 553
 사정현(史廷鉉) 720
 사카타 슈이치(坂田修一) 660
- 사카타니 기이치(阪谷希一) 679
 사토 후쿠지(佐藤福次) 98
 사후기(斯後旗) 57
 삼풍(森丰) 162
 상준기(尙俊起) 466
 상해거류조선인회 747, 765
 상해정밀기계공예사 775
 상해파(上海派) 378
 상해호강대학(滬江大學) 762
 서가기(徐家祺) 795
 서건양(徐建揚) 467
 서경우(徐慶祐) 495
 서경직(徐敬直) 826
 서계금(徐繼金) 785
 서계연(徐桂淵) 515, 552
 서광호(徐光浩) 518
 서단(徐溥) 693
 서반근(徐盤根) 813
 서범석(徐範錫) 226, 279, 306, 729, 731
 서병수(徐丙守) 437
 서복원(徐復員) 467
 서소경(徐紹卿) 689
 서안(西安)사건 682
 서영(徐永) 474
 서영섭(徐永涉) 532
 서운계 378
 서천석(徐天錫) 767, 805
 서택민(徐澤民) 183
 서향식(徐享植) 183
 서형섭(徐亨涉) 532
 석금룡(石金龍) 490, 552
 석기옥(昔基玉) 487
 석범익(石範益) 497
 석복림(石福霖) 699
 석석봉(石錫峰) 483

- 석주암(石主岩) 434, 438, 455
 석창만(石昌萬) 553
 석탈해왕(昔脫解王) 356
 석희봉(石希奉, 石希峰) 430, 434, 438
 선만척식회사(鮮滿拓植會社) 252
 선우형순(鮮于亨筭) 718
 세계홍십자회(紅十字會)만주국총회 635
 세키 후미요시(關文義) 94
 소근당(邵根堂) 828
 소노베 이치지로(園部市二郎) 461, 478, 556
 소력자(邵力子) 790, 806
 소메카와 가즈오(染川一男) 460, 478, 555
 소병문(蘇炳文) 418
 소옥침(蕭玉琛) 75
 소정(蘇班) 806
 손경관(孫京官) 530
 손경호(孫景鎬) 271
 손국동(孫國棟) 463
 손금전(孫金田) 102
 손달신(孫達信) 536
 손문(孫文) 759, 1002
 손병일(孫炳日) 486
 손복순(孫福順) 530
 손장춘(孫長春) 109
 손정규(孫貞圭) 731
 손정룡(孫定龍) 729
 손조동선 792
 손창식(孫昌植) 765, 792
 손홍이(孫洪伊) 772, 831
 손휘종(孫輝宗) 463
 손희성(孫喜成) 98
 송근보(宋根甫) 809, 835
 송만석(宋萬碩) 543
 송민웅(宋敏雄) 66
 송석하(宋錫夏) 430, 434, 438, 482, 551
 송수(宋樹) 188
 송원수현(松原秀憲) 751
 송전주용(松田周用) 701
 송찬도(宋燦道) 298
 송춘원(宋春源) 720
 송태(宋泰) 465
 송태희(宋泰熙) 488, 552
 수선정소(須選定素) 122
 수원동근(水原東根) 463
 수풍정태(袖風靜太) 72, 80
 수화조선인민회 210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命) 355
 스즈키 게이치(鈴木敬一) 849
 스즈키 신이치(鈴木眞一) 908
 습귀건(習貴建) 473
 시나노 기이치로(信濃義一郎) 907
 시덕방(施德芳) 102
 시바사키 하쿠비(柴崎白尾) 689
 시바타 기요시(柴田清) 479, 553, 556
 시부야 사부로(瀧谷三郎) 101
 식월진자(植月津子) 749
 신경협화소년단 686
 신기석(申基碩) 260, 265, 271, 729
 신덕승(辛德勝) 186
 신덕신(申德信) 534
 신도범(申道範) 719
 신명균(申明均) 545
 신민부(新民府) 377
 신봉균(申奉均) 481
 신상범(申相範) 537
 신상철(申尙徹) 439
 신석희(慎錫熙) 508, 553
 신성균(申聖均) 719
 신순례(辛順禮) 109
 신연식(申然植) 430

신영남(申永男) 547
신영서(申榮瑞) 719
신영식(申永植) 534
신영우(申榮雨) 274, 690, 721
신옥남(申玉男) 502, 552
신일경(申一京) 719
신총순(申聰淳) 520
신태균(申泰均) 551
신태진(申泰鎮) 719
신학진(申鶴鎮) 437
신현오(申鉉五) 533
신현운(申鉉雲) 534, 548
신현준(申鉉俊) 428, 430, 434, 438, 452
신화은행(新華銀行) 823
신흥우 1004
심관아(沈冠亞) 781
심득순(沈得順) 507, 552
심복만(沈福萬) 553
심신귀(藩新貴) 60
쌍승(双勝) 93, 103, 188

【•】

아다치 데츠오(足立哲夫) 917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356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391
아유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 681
아키바 타다시(秋葉正) 480, 553
안계현(安啓弦) 530
안광수(安光洙) 439
안기원(安基元) 546
안남덕(安納德) 792
안덕선(安德善) 505, 552
안삼룡(安三龍) 463, 497, 530, 549
안상길(安尙吉) 58, 59
안성철(安成喆) 468, 530

안영길(安永吉) 438, 445
안영언(安英彦) 464, 465, 466, 471, 498
안용정(安容禎) 719
안응록(安應錄) 461
안정길(安政吉) 126
안정선(安定善) 536
암전기석(岩田基碩) 701
야규우 카오루(柳生馨) 66
야라(屋良朝晴) 483, 553
야마구치 시게하루(山口重次) 679
야마다 요시오(山田義雄) 991
야마시타 다이산(山下泰山) 206
야마와키 키쿠지로우(山脇菊次郎) 94
야마우치 요시로우(山内芳郎) 698
야마자카 도쿠타로(山崎徳太郎) 970
야스다케 히데오(安岳英夫) 993
야스이 에이지(安井英二) 853
양국진(楊國鎮) 434, 436, 438
양대진(楊大鎮) 434, 437
양량공(楊亮功) 795
양름석(楊凜石) 799
양명방(梁銘滂) 777, 809
양봉만(楊奉滿) 197
양부(梁傅) 61
양숙보(陽叔保) 806
양재규(楊在奎) 495, 552
양정우(楊靖宇) 65, 68, 73, 81, 177, 182
양정화(楊廷華) 785
양찬우(楊燦宇) 456
양춘림(楊春林) 533
양춘육(楊春煜) 106
엄경선(嚴敬善) 489, 552
엄능술(嚴能述) 513
엄대섭(嚴大燮) 501
엄만봉(嚴萬峰) 493, 552

- 엄진균(嚴鎮均) 513
 엄치섭(嚴致燮(浩)) 537
 엄훈섭(嚴訓燮) 513
 엔 아 마트코프스키 693
 여가보(呂家保) 192
 여괴(呂魁) 204
 여백기(呂伯岐) 69
 여서명(呂書銘) 78
 여신원(余信遠) 785
 연산군 1003
 염남우(廉南旭) 522
 염남우(廉南郁) 553
 염복본(廉福本) 467
 염복봉(廉福峯) 531
 염복봉(廉福奉) 549, 550
 염봉생(廉鳳生) 431
 염봉선(廉鳳先) 492
 염생당(閻生堂) 176
 염우섭(廉遇燮) 543
 염황홍(簾晃弘) 720
 영복산(榮福山) 204
 영상모덕리금행총창(英商謀德利琴行總廠) 766
 예강은행(豫康銀行) 814
 예관수(芮琯壽) 439, 445
 예철수(芮哲壽) 455
 오가와 마사카(小川正香) 206
 오가타 타다오(緒方忠雄) 113
 오개기(吳開起) 188
 오경수(吳京洙) 471, 520
 오귀남(吳貴男) 523
 오금석(吳金石) 518
 오궁선(吳競善) 732, 734
 오기남(吳琦男) 545
 오기풍(吳基豐) 533
 오남수(吳南洙) 431
 오노(大野) 정무총감 730
 오룡(五龍) 50
 오망급(吳望伋) 781, 788, 801
 오명규(吳明奎) 464, 538
 오명복(吳命福) 436
 오문강(吳文剛) 481
 오문해(吳文海) 463, 520
 오성(五省), 62
 오순양(吳順讓) 475
 오영화(吳永化) 537
 오오타 다이치(太田泰治) 835
 오완영(吳完泳) 721
 오의성(吳义成) 176, 178
 오일군(吳一均) 439
 오종순(吳鍾淳) 553
 오준(吳俊) 415
 오준정(吳俊停) 198
 오창근(吳昌根) 455
 오창호(吳昌鎬) 524
 오카다 다케마(岡田猛馬) 690
 오코시 노부오(小越信雄) 555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 355
 오택성(吳澤成) 524
 오학수(吳學洙) 464, 465
 오현상(吳顯相) 495, 554, 554, 556
 와카츠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1000
 와타나베 마사오(渡邊政雄) 81, 103
 와타나베 스테고로(渡邊捨五郎) 555
 왕길덕(王吉德) 195
 왕덕태(王德泰) 177
 왕명규(王銘貴) 57, 181, 182
 왕병권(王秉權) 61
 왕병균(王炳鈞) 806
 왕복유(王福有) 185
 왕봉각(王鳳閣) 178

- 왕사수(王士琇) 76, 106
 왕성(王成) 468
 왕소규(王紹奎) 826
 왕수산(王壽山) 59
 왕아신(王雅臣) 178
 왕여기(王如起) 183
 왕열강(王悅康) 785
 왕요선(王耀先) 692
 왕음무(王荫武) 181
 왕전안(王殿安) 468
 왕전충(王殿忠) 418
 왕정위(汪精衛) 759
 왕정평(王政平) 806
 왕주신(汪柱臣) 788
 왕준산(王俊山) 468
 왕준신(王俊臣) 468
 왕중주(王仲周) 468
 왕지우(王之佑) 75, 101, 105
 왕진경(王進卿) 468
 왕청현협화회 97
 왕한민(王漢民) 185
 왕혜당(王惠堂) 176
 요시다 겐스케(吉田健介) 689
 요진림(姚振霖) 208, 209
 요진산(姚振山) 209
 요코야마 스케나리(横山助成) 841
 요코타 타모츠(横田保) 74
 요코타(横田明忠) 1008
 우덕순(禹德淳) 690
 우덕춘(于德春) 102
 우만리(于滿利) 178
 우심징(于深徵) 418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 628, 647
 우에다 고우타로우(植田貢太郎) 66, 72
 우종석(禹鍾錫) 545
 우지산(于芷山) 418
 우츠기 다케오(宇津木孟雄) 689
 우침징(于琛澂) 107
 우택보(于澤甫) 106
 우택포(于澤浦) 76
 육상창(郁相昌) 491, 551
 원구점(苑九占) 176
 원동훈(元東勳) 533
 원세개(袁世凱) 415
 원영춘(元永喜) 552
 원영희(元永熙) 495
 원용국(元容國) 219
 원용덕(元容德) 437, 557
 원철범(元哲範) 545, 550
 원풍림(袁風林) 463
 위극민(魏極民) 58, 63
 위대하(韋大河) 690
 위덕성 68
 위동백(魏東伯) 498
 위전용(魏傳鏞, 魏轉鏞) 76, 106
 위증민(魏拯民) 65, 68, 81, 103, 119, 125, 127, 182
 유경식(俞京植) 437
 유공운(劉攻芸) 781
 유극검(劉克儉) 749
 유동렬 451
 유만의(劉萬義) 474
 유목(劉木) 477
 유몽재(劉夢才) 468
 유문도(劉文島) 806
 유병철(柳炳哲) 500
 유봉산(劉鳳山) 195
 유사성(劉思誠) 795
 유상화(劉尙華) 79
 유성봉(劉成鳳) 502

- 유세충(劉世忠) 464
 유영락(柳榮樂) 718
 유우(劉牛) 466
 유익상(柳益祥) 504
 유익조(柳益祚) 431
 유인발(柳演發) 747
 유인섭(柳仁燮) 773, 832
 유인환(劉仁煥) 485
 유재홍(劉載興) 438
 유택(劉澤) 469
 유홍덕(劉宏德) 777
 유홍순 239
 유화광(柳如光) 721
 육굉수(陸宏修) 439, 445
 윤경엽(尹京燁) 718
 윤덕병(尹德炳) 436
 윤동현(尹東鉉) 533
 윤동훈(尹東勳) 550
 윤명선(尹明善) 729
 윤보형(尹寶衡) 79
 윤복근(尹順根) 720
 윤상문(尹相文) 518
 윤상필(尹相弼, 伊原相弼) 33, 226, 230, 234, 286, 299, 451, 685, 690, 722, 729
 윤상희(尹相熙, 尹相熙) 243, 247, 251, 538
 윤수현(尹守鉉, 尹秀鉉) 430, 435, 437, 438, 456, 486
 윤승록(尹承錄) 518
 윤영상(尹榮祥) 690
 윤영언(尹英彦) 545
 윤영호(尹永皓) 266
 윤우교(尹禹校) 533
 윤원준(尹元俊) 719
 윤재권(尹在權) 498
 윤재옹(尹在雄) 456
 윤정수(尹正洙) 721
 윤종필(尹鐘弼) 820
 윤춘근(尹春根) 430, 434, 438
 윤치호(尹致昊, 伊東致昊) 731, 1004
 윤태일(尹泰日) 438, 444, 456
 이갑녕(李甲寧) 756, 757, 760
 이갑룡(李甲龍) 266
 이개신(李凱臣) 800
 이건국(李建國) 517
 이경복(李京福) 527
 이경재(李庚在) 210
 이계운(李桂雲) 719
 이광수 1004
 이규광(李圭光) 456
 이규동(李圭東) 456
 이규승(李圭昇) 456
 이규언(李圭彦) 456
 이규해(李圭海) 785
 이근주(李根柱) 197
 이금철(李金哲) 517
 이기건(李奇建) 438, 444
 이기발(李技發) 552
 이기순(李基淳) 266
 이기우(李枝友) 489
 이기한(李基漢) 496
 이기행(李基行) 294
 이나영(李羅英) 271, 720
 이남룡(李南龍) 469
 이남수(李南洙) 503, 552
 이농립(李農林) 541
 이능수(李能洙) 511
 이대덕(李代德) 553
 이덕진(李德振) 430, 436, 487, 551
 이도일(李道日) 185, 186
 이도현(李度憲) 455

- 이동근(李東根) 521
 이동석(李東奭) 718
 이동순(伊東亨) 719
 이동식(李東植) 540
 이동욱(李東郁) 430, 498
 이동주(李東柱) 496
 이동준(李東俊) 430, 436, 461, 485, 489, 551, 552
 이동화(李東和) 430
 이두만(李斗萬) 434
 이두한(李斗漢) 512, 554
 이락현(李落鉉) 541
 이량(李良) 811
 이룡성(李龍星) 485, 551, 552
 이룡호(李龍昊) 487
 이리순(李利淳, 李利順) 468, 470, 527
 이만구(李萬九) 519
 이명국(李明國) 718
 이명복(李明福) 464, 469, 474, 527
 이명훈(李命勳) 690
 이무평(李武平) 499
 이문빈(李文斌) 183
 이문상(李文相) 499
 이문장(李文章) 462
 이민권(李敏權) 528
 이백일(李白日) 430
 이범익(李範益) 239, 458, 511, 554
 이범익(李範益) 393, 721
 이병룡(李秉龍) 551
 이병선(李炳先) 721
 이병인(李丙仁) 469, 535
 이병재(李炳在) 266
 이병주(李丙胄) 438, 445
 이병찬(李秉燦) 494
 이병찬(李炳贊) 553
 이병호(李炳鎬) 511
 이병희(李炳徽) 489, 552
 이복귀(李福貴) 465
 이봉근(李奉根, 李鳳根) 456, 465, 466, 467, 469, 469, 474, 537
 이봉길(李鳳吉) 456
 이봉남(李鳳南) 720
 이봉춘(李逢春) 430, 436, 486, 551, 552
 이비(李枇) 776
 이삼룡(李三龍) 540
 이상도(李相道) 468, 519
 이상범(李相範) 527
 이상열(李相烈) 434, 438
 이상운(李相雲) 1011
 이상주(李常柱) 266
 이상진(李尙鎮, 李尙振) 438, 445, 511
 이상찬(李相燦) 720
 이상하(李相夏) 720
 이석순(李奭淳) 720
 이선근(李瑄根) 710, 723
 이성계 1003
 이성구(李成九) 439
 이성권(李成權) 552
 이성근(李成根) 521
 이성림(李成林) 473
 이성재(李性在) 272, 279
 이성환 301
 이송래(李松來) 511
 이송수(李松洙) 541
 이송죽(李松竹) 541, 546
 이수산(李壽山) 418
 이수택(李秀澤) 548
 이순(李淳) 438, 444
 이순석(李順石) 437
 이순진(李順珍) 475
 이순태(李順泰) 475

- 이승실(李崇實) 806
 이승련(李承蓮) 516, 553
 이승만(李承晚) 824
 이시동(李時董) 511
 이시모토 사카에(石本榮) 698
 이시영(李時英) 552
 이시운(李時云) 494
 이시유(李時有) 494
 이시이 사키치(石井佐吉) 444
 이연록(李延祿) 50, 177, 179, 180
 이연수(李連洙) 439
 이연창(李延昌) 477
 이연평(李延平) 180
 이연호(李然皓) 831
 이영관(李永官) 528
 이영구(李永求) 540
 이영근(李英勤) 491
 이와사와 히로시(岩澤博) 70
 이용(李龍) 430, 436
 이용로(李容魯) 747
 이용성(李龍星) 430, 436
 이용술(李容述) 445
 이용운(李龍雲) 97
 이용조(李龍祚) 293, 729
 이용택(李容澤) 293
 이우춘(李遇春) 439, 445
 이원구(伊原久) 482
 이원철(李元哲) 553
 이원형(李元衡) 428, 430, 434, 485, 551
 이유관(李裕寬) 720
 이유평(李裕平) 76, 78, 106
 이은석(李銀錫) 505
 이은영(李恩泳) 749
 이을평(李乙平) 183
 이인석(李仁錫) 999
 이일근(李日根) 523
 이일립(李日林) 490
 이일수(李日洙) 528
 이일천(李日天) 515
 이자와 리쿠오(井澤陸雄) 479
 이재기(李在起, 李再起) 430, 438, 445
 이재덕(李載德) 494
 이재복(李在福) 690
 이재수(李在洙) 492, 496, 553
 이재일(李在鎰) 439
 이전당(李典堂) 465
 이정린(李正鱗) 494
 이정림(李廷林) 521
 이정방(李鼎邦) 774, 815
 이정봉(李禎奉) 523
 이정봉(李正峰) 527
 이정태(李正泰) 501, 552
 이종문(李鍾文) 511
 이종섭(李鍾燮) 517
 이종수(李鍾洙) 541
 이종원(李鍾元) 290
 이종원(李鐘元) 690
 이종팔(李宗八) 541
 이종학(李鍾學) 517
 이종한(李鍾寒) 208, 209
 이종화(李宗和) 470
 이주일(李周一) 438, 444, 452, 557
 이준섭(李俊燮) 438, 445
 이증홍(李增興) 515, 553
 이진원(李振遠) 181
 이진종(李晉宗) 816
 이진화(李眞花) 721
 이집룡(李集龍) 486, 552
 이찬우(李贊雨) 536
 이창권(李昌權) 547

- 이창근(李昌根) 548
 이창조(李昌朝) 184, 186
 이창호(李昌浩) 527
 이천석(李千石) 541
 이천천(李千天) 999
 이철생(李哲生) 536
 이철순(李哲淳) 528
 이철재(李哲宰) 541
 이청갑(李清甲) 481
 이청룡(李青龍) 699
 이청배(李青背) 195
 이춘관(李春官) 62
 이춘선(李春善) 496
 이춘송(李春松) 456
 이춘전(李春田) 468
 이춘환(李春煥) 504
 이충국(李忠國) 490, 552
 이케다 아이오(池田秋穂) 973
 이타다카 세이시로(板垣征四郎) 621
 이태극(李泰極) 470, 527
 이태진(李泰珍) 492, 552
 이태희(李泰熙) 511
 이토 토시아키(伊藤敏明) 480, 553
 이통(李桶) 462
 이풍근(李風根) 472
 이하영(李河英) 504, 552
 이학만(李學滿) 50, 179, 181
 이학문(李鶴汶, 李鶴文) 484, 552
 이한림(李翰林) 438, 445, 456, 557
 이해정(李海澄) 76, 106
 이행근(李杏根) 778
 이현일(李賢一) 548
 이호일(李鎬日) 468, 470, 525, 549
 이홍주(李鴻周) 288, 690, 729
 이화당(李華堂) 177, 179, 181
 이회정(李懷情) 467
 이희재(李希才) 106
 이희중(李希重) 719
 이희홍(李熙弘) 541
 일야아인(日野雅仁) 487
 임대성(壬大成) 512, 554
 임동철(林童哲) 496
 임백현(任伯賢) 61
 임복순(任復淳) 719
 임수하(任守和) 473
 임영진(林英振) 499
 임영호(任永鎬) 536
 임용길(任龍吉) 993
 임우성 69
 임응룡(林應龍) 467
 임익룡(林益龍) 464, 470, 531, 549, 550
 임인익(林仁益) 499
 임전보국단 1005
 임종상(林宗相) 304
 임진(林臻) 795
 임충식(任忠植) 430
 임치준(林致俊) 531
 임한룡(林漢龍) 729
 임호석(林鎬錫) 522, 553
 임홍영(任洪英) 472
- 【☞】
- 장가인(莊稼人) 62
 장개석(蔣介石) 682, 752
 장경국(蔣經國) 814
 장경정(張慶楨) 781, 785, 788, 791, 799, 801
 장경혜(張景惠) 417
 장광적(張廣迪) 181, 182
 장국웅(張國雄) 532
 장규원 396

- 장기춘(張箕春) 432, 435
 장덕부(張德富) 102
 장덕수 1004
 장두칠(張斗七) 516, 553
 장두환(張斗煥) 467
 장련과(張連科) 176
 장명식(張明植) 543
 장봉양(張鳳陽) 463
 장봉유(張鳳有) 62
 장봉의(張鳳義) 463
 장빈침(張彬枕) 789, 790
 장사합(鄭師荅) 721
 장생전(蔣生全) 795
 장서한(張書翰) 78, 107
 장성태(張成泰) 550
 장수봉(張秀峰) 110
 장수산(張壽山) 194
 장수인(張守仁) 476
 장승호(張昇昊) 544
 장영(張瀛) 800
 장영철(張永哲) 544
 장영춘(張永春) 103, 532, 549, 550
 장우정(張雨亭) 126
 장육천(張毓泉) 824
 장은산(張銀山) 439, 445, 456
 장의(藏毅) 417
 장인상(張印祥) 476
 장인식(張仁植) 544
 장작림(張作霖) 358, 415
 장재복(張在福) 724
 장전구(張殿九) 418
 장정옥(張貞玉) 553
 장지량(張志良) 439
 장지본(張知本) 781, 785
 장진화(張振華) 183
 장창국(張昌國) 439
 장창욱(張昌旭) 500
 장춘(張春) 462, 463, 464, 468, 469, 470, 472, 478
 장학량(張學良) 307, 415, 677, 754
 장해봉(張海鵬) 418
 장홍서(張鴻恕) 795
 장홍성(張洪星) 185, 186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731
 저단양(褚丹揚) 467
 저영방(褚榮芳) 793, 835
 전공래(錢公來) 806
 전광(全光) 69, 125, 127
 전광식(田光植) 530
 전기룡(全琪龍) 552
 전길룡(全吉龍) 474, 525, 551
 전남규(全南奎) 430, 437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210
 전문괴(田文魁) 477
 전병지(田炳志) 465
 전봉근(全鳳根) 509
 전상혁(田相赫, 全相赫) 439, 445
 전성철(全成哲) 535
 전성호(全盛鎬) 729
 전송만(全松萬) 520
 전영연(全永演) 507
 전영주(全映周) 508
 전원상(田源上) 438
 전재학(全載鶴, 全在鶴) 464, 465, 466, 469, 553
 전정현(全鼎鉉) 502, 554
 전제림(全悌林) 719
 전제준(全齊俊) 513
 전종극(全宗極) 514
 전진길(全辰吉) 531
 전천학(錢天鶴) 789, 790

- 전철룡(全鐵龍) 508, 553
 전철룡(全哲龍) 513
 전초득(全初得) 464, 465, 469, 470, 474, 531
 전춘화(田春化) 512
 전태화(田泰華) 504
 전해창(全海昌) 434
 접수공작청사단(接收工作清查團) 788
 정광훈(鄭光勳) 471, 544
 정규성(鄭奎聲) 503, 554
 정규준(鄭圭俊) 721
 정덕전(丁德全) 101
 정동섭(鄭東燮) 208
 정래혁(丁來赫) 438
 정로암(鄭魯岩) 183
 정만영 439
 정무(程武) 109
 정민오(鄭敏五) 508
 정병길(鄭炳吉) 532
 정병학(鄭秉學) 518
 정복만(鄭福萬) 467, 532, 550
 정빈(程斌) 93, 178, 181
 정상기(鄭相基) 719
 정상수(鄭祥秀) 438
 정상철(鄭相哲) 464, 470
 정상철(鄭相喆) 524
 정성만(鄭成萬) 550
 정성학(鄭成學) 513
 정승룡(鄭承龍) 532
 정의부(正義府) 377
 정일권(丁一權) 434, 438, 455, 557
 정정순(鄭正淳) 439, 445
 정중앙(程中央) 781
 정증남(鄭曾男) 532
 정지원(程之遠) 418
 정진석(鄭振錫) 514
 정진태(鄭鎮泰) 913, 920
 정호준(鄭浩俊) 468, 477, 532
 정효서(鄭孝胥) 683
 제영방(諸榮芳) 809
 조광선(趙廣善) 508, 552
 조국안(曹國安) 180
 조금표(趙金標) 836
 조기풍(趙基豐) 506, 552
 조남춘(趙南春) 532
 조대련(趙大連) 507
 조동선(趙東善) 774, 796
 조동준(趙東俊) 525
 조림(趙霖) 795
 조만기(趙萬基) 719
 조만득(曹萬得) 533
 조범아(曹亞範) 68
 조병건(趙炳乾) 439
 조병옥(趙炳鈺) 824
 조병하(趙炳夏) 439
 조복춘(曹福春) 102
 조상지(趙尙志) 50, 51, 73, 176, 180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 377
 조선반도상업교역합작사 751
 조승을(趙承乙) 543
 조아범 103
 조영원(趙永遠) 438, 444
 조운봉(趙雲鳳) 517
 조원전(趙元全) 470
 조원환(曹元煥) 303, 306
 조위생(曹威生) 469
 조음선(趙蔭先) 823
 조장록(曹長祿) 513
 조정희(趙廷喜) 108, 109
 조조리(趙助理) 462
 조중옹 1000

- 조지규(趙志圭) 790
 조진방(趙振邦) 76, 106
 조창대(曹昌大) 431
 조철형(趙哲衡) 439
 조청산(趙青山) 463
 조춘근(曹春根) 553
 조한호(趙漢浩) 500
 조현기(曹憲記) 779
 조홍(曹鴻) 821
 주간보(周幹輔) 766, 779, 797
 주경영(周慶榮) 766, 779, 780, 797
 주경훈(朱敬薰) 720
 주계창(朱繼昌) 470
 주극강(朱克剛) 467
 주극영(朱克榮) 467
 주녕환(朱寧煥) 505
 주대창(朱大敞) 456
 주란의(朱蘭義) 462
 주란정(朱蘭亭) 462
 주문건(宙文建) 465
 주보중(周保中) 177, 179, 181, 182
 주빈(周斌) 463
 주상중(朱尙中) 538
 주수길(朱守吉) 468
 주언유(朱彦儒) 106
 주영구(周榮久) 176
 주월(舟越) 74
 주을돌(朱乙奐) 547
 주재덕(朱在德) 469, 473, 475, 476, 544, 550
 주재월(朱在月) 69
 주종량(朱宗良) 795
 주종우(朱鍾宇) 719
 주종을(朱鍾乙) 523
 주태규(朱泰奎) 720
 주평로(朱坪魯) 718, 729
- 중국공산당 377, 682
 증본두(曾本杜) 795
 증산회(增產會) 666
 증희만(曾喜萬) 940
 지덕순(遲德順) 109
 지동한(池東漢) 525
 지동환(池東煥) 468
 지룡구(池龍龜) 543
 지영칠(池英哲) 523, 552
 지재성(池在聲) 512
 지청천 451
 직과호옹(直鍋好雄) 206
 진군추(陳君秋) 809, 835
 진명산(陳明山) 75
 진백학(陳伯學) 468
 진복여(陳福與) 60
 진사영(陳士榮) 470
 진사총(陳嗣聰) 795
 진상춘(陣相春) 467
 진양근(陳洋根) 288
 진영구(陳榮九) 178, 179
 진영재(陳永在) 473
 진전유(陣殿有) 464
 진중회(陳中薈) 781
 진학문(秦學文) 239, 690
 진한장(陳翰章) 58, 65, 103, 119, 123, 126, 180, 181, 187
 진혜민(陣惠民) 94
- 【*】
- 차득순(車得順) 502, 513
 차룡준(車龍俊) 502
 차명환(車明煥) 434
 차시균(車時均) 543
 차천균(車天均) 495

- 차호성(車虎聲) 430
 차홍수(車洪洙) 543
 차홍순(車洪淳) 543
 참의부(參議府) 377
 참정회(參政會) 790
 참정회조사단(參政會調查團) 773
 채규범(蔡奎範) 517
 채금봉(蔡金峯) 547
 채민석(蔡敏錫) 473, 531, 550
 채민학(蔡敏學) 522
 채봉림(蔡鳳林) 184, 185
 채봉익(蔡鳳翊) 547
 채영춘(蔡永春) 186
 책진회(策進會) 378
 척광화(戚光華) 473, 475
 천하(天河) 62
 천합(天合) 62
 철도애로(愛路)소년대 643
 최경만(崔慶萬) 430, 434, 438
 최광倫(崔光倫) 464, 465, 466, 529
 최구룡(崔九龍) 434
 최근우(崔謹愚) 719
 최기석(崔基錫) 507
 최기성(崔基晟) 720
 최기영(崔基永) 529
 최남근(崔楠根, 崔南根) 430, 434, 481, 551
 최남룡(崔南龍) 498
 최남선(崔南善) 239, 279, 308, 399
 최덕만(崔德萬) 516, 553
 최도전(崔稻田) 195
 최돈직(崔敦直) 507, 553
 최돈학(崔敦鶴) 489
 최동룡(崔東龍) 502
 최동열(崔東烈) 529
 최동훈(崔東勳) 502
 최룡만(崔龍萬) 476
 최린(崔麟) 1004, 731, 734, 898
 최명주(崔明柱) 491
 최명집(崔明集) 210
 최문기(崔玟己) 690
 최민섭(崔敏燮, 崔民燮) 208, 209
 최병학(崔炳學) 494
 최병혁(崔炳革) 430, 436, 485, 551, 552
 최병협 312, 346
 최복만(崔福萬) 528
 최복수(崔福洙) 439
 최봉덕(崔鳳德) 549
 최봉춘(崔鳳春) 542
 최상영(崔尚英) 270
 최상출(崔相出) 501
 최선오(崔善伍) 504
 최선옥(崔善玉) 552
 최성갑(崔成甲) 529
 최성백(崔聖柏) 542
 최성오(崔省吾) 815
 최순명(崔淳明) 529
 최순옥(崔淳玉) 721
 최승희(崔承喜) 297
 최영복(崔永福) 102
 최영술(崔永述) 529
 최영한(崔榮翰) 721
 최완순(崔完順) 547
 최용기(崔鎔基) 439
 최용만(崔龍萬) 529
 최위봉(崔胃峰) 109
 최유천(崔維天) 546
 최윤주(崔允周) 210, 729
 최은철(崔銀哲) 522
 최익현(崔益鉉) 542
 최익환(崔益煥) 718

최인각(崔麟閣) 718
최인영(崔仁英) 465
최인영(崔仁榮) 522
최일호(崔一鎬) 512
최재범(崔在範) 430, 431, 436, 481, 483, 551, 552
최재원(崔在垣) 430
최재항(崔在恒) 481, 551
최재환(崔在桓) 434
최정훈(崔正勳) 529
최주종(崔周鍾, 崔周鐘) 438, 445, 456
최주환(崔柱煥) 506
최지(崔志) 109
최창국(崔昌國) 529, 718, 729, 732
최창륜(崔昌崑) 438, 444
최창선(崔昌善) 445
최창언(崔昌彦) 438, 444, 455
최창학(崔昌學) 304
최창현(崔昌鉉) 265, 266, 279
최창호(崔昌浩) 536
최철근(崔哲根) 434, 436
최청송(崔青松) 496
최충의(崔忠義) 481
최탁 348
최태준(崔泰俊) 514
최하흡(崔河洽) 515
최현(崔賢) 63, 68, 81, 103, 127, 180, 181, 182,
 188, 192, 204, 460, 556
최홍준(崔洪俊) 464, 470, 471, 497, 553
최활(崔活) 719
추정식(秋正植) 721
츠노다 신이치(角田信一) 93
츠루 이에지(鶴榮次) 66
츠리카와 카츠지(釣川勝司) 990
츠치야 이치요(土谷一世) 480
친우회(親友會) 765

【☞】
카와쿠라 스스무(川村進) 66
코민테른 682
코야마 사다토모(小山貞知) 675
코우키(高木公三郎) 835
키시타니 류이치로(岸谷隆一郎) 67, 72, 80, 110,
 112, 113
키요다 토시오(清田敏雄) 487
키타가와 소토오(北川外雄) 483

【ㅌ】
타나베 노보로(田邊登) 108
타니구치 유이조우(谷口明三) 66, 72
타다다 줌(多田駿) 422
타다오카 규일(忠岡圭一) 988
타로이 유우조우(樽井勇藏) 74
타카가기 가즈오(高柿一男) 81
탁춘봉(卓春峯) 720
태도회(太刀會) 377
태룡범(太龍範) 549
태용범(太鎔範, 太溶範) 430, 434, 486
태장만(太長萬) 488
태장석(太長石) 552
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1000

【ㅍ】
판미수이(板尾秀二) 479, 553
팔하(八河) 62
포진운(包振雲) 790
퐁소공(馮緒功) 75
퐁옥해(馮玉海) 468
퐁유존(馮有存) 468
퐁전의옹(豊田義雄) 480
퐁중운(馮仲云) 182
퐁치강(馮治綱) 177, 182

【ㅎ】

하나이 슈지(花井修治) 223
 하덕규(何德奎) 795
 하라 타쓰로(營原達郎) 645
 하라다적선회(原田積善會) 747, 892
 하마구치 유코(濱口雄幸) 1000
 하명등(何明燈) 467
 하세가와 다츠오(長谷川辰夫) 991
 하시모토 기요시(橋本清) 478
 하영치(何榮治) 470
 하운계(夏雲階) 51, 177, 180
 하장유(夏長有) 474
 하치모리 하츠타로(八森初太郎) 969
 하한문(何漢文) 806
 한개원(韓凱元) 766, 779, 780, 797
 한경식(韓京植) 437
 한구은행(漢口銀行) 775
 한국진(韓國振) 495
 한구찬(韓奎贊) 718
 한로수(韓魯洙) 516
 한명룡(韓明龍) 531
 한봉순(韓鳳淳) 512
 한봉준(韓鳳俊) 553
 한봉현(韓鳳鉉) 509
 한상룡(韓相龍) 242, 897
 한수송(韓壽松) 537
 한영수(韓英洙, 韓英守) 470, 488, 552
 한영우(韓英宇) 464
 한왕룡(韓王龍) 437
 한용현(韓鏞顯) 439
 한웅길(韓口吉) 274
 한인화(韓仁和) 59, 63, 98
 한재완(韓載完) 508
 한주옥(韓珠玉) 490
 한진일(韓珍一) 439, 445

한창규(韓昌奎) 512
 한창운(韓昌雲) 718, 729
 한치운(韓致雲) 718
 한태복(韓泰福) 531
 한태봉(韓泰鳳) 543
 한형극(韓亨極) 531
 한흥운(韓興雲) 505
 함영식(咸永栻) 719
 해원명철(海原明哲) 482
 향림대삼(向林大三) 813
 향응전(向應筌) 825
 허경해(許景海) 102
 허규활(許奎活) 503
 허근종(許槿鍾) 500
 허금육(許今旭) 544
 허길봉(許吉鳳) 515
 허록(許鹿) 729
 허룡범(許龍範) 553
 허수병(許樹屏) 484
 허승호(許承浩) 547
 허인진(許仁鎮) 503, 553
 허자룡(許子龍) 463, 464, 469, 474, 476, 495, 525
 허종범(許鍾範) 517
 허준(許峻) 455
 허중범(許鍾範) 461
 허춘회(許春會) 544
 허학권(許學權) 513, 553
 혁모협(赫慕俠) 75, 78
 현기영(玄基永) 397
 현능술(玄能述) 508
 현배근(玄培根) 545
 현병순(玄炳賢) 719
 현봉룡(玄鳳龍) 501
 현영주(玄瑩周) 505
 현옹용(玄應用) 533

- 현준호(玄俊鎬) 898
 혼택룡(玄澤龍) 534
 현학수(玄鶴洙) 495
 현학춘(玄鶴春) 492, 552
 협화소년단 643
 협화청년단 643
 협화청년훈련소(協和青年訓練所) 459
 협화회제일구락부(協和會第一俱樂部) 275
 협흥대장간(協興鐵舗) 813
 호가당(胡可黨) 781
 호성근(胡成根) 766, 778, 792, 805, 813
 호청림(胡青林) 194
 혼죠우 시계로(本庄繁) 416
 홍대성(洪大成) 719
 홍사익(洪思翊) 423, 428, 451, 556
 홍성태(洪性台) 431
 홍성태(洪性泰) 497
 홍순명(洪淳明) 718
 홍승화(洪承華) 439
 홍식(洪謁) 719
 홍양명(洪陽明) 241, 723
 홍영표(洪永杓) 519
 홍종화(洪鍾和) 537
 홍창회(紅槍會) 377
 홍청파(洪青波, 洪清波) 431, 465, 483, 549, 550,
 551
 화요회(火曜會) 378
 화중충령표창회 748
 황금룡(黃金龍) 514, 552
 황두진(黃斗珍) 690
 황리쌍(黃理雙) 795
 황만덕(黃萬德) 465, 466, 545
 황매장(黃梅璋, 黃梅章) 809, 835
 황무송(黃武松) 523
 황사성(黃四星) 497
 황염배(黃炎培) 816
 황윤익(黃胤羽) 718
 황옹남(黃應南) 523
 황의명(黃義明) 210, 728
 황인환(黃仁煥) 518
 황조중(黃兆中) 825
 황치삼(黃致三) 432, 435
 황택림(黃澤林, 黃擇林) 439, 445
 황해봉(黃海峰) 63
 후지오 에이지(藤尾嘆次) 99, 100
 후지오카 분로쿠(藤岡文六) 105
 후지이 마사요시(藤井義正) 556
 후지이 타다시오(藤井義雄) 479
 흥아원(興亞院) 751
 흥아원중지연락부(興亞院中支聯絡部) 751
 흥아원화중연락부(興亞院華中連絡部) 827
 흥아정진군(兴亚挺進軍) 181
 희치(熙治) 417
 히라사 슈조(平佐周三) 941
 히틀러 682